

TPP 주요국 투자·서비스 장벽 분석: 기체결 협정문 및 양허분석을 중심으로

김종덕 · 강준구 · 이주미 · 엄준현



TPP 주요국 투자·서비스 장벽 분석: 기체결 협정문 및 양허분석을 중심으로

김종덕 · 강준구 · 이주미 · 엄준현

Ⅰ 서 언 Ⅰ

2000년대 후반 이후 통상 관련 논의의 화두는 메가 FTA의 등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근접한 국가간 양자 중심의 FTA 체결속도가 어느 정도 안정화되면서 이제 양자간 FTA를 넘어 다양한 지역의 여러 국가를 포함하는 메가 FTA 논의가 새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TPP(trans-pacific partnership)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고민을 안겨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이는 TPP가 기존 상품시장 개방 중심의 협정을 넘어 서비스, 투자 및 통상 규범에 대한 전반적인 업그레이드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한국은 한·미, 그리고 한·EU FTA를 통해 높은 수준의 서비스분야 개방을 이루었으나, 경제발전수준 격차가 큰 다양한 지역의 다양한 국가를 포괄하는 TPP는 또 다른 차원의 도전이라 하겠습니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다양한 TPP 회원국들의 기존 협정에서 나타난 서비스·투자 부문의 개방수준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향후 TPP 양허협상 위주의 전략을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주제를 점검하였습니다. 첫째로, 서비스 협정에서 TPP에서 제기될 수 있는 GATS와의 구별요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TPP 협정의 근간이 되는 NAFTA 방식의 협정을 중심으로 비교분석하였으며, 최혜국대우, 내국민대우, 시장접근, 현지 주재, 이행요건조항 등을 분석하였습니다. GATS 이후 대부분의 서비스 협상이 양허를 위주로 이루어졌으나, TPP에서는 협정 및 규범 논의에 진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분석의 범주에 포함시켰습니다. 둘째로, 2005년 각국이 제출한(베트남의 경우 2007년 제출) DDA 수정양허안을 기준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서비스 분야별 TPP 회원국 및 한국의 개방 특징을 가늠해보았습니다. 셋째로, TPP 서비

스 협상을 주도할 것으로 판단되는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의 DDA 이후 기 체결 FTA 서비스 유보 목록을 분석하여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습니다. DDA 서비스 수정양허안은 각국의 서비스 분야 양허수준의 기준이 되기는 하지만, 실제 TPP 협상에서 참여국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실제 포괄주의 방식에 따르는 협정에서 이 주요국들이 어떻게 서비스 분야의 개방을 이루었는지 분석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로 판단하였습니다. 넷째로, 모드별이 아닌 제한사항의 성격별 분석을 위하여 OECD에서 발표하는 서비스 무역제한지수를 분석하였습니다. 2014년 5월 OECD는 40개국 18개 서비스 분야 관련 서비스 무역제한지수(STRI: services trade restrictiveness index)를 발표하였으며, 서비스 무역제한지수는 다양한 국내제도를 분석에 포함시킴으로써 서비스 무역제한사항의 질적 수준을 좀 더 엄밀하게 고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서비스 무역제한지수의 경우 각국의 여러 가지 다양한 양허 및 국내법상 제한사항을 기존의 모드별이 아닌 제한사항의 성격별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어, 위의 다른 분석과 상호 보완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존 대부분의 서비스 분야 분석이 DDA 양허분석에 그치고 있는 반면 본 보고서는 협정의 내용, 열거주의 방식(positive list approach), 포괄주의 방식(negative list approach), 서비스 무역제한지수를 비교해보고 TPP 회원국 개별 분야에 대한 개방수준을 전반적으로 검토해보므로써 우리의 양허협상전략을 제시하였다는 데 그 기여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본 보고서는 여러 분들의 도움으로 작성되었으며, 지면을 통해 짧은 감사의 말씀을 남깁니다. 먼저 연구진으로 수고해주신 무역통상실의 김종덕 다자통상팀장, 강준구 전문연구원, 이주미 연구원, 엄준현 연구원에게 깊은 감사

를 드립니다. 아울러 본 보고서에 발전적 제안과 코멘트를 아끼지 않았던 여러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자문위원을 맡아 수고해주신 김준동 박사, 심의위원으로 고생해주신 배찬권 박사, 공주대 박순찬 교수, 시립대 성한경 교수, 법무부 고영로 박사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보고서가 우리나라의 통상정책에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2014년 12월

원장 **이일형**

국문요약

본 연구 목적은 WTO에 기체출된 양허 그리고 기체결 지역무역협정체결의 분석을 통해 TPP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회원국의 서비스 부문 개방수준 분석하고 이를 통해 TPP에 우리나라가 참여할 경우 서비스 분야별 개방 전략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TPP 협상에서 논의가 될 수 있는 주요 서비스 분야 협정 내용, 도하 개발 아젠다(Doha Development Agenda: DDA)에 제출된 수정양허안, DDA 이후 체결된 지역무역협정에서의 유보목록, 그리고 OECD에서 발표한 서비스무역제한지수(Services Trade Restrictiveness Index: STRI)를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먼저 TPP에서 논의될 만한 최근 서비스·투자 분야 주요 조항별 이슈를 소개하였다. 주로 GATS 이후 추가적인 규범을 위주로 논의를 진행하였는데, 투자·서비스 분야에서 주요 조항으로 거론되는 최혜국 대우, 내국민 대우, 시장접근, 현지주재, 이행요건에 관한 조항에서의 쟁점을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TPP 회원국과 한국이 2005년 제출된 WTO DDA(Doha Development Agenda) 수정 양허안 분석을 통해 서비스·투자 장벽 수준을 파악하였다. 분석결과 한국의 개방수준은 DDA 수정양허안 제출당시의 개방수준은 TPP 회원국 전체에서 중간정도이며, 한국은 시장접근보다 내국민대우의 개방 수준이 높고, 국경간 서비스 공급보다 상업적 주재에 의한 서비스 공급을 통한 개방을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어서 DDA 이후 한국과 주요 TPP 회원국이 체결한 FTA를 중심으로 양허와 유보목록을 분석하였다. NAFTA 방식이라 불리는 포괄주의방식(negative list approach) 협정 위주로 분석하였으며, TPP 협상을 이끌어 갈

것으로 예상되는 미국, 호주, 캐나다, 일본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이들 국가들은 이미 DDA (미국의 경우 NAFTA)에서 상당히 높은 수준의 개방을 이루었으며 이후 협상에서의 추가개방은 크지 않다. 다만, TPP 유보 목록 협상에서 큰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뉴서비스(new services)’에서 회원국간 개방에 대한 입장 차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국, 호주, 캐나다 등은 뉴서비스 자체를 유보하지는 않고 뉴서비스에 대한 시장접근을 유보하고 있어 개방에 대해 유연한 자세를 보인 반면, 일본은 뉴서비스 전반을 Annex II 유보함으로써 새롭게 나타나는 서비스 분야에 대해 매우 제한적으로 개방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는 2014년 OECD에서 새로 발표한 서비스무역제한지수(service trade restrictiveness index: STRI) 바탕으로 한국 및 주요 TPP 협상국의 서비스무역 개방수준을 모드별이 아닌 제한사항의 유형별로 개방수준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아직까지 대부분의 TPP 참여 회원국이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사항이 가장 큰 서비스 무역장벽으로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방수준이 낮은 분야일수록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사항이 커지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전문직 서비스의 경우 인력이동에 대한 제한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네가지 분석들을 바탕으로 결론에서는 향후 서비스 및 투자 분야 개방에 관한 한국의 서비스 분야별 양허 전략을 도출하였다. 전문직 서비스의 경우 한국은 인력이동 관련 제한사항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나 TPP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이 이 문제에 대해 소극적이므로 한국에 추가적인 개방 압력은 적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쿨리어 서비스의 경우 전반적인 우체국 배달(delivery) 서비스에 대한 경쟁성 강화가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으므로, 한국은 정부가 수행하고 있는 보편적/독점적 우편서비스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 분야에서는 이미 한국의 개방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망 중립성, 정보의 이동 등 새로운 규범에 대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시청각 서비스에서도 한국의 현재 양허 수준이 낮은 것은 아니나 현재 새롭게 나타나는 시청각 분야 서비스 개방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 서언	3
■ 국문요약	7
■ 제1장 서론	21
1. 연구배경	22
2. 연구의 범위와 구성	26
■ 제2장 주요 조항별 쟁점 분석	29
1. 최혜국대우 조항	30
가. 분쟁해결절차에의 적용 여부	31
나. 불리한 대우에 대한 판단 시 비교대상	33
다. 미래 MFN	34
라. 동종성	37
마. 서비스와 서비스 공급자의 구별	39
바. 즉시 그리고 무조건적 부여	40
2. 내국민대우 조항	43
가. 서비스와 서비스 공급자의 구별	44
나. 동종 서비스와 동종 상황	46
다. 지역정부(a regional level of government)	49
3. 시장접근 조항	50
가. GATS와 한·미 FTA 비교	51
나. TPP에서의 전망	52

4. 현지주재 조항	52
가. GATS와 NAFTA 및 한·미 FTA의 현지주재 조항 비교	52
나. TPP 협상에서의 현지주재 조항 전망	54
5. 이행요건 조항	55
가. TRIMS와 한·미 FTA의 이행요건 조항 비교	56
나. 한·미 FTA와 NAFTA의 이행요건 조항 비교	57
다. TPP 협상에서 추가될 것으로 전망되는 한·미 FTA Plus 요소 ...	58
6. 소결	59
■ 제3장 TPP 참여국의 DDA 서비스 양허수준	61
1. TPP 참여국별 DDA 서비스 양허 현황	65
가. 미국	65
나. 일본	68
다. 캐나다	70
라. 호주·뉴질랜드	72
마. 중남미 참여국(멕시코·칠레·페루)	76
바. ASEAN 참여국(싱가포르·말레이시아·베트남)	82
2. TPP 참여국의 서비스 공급형태별 양허 현황 분석	89
3. TPP 참여국의 서비스 업종별 양허 현황 분석	97
4. 소결	109
■ 제4장 TPP 참여 주요국의 기체결 FTA 서비스 유보 목록 분석	113
1. 개요	114
2. 미국	118
가. 주요 조항	118
나. 유보내용	120

3. 일본	126
가. 주요 조항	126
나. 유보내용	128
4. 호주	161
가. 주요 조항	161
나. 유보내용	162
5. 캐나다	190
가. 주요 조항	190
나. 유보내용	191
6. 소결	215

■ 제5장 TPP 회원국 서비스무역제한지수 분석 233

1. 서비스무역제한지수(STRI) 개요	234
2. 서비스무역제한지수(STRI) 국가별 비교	238
3. 서비스무역제한지수(STRI) 항목별 비교	250
가. 미국	251
나. 일본	256
다. 캐나다	259
라. 멕시코	262
마. 호주	265
바. 뉴질랜드	268
사. 칠레	271
아. 한국	271
4. 소결: 서비스무역제한지수(STRI)로 본 한국의 TPP 협상 위치	277

■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283
1. 요약 및 결론	284
2. 정책적 시사점	289
가. GATS와의 차별적 요소 (재)점검	289
나. 서비스 분야별 한국의 대응방안	293
다. 맺음말	300
■ 참고문헌	303
■ 부 록	309
■ Executive Summary	313

표 차례

표 1-1. 보고서의 구성과 주요 내용	28
표 2-1. 최혜국대우 조항 비교	34
표 2-2. 내국민대우 조항 비교	45
표 2-3. 현지주재 조항 비교	53
표 3-1. 미국의 서비스 공급형태별 양허업종 수	66
표 3-2. 일본의 서비스 공급형태별 양허업종 수	68
표 3-3. 캐나다의 서비스 공급형태별 양허업종 수	70
표 3-4. 호주의 서비스 공급형태별 양허업종 수	73
표 3-5. 뉴질랜드의 서비스 공급형태별 양허업종 수	75
표 3-6. 멕시코의 서비스 공급형태별 양허업종 수	77
표 3-7. 칠레의 서비스 공급형태별 양허업종 수	79
표 3-8. 페루의 서비스 공급형태별 양허업종 수	81
표 3-9. 싱가포르의 서비스 공급형태별 양허업종 수	83
표 3-10. 말레이시아의 서비스 공급형태별 양허업종 수	85
표 3-11. 베트남의 서비스 공급형태별 양허업종 수	87
표 3-12. 시장접근부문 서비스 공급형태별 양허업종 수(국별 정렬)	90
표 3-13. 내국민대우부문 서비스 공급형태별 양허업종 수(국별 정렬)	91
표 3-14. 시장접근 및 내국민대우부문 서비스 개방 정도	93
표 3-15. 시장접근부문 서비스 공급형태별 개방 정도(국별 정렬)	95
표 3-16. 내국민대우부문 서비스 공급형태별 개방 정도(국별 정렬)	96
표 3-17. 시장접근부문 서비스 업종별 개방 정도	99
표 3-18. 내국민대우부문 서비스 업종별 개방 정도	100
표 3-19. 각국별 개방도 상·하위 업종	109

표 4-1. FTA 서비스 협정의 유형별 현황	116
표 4-2. 미·호주 FTA 및 한·미 FTA에서 미국의 현재유보 및 미래유보 주요 내용	123
표 4-3. 일본·칠레 EPA 및 일본·페루 EPA에서 일본의 현재유보 및 미래유보 주요 내용	132
표 4-4. 미·호주 FTA에서 호주의 현재유보 및 미래유보 주요 내용	165
표 4-5. 호주·칠레 FTA에서 호주의 현재유보 및 미래유보 주요 내용	171
표 4-6. 호주·칠레 FTA 서비스 분야 시장접근 양허 개선사항	183
표 4-7. 캐나다·페루 FTA 및 한·캐나다 FTA에서 캐나다의 현재유보 및 미래유보 주요 내용	193
표 4-8. 한국·미국·일본의 기체결 FTA 유보내용 비교	218
표 5-1. W120 기준으로 표시된 STRI 18개 분야	236
표 5-2. 미국의 분야별 서비스무역제한지수	254
표 5-3. 미국의 분야별 서비스무역제한지수 제한사항 범주별 구성 비중	255
표 5-4. 일본의 분야별 서비스무역제한지수	257
표 5-5. 일본의 분야별 서비스무역제한지수 제한사항 범주별 구성 비중	258
표 5-6. 캐나다의 분야별 서비스무역제한지수	260
표 5-7. 캐나다의 분야별 서비스무역제한지수 제한사항 범주별 구성 비중	261
표 5-8. 멕시코의 분야별 서비스무역제한지수	263
표 5-9. 멕시코의 분야별 서비스무역제한지수 제한사항 범주별 구성 비중	264
표 5-10. 호주의 분야별 서비스무역제한지수	266
표 5-11. 호주의 분야별 서비스무역제한지수 제한사항 범주별 구성 비중	267
표 5-12. 뉴질랜드의 분야별 서비스무역제한지수	269
표 5-13. 뉴질랜드의 분야별 서비스무역제한지수 제한사항 범주별 구성 비중	270
표 5-14. 칠레의 분야별 서비스무역제한지수	272
표 5-15. 칠레의 분야별 서비스무역제한지수 제한사항 범주별 구성 비중	273

표 5-16. 한국의 분야별 서비스무역제한지수	274
표 5-17. 한국의 분야별 서비스무역제한지수 제한사항 범주별 구성 비중	275
표 5-18. TPP 국가별 · 분야별 최대 비중 제한사항	281
표 6-1. 국가별 GATS DDA 개방도 비교	293

글상자 차례

글상자 4-1. 일본 · 스위스 EPA 투자 챕터의 역진방지 조항	127
--	-----

그림 차례

그림 2-1. 최혜국대우 조항 비교	35
그림 3-1. 미국의 업종별·공급형태별 양허 현황	67
그림 3-2. 일본의 업종별·공급형태별 양허 현황	69
그림 3-3. 캐나다의 업종별·공급형태별 양허 현황	71
그림 3-4. 호주의 업종별·공급형태별 양허 현황	73
그림 3-5. 뉴질랜드의 업종별·공급형태별 양허 현황	76
그림 3-6. 멕시코의 업종별·공급형태별 양허 현황	77
그림 3-7. 칠레의 업종별·공급형태별 양허 현황	79
그림 3-8. 페루의 업종별·공급형태별 양허 현황	81
그림 3-9. 싱가포르의 업종별·공급형태별 양허 현황	83
그림 3-10. 말레이시아의 업종별·공급형태별 양허 현황	86
그림 3-11. 베트남의 업종별·공급형태별 양허 현황	88
그림 3-12. 사업서비스의 TPP 참여국별 개방 정도	101
그림 3-13. 커뮤니케이션서비스의 TPP 참여국별 개방 정도	102
그림 3-14. 건설서비스의 TPP 참여국별 개방 정도	104
그림 3-15. 유통서비스의 TPP 참여국별 개방 정도	105
그림 3-16. 금융서비스의 TPP 참여국별 개방 정도	106
그림 3-17. 오락·문화·스포츠 서비스의 TPP 참여국별 개방 정도	107
그림 3-18. 운송서비스의 TPP 참여국별 개방 정도	108
그림 5-1. 주요국 법률서비스 STRI 비교	238
그림 5-2. 주요국 회계서비스 STRI 비교	238
그림 5-3. 주요국 건축서비스 STRI 비교	239

그림 5-4. 주요국 엔지니어링서비스 STRI 비교	239
그림 5-5. 주요국 컴퓨터서비스 STRI 비교	240
그림 5-6. 주요국 쿠리어서비스 STRI 비교	240
그림 5-7. 주요국 통신서비스 STRI 비교	242
그림 5-8. 주요국 영화서비스 STRI 비교	242
그림 5-9. 주요국 방송서비스 STRI 비교	244
그림 5-10. 주요국 음향서비스 STRI 비교	244
그림 5-11. 주요국 건설서비스 STRI 비교	245
그림 5-12. 주요국 유통서비스 STRI 비교	245
그림 5-13. 주요국 보험서비스 STRI 비교	246
그림 5-14. 주요국 은행서비스 STRI 비교	246
그림 5-15. 주요국 해운서비스 STRI 비교	247
그림 5-16. 주요국 항공운송서비스 STRI 비교	247
그림 5-17. 주요국 철도운송서비스 STRI 비교	249
그림 5-18. 주요국 도로운송서비스 STRI 비교	249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2. 연구의 범위와 구성



1. 연구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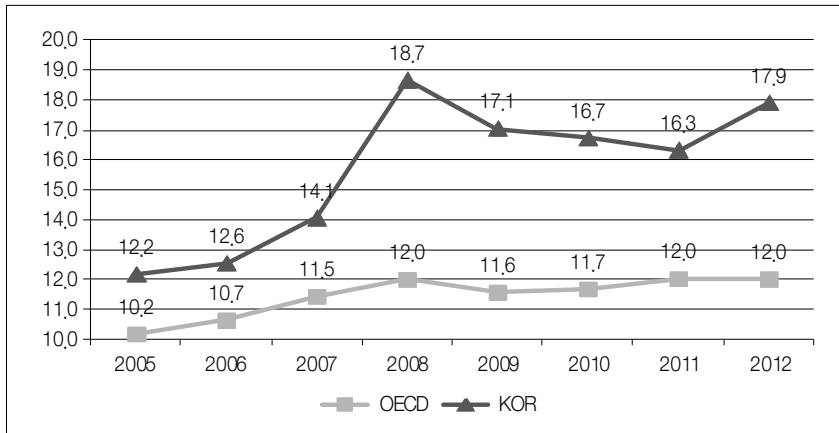
WTO 체제하에서 2000년 이후 통상 관련 논의는 그 중심을 잃은 듯한 모습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도하라운드에서의 합의 실패는 전 세계적인 지역무역협정 논의 활성화에 촉매역할을 했다고 하겠다. 2013년 말 발리협상을 통해 무역원활화가 타결되었으나 이것이 WTO를 통한 다자화 논의의 부활을 의미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단적인 예로 전 세계의 기대를 모았던 2014년 7월 말 현재 무역원활화 협정의 WTO 공식 협정 채택이 난항을 겪고 있다. 현재 미국을 중심으로 한 거대 FTA 논의가 WTO 논의에 비해 월등히 빠른 속도로 진전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다자화 논의의 진전가능성은 희박해보이기까지 하다. 미국은 1995년 NAFTA를 기점으로 FTA를 확대해가고 있으며, 특히 오바마 행정부의 적극적인 통상정책과 맞물려 FTA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대서양을 가로질러서는 TTIP(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라는 채널을 통해 EU와 FTA 체결을 추진하고 있으며 태평양을 중심으로는 TPP(Trans-Pacific Partnership)라는 채널을 통해 일본을 포함한 거대 FTA를 추진하고 있다. 지역무역협정과 별도로 서비스 등 분야별로는 복수국 간 협정(TiSA: Trade in Services Agreement)을 통해 논의를 진전시켜나가고 있다. WTO 일괄타결원칙에 비추어 이러한 분야별 복수국 간 협상의 발달은 다자 차원의 논의를 저해한다는 개발도상국들의 주장이 WTO 내 갈등의 심화로 이해되며 앞으로 다자협회의 진전은 어려울 수밖에 없음을 암시하는 듯하다.

한국의 경우 2004년 한·칠레 FTA를 필두로 지역무역협정에 대한 논

의가 본격화되었으며 2011년과 2012년 각각 EU, 그리고 미국과 FTA를 체결하였다. 2014년 3월 현재 미국 EU 등 전 세계 47개국과 FTA가 발효되었으며 호주, 콜롬비아, 그리고 캐나다와 FTA 협상이 타결되었다. 현재 경제적 규모나 과급효과 면에서 한국이 마주한 주요한 지역무역협정은 한·중, 한·중·일, RCEP 등 동아시아 지역의 FTA와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TPP이다. 동아시아 지역의 지역무역협정은 진전속도나 통상규범 질서 확립에서의 역할을 고려했을 때, 현재 우리나라의 빠른 정책 결정을 요구할 가능성이 낮다. 반면에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TPP의 경우 미국이 정책적으로 수출을 통한 미국경제의 안정화를 추진함에 따라 WTO 이후 새로운 통상질서 확립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각 분야에서 새로운 규범 정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다시 말해 TPP의 경우 서비스 및 투자를 포함한 규범 정립에서 큰 진전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1. GDP 대비 서비스 무역 비중의 변화

(단위: %)



자료: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http://databank.worldbank.org/data/views/variableSelection/selectvariables.aspx?source=world-development-indicators>(검색일: 2014. 7. 20).

이러한 관점에서 본 보고서는 TPP 국가들의 현재 경제 및 교역 상황을 바탕으로 서비스 분야의 장벽을 GATS 이후 기체결 FTA 협정문과 양허 분석을 통해 파악하고 TPP 참여국과 한국의 서비스·투자 추가 개방가능성을 점검해본 후 우리나라의 향후 FTA 서비스 및 투자 분야 협상전략을 점검해보고자 한다.

본 보고서가 서비스·투자 분야를 분석하고자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먼저 상품분야에서의 관세장벽은 대부분 국가의 경우 이미 WTO 단계에서 거의 철폐되었다. 우리나라와의 특별한 협정관계에 있지 않더라도 일부 민감품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매우 낮은 수준의 상품관세가 존재한다. 반면에 서비스와 투자 분야의 개방 정도는 관세와 같이 수치화하기 어렵고 국내적으로 민감한 분야도 상대적으로 많아 개방의 진전이 어렵다. 투자를 포함하는 서비스 분야가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큰 반면, 개방으로 인한 경제적 영향을 계량적으로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의 GDP에서 서비스 교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약 12.2%였으며 2007년과 2008년에 큰 증가세를 보이며 2012년에는 약 17.9%에 이르게 되었다. 전체적인 교역에서 서비스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OECD 국가 평균보다 높으며, 앞으로 그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하겠다. 특히 한국의 총고용 중 서비스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60% 이상으로 지속적이고 높은 수준의 서비스 분야의 개방이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을 것임을 알 수 있다. 개방수준 관련하여 한국의 서비스 산업은 GATS 기준으로 155개 세부 분야 중 98개 분야가 양허되어 있다. 또한 8개의 지역무역협정을 통해 서비스 시장을 개방

하고 있다. 좀 더 자세한 서비스 분야 개방수준은 다음에서 다시 한 번 살펴보기로 한다. 우리나라의 TPP 참여가 개방수준에 따라서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이유는 미국과 일본 등 한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서비스 시장의 수준이 높은 국가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은 한국의 서비스 교역대상국 순위에서 중국에 이어 근소한 차이로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본을 그 뒤를 이어 3위에 랭크되어 있다. 미국과 일본을 합친 규모는 우리나라 서비스 교역의 약 30% 가까이 차지하고 있어 높은 수준의 개방이 이루어질 경우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우려되는 바는 서비스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여타 선진국들에 비해 높지 않다는 데 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전체 보고서의 논의배경에 대해 소개하였다. 정리하면 2000년 이후 WTO 논의 진전의 부재가 전 세계적인 통상 논의의 중심을 WTO에서 지역무역협정으로 옮겨가게 하였으며, 이 중심에 미국이 서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은 EU와의 FTA인 TTIP와 일본을 포함한 TPP를 중심으로 상품을 넘어 서비스, 투자 및 통상 규범에 대한 전반적인 업그레이드를 추진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도 한·칠레 FTA 이후 지속적으로 많은 국가들과 FTA를 체결해왔으며 이제 거대 FTA들에 참여하는 것이 남아 있는 숙제라 하겠다. 이 중에서도 통상의 새로운 규범을 정립하고자 하는 TPP의 참여는 한국에 여러 가지 통상전략적 고민을 안겨주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 거대한 주제 중에서 TPP 회원국들의 기존 협정에서 나타난 서비스·투자 부문의 개방수준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향후 TPP의 영향에 대해 판단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2. 연구의 범위와 구성

본 연구의 주제와 범위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지역무역협정이나 투자협정 체결 등을 통해 TPP 회원국의 서비스·투자 부문 개방수준 파악과 이를 통한 향후 우리나라의 이 부문들의 통상전략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있다. 서비스 및 투자 부문의 개방수준을 파악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며 본 보고서에서는 협정문과 양허를 기초로 한 분석 방법을 택하기로 한다. 이러한 분석방법을 고려하게 된 이유는 협정문 및 양허분석이 다른 분석방법에 비해 우월해서가 아니며 서비스 분야에 대한 통계분석이 어렵기 때문이다.

TPP는 일반적으로 서비스 협상의 표준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GATS에 비해 더 많은 분야의 시장진입이 가능하도록 서비스 규범을 개선하고 있다. 또한 GATS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NAFTA 방식의 협정내용이 추가되고 있다. 따라서 소위 말하는 GATS plus 요인에 대한 협정상의 특징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으로 TPP의 경우 열거주의 방식(positive list approach)인 GATS와 달리 포괄주의 방식(negative list approach)으로 ‘양허’보다는 ‘유보’가 중요한 개념이다. 따라서 GATS 이후 TPP와 같은 NAFTA 방식의 서비스 분야 협정에서는 유보에 대한 분석이 중요하다. 하지만 문제는 한 국가의 전반적인 서비스 분야의 개방수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GATS와 이후 FTA를 종합적·유기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매우 당연하다. 이와 관련하여 서비스 관련 무역장벽을 전반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세계은행이나 OECD에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2014년 5월 OECD에서는 양허나 유보에 관계없이 비

슷한 제한사항을 같은 범주로 분류하고 이러한 분류에 따라 한 국가의 전반적인 서비스 개방수준을 알 수 있는 서비스 무역제한지수(STRI: services trade restrictiveness index)를 발표하였다. 아직 서비스 무역제한지수가 충분히 완성된 단계라고 말하기 어려운 점이 많으나 서비스 개방과 관련된 제한사항들이 좀 더 체계적이고 계량적으로 분석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위에서 언급된 내용에 따라 본 연구는 TPP 국가 서비스 협정의 주요 이슈, DDA 양허수준, DDA 이후 체결된 FTA 서비스·투자 유보 목록 분석, 서비스 무역제한지수 분석을 통한 향후 이 분야 통상협상 방향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2장에서는 최근 서비스·투자 분야의 주요 조항별 이슈를 소개한다. 주로 GATS 이후 추가적인 규범 논의를 위주로 논의가 진행된다. 제3장에서는 DDA 수정양허안과 지역무역협정 분석을 통해 서비스·투자 장벽을 파악하고자 한다. 대부분 서비스 분야 개방논의의 시작은 DDA(Doha Development Agenda)의 수정양허안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서 분석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다. 제4장에서는 DDA 이후 한국과 주요 TPP 협상국이 체결한 FTA를 중심으로 양허를 분석하고자 한다. 특별히 포괄주의 방식(negative list approach)의 협정 유보 목록을 위주로 분석한다. 제5장은 2014년 OECD에서 새로 발표한 서비스 무역제한지수(STRI: service trade restrictiveness index) 바탕으로 한국 및 주요 TPP 협상국의 서비스 무역 개방수준을 좀 더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위의 분석들을 바탕으로 6장에서는 결론으로 향후 서비스 및 투자 분야 개방에 관한 협상전략 및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표 1-1. 보고서의 구성과 주요 내용

연구 내용	협정문 GATS 플러스 주요 조항 분석	양허 및 유보 분석을 통한 TPP 협상국 개방수준 분석	STRI 분석을 통한 종합적 서비스 무역장벽 분석	
구성	제2장	제3장	제4장	제5장
분석 대상	한국과 TPP 협상 참여국 협정 주요 조항	한국과 TPP 협상 참여국 DDA 서비스·투자 양허	FTA 서비스· 투자 양허	서비스 무역제한지수
주요 내용	최혜국대우, 내국민대우, 시장접근, 현지 주재, 이행요건	DDA 수정양허 (Mode 1, 2, 3)	TPP 협상 참여국 주요 FTA 유보 목록	18개 분야 서비스 무역제한지수

자료: 저자 작성.

제2장 주요 조항별 쟁점 분석

1. 최혜국대우 조항
2. 내국민대우 조항
3. 시장접근 조항
4. 현지주재 조항
5. 이행요건 조항
6. 소결



제2장에서는 투자·서비스 협정문의 주요 조항에 관련되는 쟁점을 분석한다. 그 이유는 투자·서비스 장벽은 여러 형태로 존재하는데 그 중에서도 권리와 의무를 규정해놓은 협정문, 즉 법 그 자체(as such)로서 투자·서비스의 장벽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문제가 되는 제도나 관행이 혹시 근본적으로 협정문 자체의 문제에서 비롯되는 것은 아닌지 판단하기 위해서 분석의 출발은 협정 당사국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해놓은 협정문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일반적으로 투자·서비스 분야에서 주요 조항으로 거론되는 최혜국대우, 내국민대우, 시장접근, 현지 주재, 이행요건에 관한 조항에서의 쟁점을 분석한다. 국내규제도 이들과 더불어 주요 조항이라고 할 수 있으나, 본 연구가 TPP 주요국 투자·서비스 장벽의 분석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고, 또 TPP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은 한·미 FTA에서 국내규제에 관한 조항 없이 인가에 관한 조항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국내규제는 본 보고서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1. 최혜국대우 조항

최혜국(MFN: The Most-Favoured Nation)대우 조항은 조약의 일방 당사국이 타방 당사국을 대우하는 데 있어 다른 국가에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부여할 의무를 규정한 조항이다. MFN은 특정 협정에 참여하지 않은 국가들에 대해 특정 협정에 가입할 유인을 제공하는 기능을 한다.¹⁾ 160개국에 가입해 있는 WTO에서는 MFN의 이러한 유인

기능이 더 이상 큰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고 볼 수 있지만, 최근 각국이 활발하게 FTA를 체결하면서 MFN과 관련된 문제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MFN은 TPP 협상에서도 중요한 쟁점 중 하나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비스 무역분야의 MFN 조항에서 어떤 이슈들이 있을 수 있는지 분석하기 위해서 보편적 조약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다자조약으로 평가되는 GATS의 MFN 조항부터 살펴본다. GATS의 MFN 조항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한 회원국이 ① 협정의 대상이 되는 ‘모든 조치’에 대하여, 다른 회원국의 서비스와 서비스 공급자에게 ② 다른 ‘국가’의 ③ ‘동종’ 서비스와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④ 즉시,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부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²⁾ 각 요소에서의 쟁점에서 대해 아래에서 보다 자세히 살펴본다.

가. 분쟁해결절차에의 적용 여부

GATS는 MFN의 적용범위에 관해서 협정대상이 되는 ‘모든 조치’라고 규정함으로써 광의의 MFN 조항을 두고 있다. 그런데 MFN이 분쟁해결절차, 특히 투자자와 국가간 분쟁(ISDS: Inverstor-State Dispute)에 적용되는지가 문제가 되는데, 이에 대한 투자분쟁 중재재판부의 태도는 통일되어 있지 않다.³⁾

1) Matsushita, M., Thomas J. Schoenbaum and Peteros C. Mavroidis(2006), p. 209.

2) GATS 제2조(최혜국대우) 제1항. WTOa.

3) 법무부(2014), pp. 163~168.

MFN의 분쟁해결절차에의 적용 여부에 대한 입법적 해결은 ① 특정한 장 또는 절에만 MFN이 적용된다고 규정하는 방법과 ② MFN이 적용되는 구체적인 범위를 특정하여 놓는 방법으로 크게 대별해볼 수 있다. 먼저 MFN이 특정 장 또는 절에만 적용된다고 규정한 예는 한·EU FTA 제7장(서비스 무역·설립 및 전자상거래)과 한·미 FTA 제12장(국경간 서비스 협정)에서 찾을 수 있다. 즉 한·EU FTA는 GATS와 같이 ‘모든 조치’라는 표현을 유지하면서도 그 앞에 ‘이 절의’ 모든 조치라고 그 범위를 한정하였고 한·미 FTA 제12장에서는 각주로 ‘어떠한 규정도 이 장의 적용범위를 확대시키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반면 MFN의 구체적인 적용범위가 특정된 예는 한·미 FTA 제11장(투자)에서 발견된다. 즉 GATS에서 사용된 ‘모든 조치’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대신 ‘투자의 설립·인수·확장·경영·영업·운영과 매각 또는 그 밖의 처분에 대하여’라는 문언을 사용함으로써 적용대상을 명확히 한정하였다.

향후 TPP 협상에서도 MFN은 분쟁해결절차에는 적용되지 않는 방향으로 규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TPP 협상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은 지난 한·미 FTA 협상 당시에도 MFN이 분쟁해결절차에 적용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데에 한국과 인식을 같이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협상기록에 남기기까지 하였기 때문이다.⁴⁾ 나아가 미국이 새로운 항을 추가하여 MFN이 ISD에는 적용되지 않음을 명문화하는 상황도 상정해볼 수 있는데, 장래의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견지해 온 입장과의 부합하는 것이므로 반대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법무부(2010), p. 147.

나. 불리한 대우에 대한 판단 시 비교대상

GATS에서 한 회원국이 다른 회원국의 서비스와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한 대우가 불리한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한 비교는 ‘회원국(Member)’ 사이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회원국이 비회원국에 부여한 것도 기준이 될 수 있다.⁵⁾ 때문에 GATS는 회원국 또는 비회원국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국가(country)’라는 문언을 사용하였다. 반면 TPP 협상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이 체결한 NAFTA에서는 ‘다른 국가’ 대신에 ‘다른 당사국 또는 비당사국(any other Party or of a non-Party)’이라는 문언을 사용하였다.⁶⁾

그런데 한·미 FTA 협정에서는 ‘비당사국(any non-Party)’만 규정하여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⁷⁾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NAFTA가 미국, 캐나다, 멕시코 3국 사이에 체결된 협정인 반면, 한·미 FTA는 양자간 협정이라는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다. 즉 미국이 멕시코에 혜택을 부여하면서 다른 당사국인 캐나다에 부여한 혜택이 불리한지를 판단하기 위한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반면 한국이 미국에 혜택을 부여하면서 불리한 대우인지를 비교할 다른 당사국은 양자협정인 한·미 FTA에서는 없기 때문이다.

5) GATT에서의 최혜국대우 조항에서는 ‘계약 당사자(any contracting party)’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반면, GATS에서는 ‘회원국(each Member)’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6) NAFTA FTA 제103조, 제1203조. NAFTA Secretariat.

7) 한·미 FTA 제123조(최혜국대우). 산업통상자원부b.

표 2-1. 최혜국대우 조항 비교

GATS 제2조 최혜국대우	한·미 FTA 제12.3조: 최혜국대우 ¹⁾	한·미 FTA 제11.4조: 최혜국대우
1. 이 협정의 대상이 되는 모든 조치에 관하여, 각 회원국은 그밖의 회원국의 서비스와 서비스 공급자에게 그밖의 국가의 동종 서비스와 서비스공급자에 대하여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즉시,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부여한다.	각 당사국은 동종의 상황에서 비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한다.	1.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 내 투자의 설립·인수·확장·경영·영업·운영과 매각 또는 그밖의 처분에 대하여 동종의 상황에서 비당사국의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에게 부여한다. 2. 각 당사국은 투자의 설립·인수·확장·경영·영업·운영과 매각, 또는 그밖의 처분에 대하여 동종의 상황에서 비당사국 투자자의 자국 영역 내 투자에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적용대상 투자에 부여한다.
(제2항 및 제3항 생략)	1)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 12.3조의 어떠한 규정도 이 장의 적용범위를 확대시키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

주: 1. 밑줄은 저자가 작성.

2. GATS의 경우 국문 정본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외교통상부의 국문 번역본을 사용하여 비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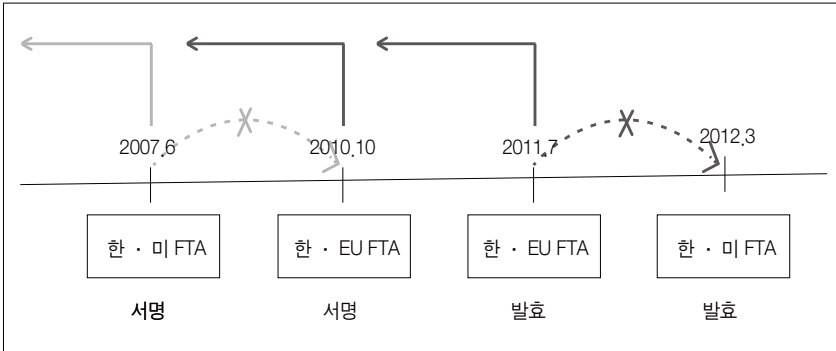
자료: WTOa, 산업통상자원부b를 기초로 저자 정리.

다. 미래 MFN

미래 MFN은 어떤 FTA의 일방 당사국이 당해 FTA 체결일 이후에 다른 나라와 FTA를 체결하여 보다 유리한 대우를 부여하는 경우, 새로운 FTA에서의 유리한 대우를 기존의 FTA에서의 타방 당사국에도 부여하여야 하는 의무를 의미한다.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에서 한·인도, 한·싱가포르 FTA에는 MFN 조항 자체가 없고 한·칠레, 한·ASEAN, 한·EFTA FTA는 FTA 발효 전에 체결한 FTA와 관련해서는 MFN 적용이 배제되고 발효 이후에 체결한 FTA와 관련해서는 협의할 기회만 부여된다. 특히 한·칠레 FTA는 설립 전 단계의 투자에 대해서는 협의기회만 부여하지만 설립 후 단계의 투

그림 2-1. 최혜국대우 조항 비교



주: 1. 한·미 FTA에서의 미래 MFN 적용 기준: 한·미 FTA 발효 이후에 서명 또는 발효된 FTA.

2. 한·EU FTA에서의 미래 MFN 기준점: 한·EU FTA 발효 이후에 서명된 FTA.

자료: 산업통상자원부b, 산업통상자원부c를 기초로 저자 정리.

자에 대해서는 최혜국대우를 부여하도록 규정하였다.⁸⁾

한·EU, 한·미 FTA에서는 미래 MFN이 규정되어 있는데 양자는 규정 형식이나 기준이 되는 시점이 상이하다. 먼저 규정형식에서는 한·EU FTA가 협정문 본문에서 직접 MFN의 시간적 효력에 관한 규정을 두어 미래 MFN을 규정하는 반면,⁹⁾ 한·미 FTA는 협정 본문에서는 시간적 효력에 관한 규정이 없는 MFN을 규정하지만 부속서에서 제한을 두고 있다.¹⁰⁾ 이러한 규정형식의 차이는 양자 공히 미래 MFN이라는 점에서는 실질적인 차이가 없지만, 열거주의(positive list) 방식과 포괄주의(negative

8) 법무부(2010), pp. 147~148.

9) 한·EU FTA 제7.8조(최혜국대우). 일방 당사자는 이 협정의 발효 후 자신이 제3국의 서비스와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타방 당사자에게 부여하여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c.

10) 한·미 FTA Annex II 중 최혜국대우 유보부문. 대한민국은 협정 발효일 이전에 발효되었거나 체결된 협정에 따라 당해 협정 당사국에 대하여 차등대우를 부여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유지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b.

list) 방식이라는 협정문 체계의 차이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다음으로 기준이 되는 시점은 한·EU FTA에서는 발효가 아닌 ‘서명’인 반면, 한·미 FTA에서는 ‘발효’ 또는 ‘체결’이다. 이러한 기준시점의 차이가 결과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는 한·EU FTA와 한·미 FTA가 다른 시기에 각각 서명, 발효되었고 양자 모두 미래 MFN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자 사이에는 미래 MFN가 적용되지 않게 된 것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한·EU FTA의 혜택은 한·미 FTA에 부여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한·미 FTA에서는 한·미 FTA의 발효 이전에 발효 또는 서명된 협정의 혜택은 한·미 FTA의 당사국에 부여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EU FTA의 서명과 발효는 각각 2007년 6월, 2010년 10월인데 모두 한·미 FTA 발효일인 2013년 3월 이전이기 때문이다. 한편 한·미 FTA의 혜택도 한·EU FTA에 부여되지 않는다. 이것은 한·EU FTA가 미래 MFN 적용의 기준점으로 발효가 아닌 ‘서명’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인데 한·EU FTA는 2011년 7월에 발효하였는데 한·미 FTA는 그 이전인 2007년 6월에 서명되었기 때문에 한·미 FTA에서의 혜택은 한·EU FTA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TPP 협상은 현재 미국이 주도하고 있으므로 한·미 FTA에서 미래 MFN이 현재와 같은 모습으로 규정된 배경에 대해 보다 깊이 있게 살펴보는 작업은 유익할 것이다. 한·미 FTA 협상 당시 미국은 협정 본문에 무조건적 MFN 의무를 규정한 후에 현재유보, 또는 미래유보에서 포괄적으로 유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미국은 NAFTA, 미·싱가포르, 미·호주, 미·모로코, 미·칠레, 미·바레인 FTA에서 같은 방식을 사용하였다. 반면 우리나라는 FTA와 같은 양자협정에서 MFN 원칙을 서비스

협정문에 명시하는 것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었다. 그 이유는 한·미 FTA 협상 당시 우리나라가 그때까지 체결한 FTA가 미국보다 적어 우리나라와 미국 사이에 FTA 체결로 얻는 MFN 혜택에서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고, 또한 우리나라가 미래에 체결할 FTA의 혜택이 미국에도 부여될 수 있기 때문이었다.¹¹⁾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한·ASEAN, 한·싱가포르 FTA에서 MFN 규정을 두지 않았으며,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호주·싱가포르, 칠레·페루, 페루·태국 FTA 등에는 MFN 규정이 없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볼 때, 미국이 주도하는 TPP 협상에서는 NAFTA에서의 문언으로 회귀할 것이다. NAFTA에서의 MFN 규정은 한·미 FTA 협정에서의 문언과 실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시나리오 하에서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라. 동종성

서비스·투자 협정의 당사국은 ‘동종의 상황에서’ 비당사국의 서비스 또는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는 대우를 부여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서비스 또는 서비스 공급자의 동종성(likeness)이 중요하다. 한 당사국이 불리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타방 당사국은 동종 상황이 아니거나 동종 서비스, 또는 동종 서비스 공급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MFN 의무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항변하며 불리한 조치를 정당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11) 최낙균 외(2007), p. 164.

그런데 서비스·투자 협정의 MFN에서 동종성 개념은 상품무역에서의 MFN, 또는 내국민대우 의무에서의 동종성 개념과는 차이가 있다. 즉 상품무역의 MFN에서 동종성 판단에서는 HS 품목 분류가 중요한 증거 중 하나로 취급되지만 서비스 분류표(CPC)는 HS 품목 분류만큼 자세하지 못하기 때문에 서비스·투자 협정에서의 동종성 판단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은 다를 수밖에 없다. 상품협정에서의 내국민대우 의무는 시장에서의 경쟁관계를 중요한 기초로 하여 동종성 판단이 이루어지지만, 서비스·투자 협정에서는 상품협정에서와 같이 국경조치와 국내조치를 구분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조차 의문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상품협정에서의 동종성 개념이 서비스·투자 협정에서 동종성 개념 정립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은 제한적이다.¹²⁾ 서비스·투자 협정의 MFN에서 동종성의 개념은 이 요건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명확하지 않다.

판례를 통해서도 이 요건의 구체화는 정리된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Canada Auto 사건에서 “manufacture beneficiaries”와 “non-manufacture beneficiaries”가 동종 서비스 공급자인지가 문제되었는데, 이 둘은 모두 Mode 3를 통해 설립되어 서비스를 공급하는 자들로서 단지 캐나다 내에 생산설비가 있는지 여부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이었다. 따라서 사안에서의 쟁점은 이러한 운영상의 차이(the type of operation)가 양자를 동종이 아닌 서비스 공급자로 결정할 정도로 충분한 근거가 되는지 여부였다. 패널은 수입된 자동차에 대해 서비스를 공급하는지, 또는 캐나다 내에서 생산한 자동차에 대해 서비스를 공급하는지와 무관하게 동종의 서비스를 공급하는 범위 내에서는 동종 서비스 공급자

12) Matsushita, M., Thomas J. Schoenbaum and Peteros C. Mavroidis(2006), p. 620.

로 보아야 한다고 판정하였다.¹³⁾ 본 판정의 함의는 서비스 또는 서비스 공급자의 동종성을 판단하는 데에는 한 서비스 공급자가 다른 서비스 공급자가 수행하지 않는 다른 영업활동을 한다든가 하는 사실은 무관하며 오히려 관련된 시장에서의 동종성을 더 중요하게 보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TPP에서도 이 요건이 구체화되어 제시될 가능성은 낮아보이며, 구체화한다고 하더라도 관련 시장에서의 동종성을 판단한다는 정도로 막연한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마. 서비스와 서비스 공급자의 구별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에서는 상품(product)에만 비차별 원칙이 적용되면 되는 반면, 서비스 무역에서는 서비스와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대우를 분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서비스와 서비스 공급자 모두에게 비차별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도 논란 끝에 최종 협정문에는 ‘동종 서비스와 동종 서비스 공급자에 대하여’라는 문언을 채택함으로써 서비스와 서비스 공급자 모두에게 비차별 원칙이 적용되는 것으로 정리되었다.¹⁴⁾

한·EU FTA는 ‘동종 서비스와 서비스 공급자에게’라고 규정함으로써 GATS의 방식을 유지한 반면, 한·미 FTA는 제12장(국경간 서비스 공급)에서는 ‘동종의 상황에서 서비스 공급자에게’라고 규정하여 서비스와 서비스 공급자를 구분하여 서비스 공급자에 대해서만 규정한 것 같은 태

13) WTO Panel Report(2000), paras 10.247-10.248.

14) 강승관(2009), pp. 231~232.

도를 보이고 있다. 반면 같은 한·미 FTA 내에서도 제11장(투자)에서는 ‘동종의 상황에서 투자자에게’, ‘동종의 상황에서 투자에’라고 투자자 외에 투자에 대해서도 MFN이 적용된다고 구분하여 규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투자자와 투자에 대해 각각 별도의 항을 할애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이 차이점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한·미 FTA에서의 규정형식은 NAFTA와 동일하다.

서비스와 서비스 공급자를 분리하여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해 학설은 양자를 분리하여 2단계 심사 또는 누적적 심사가 필요하다는 입장과 구별의 실익이 없다는 입장으로 나뉘고 있다.¹⁵⁾ 이에 대해 WTO 분쟁해결기구의 판정례는 아직까지 명확한 지침을 제공해주고 있지 못하다. 우선 이 쟁점이 다루어진 관련 판정의 수가 많지 않고 그나마 EC-Banana III와 Canada-Autos 사건이 관계가 있지만 어떤 지침을 도출할 만큼 이 쟁점이 전면적으로 다루어지지는 않았다.

TPP에서 서비스와 서비스 공급자의 분리는 한·미 FTA에서와 같이 국경간 서비스에 관한 장에서는 서비스 공급자에게만, 투자에 관한 장에서는 투자자와 투자에 대해서 분리하여 규정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 이유는 한·미 FTA의 이러한 규정형식이 NAFTA와 동일하기 때문이다.

바. 즉시 그리고 무조건적 부여

최혜국대우는 즉시,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부여되어야 하는데, 즉시 부

15) 강승관(2009), pp. 233~234.

여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반면, 무조건 부여되어야 한다는 요건에 대해서는 상당한 논란이 초래되어왔다. 무조건적 의미에 대해 WTO 분쟁해결패널의 태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한 가지 견해는 혜택을 부여하는 데 있어 조건을 부과하지 못한다고 해석하는 것으로서 Belgium- Family Tax Allowance 판정을 제외하곤 GATT 시기 동안의 대다수 판정에 의해 지지받았다. 다른 견해는 WTO 회원국 상호간에 차별을 두지 못한다고 해석하는 것으로 Belgium- Family Tax Allowance 사건의 패널이 이러한 태도를 취했고 Canada- Autos 사건의 패널에 의해 지지되었다.¹⁶⁾ 다만 Canada- Autos 사건에서 무조건적 의미는 GATS 위반이 아닌 GATT 협정상 MFN 위반을 다루는 과정에서 다루어졌다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다음 소개할 판정의 내용은 GATT와 GATS 각각의 MFN 규정의 문언과 체계로 보아 상호 준용이 가능한 부분까지만 유효한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Canada- Autos 사건에서 캐나다가 국내에서 자동차를 생산한 실적이 있거나 자동차 생산에서 실현된 캐나다 국내에서의 부가가치가 일정 수준 이상인 자동차 제조업체에 외국 자동차를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는 혜택을 부여한 것이 문제가 되었다. 규정상으로는 캐나다 내 자동차 생산업체가 어느 국가의 자동차라도 수입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 GM Canada, Ford Canada와 같은 미국계 자동차 기업만이 무관세혜택을 부여받았고 일본의 Honda, Toyota, 그리고 독일의 BMW는 각각 본사로부터 자동차를 수입하고 있었지만 관세면제혜택을 누리지 못하였다. 제소국인 일본은 수입상품 자체와 관련이 없는 기준의 충족을 조건으로 혜택에

16) Matsushita, M., Thomas J. Schoenbaum and Peteros C. Mavroidis(2006), pp. 621-622.

차등을 두는 것은 MFN 위반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패널은 캐나다의 조치가 GATT 제1조 MFN 의무 위반이라고 판정함으로써 일본의 본 쟁점에서는 승소하였다. 그러나 패널은 ‘무조건’의 의미를 일본과는 다르게 해석하였다. 즉 GATT 제1조에서 무조건의 의미는 혜택 자체를 부여하는 데 조건을 부과할 수 없다는 말이 아니라 회원국 사이의 동종 상품을 차별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패널은 그러한 해석의 근거는 회원국 사이의 비차별이라는 GATT 제1조의 취지라고 밝혔다.¹⁷⁾ 그런데 상소기관은 캐나다의 조치가 GATT 제1조 MFN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패널의 결론을 지지하면서도 협정 문언상의 근거를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즉 GATT 제1조는 회원국이 다른 국가에 부여하는 ‘어떤(any)’ 혜택이 ‘몇몇(some)’ 회원국에만이 아니라 ‘어떤(any)’ 회원국에도 부여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을 지적하면서, 캐나다 내 자동차 생산업자와 관계가 있는 수출업자들이 속한 몇몇(some) 국가들로부터의 수입에만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MFN 위반이라고 판정하였다.¹⁸⁾

GATT에는 혜택, 호의, 특권과 면제가 부여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반면, GATS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어 형식적으로는 양자의 문언상에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GATS도 ‘어떤 조치(any measure)’에 관하여 그밖의 ‘어떤 회원국(any other Member)’에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한 GATT와 GATS 사이의 실질적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17) WTO Panel Report(2000), paras 10.18-10.30.

18) WTO Appellate Body Report(2000), paras 64-86.

오히려 주목해야 할 점은 GATS에는 있던 ‘즉시, 그리고 무조건’ 혜택을 부여한다는 요건이 한·미 FTA에서는 제11장(투자에 관한 장)은 물론 제12장(국경간 서비스 무역에 관한 장)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한·미 FTA 제11장과 제12장이 NAFTA 협정의 문언을 받아들였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TPP 협상에서 최혜국대우 조항은 NAFTA와 같은 문언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 이유는 미국이 협상을 주도하고 있는데 미국은 NAFTA 이래로 칠레(2004년 발효), 페루(2009년 발효), 한국(2012년 발효)과 FTA를 체결하면서 동일한 문언의 MFN 조항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미국 이외에 활발한 목소리를 낼 것으로 예상되는 호주도 MFN 조항을 둘러싼 협상에서는 변수가 되지 않을 전망이다. 호주가 태국(2005년 발효), 칠레(2009년 발효)와의 FTA에서 GATS보다는 NAFTA에 유사한 문언이 사용되었으며 호주·ASEAN·뉴질랜드 사이에 체결된 FTA(2010년 발효)에서는 MFN 조항이 빠져 있기 때문이다.

2. 내국민대우 조항

서비스·투자 협정에서 내국민대우(NT: The National Treatment)의 무는 협정의 일방 당사국이 동종의 상황에서 자국의 서비스 공급자, 투자자, 또는 투자에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타방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 투자자, 또는 투자에 부여하여야 할 의무로 정의할 수 있다. NT 조항과 관련해서는 내국민대우 의무의 내용을 구성하는 각각의

요건들 중에서도 특히 ① 서비스와 서비스 공급자의 분리, ② 동종 상황, ③ 지역정부, 이상 세 가지가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협상을 주도하고 있는 TPP에서는 한·미 FTA, 또는 NAFTA가 협정 초안의 시작이 될 것이므로 GATS와 이 협정문들을 비교함으로써 TPP 협정문에서 이 쟁점들이 논의될 방향을 예측하고 관련하여 파생될 문제를 검토해본다.

가. 서비스와 서비스 공급자의 구별

GATS와 한·미 FTA에서의 NT 조항을 비교해보면 가장 먼저 발견되는 차이는 한·미 FTA에서 서비스와 서비스 공급자가 구별되어 다루어지고 있는 점이다. GATS에서 ‘서비스와 서비스 공급자’라고 규정하던 것을 한·미 FTA에서는 이를 분리하여 제12장(국경간 서비스 무역)에서는 서비스 공급자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서비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또 제11장(투자)에서는 투자자와 투자에 대해 별도의 항을 나누어 규정하였다. 한·미 FTA에서의 이러한 규율형태는 NAFTA에서의 NT규정과 동일하다.

물론 GATS의 NT 조항도 서비스와 서비스 공급자를 분리하여 다루도록 규정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며 여기에 대해서 학자들 사이에 견해 대립이 있다는 점은 앞서 MFN에서의 서비스와 서비스 공급자의 구별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그러므로 적어도 GATS에서 해석을 둘러싸고 논란이 있던 ‘서비스와 서비스 공급자(services or service suppliers)’라는 요건을 한·미 FTA에서는 입법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분리하여 검토되어야 할 요건임을 분명히 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다만 한·미

표 2-2. 내국민대우 조항 비교

GATS 제17조 내국민대우	한·미 FTA 제12.2조: 내국민대우	한·미 FTA 제11.3조: 내국민대우
<p>1. 자기 나라의 양허표에 기재된 분야에서 양허표에 명시된 조건 및 제한을 조건으로, 각 회원국은 그밖의 회원국의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에게 서비스의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조치와 관련하여 자기 나라의 <u>동종 서비스와 서비스 공급자들</u>에게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한다. (Re.10)</p>	<p>1. 각 당사국은 동종의 상황에서 자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한다.</p>	<p>1.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 내 투자의 설립·인수·확장·경영·영업·운영과 매각, 또는 그밖의 처분에 대하여 동종의 상황에서 자국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에게 부여한다.</p> <p>2. 각 당사국은 투자의 설립·인수·확장·경영·영업·운영과 매각, 또는 그밖의 처분에 대하여 동종의 상황에서 자국 투자자의 자국 영역 내 투자에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적용대상 투자에 부여한다.</p>
<p>(Remark 10) 이 조에 상정된 구체적인 약속은 어떤 회원국으로 하여금 관련 서비스 또는 서비스 공급자가 외국산이라는 성격으로부터 기인하는 내재적인 경쟁상의 불리함을 보상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p>	<p>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사국이 부여하는 대우라 함은 지역정부에 대하여는, 동종의 상황에서 그 지역정부가 자신이 일부를 구성하는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하는 가장 유리한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말한다.</p>	<p>—</p>
<p>(제2항 및 제3항 생략)</p>	<p>—</p>	<p>3.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당사국이 부여하는 대우라 함은 지역정부에 대하여는, 동종의 상황에서 그 지역정부가 자신이 일부를 구성하는 당사국의 투자자와 투자자의 투자에 대하여 부여하는 가장 유리한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말한다.</p>

주: 1. 밑줄은 저자가 작성.

2. GATS는 국문 정본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박웅용(2011)에 수록된 외교부의 국문 번역본을 사용하여 비교하였다. 자료: WTOa, 산업통상자원부b를 기초로 저자 정리.

FTA 제12장(국경간 서비스 무역)에서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서비스 공급자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는데 투자와 투자자에 대해 모두 규정한 것에 대비하여도 균형이 맞지 않을뿐더러 경우에 따라서는 서비스와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규제를 분리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을 수 있으므로 계속 이러한 조항 체제를 유지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해보인다.

나. 동종 서비스와 동종 상황

GATS는 ‘동종 서비스와 서비스 공급자에게(like services and service suppliers)’라고 규정한 반면, 한·미 FTA에서는 ‘동종 상황(like circumstance)’이라는 문언을 사용하는 차이가 있다. 각각의 표현에 대해서 협정문에서는 더 이상의 구체적인 설명이 없다. 두 표현 사이에 어떤 실질적인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분쟁해결과정에서 패널이 내린 해석이 참고가 될 수 있다.

먼저 GATS의 내국민대우 의무에 규정된 동종 서비스에 대해서 EC-Banana III 사건에서 패널은 아프리카, 카리브해 연안 및 태평양 지역(ACP: African, Caribbean and Pacific countries)을 원산지로 하는 바나나 도매공급서비스와 이 지역들 외의 지역을 원산지로 하는 바나나 도매공급서비스를 동종 서비스로 본 사례가 있다.¹⁹⁾ 패널은 그 근거로 서비스 거래의 본질과 특성(nature and characteristics)을 제시하였으나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최소한 원산지가 다른 상품을 공급한다는 사실만으로 다른 서비스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은 분명히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패널의 판정은 상소기관에 의해 지지를 받았다. 나아가 EC-Banana III 사건의 상소기관은 이른바 ‘조치목적설(aim and effect approach)’이 적어도 GATS 제17조상의 내국민대우 의무와 관련해서는 고려되어야 할 협정상 근거가 없다고 명시적으로 밝혔다.²⁰⁾ 조치목적설은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인 GATT에서 동종성이 문제되었을 때 대부분의 패널 판정에서는 상품성질설을 따르

19) WTO Panel Report(1997), para. 7.322.

20) WTO Appellate Body Report(1997), para. 241.

고 있으나 일부 관정에서 채택되고 있는 견해로서, 상품의 물리적 성격이 같다고 하더라도 규범의 목적을 고려하여 다른 상품으로도 볼 수 있다는 견해이다.

한편 또 다른 WTO 분쟁사례인 Canada- Autos 사건에서 패널은 Mode 3, 또는 Mode 4의 형태로 캐나다 내에서 공급된 서비스와 Mode 1 또는 Mode 2의 형태로 캐나다가 아닌 국외에서 공급된 서비스가 동종 서비스로 인정될 수 있는 가능성을 인정하였다.²¹⁾ 그러므로 Canada- Autos 사건에서는 서비스 공급유형의 차이만으로는 동종 서비스로 인정되는 데 장애가 되지는 못한다는 점을 확인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또한 Canada- Autos 사건에서 패널은 캐나다의 조치가 GATS 제17조상의 내국민대우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일본이 동종 서비스 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진다고 보았다. 그런데 사안에서 일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수입관세를 면제받는 캐나다 자동차 제조업체가 자동차 도매서비스도 제공한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패널은 캐나다 정부의 조치가 GATS 제17조상의 내국민대우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²²⁾ Canada- Autos 사건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동종성 개념의 모호함이 입증책임과 결합함으로써 위반을 주장하는 제소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반면 한·미 FTA에서 ‘동종 상황(like circumstance)’의 의미에 대해서는 관련 분쟁사례가 없기 때문에 동일한 문언을 사용하고 있는 NAFTA에서의 분쟁사례를 살펴본다. 먼저 국가 간 분쟁이었던 국경 간 트럭서비

21) WTO Panel Report(2000), para. 10.307.

22) WTO Panel Report(2000), para. 10.289.

스사건(Cross-border Trucking Services)에서 중재패널은 미국과 멕시코가 NAFTA 제1202조와 제1203조에서의 ‘동종 상황’이라는 문언이 ‘동종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라는 문언과 유사하다는 점에 대해서 분쟁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본 사건에서 미국은 NAFTA에서의 ‘in like circumstances’의 의미가 양자간 투자협정에서의 ‘in like situations’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해 멕시코도 다투지 않았다. 멕시코는 NAFTA에서 사용된 ‘in like circumstances’의 문언은 미국과 캐나다 사이의 FTA에서 유래되었다고 언급했다.²³⁾ 다음으로 ISD 사건이었던 UPS 사건에서 중재판정부는 택배서비스와 우편서비스가 다르기 때문에 UPS와 Canada Post가 동종 상황에 있지 않다고 판정하였다. 이 사건의 중재인 중 Ronald A. Cass는 개별 의견에서 동일한 상황에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경쟁관계에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하였다.²⁴⁾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볼 때, 동종 서비스와 동종 상황은 본질적인 면에서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닌 유사한 개념이라는 점이 NAFTA 분쟁사례를 통해서 확인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동종 서비스의 판단과 관련해서 극소수의 WTO 분쟁사례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단편적인 기준만을 제시해줄 뿐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판단기준이 확립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임을 알 수 있다.

23) NAFTA Arbitral Panel Report(2001), para. 249.

24) 법무부(2014), p. 151.

다. 지역정부(a regional level of government)

지역정부는 한·미 FTA의 정의에 따르면 연방제하에서의 주정부를 의미한다. 이와 구별되는 개념으로 ‘지방정부’가 있는데 이것은 한국의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를 뜻한다.²⁵⁾ 지역정부와 관련하여 쟁점이 존재하는 이유는 미국의 일부 주(州)가 내주민과 타주민을 차별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다. 미국은 미·콜롬비아, 미·칠레 FTA에서는 ‘내주민대우’를 규정한 반면, 미·오만 FTA에서는 ‘타주민대우’만을 규정하였다. ‘타주민대우’는 투자자에게 다른 주 주민에게 부여하는 대우와 동일한 대우를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미국과 같이 연방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인 호주, 뉴질랜드는 내국민대우가 규정되면 내주민대우도 보장되므로 별도의 규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여 미·호주, 뉴·중 FTA에는 내주민대우 규정이 없다.²⁶⁾

이러한 측면에서 타주민대우는 일종의 서비스·투자 장벽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GATS에서는 타주민대우에 관해 규율하는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한·미 FTA에서는 적어도 협정문 본문에서는 내주민대우에 관한 규정을 두어 타주민대우 관행을 금지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미국은 당초 한·미 FTA 협상에서 미국 정부의 조치를 모두 유보에 기재하기 어렵다는 태도를 보여, 우리나라는 미국의 ‘기존’ 정부 조치에 관해서만 현재 유보에 기재하는 것에 동의하였다.²⁷⁾ 대신 우리

25) 한·미 FTA 제1장(최초규정 및 정의) 제1.4조(정의). 산업통상자원부b.

26) 법무부(2010), pp. 139~140.

27) 여기서 ‘기존’은 협정의 발효일에 유효하다는 것이다. 한·미 FTA 제1.4조(정의). 산업통상자원부b.

나라는 ① 비합치조치의 개정은 조치의 합치성을 감소시키지 아니하는 한도에서만 허용되는 것으로, 즉 역진방지가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할 것, ② 미국이 2005년 DDA 수정양허안에서 제시한 주정부의 비합치조치 리스트를 한·미 FTA 미국 측 부속서 I에 첨부(부록 I-가 신설)할 것, ③ 정보교환과 협의체계를 구축(부속서 12-다 신설)할 것을 요구하여 관철시켰다. 비록 한·미 FTA에서 지역정부와 관련된 비합치조치 목록의 성격이 예시적이라는 점은 한계로 지적될 수 있지만, 미국이 체결한 FTA 중에서 주정부 조치에 대해 이와 같은 수준의 규율이 이루어진 것은 한·미 FTA가 최초라는 점을 고려하면 그 의미가 없지는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²⁸⁾

TPP 협상에서도 내주민대우는 여전히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미국이 한·미 FTA 협상에서는 여러 조건을 설정함으로써 내주민대우의무를 무력화한 측면이 있지만 이러한 해결방식이 한국 이외에 다른 회원국들이 다수 존재하는 TPP에서도 유효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낙관하기 어렵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이미 한·미 FTA 협정문에서 내주민대우에 관한 규정을 둔 전례가 있는 만큼 이보다 후퇴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3. 시장접근 조항

시장접근(MA: Market Access) 조항은 한 당사국이 다른 당사국의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에 대해 양허표에 기재되어 있는 제한 및 조건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해야 하는 의무를 규정한 조항이다.²⁹⁾

28) 최낙균 외(2007), pp. 169~170.

29) GATS 제16조 제1항. WTOa.

GATS에서는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것이 금지되는 조치로서 여섯 가지가 제시된다. 이 중 네 가지(①~④)는 양적제한조치로 평가되는 반면, 나머지 두 가지(⑤~⑥)는 질적제한조치로 분류된다.³⁰⁾ 먼저 양적조치 네 가지는 ① 수량쿼터, 독점, 배타적 서비스 공급자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요건의 형태 여부에 관계없이, 서비스 공급자 수에 대한 제한, ② 수량쿼터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요건 형태의 서비스 거래, 또는 자산총액에 대한 제한, ③ 쿼터나 경제적 수요심사요건의 형태로 지정된 숫자단위로 표시된 서비스 영업의 총 수 또는 서비스의 총산출량에 대한 제한, ④ 수량쿼터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요건의 형태로 특정 서비스 분야에 고용되거나 혹은 한 서비스 공급자가 고용할 수 있는, 특정 서비스 공급에 필요하고 직접 관련되는, 자연인의 총 수에 대한 제한이다. 다음으로 질적제한조치 두 가지는 ⑤ 서비스 공급자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수단인 법인체나 합작투자의 특정 형태를 제한하거나 요구하는 조치, ⑥ 외국인지분 소유의 최대 비율한도 또는 개인별 투자 또는 외국인투자 합계의 총액 한도에 의한 외국자본 참여에 대한 제한이다.³¹⁾

가. GATS와 한·미 FTA 비교

시장접근조항은 GATS와 한·미 FTA 사이에 차이가 없다. GATS에서 시장접근을 제한하는 조치로 금지되는 유형 여섯 가지를 단순 열거한 반면, 한·미 FTA에서는 이를 양적인 제한과 질적인 제한으로 나누어 규정한 정도의 차이만이 있다. 물론 한·미 FTA의 시장접근조항에는

30) 한국국제경제법학회(2012), p. 467.

31) GATS 제16조 제2항. WTOa.

GATS의 금지유형 중 마지막 유형이 없지만 한·미 FTA에서는 투자에 관한 장이 별도로 있어 그곳에서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나. TPP에서의 전망

서비스 및 투자 협정의 다른 조항들에 비하여 시장접근조항이 GATS와 한·미 FTA에서 매우 높은 유사성을 보이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듯이, TPP에서도 급격한 변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4. 현지주재 조항

현지주재(LP: Local Presence) 조항은 서비스 공급자에게 서비스 공급의 조건으로서 일정한 형태의 법인을 설립하도록 요구하거나 서비스 공급자가 거주하는 것 등을 요구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조항을 가리킨다. 따라서 현지주재 조항은 국경간 서비스 무역에 관한 장에서 등장하며 투자에 관한 장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가. GATS와 NAFTA 및 한·미 FTA의 현지주재 조항 비교

GATS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법인의 형태를 제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일견 현지주재 요건 부과 금지 중에서 법인에 관한 측면을 규율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NAFTA나 한·미 FTA에서와 같이 ‘서비스 공급을 조건으로’ 법인의 형태에 대한 제한이 가해진다는 조건이 GATS에는 없다.³²⁾

NAFTA나 한·미 FTA의 규정은 GATS의 규정에 비해 자연인에 대한 거주요건 부과를 금지한다는 점에서 진일보하였다. 이에 따라 이제 현지주재 조항은 법인에 대한 제한과 자연인에 대한 제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NAFTA와 한·미 FTA의 현지주재 조항에서 양자 사이의 문언상 차이는 없다.

표 2-3. 현지주재 조항 비교

GATS 제16조 시장접근	NAFTA 제1205조 현지주재	한·미 FTA 제12.5조 현지주재
2. 시장접근 약속이 행해진 분야에서 자기 나라의 양허표상에 달리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는 한, 회원국이 자기 나라의 일부 지역이나 혹은 전 영토에 걸쳐서 유지하거나 채택하지 아니하는 조치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어떠한 당사국도, 국경간 서비스 공급의 조건으로서,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자국 영역에서 대표 사무소 또는 어떠한 형태의 기업을 설립 또는 유지하도록 요구하거나, 거주자이어야 한다고 요구할 수 없다.	어떠한 당사국도, 국경간 서비스 공급의 조건으로서,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자국 영역에서 대표 사무소 또는 어떠한 형태의 기업을 설립 또는 유지하도록 요구하거나, 거주자이어야 한다고 요구할 수 없다.
마. 서비스 공급자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수단인 법인체나 합작투자의 특정 형태를 제한하거나 요구하는 조치, 그리고	—	—
(제1항, 제2항 가호 내지 라호 및 마호 생략)	—	—

주: 1) 밑줄은 저자가 작성.

2) GATS와 NAFTA는 국문 정본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GATS에 대해서는 외교통상부의 국문 번역본을, NAFTA에 대해서는 영문 정본이 한·미 FTA와 현지주재 조항의 내용이 동일하기 때문에 한·미 FTA의 국문 정본의 내용을 사용하였다.

자료: WTOa, NAFTA Secretariat, 산업통상자원부⁶를 기초로 저자 정리.

32) GATS 제16조. WTOa.

나. TPP 협상에서의 현지주재 조항 전망

현지주재 조항은 TPP 협상에서 내용이 보다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즉 GATS에 비해 한·미 FTA 현지주재 조항에서의 발전이 법인 이외에 자연인에 대한 현지주재 의무부과도 규제하는 것으로 규범이 분화되었다. TPP 협상에서는 법인과 자연인이라는 두 체제로 나뉜 한·미 FTA에서의 규율체제에서 각각의 요건을 이루는 개별 요소들을 보다 명확히 하고 구체화하는 작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먼저 법인의 측면에서는 ‘어떠한 형태의 기업(any form of enterprise)’에서 ‘어떠한 형태의 상업적 주재(any form of commercial presence)’로 규율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즉 ‘기업(enterprise)’은 사업조직(a business organization)이라는 의미인데, 지점(a branch), 관계사(an affiliate), 서비스 센터(a service centre) 등도 사업조직에는 해당하므로 기업으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가 경우에 따라 모호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업보다는 개념의 범위가 더 넓은 ‘상업적 주재(commercial presence)’라는 용어로 대체될 것으로 전망된다. 상업적 주재는 지점(a branch), 관계사(an affiliate), 서비스 센터(a service centre)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되기 때문이다.³³⁾

다음으로 자연인의 측면에서는 ‘거주할 것(resident)’ 이외에 ‘주소를 둘 것(domiciled)’도 금지하는 방향으로 규범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거주(resident)는 주소처럼 밀접한 관계를 갖는 곳은 아니지만 일정 기간 계속하여 거주하는 장소를 의미하는 ‘거소’로 번역되어 사용되고

33) Munin(2010), p. 9.

있다.³⁴⁾ 반면 주소(domiciled)는 주소생활의 근거가 되는 장소를 가리킨다.³⁵⁾

5. 이행요건 조항

이행요건(PR: Performance Requirement)은 투자와 관련하여 국산품 사용, 수출과 수입 사이의 연계, 지식재산 이전 등의 요건을 부과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의에서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이행요건 조항은 투자에 관한 장에서 규정하고 국경간 서비스 무역에 관한 장에서는 규정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³⁶⁾ 이행요건을 부과하는 조치는 자원의 적정한 배분을 막고 기업의 자율성을 해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WTO 무역 관련 투자조치에 관한 협정(TRIMS: Agreement on Trade-Related Investment Measures)에서도 이행요건에 관한 조항을 두고 있으며,³⁷⁾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FTA에 관련 규정을 두고 있다.

TPP 협상에서 이행요건 조항이 어떻게 규정될지 전망해보기 위해서 TRIMS, 한·미 FTA, 그리고 NAFTA를 상호 비교해보면서 변화의 의미를 분석해본다.

34) residence: living in a place for some length of time. Webster 온라인 사전 웹사이트.

35) domicile: a person's fixed, permanent, and principal home for legal purposes. Webster 온라인 사전 웹사이트b.

36) 김종덕, 엄준현(2013), p. 66.

37) TRIMS 제2.2조. 협정의 부속서에 무역 관련 투자조치의 예시목록을 두고 있다. WTOb.

가. TRIMS와 한·미 FTA의 이행요건 조항 비교

TRIMS와 한·미 FTA의 이행요건은 비당사국에의 적용 여부, 금지조치의 분류기준, 추가된 금지유형의 유무, 이상 세 가지 측면에서 차이를 보인다. 먼저 비당사국에도 적용되는지에 대해 TRIMS에서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반면, 한·미 FTA에서는 비상사국에도 이행요건 부과금지 의무가 적용된다는 점을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한·미 FTA의 이러한 태도는 NAFTA에서의 이행요건 부과금지조항의 태도를 따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³⁸⁾

다음으로 금지조치의 분류와 관련해서 TRIMS에서는 ‘1994년도 GATT 제3조(내국민대우) 또는 제11조(수량제한금지)의 규정에 합치하지 아니하는 무역 관련 투자조치’라고 전체적으로 지칭하면서 각 조치들을 나열하는 반면, 한·미 FTA에서는 이행의무부과조치를 ‘약속 또는 의무 부담’을 강요하는 유형과, ‘이익의 수령 또는 지속적 수령’의 일정한 요건에 부합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유형으로 각각 나누어 항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이 차이점이다.³⁹⁾

끝으로 구체적인 금지조치의 내용 측면에서도 TRIMS에는 없던 ‘기술 이전’, ‘특정 지역으로의 독점공급’이라는 두 가지 유형이 추가되어 한·미 FTA에서는 총 일곱 가지의 유형을 규율하게 되었다. 이 두 가지 추가된 유형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당시 선진국이 이행요건 부과가 금지되는 유형으로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개도국들이 반대하여

38) NAFTA 제1106조. NAFTA Secretariat(1992). <https://www.nafta-sec-alena.org/Home/Legal-Texts/North-American-Free-Trade-Agreemen>(검색일: 2014. 9. 5.).

39) 김종덕, 엄준현(2013), p. 70.

TRIMS에 조문화되지 못했던 것이다.⁴⁰⁾ 이러한 비교 결과에 기초하여 보면, 한·미 FTA에서 나타난 이러한 변화들은 TPP 협상에서도 계속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나. 한·미 FTA와 NAFTA의 이행요건 조항 비교

한·미 FTA와 NAFTA의 이행요건 조항에서 가장 큰 차이는 한·미 FTA에서 투자 유치를 위해 부여한 혜택의 반대급부를 요구하는 것은 지식재산권의 이전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 한 이행요건 부과금지의무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규정한 점이다.⁴¹⁾ 물론 NAFTA에도 이와 유사하게 투자 유치를 위해 부여한 혜택의 반대급부를 요구하는 것이 이행요건 부과금지의무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규정한 조항이 있다.⁴²⁾ 구체적으로 ‘이익의 수령 또는 지속적인 수령에 대하여 생산의 입지, 서비스 공급, 근로자의 훈련 또는 고용, 특정한 시설의 건설 또는 확장, 연구개발 수행을 자국 영역에서 한다는 요건의 준수를 조건으로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 한다는 것이다. 즉 투자 유치를 위해 투자자에게 부여한 혜택의 반대급부로서 일정한 이행을 요구하는 것은 이행요건 부과금지원칙에 대한 예외로 인정된 것인데, 여기에 나열된 생산의 입지, 근로자의 훈련 또는 고용 등이 한정적 열거인지 또는 예시적 나열인지가 모호하여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한·미 FTA에서는 지식재산의 이전요구가 이행요건 금지의무의 예외로 해석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던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각주로

40) 한국국제경제법학회(2012), p. 399.

41) 한·미 FTA 제11.8조 각주 5. 산업통상자원부b.

42) NAFTA 제1106조 제4항. NAFTA Secretariat.

지식재산 이전요구가 금지됨을 명확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향후 TPP 협상에서도 이와 같은 태도는 최소한 같은 형태로 유지되거나, 나아가 현재 각주로 되어 있는 내용을 해당 항의 본문 내용에 단서로 추가하거나 또는 해당 항에서 나열된 예시가 한정적 열거라는 표현이 추가되는 등의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밖에 한·미 FTA와 NAFTA의 이행요건 조항에서 차이가 나는 점은 한·미 FTA 제11.8조 제4항과 제5항인데, 제4항은 ‘규정된 것 이외의 어떠한 약속·의무부담 또는 요건에도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고, 제5항은 ‘민간 당사자 사이의 이행요건 의무부과를 배제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향후 TPP 협상에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 TPP 협상에서 추가될 것으로 전망되는 한·미 FTA Plus 요소

향후 TPP에서는 전 지구적 가치사슬(GVC: global value chain)과 관련 하여 조항 문언상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예컨대 TRIMS에서는 없었다가 한·미 FTA에서 새롭게 추가된 금지유형의 하나인 ‘특정 지역으로의 독점 공급’은 ‘투자가 생산하는 상품이나 공급하는 서비스를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특정한 지역 또는 세계 시장에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여기서 ‘생산(produce)’은 기존에는 없던 것을 새롭게 만들어낸다는 의미가 강하므로,⁴³⁾ 오늘날과 같이 하나의 상품이 여러

43) produce: to compose, create, or bring out by intellectual or physical effort, Webster 온라인 사전 웹사이트c.

국가의 영역 내에서 차례로 부가가치가 더해지는 현상을 규율하기에는 적당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그러므로 ‘공정(procedure)’이라는 단어를 대신 사용하자는 주장도 제기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왜냐하면 ‘공정’은 정해진 순서 내에서 일정한 단계의 달성이라는 뜻이므로, 오늘날 전 지구적 가치사슬 현상을 설명하는 데 보다 적합한 단어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⁴⁴⁾

6. 소결

지금까지 투자·서비스 협정문의 주요 조항에서의 쟁점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투자·서비스 장벽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최혜국대우 조항에서는 특별히 우리나라에 장벽으로 작용할 위협요소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동종성 요건이 아직 구체화되지 못하고 모호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피소국일 경우에는 유리하겠지만 제소국일 경우에는 장벽으로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동종성 요건은 최혜국대우 의무 위반임을 주장하는 제소국 측이 입증책임을 지는 법률요건이기 때문이다.

둘째, 내국민대우 조항에서는 지역정부의 차별적 조치가 투자·서비스 장벽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역정부는 연방제하에서의 주정부를 의미하는데, 특히 미국의 일부 주(州)가 내주민과 타주민을 차별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다. 한·미 FTA에서는 협

44) procedure: a step in a procedure; especially: a series of steps followed in a regular definite order. Webster 온라인 사전 웹사이트d.

정 부문에서 내주민대우를 규정하는 등 일정한 성과가 있었지만, 유보 목록, 구체적으로 현재유보(부속서 I)에서 비합치조치를 구체적으로 적시하도록 하지 못하고 예시목록만을 기재하는 선에서 타협한 한계가 있었다. 때문에 지역정부의 차별적 조치가 투자·서비스 장벽으로 작용할 위험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셋째, 시장접근 조항에서는 GATS와 한·미 FTA에서의 규정이 대동소이한 것으로 나타나 TPP에서도 시장접근조항에서는 급격한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넷째, 현지주재 조항에서는 자연인에게 거주 이외에 주소를 둘 것을 요구하는 조치가 위협요소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의 경우 GATS에서 단순히 법인체나 합작투자의 형태를 제한하거나 요구하는 것이 금지된 반면, NAFTA나 한·미 FTA에서는 대표 사무소의 설립과 유지를 요구하는 것도 금지되는 것으로 규율의 구체화가 진행되었다. 이러한 흐름은 현지주재 요건 부과가 기존의 것보다 새롭고 정교한 형태로 출현하는 것을 반영하는데, 법인이 아닌 자연인의 측면에서는 기존에 거주를 요구하는 것에서 나아가 주소지를 둘 것을 요구하는 조치들이 출현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섯째, 이행요건 조항에서는 금지되는 이행요건 부과 중에서 ‘특정지역으로의 독점 공급’이 오늘날 전 지구적 가치사슬(GVC: global value chain) 확산경향의 영향으로 그 정의가 일부 수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즉 ‘특정 지역으로의 독점 공급’은 ‘투자가 생산하는 상품이나 공급하는 서비스를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특정한 지역 또는 세계 시장에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것’인데, 여기서 ‘생산(produce)’이 ‘공정(procedure)’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제3장 TPP 참여국의 DDA 서비스 양허수준

1. TPP 참여국별 DDA 서비스 양허 현황
2. TPP 참여국의 서비스 공급형태별 양허
현황 분석
3. TPP 참여국의 서비스 업종별 양허
현황 분석
4. 소결



본 장에서는 TPP 협상 참여국의 DDA 서비스 수정양허안을 토대로 서비스 분야의 양허 내용 및 수준을 분석하고자 한다. TPP 협상에 참여 중인 나라는 총 12개국으로 이 중 브루나이는 GATS 양허표 이외에 DDA 수정양허안을 제출하지 않아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베트남은 DDA 서비스 수정양허안 제출 이후인 2007년 WTO에 가입하여 가입 당시 제출한 서비스 양허표를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양허분석에 앞서 DDA 서비스 수정양허안의 구성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WTO의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은 협정 본문, 분야별 부속서, 각료결정 및 양해, 각국의 양허표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2005년 각국이 제출한 DDA 서비스 수정양허안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DDA 서비스 수정양허안은 GATS에서 WTO 회원국이 약속한 시장접근(MA: Market Access) 및 내국민대우(NT: National Treatment)에 관한 양허내용으로 시장접근과 내국민대우를 구분하여 서비스 업종별, 공급형태별 제한사항을 기재하고 있다. 시장접근이란 서비스 판매업자가 서비스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 및 서비스 공급자가 원하는 공급형태에 따라 서비스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의미하며, 내국민대우란 외국의 서비스라도 일단 수입이 완료된 후에는 자국의 서비스와 동등한 대우를 해야 하는 원칙을 뜻한다.⁴⁵⁾ 분석에서는 수정양허안에 기재된 시장접근 및 내국민대우상 네 가지 서비스 공급형태 중 국경간 서비스 공급(Mode 1), 서비스의 해외소비(Mode 2), 상업적 주재에 의한 서비스 공급(Mode 3)에 대해 중점분석하며, 수평적 양허⁴⁶⁾를 제외하고 거의 개방 약속을 하지 않는 자연인의

45) 김종선, 김기국, 송종국(2004), p. 19.

이동(Mode 4)에 관한 내용은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서비스 분야 및 업종 분류와 관련해 국제적으로 확립된 분류기준은 없으나, 우루과이라운드 서비스 협상 당시 양허협상에서 UN의 잠정적 중심 상품분류체계(Provisional Central Product Classification)상 서비스 업종에 관한 분류체계를 기초로 하였다.⁴⁷⁾ 이에 서비스 분야 양허분석 시 이 분류체계를 기준으로 분석하는 경향이 크며, 본 연구에서도 이 기준을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UN Provisional CPC에 기초한 서비스 분류체계는 크게 총 12개 부문(sector)으로 사업서비스 46개, 커뮤니케이션서비스 24개, 건설 및 관련 엔지니어링서비스(이하, 건설서비스) 5개, 유통서비스 5개, 교육서비스 5개, 환경서비스 4개, 금융서비스 17개, 보건 관련 및 사회서비스(이하, 보건·사회서비스) 4개, 관광 및 여행 관련 서비스(이하, 관광서비스) 4개, 오락, 문화 및 스포츠서비스(이하, 오락·문화·스포츠 서비스) 5개, 운송서비스 35개, 기타 서비스 1개로 총 155개 업종(subsector)으로 세분화되어 있다. 그러나 분석대상국가 모두 동일한 155개 업종을 양허하는 것은 아니다. 기타 서비스나 보조서비스와 같은 업종은 155개 업종에서 한 가지 업종으로 분류되지만, 참여국 간 분류 기준이 상이하고 국가별로 하위 세부 업종을 다르게 두고 양허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동일한 업종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와 같이 일괄적인 분류 기준에 따라 서비스 교역 개방 정도를 평가하는 것에 한계가 따르긴 하지만 11개 참여국의 개방수준을 비교하기에 가장 최적의 방법으로 생각되어 이 기

46) 수평적 양허는 모든 서비스 분야에 적용되는 공통된 양허를 의미하며, 자연인의 이동(Mode 4)은 대부분 수평적 양허의 내용을 제외하고 미양허하는 경우가 많아 분석 공급 형태에서 제외하였다.

47) 법무부(2003), p. 207.

준을 바탕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TPP 참여국의 서비스 교역 개방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DDA 서비스 수정양허안의 내용을 검토하여 제한 없음(none)의 경우 1, 개방 안 함(unbound)의 경우 0, 부분적인 제한이 있는 경우 0.5를 부여하는 Hoekman(1995)의 방식을 따랐다.⁴⁸⁾ 그동안의 선행연구는 주로 WTO 출범 당시 제출한 양허표를 분석한 연구들이 대다수였다. 김준동·강인수(2000)는 Hoekman(1995)이 설정한 각 서비스 업종의 모드별 가중치를 사용하였으나,⁴⁹⁾ 개방도지수는 Hoekman 지수와 반대로 값을 부여해 각 업종별 교역제한 정도를 수량화하여 교역장벽지수를 산출했다. 이를 바탕으로 서비스 산업 개방효과를 CGE 모형으로 추정하여 실질 GDP 증가 및 노동고용량 증가를 밝혀냈다. 김준동 외(2012)는 GATS 양허표와 DDA 수정양허안을 비교하여 DDA 협상 지연요인을 분석하였으나 Hoekman 지수를 사용하지는 않았다.⁵⁰⁾ 아울러 OECD(2002)나 김종선·김기국·송종국(2004)과 같이 교육서비스 또는 과학기술 관련 분야 등 특정 분야에 대해 분석한 연구들이 많았으나 국별로 155개 업종 모두를 분석한 연구들은 많지 않았다.⁵¹⁾ 이에 본 연구에서는 DDA 수정양허안을 기준으로 155개 업종에 대한 TPP 참여국 및 한국의 양허수준을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제한 정도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한 방식을 이용해 각국의 서비스 업종별·공급형태별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어 국별 양허분석을 바탕으로 TPP 참여국 간 서비스 공급형태별 개방업종 수와 개방수준을 비교해보고자

48) Hoekman(1995).

49) 김준동, 강인수(2000).

50) 김준동 외(2012).

51) OECD(2002).

한다. 끝으로 Hoekman(1995)이 설정한 업종 및 모드별 가중치를 적용해 서비스 업종별 참여국의 개방수준 및 TPP 참여 시 한국이 유리한 업종과 불리한 업종에 대해 파악해보고자 한다.

1. TPP 참여국별 DDA 서비스 양허 현황

본 절에서는 TPP 참여국별 DDA 서비스 수정양허안 양허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총 155개 업종을 대상으로 참여국의 서비스 공급형태별 양허업종 수를 살펴보고, 기타 서비스를 제외한 154개 업종(11개 부문)의 업종별 · 공급형태별 양허수준을 분석할 예정이다.⁵²⁾ 서비스의 해외소비 (Mode 2)의 경우, 다른 공급형태에 비해 제한이 적어 사실상 개방된 것과 마찬가지로 때문에 국별 분석에서는 서비스 공급자 수, 거래액 자산총액, 회사형태, 외국인지분 등을 제한하는 국경간 공급(Mode 1)과 상업적 주재에 의한 서비스 공급(Mode 3)에 대해 중점적으로 분석할 예정이다.

가. 미국

미국의 DDA 서비스 수정양허안 양허수준은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커뮤니케이션, 건설, 유통, 환경, 금융, 관광 서비스 등 전 분야에 걸쳐 다양한 업종이 양허되었으나 교육, 보건 · 사회, 해상운송 서비

52) 기타 서비스를 제외한 11개 부문만 다루는 이유는 국가별로 기타 서비스를 개방하지 않거나 개방하더라도 개방업종이 나라별로 상이하기 때문이며, 제한 정도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한 154개 업종을 11개 부문별 단순평균을 구해 업종별 · 공급형태별 양허수준을 방사형 그래프를 통해 나타내었다.

표 3-1. 미국의 서비스 공급형태별 양허업종 수

서비스 공급형태	시장접근			내국민대우		
	Mode 1	Mode 2	Mode 3	Mode 1	Mode 2	Mode 3
완전개방	81	94	67	90	105	83
제한적 개방	20	17	44	11	6	28
미개방	54	44	44	54	44	44

주: 총 155개 업종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 WTO(2005)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스의 일부 업종은 양허가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상당히 세분화된 CPC 코드를 제시하고 있으며 투명성 제고를 위해 구체적인 설명을 기술하는 업종도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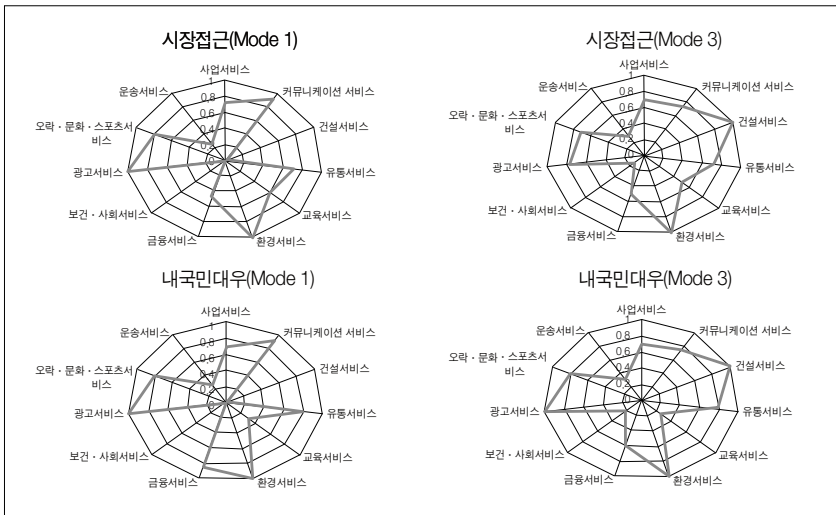
미국의 서비스 공급형태별 양허업종 수는 [표 3-1]에 제시되어 있으며, 총 155개 서비스 산업 업종 중 111개를 개방해 상당히 많은 수의 업종을 개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형태별 양허업종 수를 살펴보면, 시장접근과 내국민대우부문에서 Mode 2 = Mode 3 > Mode 1 순으로 양허를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Mode 2는 완전개방을 가장 많이 한 공급형태로 나타났으며 Mode 3은 가장 많은 제한을 두고 양허한 공급형태로 나타났다.

미국의 업종별 · 공급형태별 양허 현황은 [그림 3-1]과 같다. 먼저 전문직서비스 중 의학/치의학, 수의학, 조산/간호 서비스 등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사업서비스를 양허한 것으로 나타났다. 커뮤니케이션서비스는 Mode 3뿐만 아니라 Mode 1에서도 상당히 높은 양허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건설서비스의 경우 기술적 한계로 인해 Mode 1에 대해 양허하지 않았으나 Mode 2와 Mode 3에 대해 제한을 두지 않고 완전개방하였다. 고등 · 성인 · 기타 교육서비스의 경우, 장학금 제공 시 미국인에게 차별적 대우를 할 수 있다는 제한(NT 제한)을 두었다. 전반적으로 높은 미국의 양허수준에

도 불구하고 보건·사회와 해상운송 서비스는 전 업종 개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미국의 의료와 해상운송 분야가 민감한 업종임을 알 수 있다.

미국의 금융서비스는 금융서비스에 관한 양해(Understanding on Commitments in Financial Services)에 의거하여 양허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 규제를 명시하고 있다. 금융서비스에 관한 양해란 미국, EU 등 금융산업이 발달한 일부 선진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식에 따라 양허하는 것으로 양해에 규정된 금융서비스 목록에 대해 자유화 의무를 부담하되, 자유화를 유보하는 경우 협상 당시 현존하는 규제에 한정하여 상세한 제한내용을 양허표에 기재하는 것을 의미한다.⁵³⁾ 미국의 금융서비스는 내국민대우상 Mode 1의 양허수준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3-1. 미국의 업종별·공급형태별 양허 현황



주: 12개 부문(총 155개 업종) 중 기타 서비스를 제외한 11개 부문(총 154개 업종)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 WTO(2005)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53) 김준동 외(2000), p. 49.

나. 일본

일본의 DDA 서비스 수정양허안 분석결과, Mode 3과 관련하여 높은 양허수준을 보여주었다. 일본은 업종을 세분화하여 양허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투명성 제고를 위해 용어를 자세히 기술하기도 하였다.

일본은 총 155개 세부 업종 중 113개 업종을 양허하였다(표 3-2 참고). 서비스 공급형태별 양허업종 수는 시장접근과 내국민대우부문에서 모두 Mode 3 > Mode 2 > Mode 1 순으로 양허를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나 국경간 공급보다 상업적 주재에 의한 서비스 공급형태를 많이 양허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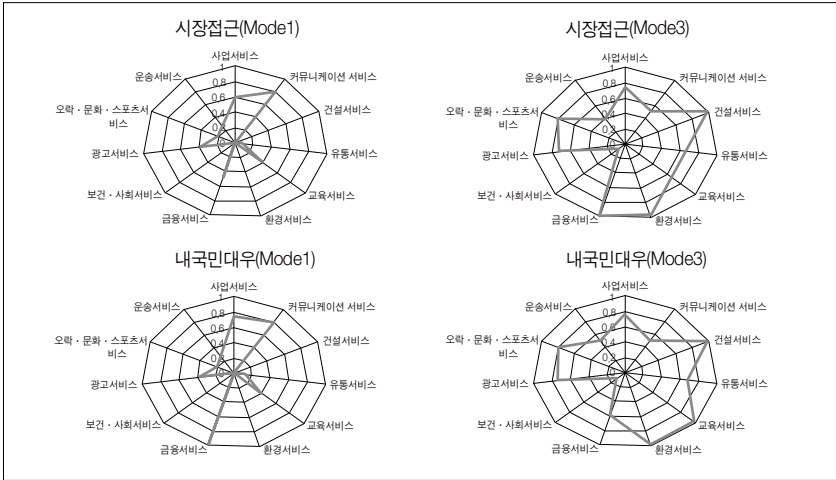
표 3-2. 일본의 서비스 공급형태별 양허업종 수

서비스 공급형태	시장접근			내국민대우		
	Mode 1	Mode 2	Mode 3	Mode 1	Mode 2	Mode 3
완전개방	50	81	83	77	108	82
제한적 개방	32	29	28	4	2	31
미개방	73	45	44	74	45	42

주: 총 155개 업종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 WTO(2005d)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그림 3-2]는 일본의 업종별 · 공급형태별 양허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우선 전문직서비스의 경우 서비스 공급을 위한 자격요건을 명확히 하고 있다. 특히 법률서비스는 서비스 제공자를 구체화하여 이에 따른 제한(MA 제한)을 두고 양허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서비스 중 부동산서비스의 경우, 일본 내 부동산서비스 공급을 위해 상업적 주재조건(MA 제한)을 두고 있다. 일본은 커뮤니케이션서비스와 관련해 일본전신전화(NTT)의 외국인자본 참여 비율을 제한(MA 제한)하였으며, NTT의 이사회와 감

그림 3-2. 일본의 업종별 · 공급형태별 양허 현황



주: 12개 부문(총 155개 업종) 중 기타 서비스를 제외한 11개 부문(총 154개 업종)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 WTO(2005d)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사는 일본인 국적요건을 두어 제한(NT 제한)하였다. 시청각서비스의 경우, 라디오/TV 서비스와 라디오/TV 전송서비스는 미양허하였다. 환경서비스는 업종을 매우 세분화하여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으나 양허내용은 추후 변동될 가능성이 있음을 명시하였다. 일본은 미국과 마찬가지로 금융서비스에 관한 양해에 의거해 금융서비스를 양허하고 있다. 이외에도 일본에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상업적 주재요건(MA 제한)을 명시하는 경우도 있으며, 외국계 은행지점의 예금은 예금보험제도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조건(NT 제한)을 두고 양허하였다. 보건·사회서비스는 병원서비스를 제외하고 모두 개방하지 않아 양허가 미진한 업종으로 분석되었다. 도서국가인 일본은 해상운송이 중요한 운송수단인 만큼 투명성 제고를 위해 해상운송의 업종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업종을 세

분화하여 양허하였다. 그러나 해상운송을 제외한 내륙수로, 항공, 철도, 도로운송의 여객운송은 양허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끝으로 건설서비스, 위탁중개서비스, 도매서비스, 소매서비스, 초·중·고등 교육서비스, 환경서비스, 보건·사회 서비스의 병원서비스, 관광서비스의 호텔/음식점 서비스, 오락·문화·스포츠 서비스의 도서관/박물관/기타 문화서비스 및 스포츠/레크리에이션 서비스의 Mode 1은 기술적 한계로 인해 양허하지 않았다.

다. 캐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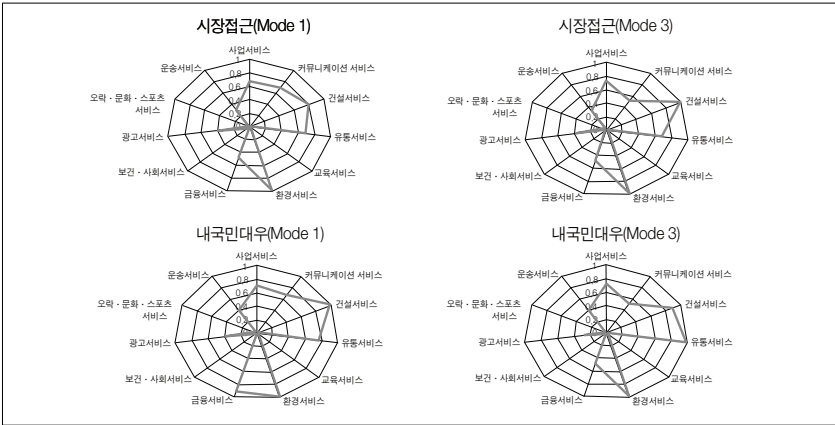
캐나다 DDA 수정양허안의 가장 큰 특징은 주(州)별로 상이한 규제를 두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도 일부 업종에서 주별로 다른 규제를 두었으나, 캐나다는 모든 업종에서 주별로 서로 다른 제한조치를 명시하고 있다. 캐나다의 수정양허안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세분화된 CPC 코드를 제시하고 있으며, 업종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있다. 캐나다는 시청각, 교육, 보건·사회, 오락·문화·스포츠 서비스 업종 전체를 양허하지 않았는데, 이는 [그림 3-3]을 통해 더욱 명확히 알 수 있다. 특히 상업적 주재요건 혹은 거주요건을 명시하는 경우가 많으며 주주지분 제한, 수요 심사요건

표 3-3. 캐나다의 서비스 공급형태별 양허업종 수

서비스 공급형태	시장접근			내국민대우		
	Mode 1	Mode 2	Mode 3	Mode 1	Mode 2	Mode 3
완전개방	57	65	56	83	91	66
제한적 개방	40	32	41	14	6	31
미개방	58	58	58	58	58	58

주: 총 155개 업종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 WTO(2005b)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그림 3-3. 캐나다의 업종별·공급형태별 양허 현황



주: 12개 부문(총 155개 업종) 중 기타 서비스를 제외한 11개 부문(총 154개 업종)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 WTO(2005b)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등 자세하고 다양한 규제를 취하고 있었다.

캐나다의 155개 세부 업종별 양허 현황을 분석한 결과는 [표 3-3]에 제시되어 있으며, 캐나다는 155개 업종 중 97개 업종을 양허하였다. 서비스 공급형태별 양허업종 수는 시장접근과 내국민대우 모두 동일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제한을 두고 개방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업종별로 살펴보면, 전문직서비스의 경우 일부 주에서 상업적 주재요건이나 자격 승인을 위한 영주요건을 두고 있다. 통신서비스 중 기본 통신의 경우 외국인투자 제한(MA 제한), 기간통신사업자 지분을 제한(MA 제한), 이사회 의사결정 요건(NT 제한) 등도 두고 있다. 시청각서비스는 전 분야 양허하지 않아 문화산업에 대한 보호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통서비스의 경우도 상업적 주재요건을 명확히 하고 있다. 캐나다도 금융서비스에 관한 양해에 의거하여 금융서비스를 양허하고 있으며, 상업적 주재요건(MA 제한), 지점 설립 제한(MA 제한), 주주지분 제한(MA

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일정 기간 캐나다 거주요건(NT 제한) 등의 추가적인 제한요건을 두고 있다. 운송서비스의 경우, 상업적 주재요건이 많았으며, 특정 운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공편의성 및 수요심사(Public convenience and need test)를 거쳐야 한다(MA 제한). 반면 건설서비스와 환경서비스는 거의 제한을 두지 않고 개방하여 높은 양허수준을 보인 업종으로 나타났다.

라. 호주 · 뉴질랜드

1) 호주

호주의 DDA 서비스 수정양허안 양허수준은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호주는 우편, 쿼리어, 시청각, 내륙수로운송, 우주운송 서비스를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을 개방하였으며, 상업적 주재요건을 명시하는 분야가 많았다. 업종을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기술하고 있으며 명확하게 양허안을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4]에서 보듯이 호주의 155개 세부 업종별 양허 현황을 분석한 결과, 호주는 총 155개 세부 업종 중 46개를 제외한 109개 업종을 양허하였다. 서비스 공급형태별 양허업종 수를 살펴보면, 시장접근의 경우 Mode 2 = Mode 3 > Mode 1 순으로, 내국민대우의 경우 Mode 2 > Mode 3 > Mode 1 순으로 양허를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나 주로 Mode 2와 Mode 3을 양허하는 양상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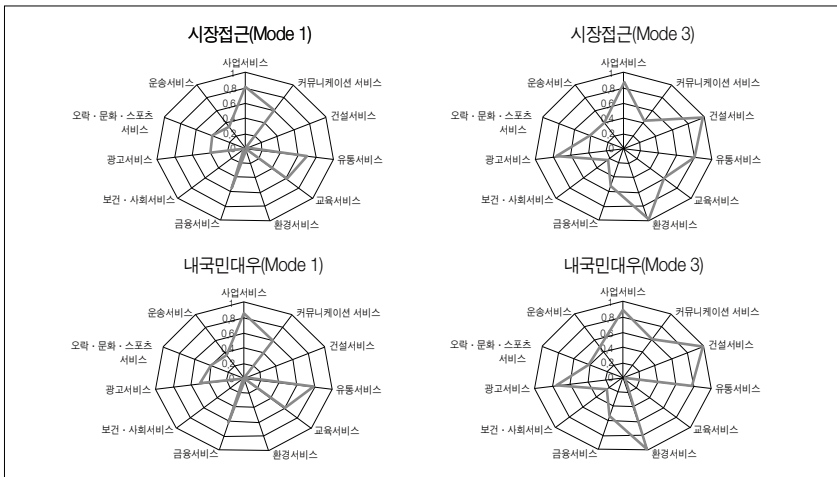
호주의 업종별 · 공급형태별 양허 현황은 [그림 3-4]와 같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업서비스 중 부동산서비스는 상업적 주재를 통해서만 서비스 공급을 하도록 허용(MA 제한)하고 있다. 통신서비스의 경우, 호

표 3-4. 호주의 서비스 공급형태별 양허업종 수

서비스 공급형태	시장접근			내국민대우		
	Mode 1	Mode 2	Mode 3	Mode 1	Mode 2	Mode 3
완전개방	69	89	76	77	108	85
제한적개방	23	20	33	16	1	21
미개방	63	46	46	62	46	49

주: 총 155개 업종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 WTO(2005a)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그림 3-4. 호주의 업종별 · 공급형태별 양허 현황



주: 12개 부문(총 155개 업종) 중 기타 서비스를 제외한 11개 부문(총 154개 업종)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 WTO(2005a)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주 최대의 국영통신회사인 Telstra의 외국인지분 제한을 두고 양허하기도 하였다. 호주는 건설, 환경, 관광 서비스의 Mode 1을 미양허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기술적 한계에 기인한다. 중등·고등 교육 서비스 경우, 시장접근부문에서 제한 없이 양허한 반면 내국민대우부문에 서 Mode 1과 Mode 2는 제한 없이 양허하였으나 Mode 3은 미양허하였

다. 호주의 금융서비스는 미국, 일본, 캐나다와 마찬가지로 금융서비스에 관한 양해에 의거하여 양허하고 있다. 보험서비스의 경우 상업적 주재와 관련해 보험 종류에 따라 주별로 상이한 규제(MA 제한)를 두고 있으며, 은행서비스의 경우 외국계 은행의 영업을 위한 조건(MA 제한)을 제시하고 있다. 오락·문화·스포츠 서비스의 경우 뉴스제공업과 스포츠/레크리에이션을 제외한 업종은 개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운송서비스의 경우 내륙수로운송, 우주운송, 일부 운송서비스도 개방하지 않아 양허가 미진한 업종으로 분석되었다.

2) 뉴질랜드

뉴질랜드의 DDA 서비스 수정양허안 분석결과, 뉴질랜드의 양허수준도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뉴질랜드는 사업, 유통, 교육, 운송 서비스의 일부 업종을 개방하지 않았으나, 대다수의 업종을 개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뉴질랜드 원주민인 마오리족에 대한 배려를 위한 제한사항도 눈에 띄었다.

서비스 공급형태별 양허업종 수를 [표 3-5]를 통해 살펴보면, 뉴질랜드는 총 155개 세부 업종 중 53개를 제외한 102개 업종을 양허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공급형태별 양허업종 수는 시장접근과 내국민대우 Mode 2 = Mode 3 > Mode 1 순으로 양허를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Mode 1에 비교적 많은 제한을 두고 양허한 반면 Mode 3은 거의 제한을 두지 않고 양허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질랜드는 낙농업이 발달한 국가인 만큼 사업서비스의 농업/임업/축산업 관련 서비스의 축산업 관련 규제(NT 제한)가 있었다. 통신서비스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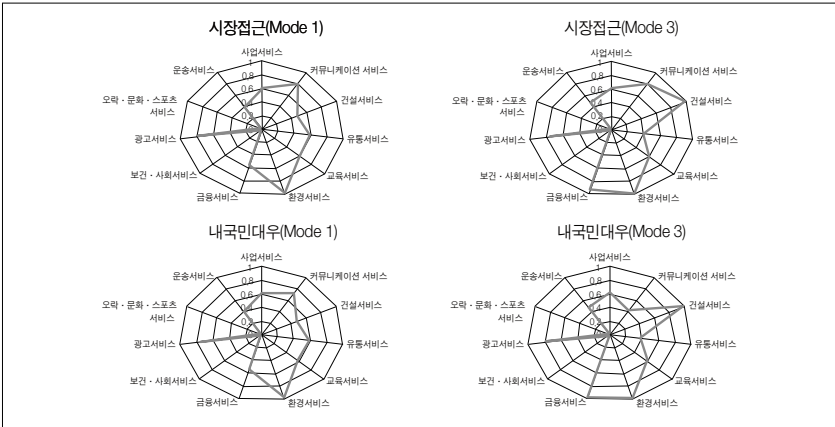
경우 Mode 3이 상대적으로 미진한 양허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뉴질랜드 최대 종합 통신사업자인 Telecom Corporation of New Zealand Limited의 외국인지분 제한조건(NT 제한)과 이사회외 자국민 일정 비율 조건(NT 제한)을 두었기 때문으로 분석되었다. 뉴질랜드의 시청각서비스 중, 시청각물의 제작, 배급, 전시, 방송의 경우 마오리족 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예산 편성 제한(NT 제한)을 두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탁중개 및 도매 서비스의 경우, 상업적 주제를 위해 서비스 공급자나 사업체 수를 제한하거나 일부 산업의 수출 마케팅 전략을 의무화하는 등 수출 관련 제한조치(MA 및 NT 제한)도 두고 있다. 초·중등·고등 교육서비스 및 환경서비스는 아무런 제한 없이 업종을 개방하여 높은 양허수준을 보인 업종으로 나타난 반면, 보건·사회 서비스와 오락·문화·스포츠 서비스는 전체 업종을 개방하지 않아 상대적으로 양허가 미진한 업종으로 나타났다. 뉴질랜드의 금융서비스 역시 여타 선진국들과 동일하게 금융서비스에 관한 양해를 따르고 있으며, 일부 보험서비스는 양해 이외에 추가적인 제한을 두는 경우도 있었다. 운송서비스의 경우, 항공운송보조서비스를 판매 및 마케팅, 컴퓨터예약시스템, 공항관리서비스 등으로 세분화하여 양허하기도 하였다.

표 3-5. 뉴질랜드의 서비스 공급형태별 양허업종 수

서비스 공급형태	시장접근			내국민대우		
	Mode 1	Mode 2	Mode 3	Mode 1	Mode 2	Mode 3
완전개방	72	84	93	69	84	76
제한적개방	27	18	9	30	18	26
미개방	56	53	53	56	53	53

주: 총 155개 업종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 WTO(2005g)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그림 3-5. 뉴질랜드의 업종별·공급형태별 양허 현황



주: 12개 부문(총 155개 업종) 중 기타 서비스를 제외한 11개 부문(총 154개 업종)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 WTO(2005g)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마. 중남미 참여국(멕시코 · 칠레 · 페루)

1) 멕시코

멕시코는 업종 전체를 미양허한 경우가 없어 많은 수의 업종을 개방한 것처럼 보이나, Mode 1과 Mode 2를 양허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전반적인 양허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멕시코는 업종을 상당히 세분화하여 개방하고 있으며, 외국인지분 참여에 제한을 두고 양허하는 경향이 뚜렷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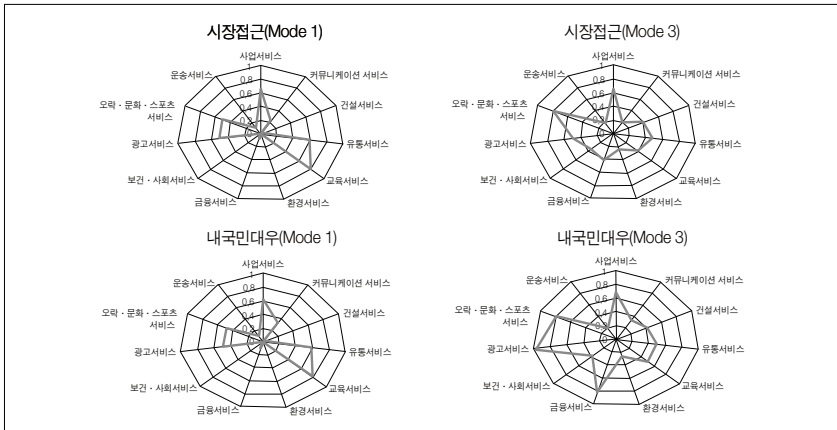
[표 3-6]은 멕시코의 서비스 공급형태별 양허업종 수를 나타내고 있다. [표 3-6]에 따르면 멕시코는 총 155개 업종 중 94개 업종을 양허하였다. 서비스 공급형태별로 살펴보면, 시장접근과 내국민대우 모두 Mode 3 > Mode 2 > Mode 1 순으로 나타났으며, Mode 3은 Mode 1, Mode 2와 비교해 많은 제한을 두고 양허하는 뚜렷한 양상을 보였다.

표 3-6. 멕시코의 서비스 공급형태별 양허업종 수

서비스 공급형태	시장접근			내국민대우		
	Mode 1	Mode 2	Mode 3	Mode 1	Mode 2	Mode 3
완전개방	44	74	33	50	76	59
제한적개방	15	0	61	9	0	35
미개방	96	81	61	96	79	61

주: 총 155개 업종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 WTO(2005f)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그림 3-6. 멕시코의 업종별 · 공급형태별 양허 현황



주: 12개 부문(총 155개 업종) 중 기타 서비스를 제외한 11개 부문(총 154개 업종)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 WTO(2005f)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그림 3-6]은 멕시코의 세부 업종별 · 공급형태별 양허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먼저 전문직서비스 중 법률, 세무, 수의학, 조산/간호 서비스 등은 미양허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서비스와 관련해 Mode 1과 Mode 3은 멕시코의 교통통신부(SCT)의 양허가 필요하다는 제한(MA 제한)을 두고 양허하였다. 소매서비스의 경우 상업적 주채를 위해 외국인투자자에 제한(MA 및 NT 제한)을 두고 있었다. 멕시코의 금융서비스 역시 다양한 규제를 두고 있었는데 외국인투자자의 자본금 비율(capital stock) 제한, 대

표 사무소 관련 제한, 당국 허가요건 등 상업적 주제를 위한 다양한 제한 조치(MA 제한)를 두고 있다. 건설, 환경, 보건·사회 서비스의 경우 Mode 1을 양허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운송서비스의 양허수준도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관광서비스 및 오락·문화·스포츠 서비스의 양허수준은 타 업종에 비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교육 서비스의 Mode 1과 관광서비스의 Mode 3에서 높은 수준의 양허가 이루어졌다. 이외에도 신발 및 가죽제품, 가전제품, 시계, 보석, 자전거 등의 수선서비스도 추가적으로 양허하였다.

2) 칠레

칠레의 DDA 서비스 수정양허안 분석결과, 칠레는 양허하지 않은 서비스 분야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편, 쿨리어, 시청각, 유통, 교육, 환경, 보건·사회, 오락·문화·스포츠 서비스는 전 분야 미양허하였으며, 사업, 금융, 운송 서비스의 경우는 일부만 양허하여 개방 정도가 여타 TPP 참여국에 비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칠레의 155개 세부 업종별 양허 현황을 분석한 결과는 [표 3-7]에 제시되어 있으며, 미개방된 업종이 모든 공급형태에서 100개를 넘어 전반적인 양허수준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공급형태별 양허업종 수를 살펴보면, 시장접근의 경우 Mode 3 > Mode 2 > Mode 1 순으로, 내국민대우의 경우 Mode 3 > Mode 2 = Mode 1 순으로 양허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규제를 두고 개방하기보다 제한 없이 완전히 개방하는 경향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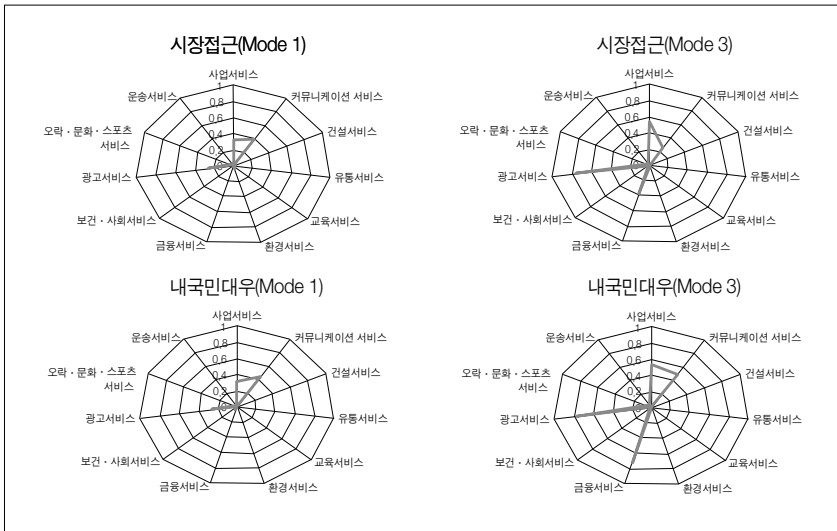
[그림 3-7]은 칠레의 업종별·공급형태별 양허 현황을 나타내고 있다. 칠레의 사업서비스 중 법률, 건축, 엔지니어링, 수의학 서비스는 제한 없

표 3-7. 칠레의 서비스 공급형태별 양허업종 수

서비스 공급형태	시장접근			내국민대우		
	Mode 1	Mode 2	Mode 3	Mode 1	Mode 2	Mode 3
완전개방	20	29	29	22	28	51
제한적개방	10	2	25	9	3	4
미개방	125	124	101	124	124	100

주: 총 155개 업종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 WTO(2005c)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그림 3-7. 칠레의 업종별 · 공급형태별 양허 현황



주: 12개 부문(총 155개 업종) 중 기타 서비스를 제외한 11개 부문(총 154개 업종)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 WTO(2005c)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이 개방하였으나 세무서비스는 양허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서비스의 경우, 상업적 주재를 위해 칠레 통신청(SUBTEL)으로부터 면허나 허가를 받아야하는 제한(MA 제한)을 두고 있는 반면, 국경간 서비스 공급을 위한 제한은 다소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금융서비스의 경우 상업적 주재를 위해 칠레 금융당국의 사전 허가나 등록에 관한 제한(MA

제한)도 두고 있다. 운송서비스는 일부 항공운송업종을 제외한 해상, 내륙 수로, 철도, 도로 운송 등 대다수의 운송서비스를 개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광서비스의 Mode 3은 가장 높은 양허수준을 보인 분야로 나타났으나, 업종 전반에 걸쳐 칠레의 양허수준은 낮은 편으로 분석되었다.

3) 페루

중남미 참여국 중 마지막 국가인 페루는 다양한 업종을 양허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페루는 우편, 쿠리어, 시청각, 건설, 보건·사회 서비스 전체 업종을 미양허하여 전반적인 양허수준이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다른 TPP 참여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표 3-8]에서 볼 수 있듯이, 페루는 총 155개 세부 업종 중 83개 업종을 미양허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내국민대우의 Mode 1은 155개 업종 중 125개 업종을 양허하지 않아 가장 낮은 양허수준을 보인 공급형태로 나타났다. 서비스 공급형태별 양허업종 수는 시장접근과 내국민대우 모두에서 Mode 3 > Mode 2 > Mode 1 순으로 나타났으며 Mode 3에 대한 규제가 비교적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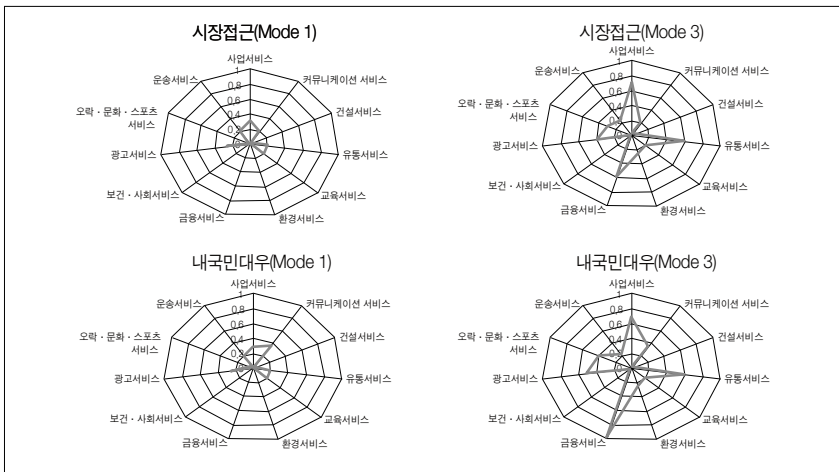
[그림 3-8]을 통해 페루의 업종별·공급형태별 양허 현황을 살펴보면, 사업서비스 중 의학/치의학, 수의학, 선박임대 서비스 등은 개방하지 않았으며 여타 중남미 참여국인 멕시코, 칠레와 마찬가지로 세무서비스를 개방하지 않았다. 특히 세무서비스의 경우 TPP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중남미 국가에서 양허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중남미 국가들의 세무서비스에 대한 보호가 강한 것으로 판단된다. 페루의 사업서비스 중 건축 및 엔

표 3-8. 페루의 서비스 공급형태별 양허업종 수

서비스 공급형태	시장접근			내국민대우		
	Mode 1	Mode 2	Mode 3	Mode 1	Mode 2	Mode 3
완전개방	24	43	47	29	43	70
제한적개방	9	4	25	1	3	2
미개방	122	108	83	125	109	83

주: 총 155개 업종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 WTO(2005h)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그림 3-8. 페루의 업종별 · 공급형태별 양허 현황



주: 12개 부문(총 155개 업종) 중 기타 서비스를 제외한 11개 부문(총 154개 업종)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 WTO(2005h)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지니어링 서비스의 상업적 주재 시 페루인과 외국인 간 등록비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제한조치(NT 제한)를 두었다. 통신서비스의 경우 음성 서비스 제공을 위해 외국계 회사는 반드시 페루에 주재해야 함(MA 제한)을 명시하였다. 교육서비스의 경우 요리 및 언어 교육 관련 서비스를, 환경서비스의 경우 대기보호서비스를 양허하고 나머지 업종은 모두 양허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페루의 금융서비스는 많은 제한을 두고 있었는

데, 해외소비를 양허하지 않은 경우 관련 당국이 해외소비의 양허가능성(MA 및 NT 제한)을 검토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다. 상업적 주재에 의한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점 설립을 제한(MA 제한)하거나 지점 설립을 위해 페루에 자본을 가져와야 하는 자본금 요건(MA 제한)도 두었다. 페루의 관광서비스와 관련해, 당국의 허가에 따라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으나 카지노 설립을 허용하였다. 흥미로운 사실은 도로, 항공 운송을 비롯한 상당수의 운송서비스를 양허하지 않은 가운데 우주운송을 개방했다는 점이나 운송서비스 전반적으로 양허수준은 미진한 매우 양상을 보였다.

바. ASEAN 참여국(싱가포르 · 말레이시아 · 베트남)

1) 싱가포르

싱가포르의 양허수준은 전반적으로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서비스에 다소 많은 규제를 부과하고 있었으며, 운송서비스는 해상운송을 제외하고 양허하지 않아 양허수준이 낮은 업종으로 나타났다.

싱가포르의 155개 세부 업종별 양허 현황을 분석한 결과는 [표 3-9]에 제시되어 있으며, 싱가포르는 155개 업종 중 85개 업종을 양허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공급형태별 양허업종 수의 경우, 시장접근과 내국민대우에서 Mode 2 > Mode 3 > Mode 1 순으로 나타나 대부분 제한 없이 완전개방한 경우가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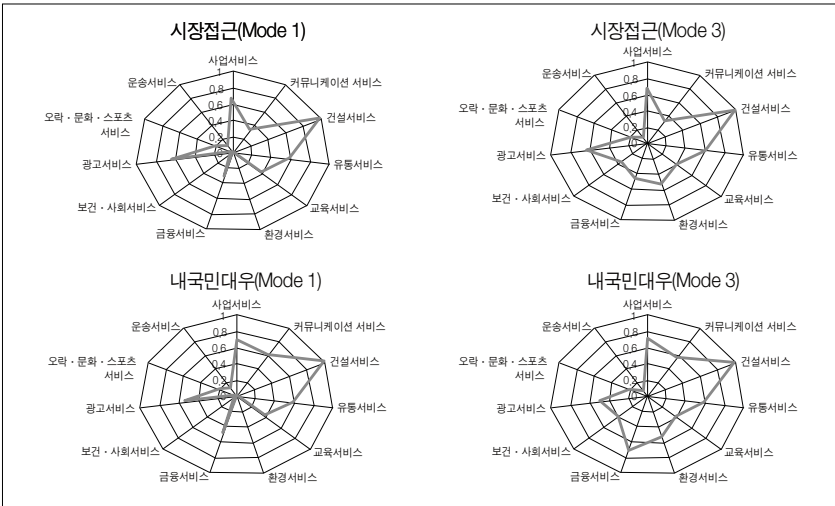
싱가포르의 업종별 · 공급형태별 양허 현황은 [그림 3-9]와 같으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사업서비스 중 회계 및 세무 서비스의 경우 싱가포르 거주요건(MA 제한)을 두고 양허하였으며, 건축서비스의 경우 등록, 거주, 자격요건 등 까다로운 조건(MA 제한)을 두고 양허

표 3-9. 싱가포르의 서비스 공급형태별 양허업종 수

서비스 공급형태	시장접근			내국민대우		
	Mode 1	Mode 2	Mode 3	Mode 1	Mode 2	Mode 3
완전개방	47	81	49	66	84	75
제한적개방	25	4	35	6	1	8
미개방	83	70	71	83	70	72

주: 총 155개 업종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 WTO(2005i)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그림 3-9. 싱가포르의 업종별 · 공급형태별 양허 현황



주: 12개 부문(총 155개 업종) 중 기타 서비스를 제외한 11개 부문(총 154개 업종)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 WTO(2005i)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하였다. 싱가포르의 통신서비스는 155개 업종 분류와 완전히 일치하지 않아 분석에 어려움이 있었다. 기본통신의 경우 외국인의 주식지분 제한(MA 제한)을 두고 있었으며, 부가통신의 경우 싱가포르 정보통신개발청(IDA)의 허가에 따라 부가통신서비스 제공(MA 제한)이 가능하다. 건축, 유통, 교육, 환경 서비스는 일부 서비스를 제외하고 제한 없이 양허하는

경향을 보였다. 싱가포르의 금융서비스는 다른 서비스 업종에 비해 많은 규제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보험서비스의 경우, 상업적 주체에 의한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해 외국인지분을 제한하고 외국인은 최대 주주가 불가능하다는 제한(MA 제한)을 두고 양허하였다. 은행서비스의 경우, 보험서비스에 비해 많은 규제를 두고 있었는데, 특히 예금과 관련된 규제가 많았다. 예금 관련 규제로는 허가를 받은 은행만이 예금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며(MA 제한), 영업가능한 외국계 은행지점 수를 1개로 제한(NT 제한)하였으며 외국계 은행의 비금융권(off-premise) ATM 및 출장소(subbranch) 설립 불가 제한(NT 제한) 등을 두고 있었다. 이외에도 보험서비스 전반적으로 상업적 주체요건(MA 제한), 지점, 자회사, 대표사무소 등 회사형태 제한(MA 제한), 특정 서비스 제공자만이 특정 업종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허용(MA 및 NT 제한)하여 양허하였다. 보건·사회 서비스의 Mode 1은 환경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양허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운송서비스의 경우, 일부 해상운송만 양허했을 뿐 내륙수로, 항공, 우주, 철도, 도로 운송서비스 모두 미양허하여 양허가 미진한 업종으로 분석되었다. 양허한 해상운송의 경우에도 화물운송과 보조서비스만 양허하였다. 추가적으로 세탁 및 염색 서비스, 미용서비스, 장례서비스도 개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2)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의 서비스 분야 양허수준은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말레이시아는 시청각, 교육, 보건·사회, 관광 서비스 부문별로 한두 개의 업종을 양허하는 경향이 컸으며, 유통과 환경 서비스는 전 분야에서 미양

허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 상이하기는 하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회사의 형태를 특정 형태로 한정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주로 합작투자형태를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말레이시아의 세부 업종별 양허 현황을 분석한 결과는 [표 3-10]에 제시되어 있으며, 말레이시아는 총 155개 업종 중 70개 업종을 양허하였다. 시장접근과 내국민대우에서 Mode 3 > Mode 2 > Mode 1 순으로 양허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Mode 3에 많은 제한을 두고 양허하는 양상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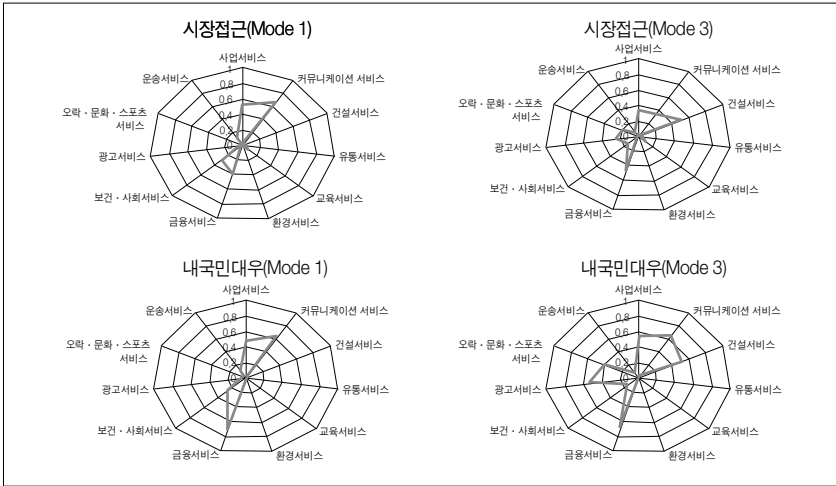
표 3-10. 말레이시아의 서비스 공급형태별 양허업종 수

서비스 공급형태	시장접근			내국민대우		
	Mode 1	Mode 2	Mode 3	Mode 1	Mode 2	Mode 3
완전개방	42	58	5	47	60	54
제한적개방	17	11	65	9	8	15
미개방	96	86	85	99	87	86

주: 총 155개 업종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 WTO(2006)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그림 3-10]은 말레이시아의 업종별·공급형태별 양허 현황을 나타내고 있다. 우선 전문직서비스 중 회계/감사, 세무, 건축, 엔지니어링, 통합 엔지니어링 서비스의 경우, 상업적 주체가 가능한 회사형태를 업종별로 제한(MA 제한)하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통신서비스를 말레이시아 방식으로 재분류하여 본 연구의 분석 분류체계와 일치하지 않아 비교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통신서비스의 개방수준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말레이시아 건설서비스의 경우, 상업적 주체를 위해 외국인지분을 제한(MA 제한)하였으며, 외국 건설회사의 경우 참여가능한 프로젝트도 제한(MA

그림 3-10. 말레이시아의 업종별·공급형태별 양허 현황



주: 12개 부문(총 155개 업종) 중 기타 서비스를 제외한 11개 부문(총 154개 업종)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 WTO(2006)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제한)하였다. 교육서비스에서는 기타 고등교육만 양허하였는데, 상업적 주체는 합작투자형태로만 가능하며 외국인지분에 대한 제한조치(MA 제한)도 두고 있었다. 말레이시아의 금융서비스도 분석 분류 기준과 완전히 일치하지 않고 상당히 세분화되어 있었다. 보건·사회 서비스의 경우 개인병원서비스만 개방하였으며 경제적 수요심사(Economic Needs Test)를 거쳐야 한다(MA 제한). 관광서비스의 경우 상업적 주체를 위해 회사의 형태 및 외국인지분을 제한(MA 제한)하였으며, 여행알선대행업체가 새로운 사무실을 개설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라이선스가 필요하다는 제한조치(MA 제한)를 두기도 하였다. 말레이시아는 운송서비스 중 해상운송만 개방하였는데, 여객·화물운송 및 일부 운송지원 서비스의 회사 형태와 지분에 제한(MA 제한)을 두고 개방하였다. 신기술과 관련된 기능훈련서비스(skills training services)를 추가적으로 양허하였다.

3) 베트남

베트남은 ASEAN 국가이기는 하나 양허수준은 TPP에 참여 중인 여타 ASEAN 및 중남미 국가들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베트남은 2007년 1월 WTO에 가입하였는데, 일부 업종의 경우 WTO 가입 이후 2~8년 동안 유효한 제한이 명시되어 있어, 본 연구의 분석시점인 2014년 7월을 기준으로 제한이 철폐된 경우 그 내용을 반영하였다. 베트남은 커뮤니케이션, 건설, 유통, 환경, 금융 서비스 등 다양한 업종을 양허하였으나 일부 보건·사회 서비스 및 운송서비스는 양허가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명성 제고를 위해 구체적인 설명을 기술하는 업종도 많았으며, 회사형태를 제한하거나 외국인지분을 제한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베트남의 서비스 공급형태별 양허업종 수를 [표 3-11]을 통해 살펴보면, 베트남은 총 155개 세부 업종 중 98개 업종을 양허하였다. 서비스 공급형태별 양허업종 수는 시장접근과 내국민대우 모두 Mode 2 > Mode 3 > Mode 1 순으로 양허를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Mode 3의 경우 제한을 두고 개방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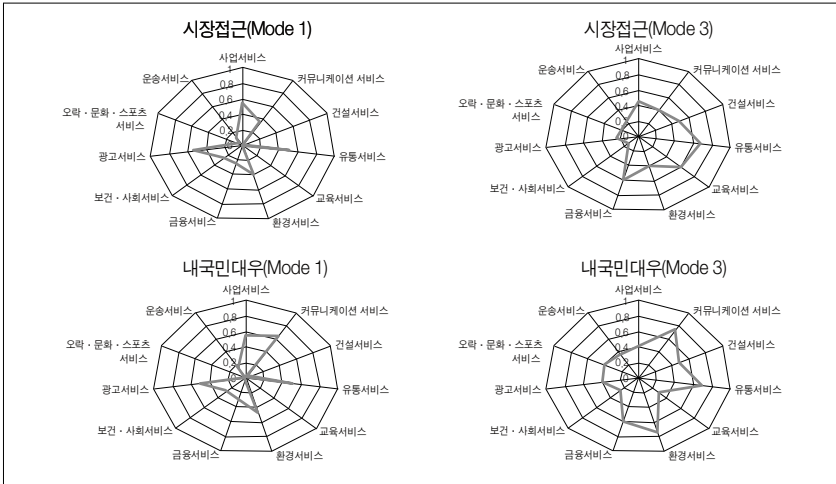
[그림 3-11]은 베트남의 세부 업종별·공급형태별 양허 현황을 보여주

표 3-11. 베트남의 서비스 공급형태별 양허업종 수

서비스 공급형태	시장접근			내국민대우		
	Mode 1	Mode 2	Mode 3	Mode 1	Mode 2	Mode 3
완전개방	33	96	29	52	97	59
제한적개방	29	2	66	11	1	33
미개방	93	57	60	92	57	63

주: 총 155개 업종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 WTO(2007)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그림 3-11. 베트남의 업종별·공급형태별 양허 현황



주: 12개 부문(총 155개 업종) 중 기타 서비스를 제외한 11개 부문(총 154개 업종)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 WTO(2007)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고 있다. 먼저 전문직서비스 중 법률서비스의 경우, 상업적 주체가 가능하나 형태를 제한(MA 제한)하였다. 일부 엔지니어링 및 도시계획 서비스는 국가안보문제로 특정 지역에 대한 접근을 제한(MA 및 NT 제한)하였다. 컴퓨터 및 관련 서비스의 경우, 지사장의 베트남 거주요건(NT 제한)이 있었다. 통신서비스의 경우, 설비기반에 따라 상이하기는 하나 상업적 주체를 위해 외국인지분을 제한(MA 제한)하였다. 건축서비스의 상업적 주체를 위해 지사장의 베트남 거주요건(NT 제한)을 두기도 하였다. 베트남은 위탁중개 및 도매 서비스에서 합작요건 및 외국인지분 제한조건(MA 제한)을 두었으나, 2009년 이후 제한을 철폐하였다. 그러나 소매서비스의 아울렛 설립을 위해서는 경제적 수요심사를 거쳐야 한다(MA 제한). 베트남의 교육서비스는 다소 많은 제한조치를 두고 있었는데, 양허하는 교육 과목을 한정하였으며 교육내용은 베트남 교육훈련부(Ministry of

Education and Training)의 승인(MA 및 NT 제한)을 받아야한다. 또한 외국인 투자한 학교에서 근무하고자 하는 외국인선생님은 사전경력이 필요하다는 제한(NT 제한)을 두고 양허하였다. 베트남은 금융서비스를 보험, 은행, 증권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해 제한을 명시하고 있었다. 보험 및 보험 관련 서비스의 경우 명시된 일부 거래만 허용(MA 제한)하였으며, 은행 및 기타 서비스의 상업적 주재를 허용하기는 하였으나 금융기관의 형태에 따라 설립조건을 제한(MA 제한)하였다. 보건·사회 서비스의 기타 보건서비스 경우, 병원형태별로 최소 투자자본요건을 부여(MA 제한)하였다. 호텔 및 레스토랑 서비스의 경우, WTO 가입 8년 동안 호텔 건설, 증축, 복원 등의 투자금에 비례하여 서비스를 제공(MA 제한)하여야 하나 2015년 2월 이후 철폐될 예정이다. 베트남의 여행알선대행업의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의 가이드는 베트남 국민이어야 하는 조건과 외국인의 베트남 여행(인바운드 서비스)만 제공한다는 제한(NT 제한)을 두고 양허하였다. 운송서비스의 경우 해상, 내륙수로, 철도, 도로 운송의 여객·화물 운송 상업적 주재를 위해 외국인지분을 제한(MA 제한)하여 양허하였다.

2. TPP 참여국의 서비스 공급형태별 양허 현황 분석

본 절에서는 국별 양허 분석을 바탕으로 서비스 공급형태별(모드별) 양허 현황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이를 위해 먼저 [표 3-12]와 [표 3-13]과 같이 시장접근 및 내국민대우의 서비스 공급형태별 개방업종 수를 국별로 정리하였다. 총 155개 업종 중 완전개방한 경우 및 제한을 두고 개방

한 경우 모두 업종을 개방한 것으로 간주하여 양허업종 수가 많은 순으로 정렬하였다. 시장접근부문의 서비스 공급형태별 양허에서 미국이 전체에서 가장 많은 업종을 개방한 나라로 나타났다. 이어 뉴질랜드(Mode 1), 일본(Mode 2), 호주(Mode 3)가 그 뒤를 이었다. 뉴질랜드는 Mode 1을 선호하는 반면 일본은 Mode 1보다 Mode 2나 Mode 3을 선호하는 경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에 비해 칠레, 페루, 말레이시아는 양허업종이 적은 나라로 나타났다. TPP의 ASEAN 참여국인 베트남은 여타 ASEAN 참여국보다 많은 업종을 개방하였는데, Mode 2와 Mode 3에서는 싱가포르

표 3-12. 시장접근부문 서비스 공급형태별 양허업종 수(국별 정렬)

	Mode 1				Mode 2				Mode 3		
	완전 개방	제한적 개방	미개방		완전 개방	제한적 개방	미개방		완전 개방	제한적 개방	미개방
미국	81	20	54	미국	94	17	44	미국	67	44	44
뉴질랜드	72	27	56	일본	81	29	45	일본	83	28	44
캐나다	57	40	58	호주	89	20	46	호주	76	33	46
호주	69	23	63	뉴질랜드	84	18	53	뉴질랜드	93	9	53
일본	50	32	73	베트남	96	2	57	한국	56	45	54
한국	48	24	83	캐나다	65	32	58	캐나다	56	41	58
싱가포르	47	25	83	한국	82	4	69	베트남	29	66	60
베트남	33	29	93	싱가포르	81	4	70	멕시코	33	61	61
멕시코	44	15	96	멕시코	74	0	81	싱가포르	49	35	71
말레이시아	42	17	96	말레이시아	58	11	86	페루	47	25	83
페루	24	9	122	페루	43	4	108	말레이시아	5	65	85
칠레	20	10	125	칠레	29	2	124	칠레	29	25	101

주: 복수국간서비스협정(TISA)⁵⁴ 참여국을 음영으로 표시하였다.
 자료: WTO(2005a~2005j, 2006, 2007)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54) 복수국간서비스협정(TiSA: Trade in Services Agreement)은 교착상태에 빠진 DDA 협상이 장기화됨에 따라 서비스 교역 자유화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복수국간협정으로, 한국을 포함해 TPP 참여국 중 8개국(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칠레, 페루) 등 총 23개국(2014년 6월 기준)이 참여하고 있다.

르보다 많은 업종을 개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뿐만 아니라 베트남은 중남미 참여국에 비해 모든 공급형태에서 많은 업종을 개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국의 경우, Mode 1과 Mode 3은 TPP 참여국에 비해 개방업종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Mode 2의 개방업종 수는 약간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특히 Mode 3의 개방업종 수는 캐나다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가장 많은 업종을 개방한 공급형태로 나타났다.

내국민대우부문의 공급형태별 양허업종 수도 시장접근과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시장접근의 모든 공급형태에서 가장 많은 수의 업종을 개방한 미국은 내국민대우에서는 Mode 1과 Mode 2에서만 가장 많은 업종을 개방한 나라로 나타났다. Mode 3은 일본이 가장 많은 업종을 개방한 것으로 나타나, 일본은 시장접근뿐만 아니라 내국민대우에서도 Mode 3을 선

표 3-13. 내국민대우부문 서비스 공급형태별 양허업종 수(국별 정렬)

	Mode 1				Mode 2				Mode 3		
	완전 개방	제한적 개방	미개방		완전 개방	제한적 개방	미개방		완전 개방	제한적 개방	미개방
미국	90	11	54	미국	105	6	44	일본	82	31	42
뉴질랜드	69	30	56	일본	108	2	45	미국	83	28	44
캐나다	83	14	58	호주	108	1	46	호주	85	21	49
호주	77	16	62	뉴질랜드	84	18	53	뉴질랜드	76	26	53
일본	77	4	74	베트남	97	1	57	캐나다	66	31	58
한국	68	10	77	캐나다	91	6	58	한국	91	5	59
싱가포르	66	6	83	한국	89	2	64	멕시코	59	35	61
베트남	52	11	92	싱가포르	84	1	70	베트남	59	33	63
멕시코	50	9	96	멕시코	76	0	79	싱가포르	75	8	72
말레이시아	47	9	99	말레이시아	60	8	87	페루	70	2	83
칠레	22	9	124	페루	43	3	109	말레이시아	54	15	86
페루	29	1	125	칠레	28	3	124	칠레	51	4	100

주: 복수국간서비스협정(TiSA) 참여국을 음영으로 표시하였다.
 자료: WTO(2005a~2005j, 2006, 2007)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어 뉴질랜드(Mode 1), 일본(Mode 2), 미국(Mode 3) 순으로 개방업종 수가 많은 나라로 나타났다. 시장접근과 마찬가지로 멕시코, 칠레, 페루는 내국민대우의 양허업종 수에서도 많은 업종을 개방하지 않아 하위권에 머물렀다. 베트남 역시 시장접근과 마찬가지로 양허한 업종의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 내국민대우부문 공급형태별 양허업종 수는 시장접근부문과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Mode 1과 Mode 3에서 양허한 업종의 수가 많았으며, Mode 2는 TPP 참여국에 비해 다소 적은 수의 업종을 양허한 것으로 나타나, 한국은 상업적 주재에 의한 서비스 공급을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단순히 양허업종 수로 서비스 개방수준을 판단하고 평가하기는 무리가 따른다. 그렇기 때문에 개방업종 수가 아닌 제한 정도에 따라 0/0.5/1의 가중치를 부여한 Hoekman(1995)의 방법을 이용하여 TPP 참여국의 시장접근 및 내국민대우부문의 양허수준을 비교해보고자 한다. 본 장에서는 Mode 4를 제외한 세 가지 공급형태만 다루기 때문에 155개 업종의 가능한 총양허 수는 시장접근과 내국민대우 각각 465개 업종으로, 총 465개의 양허 수에서 0/0.5/1로 가중치를 둔 양허표상의 서비스 공급형태별 양허 수가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했다. [표 3-14]는 이러한 방법으로 산출한 TPP 참여국의 서비스 개방 정도를 보여주고 있다. TPP 참여국 전체 평균이 시장접근의 경우 45.14%, 내국민대우의 경우 49.02%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내국민대우의 개방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미국의 개방도는 시장접근 60.75%, 내국민대우 64.62%로 나타나 미국의 자유화 수준이 상당히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미국은 전체 양허에서 완전 개방한 양허의 비중을 나타내는 완전자유화 비율에서도 높은 수준을 나

표 3-14. 시장접근 및 내국민대우부문 서비스 개방 정도

(단위: %)

	시장접근(MA)		내국민대우(NT)	
	전체	완전자유화 비율	전체	완전자유화 비율
미국	60,75	52,04	64,62	59,78
일본	55,59	46,02	61,4	57,42
캐나다	50,43	38,28	57,1	51,61
호주	58,49	50,32	62,15	58,06
뉴질랜드	59,35	53,55	57,2	49,25
멕시코	40,65	32,47	44,52	39,78
칠레	20,75	16,77	23,44	21,72
페루	28,6	24,52	31,18	30,54
싱가포르	44,95	38,06	50,00	48,39
말레이시아	32,58	22,58	38,06	34,62
베트남	44,41	33,98	49,57	44,73
한국	47,85	40,00	55,16	53,33

주: 완전자유화 비율은 총 465개의 양허에서 제한 없이 양허(가중치 1 부여)한 비중을 의미한다.
 자료: WTO(2005a~2005j, 2006, 2007)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타내고 있는데, 이는 시장접근에서 52.04%, 내국민대우에서 59.78%의 규제가 없음을 의미한다. 반면 페루와 칠레의 경우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개방도를 보여 자유화 수준이 TPP 참여국 중 낮은 국가로 나타났다. 뉴질랜드는 TPP 국가 중 내국민대우부문에 비해 시장접근부문의 개방도가 유일하게 높은 국가로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는 여타 TPP 참여국들과 마찬가지로 내국민대우의 개방도가 시장접근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국은 시장접근 및 내국민대우부문 모두에서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보다 개방수준이 낮았으나 ASEAN 참여국 및 중남미 참여국들보다는 개방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완전자유화 비율에서도 한국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시장접근 완전자유화 비율은 40%로 뉴질랜드, 미국, 호주, 일본에 이어 높은 수준이었으며, 내

국민대우의 완전자율화 비율은 53.33%로 미국, 호주, 일본에 이어 높은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이어 시장접근 및 내국민대우부문의 공급형태별 개방수준을 살펴보고자 한다. [표 3-15]와 [표 3-16]은 전술한 방법과 동일하게 산출해낸 시장접근과 내국민대우의 공급형태별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참여국의 서비스 공급형태별 개방수준은 개방업종 수와 완벽히 일치하지는 않았으나 대부분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국 전반에 걸쳐 규제가 비교적 적은 Mode 2의 개방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Mode 2의 경우,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직접 서비스 공급국가에 입국하여 서비스를 공급받는 형태로 사실상 서비스 개방에 미치는 영향이 비교적 적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에서 높은 개방수준을 보인 것으로 판단된다. [표 3-12]와 [표 3-15]를 통해 시장접근부문에서 미국, 호주, 뉴질랜드는 공급형태별 개방업종 수 및 개방수준 모두 상위권 국가임을 알 수 있다. 특히 미국은 가장 많은 수의 업종을 개방하였으며 Mode 3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개방수준을 보여주었다. 호주와 뉴질랜드의 경우, 양허업종 수에서는 호주가 다소 많은 업종을 개방하였으나, 양허수준에서는 뉴질랜드가 호주보다 약간 높은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일본은 Mode 1에서 다소 적은 양허업종 수와 낮은 양허수준을 보였으나, Mode 2와 Mode 3에서는 많은 수의 업종을 개방하였고 개방수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싱가포르와 멕시코는 TPP 참여국 중 중간수준의 개방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베트남은 업종 수에서는 많은 업종을 양허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오히려 양허수준은 다소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칠레, 페루, 말레이시아는 개방업종 수뿐만 아니라 개방수준도 하위권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시장접근부

표 3-15. 시장접근부문 서비스 공급형태별 개방 정도(국별 정렬)

(단위: %)

	Mode 1		Mode 2		Mode 3
미국	58.71	미국	66.13	뉴질랜드	62.9
뉴질랜드	55.16	호주	63.87	일본	62.58
호주	51.94	베트남	62.58	호주	59.68
캐나다	49.68	일본	61.61	미국	57.42
일본	42.58	뉴질랜드	60.0	한국	50.65
한국	38.71	한국	54.19	캐나다	49.35
싱가포르	38.39	싱가포르	53.55	싱가포르	42.9
멕시코	33.23	캐나다	52.26	멕시코	40.97
말레이시아	32.58	멕시코	47.74	베트남	40.0
베트남	30.65	말레이시아	40.97	페루	38.39
페루	18.39	페루	29.03	칠레	26.77
칠레	16.13	칠레	19.35	말레이시아	24.19

주: 복수국간서비스협정(TISA) 참여국을 음영으로 표시하였다.
 자료: WTO(2005a~2005j, 2006, 2007)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문 공급형태의 대부분에서 높은 개방수준을 보였으며 세 가지 공급형태 중 Mode 2의 개방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PP 참여국과 비교했을 때, Mode 3에서 여타 참여국에 비해 개방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내국민대우의 공급형태별 개방업종 수 및 개방수준을 [표 3-13]과 [표 3-16]을 통해 짚어보고자 한다. 시장접근의 경우 거의 모든 공급형태에서 미국의 개방도가 가장 높았으나, 내국민대우의 경우 일본이 오히려 미국보다 개방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Mode 1에서만 개방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본은 Mode 2 및 Mode 3에서 높은 개방수준을 보여주었다. 호주와 뉴질랜드는 시장접근부문과 마찬가지로 내국민대우부문에서도 공급형태별 개방업종 수와 개방수준 모두 상위권 국가로 나타났다. 칠레, 페루, 말레이시아도 시장접근부문과 비슷한 양상

표 3-16. 내국민대우부문 서비스 공급형태별 개방 정도(국별 정렬)

(단위: %)

	Mode 1		Mode 2		Mode 3
미국	61.61	일본	70.32	일본	62.9
캐나다	58.06	호주	70.0	미국	62.58
호주	54.84	미국	69.68	호주	61.61
뉴질랜드	54.19	베트남	62.9	한국	60.32
일본	50.97	캐나다	60.65	뉴질랜드	57.42
한국	47.1	뉴질랜드	60.0	캐나다	52.58
싱가포르	44.52	한국	58.06	싱가포르	50.97
베트남	37.1	싱가포르	54.52	멕시코	49.35
멕시코	35.16	멕시코	49.03	베트남	48.71
말레이시아	33.23	말레이시아	41.29	페루	45.81
페루	19.03	페루	28.71	말레이시아	39.68
칠레	17.1	칠레	19.03	칠레	34.19

주: 복수국간서비스협정(TISA) 참여국을 음영으로 표시하였다.
 자료: WTO(2005a~2005j, 2006, 2007)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을 보여 양허수준이 낮은 국가로 분석되었다. 특히 멕시코, 칠레, 페루,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의 경우, 양허업종 수의 순위와 개방수준의 순위가 바뀌지 않고 대부분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 내국민대우부문의 경우 개방업종 수가 적을수록 개방수준도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국의 경우 대부분 TPP 참여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시장접근에 비해 내국민대우의 개방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내국민대우부문의 경우 세 가지 공급형태 중 Mode 2보다 Mode 3의 개방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TPP 참여국과 비교해보아도 현저히 높은 수준이다.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뉴질랜드를 제외한 참여국들은 시장접근에 비해 내국민대우에 더 개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뉴질랜드는 주로 국경간 서비스 공급을 통한 개방을 선호하는 반면 일본과 한국은 상업적 주재에 의한 서비스 공급을 통한 개방을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상업적 주

재에 의한 서비스 공급은 현지주재를 통한 서비스 공급형태이므로 서비스 개방수준에 가장 실제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급형태이다. 반면, 국경간 서비스 공급은 서비스 공급자가 자국에 거주하면서 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통해 타국의 서비스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공급하는 형태로 정보통신의 발달에 따라 그 중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공급형태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뉴질랜드가 국경간 서비스 공급을 통한 개방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도 있어보인다.

3. TPP 참여국의 서비스 업종별 양허 현황 분석

본 절에서는 TPP 참여국의 서비스 업종별 양허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절의 공급형태별 분석과 동일하게 제한 정도에 따라 0/0.5/1로 가중치를 둔 국별 양허분석을 바탕으로 하였으나, 분석업종은 기타 서비스를 제외한 11개 부문(총 154개 업종)으로 한정하였다. 아울러 Hoekman(1995)이 설정한 업종 및 모드별 가중치를 적용해 업종별 개방 정도를 산출해내었다(업종 및 모드별 가중치는 부표 1 참고). 각 업종별로 부여된 모드별 가중치를 적용한 후 업종별 가중치를 적용하였으며, 해당 업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구해 서비스 업종별 개방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를 산출하였다. Hoekman(1995)이 설정한 부문별 가중치가 임의적이라는 단점이 제기되기도 하지만, 전체 산업에서 각 업종이 차지하는 비중이 다르기 때문에 업종별 분석에서는 가중치를 두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Hoekman의 가중치를 적용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Hoekman의 가중치가 현재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점이 한계로 지적되고 있으나, 앞서 분석한 155개의 모든 업종에 가중치를 부여한 적절한 연구가 없다고 판단되어 Hoekman의 가중치를 적용하였다.

가중치를 부여해 도출한 업종별 시장접근 및 내국민대우의 개방도에 대한 분석결과는 [표 3-17]과 [표 3-18]에 제시되어 있다. 분석결과 TPP 참여국 전반에 걸쳐 커뮤니케이션, 건설, 유통, 관광 서비스 등이 개방도가 높은 업종으로 나타났으며, 교육, 보건·사회, 오락·문화·스포츠, 운송 서비스 등은 개방도가 낮은 업종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설서비스의 경우, 대다수의 나라에서 완전개방에 가까운 개방을 보인 업종으로 분석되었다.

우선 시장접근부문을 살펴보면, 미국, 일본, 뉴질랜드의 경우 전 업종에 걸쳐 개방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캐나다는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방이 미흡한 업종이 많았다. 중남미 참여국인 칠레 및 페루의 경우 모드별 개방수준과 마찬가지로 업종별 개방수준도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특히 칠레는 개방도가 0인 업종이 11개 부문 중 6개를 차지해 업종별 개방도가 상당히 낮은 국가로 분석되었다. ASEAN 참여국 중에서는 싱가포르와 베트남의 업종별 개방 정도는 높은 편이나 말레이시아의 개방 정도는 다소 낮은 편으로 분석되었다. 업종별로는 참여국 전반에 걸쳐 건설, 유통, 관광 서비스를 중심으로 개방수준이 높았으나 보건·사회 서비스는 개방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타 TPP 참여국들과 마찬가지로 한국도 유통 및 관광 서비스의 개방수준이 높은 업종으로 나타났으나, 보건·사회 서비스는 개방수준이 낮은 업종으로 분석되었다.

표 3-17. 시장접근부문 서비스 업종별 개방 정도

(단위: %)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칠레	페루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트남	한국
사업	73.75	65.42	63.17	84.53	56.69	60.78	42.51	51.45	64.75	34.33	46.91	72.5
커뮤니케이션	84.63	66.45	77.93	71.57	95.58	23.26	44.56	24.31	35.98	66.55	46.9	69.55
건설	100	100	100	100	100	42.86	0	0	100	50	50	50
유통	82.29	75.84	68.8	97.83	62.65	62.17	0	82.76	60.9	0	78.37	64.59
교육	55.95	62.86	0	45.24	80.95	51.43	0	0	19.05	21.43	60	33.33
환경	100	90.63	100	90.63	100	14.06	0	0	12.5	0	42.97	78.13
금융	46.78	78.87	46.78	50	81.07	28.97	23.96	37.1	47.4	43.47	51.69	29.16
보건·사회	18.91	18.91	0	48.94	0	61.23	0	0	56.5	18.91	18.91	0
관광	94.92	100	58.03	100	100	55.57	100	58.03	96.07	54.1	54.1	100
오락·문화·스포츠	90.1	80.2	0	42.57	0	80.2	0	24.75	17.82	34.65	34.65	19.8
운송	36.36	34.85	40.68	44.38	54.83	24.66	3.24	18.59	11.25	5.63	26.32	29.6

주: 1. 개방 정도가 60% 이상인 업종을 음영으로 표시하였다.

2. 각국별 개방 정도가 가장 높은 업종과 가장 낮은 업종을 진한 글씨로 표시하였다.

자료: WTO(2005a~2005j, 2006, 2007)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내국민대우부문의 개방수준은 시장접근에 비해 업종 전반에 걸쳐 다소 높은 경향을 보였다. 미국, 일본, 뉴질랜드의 경우, 시장접근과 동일하게 개방수준이 높은 업종이 많은 나라로 분석되었다. 캐나다와 호주의 내국민대우부문 업종별 개방도는 시장접근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칠레와 페루의 업종별 개방수준은 시장접근과 마찬가지로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관광서비스의 개방수준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싱가포르와 베트남도 시장접근보다 다소 높은 업종별 개방수준을 보였으며 말레이시아도 시장접근에 비해 내국민대우의 업종별 개방수준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참여국 대부분에서 커뮤니케이션, 유통, 관광 서비스에 대한 개방수준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보건·사회 서비스에 대한 개방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 내국민대우부문에서 일

표 3-18. 내국민대우부문 서비스 업종별 개방 정도

(단위: %)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칠레	페루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트남	한국
사업	78,09	71,36	65,87	85,33	55,69	62,77	42,81	49,3	69,14	45,91	47,7	78,49
커뮤니케이션	84,66	66,45	77,93	85,07	68,58	38,77	70,22	48,61	69,69	91,95	93,11	93,85
건설	100	100	75	100	100	42,86	0	0	100	50	50	100
유통	100	75,84	93,89	100	62,65	62,17	0	82,76	60,9	0	87,92	100
교육	30,95	92,38	0	14,76	80,95	51,43	0	0	19,05	0	39,76	20,24
환경	100	90,63	100	90,63	100	14,06	0	0	12,5	0	85,94	85,94
금융	66,56	67,81	61,02	56,46	84,24	57,22	47,47	64,9	66,82	66,34	52,07	56,96
보건·사회	32,15	18,91	0	48,94	0	61,23	0	0	56,5	18,91	34,04	0
관광	100	100	54,1	100	100	100	100	97,38	92,13	97,38	93,44	100
오락·문화·스포츠	100	80,2	0	42,57	0	80,2	0	29,7	17,82	49,5	49,5	9,9
운송	39,09	40,74	56,93	48,92	54,83	24,66	3,24	18,2	11,25	9,2	34,7	31,88

주: 1. 개방 정도가 60% 이상인 업종을 음영으로 표시하였다.

2. 각국별 개방 정도가 가장 높은 업종과 가장 낮은 업종을 진한 글씨로 표시하였다.

자료: WTO(2005a~2005j, 2006, 2007)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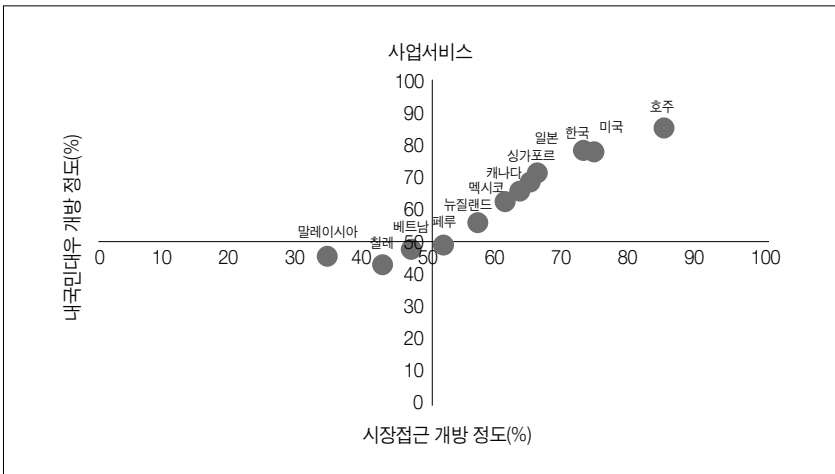
부 업종을 제외하고 높은 개방수준을 보여주었다. 커뮤니케이션, 건설, 유통, 관광 서비스의 경우 완전개방에 가까운 개방을 보인 업종으로 나타났으나 보건·사회 및 오락·문화·스포츠 서비스의 경우 개방수준이 낮은 업종으로 나타났다. 특히 오락·문화·스포츠 서비스는 페루, 말레이시아, 베트남보다도 개방도가 낮은 업종으로 나타났다.

주요 서비스 업종 및 특징적인 양상을 보인 업종에 대해 TPP 참여국과 한국의 업종별 개방도를 비교분석해 보고자 한다(그림 3-12~그림 3-18 참고). 오른쪽 위로 갈수록 개방 정도가 높음, 왼쪽 아래로 갈수록 개방 정도가 낮음을 의미한다. 아울러 한국이 최근 체결한 가장 높은 수준의 FTA인 한·미 FTA의 유보 목록을 DDA의 제한사항과 비교하여 DDA 보다 개선되었는지 여부와 TPP 참여 시 유리하게 작용할 것인가 대해 살

펴보고자 한다.

우선 사업서비스의 TPP 국별 개방 정도는 [그림 3-12]에 제시되어 있다. 사업서비스는 서비스 부문에서 중상의 개방수준을 보인 업종으로 분석되었다. TPP 참여국 중 사업서비스에 대한 개방도가 가장 높은 나라는 호주로 나타났다. 이어 미국, 일본, 싱가포르 등과 같은 고소득국가를 중심으로 개방도가 큰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말레이시아, 칠레, 베트남, 페루 등과 같이 저소득국가의 개방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이 사업서비스의 경우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개방 정도도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고소득국가일수록 집약적 지식기반서비스인 사업서비스에 대한 인력 및 기술이 축적되어 이에 대한 개방수준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의 경우, 미국과 호주보다 사업서비스 분야의 개방수준이 낮지만 나머지 TPP 참여국에 비해 개방수준이 높은 편으로 분석되

그림 3-12. 사업서비스의 TPP 참여국별 개방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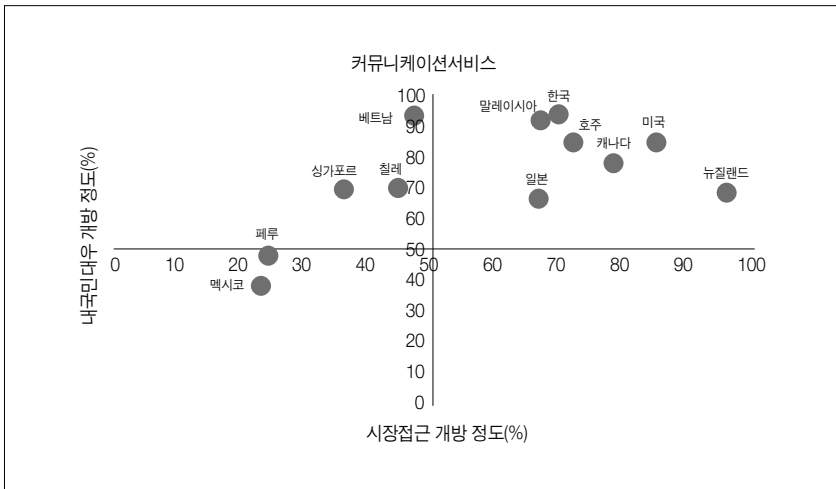


자료: WTO(2005a~2005j, 2006, 2007)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었다. 한국은 한·미 FTA에서 법률 및 회계 등 일부 전문직 업종에서 단계적 개방을 약속하여 DDA 수정양허안보다 개방수준이 개선되었기 때문에 TPP 참여 시 개방압력이 적을 업종으로 판단된다.

커뮤니케이션서비스의 경우, 사업서비스와 같이 뚜렷한 특징을 보이지는 않았으나, 고소득국가를 중심으로 개방에 적극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그림 3-13 참고). 흥미로운 사실은 서비스 개방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은 말레이시아가 커뮤니케이션서비스에서는 높은 개방수준을 보였다는 점이다. 비록 말레이시아의 통신서비스 업종 분류가 자의적이긴 하나, 통신서비스 분야의 높은 개방수준이 커뮤니케이션서비스 개방수준을 끌어올린 것으로 판단된다. 더불어 말레이시아는 1950년부터 경제개발계획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0년부터는 경제변혁프로그램(ETP: Economic Transformation Programme)을 통해 2020년까지 고소득국가로의 진입을 목표로 대규모

그림 3-13. 커뮤니케이션서비스의 TPP 참여국별 개방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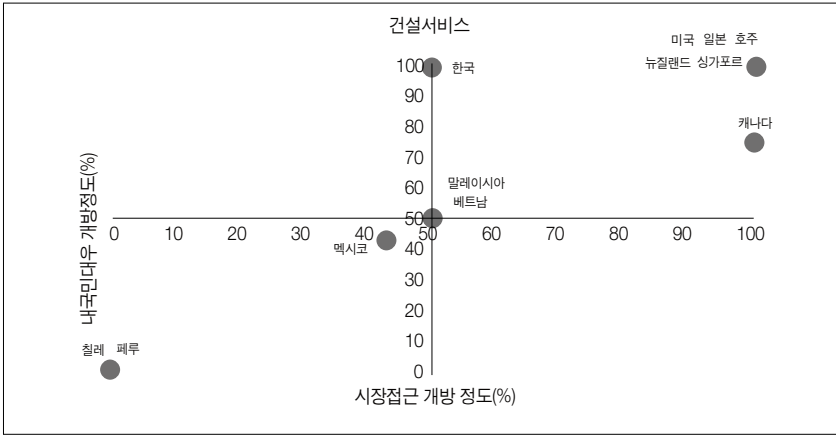


자료: WTO(2005a~2005j, 2006, 2007)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자원을 투입하는 등 최근 개방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반면 멕시코와 페루는 커뮤니케이션서비스의 개방에 보수적인 입장을 취한 나라로 분석되었다. 한국의 경우 시장접근에 비해 내국민대우의 개방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서비스의 경우, 한국은 외국인의 직·간접 투자에 대해 지분 제한을 두고 있었는데 기간통신서비스의 직접투자에 대한 외국인지분을 제한한 한·미 FTA에서도 동일했다. 그러나 한·미 FTA에서 발효 2년 후부터 일부 통신사를 제외한 기간통신사업자에 한해 외국인 간접투자가 100% 허용되어 앞으로 외국인은 국내에 설립한 법인을 통해 한국기업에 투자가 가능해졌다. 한·미 FTA와 비교해보아도 개선된 사항이 많기 때문에 TPP 참여 시에도 크게 어려움은 없을 분야로 판단된다.

건설서비스의 경우, 여타 서비스와 달리 개방에 대한 나라별 입장이 극명한 업종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3-14]에서 알 수 있듯이, 건설서비스 개방에 대해 고소득국가들은 매우 개방적이나, 칠레와 페루와 같은 저소득국가들은 보수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멕시코, 말레이시아, 베트남은 이 부문 개방에 중간적인 입장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서비스는 상당히 많은 참여국의 개방수준이 높기 때문에 개방에 보수적인 국가들에 대한 개방압력이 클 분야로 예상된다. 한국은 내국민대우부문에서 완전개방하였으나 시장접근부문에서 의무하도급제도에 관한 제한사항으로 명시한 의무하도급제를 한·미 FTA 유보 목록에서 폐지하여, TPP 참여 시 건설서비스 분야 양허수준을 한·미 FTA 수준으로 조금 더 개방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하지만 한·미 FTA 유보 목록에 건설서비스

그림 3-14. 건설서비스의 TPP 참여국별 개방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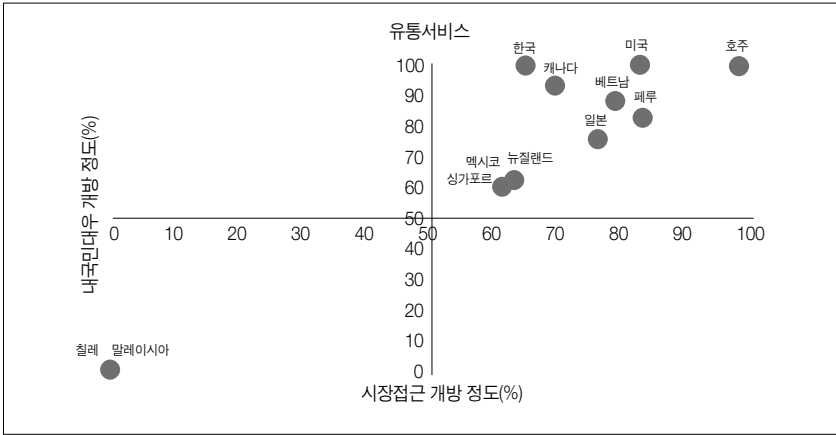


자료: WTO(2005a~2005j, 2006, 2007)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공급을 위해 대한민국 내에 사무소 개설 요건을 명시하였기 때문에 건설 서비스의 완전개방은 어려워 보인다.

유통서비스도 건설서비스와 비슷한 양상을 보인 업종으로 나타났다. [그림 3-15]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유통서비스에 대한 개방이 TPP 참여국 전반에 걸쳐 상당히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고소득국가뿐만 아니라 멕시코, 페루, 베트남도 유통서비스에 대해 높은 개방수준을 보였다. 특히 페루와 멕시코는 일본보다 개방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칠레와 말레이시아는 유통서비스에서도 여전히 개방이 미진한 국가들로 분석되어, 협상 시 개방압력에 놓일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유통서비스 분야 개방수준은 높은 편이나 시장접근부문에서 다소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한·미 FTA 유보 목록에서 담배, 주류, 약국, 의약품, 식품공급업 등 일부 품목에 대한 유통을 제한하고 있는데, 유통서비스 분야 역시 한·미 FTA 유보 목록에 명시한 품목들에 대해서는 개방하지 않을 것으로

그림 3-15. 유통서비스의 TPP 참여국별 개방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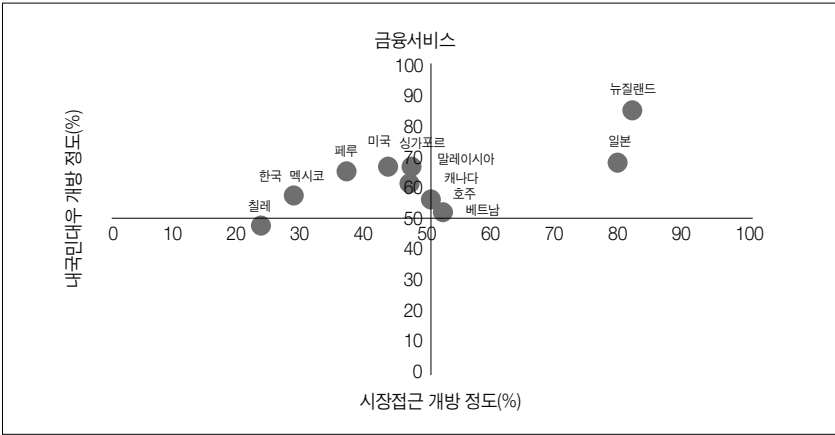


자료: WTO(2005a~2005j, 2006, 2007)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예상된다.

금융서비스의 경우, 대부분의 참여국들이 개방에 중도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그림 3-16 참고). 아울러 참여국들은 시장접근보다 내국민대우에 대한 개방수준이 더 높은 경향을 보였다. 참여국 중 뉴질랜드와 일본 정도만 금융서비스에 대한 개방수준이 높은 편으로 분석되었으며, 미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캐나다, 호주, 베트남 등의 개방수준은 중간수준으로 분석되었다. 중남미 참여국은 금융서비스 개방에서도 여타 참여국에 비해 미진한 개방수준을 보였으나 이에 반해 ASEAN 참여국은 전반적으로 높은 개방수준을 보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국의 경우, 금융서비스 분야의 개방수준은 다소 낮은 편으로 멕시코와 비슷한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대부분의 금융부분이 개방되었으며, 한·미 FTA에서도 보험업 및 은행업에서 일부 양허 개선이 이루어졌다. 이에 TPP 협상 시 한·미 FTA 수준으로 양허가 이

그림 3-16. 금융서비스의 TPP 참여국별 개방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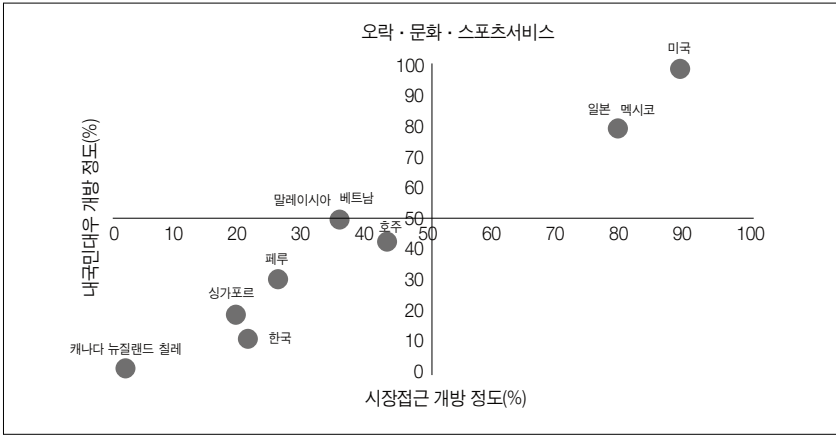
자료: WTO(2005a~2005j, 2006, 2007)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루어진다면 큰 부담은 없을 분야로 판단된다.

오락·문화·스포츠 서비스는 미국, 일본, 멕시코를 제외하고 나머지 참여국들은 개방에 미진한 경향을 보였다(그림 3-17 참고). 대부분의 서비스 업종에서 높은 개방수준을 보인 캐나다, 뉴질랜드, 싱가포르의 오락·문화·스포츠 서비스 부문의 개방수준은 여타 업종에 비해 매우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말레이시아나 베트남의 개방수준보다 더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캐나다, 뉴질랜드 등은 오락·문화·스포츠 서비스 분야에 대한 개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도 개방수준이 매우 낮은 편으로, 한·미 FTA 유보 목록에서 공연서비스와 뉴스제공업에 대해 조건을 두어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TPP 논의 시 DDA 수정양허안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개방이 진행된다면 오락·문화·스포츠 서비스 분야에 대해 개방수준이 낮은 한국은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끝으로 운송서비스는 사업서비스와 반대로 TPP 참여국 전반적으로 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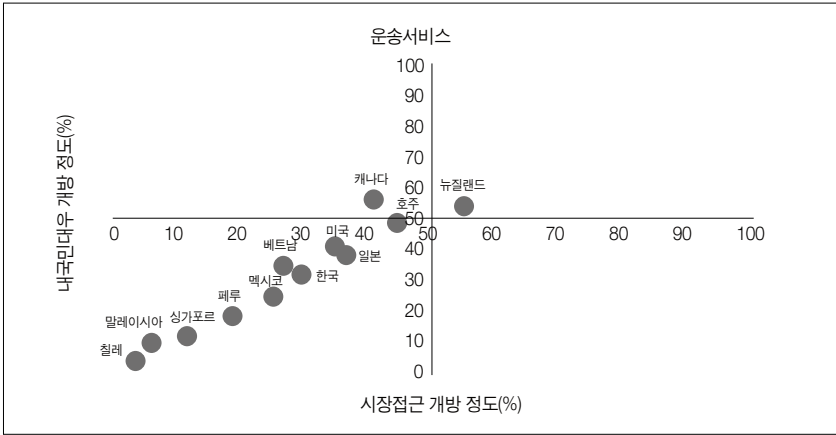
그림 3-17. 오락·문화·스포츠 서비스의 TPP 참여국별 개방 정도



자료: WTO(2005a~2005j, 2006, 2007)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우 낮은 개방수준을 보인 보수적 업종으로 분석되었다(그림 3-18 참고).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와 같은 영연방국가들의 개방수준이 비교적 높았으나, 여타 업종과 비교하면 이 정도의 개방수준은 높은 편은 아니다. 특히 전 업종에 걸쳐 개방수준이 높은 편이었던 미국과 일본의 경우에도 운송서비스는 상당히 낮은 수준의 개방을 보인 업종으로 나타났다. 칠레, 말레이시아, 페루 등도 운송서비스 개방에 보수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싱가포르의 경우에도 여타 업종에 비해 운송서비스 개방에 매우 보수적인 성향을 띠면서 베트남보다도 낮은 개방수준을 보였다. 한국도 운송서비스 개방에 보수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TPP 참여국 중에는 중간 정도에 위치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운송서비스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개방에 민감한 업종이고, 개방에 대해 TPP 참여국 간 비슷한 입장을 취하고 있어 협상 시 운송서비스에 대한 적극적인 개방 논의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참여국별로 업종 개방에 대한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TPP 참여

그림 3-18. 운송서비스의 TPP 참여국별 개방 정도



자료: WTO(2005a~2005j, 2006, 2007)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국이 모두 완전개방한 업종은 없었다. 다만 유통 및 관광 서비스 정도만 참여국 전반에 걸쳐 개방수준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보건·사회 및 운송 서비스는 참여국 전반적으로 개방수준이 낮은 업종으로 분석되었다. 고소득국가를 중심으로 사업, 커뮤니케이션, 건설, 환경 서비스에 대한 개방도가 매우 높았으며, 저소득국가는 개방도가 높은 업종보다는 개방에 보수적인 업종이 더 많은 것을 [표 3-19]를 통해 알 수 있다.

미국과 일본은 다른 국가에 비해 업종 전반에 걸쳐 개방수준이 높기 때문에 개방수준이 낮은 나라를 대상으로 개방을 종용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개방수준이 낮은 중남미 국가들이나 말레이시아에 대한 개방압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멕시코, 칠레, 페루의 경우 건설, 환경 서비스를 비롯한 많은 업종의 개방에 대해 보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향후 개방요구가 거셀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캐나다와 뉴질랜드의 경우, 고소득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오락·문화·스포츠 서비스에 대한 개

표 3-19. 각국별 개방도 상·하위 업종

	개방도가 높은 업종	개방도가 낮은 업종
미국	사업, 커뮤니케이션, 건설, 유통, 환경, 관광, 오락·문화·스포츠	보건·사회, 운송
일본	사업, 건설, 유통, 환경, 금융, 관광, 오락·문화·스포츠	보건·사회, 운송
캐나다	사업, 커뮤니케이션, 건설, 유통, 환경	교육, 보건·사회, 오락·문화·스포츠, 운송
호주	사업, 커뮤니케이션, 건설, 커뮤니케이션, 유통, 환경, 관광	교육, 오락·문화·스포츠, 운송
뉴질랜드	커뮤니케이션, 건설, 교육, 환경, 금융, 관광	보건·사회, 오락·문화·스포츠, 운송
멕시코	사업, 유통, 교육, 보건·사회, 관광, 오락·문화·스포츠	커뮤니케이션, 금융, 환경, 운송
칠레	커뮤니케이션, 관광	건설, 유통, 교육, 환경, 금융, 보건·사회, 오락·문화·스포츠, 운송
페루	유통, 관광	커뮤니케이션, 건설, 교육, 환경, 보건·사회, 운송
싱가포르	사업, 건설, 금융, 관광	교육, 환경, 오락·문화·스포츠, 운송,
말레이시아	커뮤니케이션, 금융, 관광	유통, 교육, 환경, 보건·사회, 운송
베트남	유통, 환경, 관광	보건·사회, 운송
한국	사업, 커뮤니케이션, 관광	교육, 보건·사회, 운송

자료: WTO(2005a~2005j, 2006, 2007)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방이 미진해 향후 협상 시 개방압력을 받을 확률이 큰 업종으로 판단된다. 반면 대부분 국가들이 개방에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보건·사회, 운송 서비스의 경우 개방 논의에서 자유로울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경우 개방도 상·하위 업종이 미국이나 일본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어 TPP 참여 시 이와 같은 국가들과 비슷한 입장을 취할 것으로 판단된다.

4. 소결

TPP 참여국의 DDA 서비스 수정양허안 양허 현황을 분석한 결과, 미

국이 전 업종에 걸쳐 가장 높은 수준의 양허를 보인 국가로 분석되었다. 일본의 경우, 국경간 공급보다 상업적 주재에 의한 서비스 공급을 통한 개방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영연방국가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의 양허수준도 높은 편으로 분석되었으나, 캐나다는 호주나 뉴질랜드에 비해 양허수준이 다소 낮았다. 이에 반해 중남미 참여국인 멕시코, 칠레, 페루는 양허업종 수도 많지 않았으며 많은 규제를 두고 양허하였는데, 특히 칠레와 페루의 양허수준은 TPP 참여국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ASEAN 참여국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트남 중 싱가포르의 양허수준이 가장 높았으나 미국, 호주, 뉴질랜드 등과 비교했을 때에는 높은 수준은 아닌 것으로 분석되었다. 베트남은 말레이시아보다 양허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PP 참여국의 공급형태별 개방업종 수 및 Hoekman(1995)의 가중치를 적용해 산출해낸 개방도를 비교해본 결과, 개방업종 수와 개방 정도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개방업종 수로 서비스 개방수준을 평가하기에 무리가 따르지만, 전반적으로 개방업종 수가 많은 나라들의 개방수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형태 전반에 걸쳐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의 개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칠레, 페루, 말레이시아의 국가 개방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뉴질랜드의 경우 국경간 서비스 공급을 통한 개방을 선호하는 반면 일본은 상업적 주재에 의한 서비스 공급을 통한 개방을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TPP 참여국의 업종별 개방도를 분석한 결과, 시장접근에 비해 내국민 대우에 대한 개방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미국, 일본, 뉴질랜드의

경우 전 업종에 걸쳐 개방도가 높은 나라로 분석되었다. 참여국 대부분 유통과 관광 서비스에 대해 개방적인 입장을 보였으나, 보건·사회와 운송 서비스의 개방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입장을 보였다. 미국, 일본, 호주 등은 사업, 커뮤니케이션, 건설, 환경 서비스에 대한 개방수준이 높았으며, 칠레, 페루, 말레이시아 등은 개방수준이 높은 업종보다 낮은 업종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 전반에 걸쳐 높은 개방수준을 보인 미국과 일본 등이 중남미 참여국이나 말레이시아와 같은 개방수준이 낮은 나라를 대상으로 개방요구가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TPP 참여국들과 비교했을 때 한국의 서비스 부문 개방수준은 선진국인 미국, 일본, 캐나다 등과 개발도상국인 중남미 및 ASEAN 참여국의 경계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공급형태 및 업종에 따라 상이하기는 하나 시장접근보다 내국민대우의 개방수준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국은 일본과 마찬가지로 국경간 서비스 공급보다 상업적 주체에 의한 서비스 공급을 통한 개방을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업, 커뮤니케이션, 건설, 유통 서비스는 개방에 유리한 업종으로 분석되었으나 오락·문화·스포츠 서비스는 개방에 대비해야 할 업종으로 나타났다. 사업, 커뮤니케이션, 건설, 유통 서비스의 경우 한·미 FTA를 통해 이미 높은 수준의 개방을 보인 업종이기 때문에 TPP 양허수준이 한·미 FTA 수준을 상회하지 않는 한 개방에 대해 크게 어려움은 없을 분야로 판단된다. 아울러 한국은 현재 논의 중인 복수국간서비스협정인 TiSA(Trade in Services Agreement)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TiSA 참여국이자 TPP 참여국인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칠레, 페루의 입장을 주시하면서 TPP 협상 방향을 파악하는 방법도 필요하겠다.

본 장에서는 2005년 각국이 제출한(베트남의 경우 2007년 제출한 GATS 양허표 기준) 수정양허안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DDA 서비스 수정양허안은 각국의 서비스 분야 양허수준을 가늠하는 기준이 되기는 하지만, 수정양허안을 제출한 후 약 10년 동안 칠레와 같이 적극적으로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하거나 말레이시아와 같이 정부 주도의 개방정책을 실시하며 개방에 적극적으로 변모한 나라들이 많아졌다. 한국은 TPP 공식 참여를 선언하기는 하였으나, 현재 TPP 협상에 참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협상내용 및 쟁점사항을 파악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그러나 TPP 협상에서 서비스 분야의 양허수준은 DDA 수정양허안보다 높은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다음 장에서 TPP 참여국이 최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의 양허 내용을 분석하여 참여국의 최근 서비스 분야 양허수준과 한국의 대응전략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한다.

제4장 TPP 참여 주요국의 기체결 FTA 서비스 유보 목록 분석

1. 개요
2. 미국
3. 일본
4. 호주
5. 캐나다
6. 소결



1. 개요

본 장에서는 TPP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주요 국가의 기체결 FTA 중 NAFTA 형태의 서비스 협정에 포함된 유보 목록을 분석하여 각국이 서비스 분야에 두고 있는 주요 제한조치의 내용과 특징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이와 같은 분석을 바탕으로 본 장에서 TPP 서비스 협상에서 제기될 수 있는 양허협상의 구도를 파악하고, 우리나라가 TPP 협상에 참여할 때 고려해야 할 주요 사안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국별 기체결 FTA 서비스 유보 목록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먼저 FTA 서비스 협정의 주요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는 GATS 형태의 협정과 NAFTA 형태의 협정에 대해 간략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⁵⁵⁾ FTA에서 서비스 협상이 GATS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 서비스 분야의 제한사항은 양허표에 기재가 된다. GATS 형태의 양허표에서 양허하는 분야(sector 또는 sub-sector)는 포지티브 방식을 취하지만, 각각의 분야 내에서 서비스 공급형태(Mode)별 시장접근(MA) 및 내국민대우(NT) 제한사항으로 기재된 것 외에는 다른 제한이 없는 것으로 다루어지는 네거티브 방식이 적용된다. 반면 NAFTA 형태의 협정에서는 서비스 분야별 제한사항이 양허표에 기재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 협정의 주요 조항에 비합치하는 각국의 조치가 현재유보(Annex I)와 미래유보(Annex II)에 각각 기재된

55) Latrille and Lee(2012)는 RTAs에서 서비스 협정의 유형을 크게 GATS 형태(Type), NAFTA 형태 및 기타 형태로 구분하고 있는데, 주요 형태는 GATS 형태와 NAFTA 형태의 협정이다. 기타 형태는 GATS 형태와 NAFTA 형태가 혼합된 'hybrid' 형태의 협정으로 EU 등 일부 국가에서 체결한 협정에서 주로 발견된다. 본 연구에서는 RTAs 서비스 협정의 유형을 GATS 형태와 NAFTA 형태로만 구분한다. Latrille and Lee (2012), p. 7 및 pp. 38-43 참고.

다. 여기에서 유보 목록에 포함되는 비합치조치는 서비스 협정의 최혜국(MFN)대우 조항, 내국민대우(NT) 조항, 시장접근(MA) 조항, 현지주재(LP) 조항과 관련된 것이 일반적이다. 그 외에도 투자협정의 최혜국(MFN)대우 조항, 내국민대우(NT) 조항,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SMBD) 조항, 이행요건(PR) 조항과 관련된 비합치 조치도 유보 목록에 같이 기재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NAFTA 형태의 협정에서는 협정의 주요 의무와 관련하여 현재유보와 미래유보 목록에 관련된 조치로 포함된 것 외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잠시 언급한 바와 같이 NAFTA 형태의 협정에서 유보 목록은 현재유보와 미래유보로 구분이 된다. 현재유보는 현재 두고 있는 제한조치이면서, 향후 더 자유로운 또는 더 완화된 수준으로 개선이 가능하지만 자유화 수준을 감소하는 방향으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이른바 래킷 메커니즘이 적용된다. 미래유보는 각국이 현재 두고 있는 조치를 포함해 향후 관련 조치를 자유롭게 채택 또는 유지할 수 있도록 정책적 권한을 확보하는 내용이다.

UR 협상에서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S)이 마련되고, WTO의 출범과 함께 GATS가 발효되면서 1990년대 중반 이후 체결된 FTA에서는 GATS 형태의 협정이 많이 체결되었다. NAFTA 형태의 협정은 WTO 출범 이전인 1994년에 발효된 NAFTA를 근간으로 하는데, 1990년대만 하더라도 NAFTA의 주도국인 미국이 지금과 같이 FTA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NAFTA 형태의 협정은 크게 확산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미국이 한국과 호주 외에도 다수의 중남미 및 중동 국가들과 FTA를 체결하면서 NAFTA 형태의 협정이 체결되는 사례가 증가하였다. Latrille and Lee(2012)에 따르면 2010년 기준 기발

표 4-1. FTA 서비스 협정의 유형별 현황

	합계	GATS 형태	NAFTA 형태	기타 형태
협정건수(건)	80	29	32	19
비중(%)	100.00	36.25	40.00	23.75

주 : 2010년 11월 기준 WTO에 통보된 발효 중인 FTA 서비스 협정 총 80건을 기준으로 분석된 결과이다.
 자료: Lattrille and Lee(2012), 재인용: 강준구(2014), p. 45 표 2-9 인용.

효 서비스 협정에서 NAFTA 형태의 협정과 GATS 형태의 협정이 비슷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이 확인되며, NAFTA 형태의 협정은 주로 미국을 비롯하여 미국과 FTA 체결 경험이 있는 캐나다, 멕시코, 호주, 칠레, 싱가포르 등의 국가가 체결한 FTA에서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확인된다.⁵⁶⁾

경제가 성장·발전하면서 각국의 산업구조는 1차산업에서 제조업 중심으로, 다시 제조업에서 서비스업 중심으로 점차 재편되어간다. 선진국의 산업구조를 보면 서비스업의 GDP가 80% 전후의 비중을 차지하며, 무역수지 또한 제조업에서는 적자를, 서비스업에서는 흑자를 보이는 국가가 많다. 아울러 GATT 출범 이후 WTO 출범 이전까지 상품 무역의 장애가 되는 관세의 철폐가 크게 이루어짐에 따라 다자·지역 통상협상에서 선진국들은 관심은 점차 서비스·투자 및 규범 분야로 이동하였다.

UR 협상에서 각국은 서비스 분야별 양허협상을 통해 양허표를 작성하였으며, 이는 WTO 발효와 함께 법적 구속력을 가지게 되었다. WTO에 등재되어 있는 주요국의 UR 서비스 양허표를 보면 미국 등 선진국이 높은 수준으로 양허를 한 반면, 개도국이나 LDC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양허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제3장에서 살펴본 TPP 참여국의 DDA 서비스 수정양허안(revised offer)을 보더라도 미국, 캐나다, 일본, 호주 등과

56) 전계서, pp. 38-43 참고.

같은 선진국의 양허수준이 말레이시아나 베트남과 같은 개도국보다 매우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배경 속에서 FTA 협상에서 서비스 경쟁력이 높은 선진국들은 자국의 서비스 시장 개방수준에 부합되게 협상상대국이 시장을 더 개방할 것을 요구하는 등 서비스 협상에서 공세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한다면 TPP 서비스 협상에서도 선진국은 공세적인 입장을, 개도국들은 수세적·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할 것이 유력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TPP 서비스 협상에서 우리나라의 전략적인 대응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와 같은 선진국의 입장을 면밀하게 검토하는 것이 요구되는 바, 본 장에서는 이 4개국의 기체결 FTA 서비스 유보 목록을 분석한다. 뉴질랜드의 경우 선진국으로 분류가 되나, 복수국간 서비스 분야의 통상협상에서 호주와 유사한 입장을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서비스업이 주요 관심분야가 아니라는 특수성이 있어 분석대상국가에서 제외를 하였다. 싱가포르의 경우 높은 경제발전단계에 위치해 있고, 자발적 자유화 수준은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싱가포르는 ASEAN 국가의 하나로 다자·지역 통상협상에서 ASEAN의 입장, 즉 서비스 시장개방 확대에 보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TPP 서비스 협상에서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제외하였다. 그 외에 멕시코, 칠레, 페루, 말레이시아, 베트남, 브루나이는 TPP 참여국 중 서비스 협상에서 수세적인 위치에 놓여 있는 국가로 이들의 기체결 FTA 서비스 유보 목록의 내용과 특징으로부터 도출할 수 있는 유의한 시사점이 많지 않다고 판단하여 분석대상국가에서 제외하였다.

분석대상으로 삼은 4개국에 대해서는 기체결 FTA 중 NAFTA 형태의

협정을 살펴보았다. 각국이 체결한 NAFTA 형태의 협정에서 유보 목록의 내용을 보면 비슷한 시기에 체결한 협정은 매우 유사한 유보 목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아울러 각국은 상대적으로 서비스 시장개방수준이 높은 선진국과의 FTA에서는 유보 목록을 많이 두지 않는 특징도 나타나며, 시간이 경과할수록 현재유보에 포함되었던 제한조치들이 삭제되고 미래 유보를 했던 분야가 일부 감소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장에서는 각국이 2000년대 중반 전후로 체결한 협정과 가장 최근에 체결한 선진국과의 협정을 검토대상 협정으로 선정하였다. 이와 같은 고려하에서 미국의 경우 미·호주 FTA(2005년 발효)와 한·미 FTA(2012년 발효)를 비교·검토 대상 협정문으로 선정하였다. 일본은 선진국과 체결한 NAFTA 형태의 협정이 없어 일본·칠레 EPA(2007년 발효)와 일본·페루 EPA(2012년 발효)를 선정하였다. 호주의 경우 2005년 미·호주 FTA가 발효된 후 선진국과의 FTA보다 아시아 국가와의 GATS 형태 서비스 협정이 많이 체결된 바, 미·호주 FTA와 호주·칠레 FTA(2009년 발효)를 살펴보기로 한다. 그리고 캐나다의 경우 캐나다·페루 FTA(2009년 발효)와 함께 비교대상으로 한·캐나다 FTA(2014년 타결)를 검토하고자 한다.

2. 미국

가. 주요 조항

미국은 1985년 이스라엘과 FTA를 체결한 이후 2004년 5월 현재까지

총 20건의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있다.⁵⁷⁾ 미국이 체결한 지역무역협정에서 서비스 협정이 처음 포함된 것은 캐나다와의 FTA에서부터인데, 미·캐나다 FTA는 NAFTA가 출범하면서 NAFTA 협정에 포함되었다. NAFTA 출범 이후 1990년대 말까지 미국은 다른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하지 않다가 2000년대에 들어 많은 협정을 추진하였다.

미국이 체결·발효한 지역무역협정에서 서비스·투자 챕터는 NAFTA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2005년에 발효된 호주와의 FTA 서비스·투자 챕터의 내용이 이후 추진된 여타 협정에 그대로 적용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미·호주 FTA 이래로 미국이 체결한 지역무역협정에서 국경간 서비스 무역 챕터와 투자 챕터 모두에서 역진방지 조항을 포함⁵⁸⁾하고 있고, 최근 발효된 미·콜롬비아 TPA(2012년 발효)에서도 마찬가지이다.⁵⁹⁾ 한·미 FTA⁶⁰⁾에서도 역진방지 조항은 제12.6조, 1의 다(국경간 서비스 무역)와 11.12조, 1의 다(투자)에 동일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미·호주 FTA 이래로 미국이 체결·발효한 지역무역협정의 서비스·투자 챕터에서는 거의 동일한 내용의 MFN대우 조항, 시장접근 조항, LP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먼저 최혜국대우 조항의 경우 과거 MFN은 포함하지 않고 미래 MFN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일한 내용이 모로코(2006년

57) USTRa 참고.

58) 미·호주 FTA에서 국경간 서비스 무역 챕터 Article 10.6(Non-Conforming Measures), 1의 (c), 그리고 투자 챕터 Article 11.13(Non-Conforming Measures) 1의 (c)에 명시되어 있다. USTRb 참고.

59) 미·콜롬비아 FTA에서 국경간 서비스 무역 챕터 Article 11.6(Non-Conforming Measures), 1의 (c), 그리고 투자 챕터 Article 10.13(Non-Conforming Measures)의 1의 (c)에 명시되어 있다. USTRc 참고.

60) USTRd 참고.

발효)⁶¹⁾, 바레인(2006년 발효)⁶²⁾, 오만(2009년 발효)⁶³⁾, 페루(2009년 발효)⁶⁴⁾, 파나마(2011년 발효)⁶⁵⁾, 콜롬비아(2012년 발효), 한국(2012년 발효)과의 지역무역협정에서도 국경간 서비스 무역 챕터와 투자 챕터에 포함되어 있다. 시장접근 조항도 GATS 제16조의 (a)~(e) 항목은 국경간 서비스 무역 챕터에 포함하고 있고, GATS 제16조의 (f) 항목은 유보 목록상 내국민대우 제한조치로 기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LP 조항 또한 미·호주 FTA 이래로 한·미 FTA까지 동일한 문구를 사용하고 있다.

나. 유보내용

여기에서 미국이 체결·발효한 NAFTA 방식의 서비스·투자 협정문에 포함된 현재유보와 미래유보 내용은 미·호주 FTA와 한·미 FTA의 내용을 비교하기로 한다. 미·호주 FTA는 2000년대 들어 미국이 처음 선진국과 체결한 FTA로, 이 협정의 서비스·투자 협정문과 유보 목록이 이후 체결된 여타 협정에서도 유지되는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유보내용의 비교 시 기준점으로 삼았다. 한·미 FTA의 경우 미국이 호주 다음으로 경제발전단계가 가장 높은 국가와 체결한 FTA이기 때문에 개방약속의 수준 또한 상대적으로 가장 높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먼저 미·호주 FTA 유보 목록을 살펴보기로 하자. 미·호주 FTA에서

61) USTRe 참고.

62) USTRf 참고.

63) USTRg 참고.

64) USTRh 참고.

65) USTRi 참고.

미국은 현재유보에 총 12가지의 목록을 포함하고 있으며, 미래유보에는 총 7가지의 목록을 포함하고 있다. 현재유보에서는 원자력에너지(원자력 이용), 사업서비스(수출무역회사 심사인증서), 사업서비스(특정 품목 수출·재수출), 광업 및 파이프라인 운송, 모든 분야(해외민간투자공사 보험 및 대출 보증), 항공운송(국내선 운항), 특수항공서비스, 관세사, 모든 분야(주식공모 및 증권등록), 무선통신(무선허가 제한), 특허 관련 업무, 모든 분야(지역 비합치조치)의 유보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여기에서 모든 분야로 기재된 지역 비합치조치의 경우 지방정부에서 유지되는 비합치조치를 유보(현재유보)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한·미 FTA에서와 같은 지역의 비합치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는 포함하고 있지 않다. 아울러 한·미 FTA에서는 특수항공서비스에 대한 유보조치에서 LP 제한조치를 불포함하고 있으나 호주와의 FTA에서는 LP 의무까지 포함하고 있는 차이를 보인다. 미·호주 FTA에서 미국의 현재유보 총 12가지 목록 모두는 한·미 FTA에서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미·호주 FTA에서 미국은 미래유보에 총 7가지 목록을 포함하고 있는데, 커뮤니케이션서비스(DTH, DBS TV 서비스 및 디지털오디오서비스 관련 MFN대우 조치), 케이블 TV, 사회서비스, 소수집단, 해상운송(해상운송서비스 제공 및 미국 국적기 선박), 모든 분야(시장접근 포괄유보), 모든 분야(항공, 수산, 해난구조 포함 해상사안의 MFN대우 조치)를 유보하고 있다. 미·호주 FTA에서 미국의 미래유보 7가지 중 케이블 TV에 대한 유보내용은 한·미 FTA에서 제외되고 나머지 6가지 유보내용은 그대로 포함되는 특징을 보인다. 미·호주 FTA에서 미국의 미래유보 중 여섯 번째 유보 목록인 시장접근 포괄유보의 경우 GATS 양허표를 따른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고,

양허표의 개선사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반면 한·미 FTA에서 미국은 시장접근에 대해 포괄유보를 하면서 미국의 DDA 서비스 수정양허안 수준을 반영한 양허 개선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차이를 가지고 있다.

미·호주 FTA 및 한·미 FTA에서 미국의 유보 목록을 살펴본 결과, 미국은 여타 국가와는 다르게 현재유보 및 미래유보 내용을 많이 포함하지 않고, 미국 입장에서 민감하다고 판단되는 주요 분야에만 제한조치를 두고 있는 등 전반적으로 서비스 자유화의 수준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미국의 유보 목록으로 판단할 때 미국의 주요 민감분야는 커뮤니케이션서비스, 해운서비스, 항공운송서비스, 광업·파이프라인운송 등이며, 그 외의 소수집단 보호조치, 사회서비스 미래유보조치, 원자력에너지에 대한 제한조치, 항공·수산·해상사안 MFN대우 조치 등은 여타 국가에서도 일반적으로 포함되는 유보사항이다.

미국의 미·호주 FTA 및 한·미 FTA 유보 목록을 비교해보면 미국은 호주와 FTA를 체결한 후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하면서 일부 자유화 확대 조치가 취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유보상에서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단지 특수항공서비스에서 호주에 대해서 두고 있던 LP 의무를 삭제한 차이가 나타난 반면, 미래유보에서는 케이블 TV에 대한 지분제한권리 유보조치가 삭제되었고, 시장접근 포괄유보에서 미국의 양허 개선사항을 구체적으로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유화 확대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된다.

이와 같이 미국의 기체결 FTA에서 서비스 분야의 자유화 수준이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미국의 경우 주에 따라 연방정부의 유보내용과 다른 비합치조치가 많이 있다는 점에서 미국의 서비스 자유화 수준이 매우 높다고 예단할 수만은 없다고 판단된다.

표 4-2. 미·호주 FTA 및 한·미 FTA에서 미국의 현재 유보 및 미래 유보 주요 내용

관련 부속서	분야	투자 관련 조치							국경간 서비스 관련 조치	정부 수준	조치	유보내용
		MFN	NT	SM	BD	PR	MFN	NT				
1	원자력 에너지 Atomic Energy	X	O	X	X	X	X	X	X	X	- Atomic Energy Act of 1954, 42 U.S.C. §§ 2011	- 상업적/산업적 목적, 원자력의 이용 등에 대해 미국 정부의 허가 취득 필요
		X	X	X	X	X	X	O	X	O	- Export Trading Company Act of 1982, 15 U.S.C. §§ 4011-4021	- 상무부장관이 수출행위에 대한 심사인증을 발급한 보유 미국 거주자, 미국법·주법에 따라 설립되고 존속하는 파트너십, 주/지방정부 단체 등으로 심사인증서 신청 제한
3	사업서비스 Business Services	X	X	X	X	X	X	O	O	- Export Administration Act of 1979, as amended, 50 U.S.C. App. §§ 2401-2420	- 수출관리규정의 적용대상인 상품·소프트웨어·기술의 수출·재수출 시 상무부 산업안보국의 허가 필요	
		X	X	X	X	X	X	X	X	O	-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50 U.S.C. §§ 1701-1706	- 허가 신청은 미국 내의 인으로 제한
4	광업 및 파이프라인 운송 Mining and Pipeline Transportation	O	O	X	X	X	X	X	X	- 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s, 15 C.F.R. Parts 730-774	- Mineral Lands Leasing Act of 1920, 30 U.S.C. §§ 181 and 185(a)	- 외국인·외국회사는 광업 및 파이프라인 운송 제한
		O	O	X	X	X	X	X	X	X	- 10 U.S.C. § 7435	- 외국인·외국회사는 광업 및 파이프라인 운송 제한
5	모든 분야 All Sectors	O	O	X	X	X	X	X	X	- 22 U.S.C. §§ 2194 and 2198(c)	- 49 U.S.C. Subtitle VII, Aviation Programs // 14 C.F.R. Part 297 // 14 C.F.R. Part 380, Subpart E	- 특정 외국인, 외국기업, 외국인이 지배하는 국내기업은 해외인 간투자증서의 보편과 대출 보증 이용 불가
		O	O	O	O	X	X	X	X	X	- 미합중국 시민권자인 항공회사만 국내선 운항 허용	

표 4-2. 계속

관련 부속서	분야	투자 관련 조치		국경간 서비스 관련 조치				정부 수준	조치	유보내용
		MFN	NT	SM	PR	BD	MFN			
미러 유보	1	커뮤니케이션 Communications	0	X	X	0	X	X	X	- DTH, DBS TV 서비스 및 디지털미디어서비스 관련 다른 국가와 국제협정을 통해 차등우대를 부여한 조치 유보
	2	커뮤니케이션 - 케이블 TV Communications - Cable TV	0	0	0	X	X	X	X	- 미국 내 케이블 TV 사업자에 대한 차별제한 권리 유보 ※ 한·미 FTA에서 이 유보내용은 불포함
	3	사회서비스 Social Services	0	0	0	0	0	0	0	- 법 집행 및 교정 서비스 제공, 소득 보장, 보험, 사회 보장 및 노령, 사회복지, 공교육, 공영운전, 보건/보육 조치의 채택 및 유지를 유보
	4	소수집단 Minority Affairs	X	0	0	0	X	0	0	- 알래스카 원주민 분쟁해결법에 따라 알래스카 주법에 의해 설립된 회사를 포함하여 사회적 또는 경제적 약자인 소수에게 권리를 부여하거나 우대하는 조치를 채택/유지하는 권리 유보
	5	운송서비스 Transportation Services and Operation of U.S.-flagged Vessels	0	0	0	0	0	0	0	- 해상운송서비스의 제공 및 미국 국적 선박의 운영에 관한 조치의 채택/유지 권리를 유보
	6	모든 분야 All Sectors	X	X	X	X	X	0	X	- 시장접근 포괄유보(GATS 양허수준) ※ 한·미 FTA에서 양허 개시사항을 포함(DDA 서비스 수정안) 안 수준
	7	모든 분야 All Sectors	0	X	X	X	0	X	X	- 항공, 수산, 해난구조 포함 해상사안에 대해 협정 발효 전에 서명된 양자간/다자간 국가 차등대우조치의 채택/유지 권리를 유보

주: 한·미 FTA에서 미국의 수정된 유보내용은 짙은 음영으로 표시하였다.
자료: USTRb 및 USTRd 참고.

3. 일본

가. 주요 조항

일본은 2005년 멕시코와 처음으로 NAFTA 형태의 서비스·투자 협정을 체결한 후 칠레(2007년 발효), 스위스(2009년 발효), 페루(2012년 발효)와 NAFTA 형태의 서비스 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⁶⁶⁾ 일본의 기체결 NAFTA 형태의 협정을 살펴보면 협정에 따라 역진방지 조항과 시장접근 조항, 내국 민대우 조항이 선별적·제한적으로 포함되고 있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반면 모든 협정에서 MFN대우 조항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역진방지 조항을 보면, 일본이 멕시코, 칠레와 체결한 협정에서는 국경간 서비스 무역 챕터와 투자 챕터 모두에 역진방지 조항이 포함⁶⁷⁾되어 있으나, 스위스와의 협정에서는 투자분야에만 역진방지 조항이 포함⁶⁸⁾되어 있고, 페루와의 협정에서는 서비스 챕터에만 역진방지 조항이 포함⁶⁹⁾되어 있다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NAFTA 형태의 협정에서는 일반적으로 서비스·투자 챕터 모두에서 역진방지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일본·스위스 EPA가 다소 예외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이 체결한 NAFTA 형태의 협정에서 역진방지 조항의 문구는 미국이 사용하는 문구와 매우 유사하다.

66) 일본 외무성^a 참고.

67) 일·멕시코 EPA 협정문 제10.1조 1의 (d) 및 제66조 1의 (d), 일·칠레 EPA 협정문 제110조 1의 (d) 및 제79조 1의 (d)에 역진방지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일본 외무성^b 및 일본 외무성^c 참고.

68) 일·스위스 EPA 협정문 제90조 1의 (b)에만 역진방지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일본 외무성^d 참고.

69) 일·페루 EPA 협정문 제108조 1의 (c)에만 역진방지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일본 외무성^e 참고.

글상자 4-1. 일본·스위스 EPA 투자 챕터의 역진방지 조항

Article 90 Reservations

1. Articles 87, 88 and 96 shall not apply to:

- (a) any existing non-conforming measure by a Party as set out in its List of Reservations in Section 1 of Appendix 1 or Section 1 of Appendix 2 to Annex IX, that is maintained, continued, or renewed at any time;
- (b) an amendment or modification to any non-conforming measure covered by subparagraph (a) to the extent that the amendment or modification does not decrease the conformity of the measure with Articles 87, 88 and 96; and
- (c) any measure adopted or maintained by a Party, in accordance with its List of Reservations in Section 2 of Appendix 1 or Section 2 of Appendix 2 to Annex IX, to the extent that such measures are inconsistent with Articles 87, 88 and 96.

2. In case of an amendment or modification to any existing non-conforming measure as referred to in subparagraph 1(b) or adoption of a measure as referred to in subparagraph 1(c), a Party shall notify the other Party thereof, providing detailed information, prior to the amendment, modification or adoption, or in exceptional circumstances, as soon as possible thereafter.

(중략)

7. Articles 87, 88 and 96 shall not apply to any measure that a Party adopts or maintains with respect to government procurement.

자료: 일본 외무성d Articles 90 인용.

MFN대우 조항은 일본이 체결한 모든 NAFTA 형태의 협정문에 포함되어 있으며, GATS 형태의 협정에서도 싱가포르와의 협정을 제외한 모든 협정에 포함되어 있다. NAFTA 형태의 협정문에 포함된 MFN대우 조항의 내용을 보면, 칠레와 체결한 협정에서는 국경간 서비스 무역 챕터와 투자 챕터 모두에서 미래 MFN을 규정하는 문구를 포함하고 있으나, 스위스와 체결한 EPA의 경우 제한된 MFN대우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페루와의 EPA의 경우 투자 챕터가 배제되어 있어 국경간 서비스 무역 챕터(Chapter 7)에서만 미래 MFN을 규정하는 문구를 포함하고 있다는 차이가 있다.

시장접근 조항을 보면 멕시코 및 칠레와의 EPA에서 이 조항이 배제되어 있으나 최근에 체결된 스위스, 페루와의 EPA에서는 포함되어 있다. 스위스와의 EPA 제46조에서는 GATS 제16조의 여섯 가지 항목 모두가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사항으로 포함되어 있으나, 페루와의 EPA의 경우 제106조에서 GATS 제16조의 (a)~(e) 항목만 포함되어 있다.

LP 조항은 멕시코, 칠레, 페루와의 EPA에서는 포함되어 있으나, 스위스와의 EPA의 경우 불포함되어 있다는 차이도 발견된다.

이처럼 일본이 체결한 NAFTA 방식의 협정은 주요 조항을 모두 포함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 않으며, 협정상대국에 따라 특정 조항이 배제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 유보내용

일본이 체결한 NAFTA 방식의 협정문의 유보 목록 비교는 2007년에 발효된 일본·칠레 EPA와 가장 최근인 2012년에 발효된 일본·페루 EPA를 비교하기로 한다.

먼저 일본의 유보 목록건수를 살펴보면, 일본·칠레 EPA에서 현재유보가 48건, 미래유보가 12건이었으나 일본·페루 EPA에서는 현재유보가 41건으로 다소 감소한 반면 미래유보는 20건으로 일본·칠레 EPA보다 많이 증가하였다. 이처럼 현재유보의 경우 일본·칠레 EPA 대비 일본·페루 EPA에서 7건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이 두 협정의 현재유보 내용을 비교해보면 현재유보가 감소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확인된다. 부연하면, 앞서 일본·페루 EPA에서는 투자 챕터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일본·페루 EPA의

특성으로 인해 일본·칠레 EPA에서 투자 챗터의 의무에만 관련된 조치인 총 11건의 유보 목록이 일본·페루 EPA에서 대부분 제외⁷⁰⁾되었다. 여기에 더해 일본·칠레 EPA에서 도로여객운송서비스의 투자 관련 조치 1건(현재유보 40번째)과 국경간 서비스 관련 조치 1건(현재유보 41번째)은 일본·페루 EPA에서 내용이 일부 조정(선승인요건 철폐)되어 하나의 유보(현재유보 35번째)로 통합되어 현재유보의 건수가 감소하는 데 영향을 주었다. 이러한 변화를 제외하면 일본·칠레 EPA에서 국경간 서비스 관련 조치 중 2건만이 일본·페루 EPA에서 제외⁷¹⁾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는 반대로 일본·칠레 EPA에서 두지 않았던 7건의 현재유보조치가 일본·페루 EPA에 신규로 추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유보의 건수를 보면 일본·칠레 EPA에서 두고 있던 토지거래 관련 미래유보조치가 일본·페루 EPA에서 제외⁷²⁾되었으나, R&D 보조금 등 총 9건의 미래유보가 신규로 추가되었다.

앞서 살펴본 미국의 경우 최근에 체결된 협정(한·미 FTA)이 과거에 체결된 협정(미·호주 FTA)보다 유보 목록의 수가 미미하나마 감소하고 있는 반면, 일본은 일본·칠레 EPA가 발효된 후 5년 이후에 발효된 일본·페루 EPA에서 현재유보와 미래유보 분야가 크게 증가하는 차이를 보

70) 일본·칠레 EPA 일본의 현재유보 중 투자 관련 조치만을 포함하고 있는 5번째(열공급업), 6번째(통신), 7번째(통신 및 인터넷기반 서비스), 8번째(제약제조업), 9번째(가죽/가죽제품 제조업), 14번째(석유산업), 15번째(농업, 임업, 어업 및 관련 서비스), 33번째(항공운송), 38번째(항공운송사용 화물포워딩), 39번째(철도운송), 47번째(상수도 및 급수 시설) 유보내용이 일본·페루 EPA 일본의 유보 목록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71) 일본·칠레 EPA 일본의 현재유보 중 30번째(경비서비스), 44번째(연안운송)가 일본·페루 EPA 일본의 유보 목록에 불포함되어 있다.

72) 이 미래유보사항 또한 투자 챗터의 MFN 대우 의무에 대한 유보사항으로 일본·페루 EPA가 투자챗터를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외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고 있다. 현재유보의 증가를 논외로 하더라도, 광범위한 정책주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미래유보가 크게 증가했다는 점에서 일본은 서비스 시장 개방에 적극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페루와의 EPA는 일본이 개도국과 체결한 지역무역협정으로 페루의 서비스 시장개방수준이 낮아 일본 또한 높은 수준의 자유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을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특수한 상황이 일본의 현재유보와 미래유보가 일본·칠레 EPA보다 일본·페루 EPA에서 크게 확대되었다는 사실을 지지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일본의 기체결 FTA에 포함된 유보 목록의 내용을 살펴보자. 일본은 사업서비스, 전문직서비스, 부동산, 건설, 사회서비스, 금융, 운송 등 매우 다양한 분야에서 사무소 설립 등과 같은 현지주재를 요구하는 조치, 그리고 승인을 취득할 것을 요구하는 조치가 현재유보에 많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현재유보의 내용 중 대부분이 전문직서비스를 포함하는 사업서비스와 운송서비스에 대한 조치이며, 그 외의 분야와 관련된 조치는 많지 않다. 일본·페루 EPA에서 신규로 도입된 현재유보의 내용은 유통서비스, 고등교육서비스, 보험서비스, 선박 건조·수리 및 선박엔진, 전문직서비스, 도로운송시설서비스에 관한 것이다. 이 중 유통서비스와 선박 건조·수리 및 선박엔진, 도로운송시설서비스의 경우 승인요건 부과 및 면허 수 제한을 하고, 면허 발급 시 ENT를 적용하는 분야도 있다. 고등교육서비스는 학교법인인 정규교육기관을 통해서만 서비스 공급이 가능하다는 제한을 두고 있고, 보험서비스에서는 일부 보험계약에 대해 상업적 주재를 요구하며, 해양절차대리서비스의 경우 일본법에 따라 해사대리사 자격을 갖춘 자연인만 가능하다는 제한을 두고 있다.

일본이 정책재량권을 가지는 미래유보의 내용을 보면 일본·칠레 EPA 체결 당시 여타 국가에서도 정책주권사항으로 간주하는 내용⁷³⁾을 대부분 포함하고 있으며, 그 외에 텔레그래프·우편·도박·담배생산·화폐제조 판매 등을 수행하는 사업자 제한(지정기업 또는 정부기관), 방송산업, 경비서비스 분야를 미래유보하고 있다. 특징적인 것은 일본은 협정 발효일 이후에 등장하는 새로운 서비스(New Services)와 관련된 조치를 채택 또는 유지할 수 있는 권한을 미래유보에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페루 EPA에서는 일본·칠레 EPA의 미래유보 중 토지거래 관련 내용만 제외되고 나머지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며, 여기에 R&D 보조금 관련 조치, 노동자파견서비스, 초중등교육서비스, 원자력에너지 관련 기계 수리, 전력송전 관련 서비스, 특정 방사성폐기물 최종처리서비스, 수수료·계약에 기반한 천연가스 운송, 은행 및 기타 금융서비스의 Mode 1, 보험서비스의 Mode 1, 2가 신규로 포함되었다.

일본은 UR 서비스 양허표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양허를 하였으며, 제3장에서 검토한 일본의 DDA 서비스 수정양허안에서도 그와 같은 점은 확인이 된다. 그러나 일본의 기체결 FTA 서비스 유보 목록을 검토한 결과, 일본은 FTA를 통해 자국의 서비스 시장개방을 확대하는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오히려 자유화에 역행하는 새로운 제안이나 신규 미래유보가 추가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로 미루어보면, 일본은 다차원에서의 양허수준이 충분히 높다고 판단하고 지역무역협정에서는 추

73) 여기에 해당하는 일본의 미래유보는 모든 분야에 적용되는 일본 정부·국영기업의 주식·자산 이전·처분 관련 사항, 항공우주산업, 무기·폭발물, 전력·가스·원자력에너지, 연안해·내수·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어업, 토지거래, 공공법 집행·교정·사회서비스이다.

표 4-3. 일본 · 칠레 EPA 및 일본 · 페루 EPA에서 일본의 현재유보 및 미래유보 주요 내용

관련 부속서	분야	투자 관련 조치				국경간 서비스 관련 조치				정부 수준	조치	유보내용
		MFN	NT	SM BD	PR	MFN	NT	MA	LP			
현재 유보	1	X	X	X	X	X	X	X	X	0	- Road Vehicle Law (Law No. 185 of 1951), Chapter 6	- 자동차 분해수리사업은 일본 내에 직업장 설립 필요, 작업장이 있는 관할 지역의 문중 국으로부터 승인 취득 ※ 일본·페루 EPA 현재유보 1번째와 동일
	2	X	X	X	X	X	X	X	X	0	- Employment Security Law (Law No. 141 of 1947), Chapter 3 - Law Concerning Securing the Proper Operation of Worker Dispatching Undertakings and Improved Working Conditions for Dispatched Workers(Law No. 88 of 1985), Chapter 2 - Port Labor Law (Law No. 40 of 1988), Chapter 4 - Mariner's Employment Security Law(Law No. 130 of 1948), Chapter 3 - Law Concerning the Improvement of Employment of Construction Workers (Law No. 33 of 1976), Chapters 5 and 6	- 다음의 두 가지 업종은 일본 내 현지 주체를 하고 일본 관할기관의 허가신고 필요 ▶건 설노동자 유료직업소개서비스를 포함하는 민간직업소개서비스, ▶형민노동자 파견서 비스, 신원 파견서비스 등을 포함하는 인력 파견서비스 ※ 일본·페루 EPA 현재유보 2번째와 동일 단 여기에서는 인력공급업은 관할기관의 허가를 받은 노동조합에 의해서만 가능하 더는 내용(IMA 제한사항) 추가

표 4-3. 계속

관련 부속서	분야	투자 관련 조치				국경간 서비스 관련 조치				정부 수준	조치	유보내용
		MFN	NT	SMBD	PR	MFN	NT	MA	LP			
3	건설 Construction (JISC 06, 07, 08)	X	X	X	X	X	X	X	○	○	- 건설서비스: 일본 내 사업장 설립요건, 허가 요건(국도교통성 또는 사업장이 위치한 현의 관할기관) - 건설원거점: 일본 내 사업장 설립요건, 등록 요건(사업장이 위치한 현의 관할당국) ※ 일본·페루 EPA 협제유보 삭제와 동일 ※ MA 조치만 추가, 4번째 유보에 포함	- 건설서비스: 일본 내 사업장 설립요건, 허가 요건(국도교통성 또는 사업장이 위치한 현의 관할기관) - 건설원거점: 일본 내 사업장 설립요건, 등록 요건(사업장이 위치한 현의 관할당국) ※ 일본·페루 EPA 협제유보 삭제와 동일 ※ MA 조치만 추가, 4번째 유보에 포함
현재 유보	신용관리/미수금처리업 Credit Management and Collection Business (JISC 6619) [일본·페루 EPA]의 경우 미수금처리서비스업, Collection Agency Services(JISC 6619, 7299)으로 일부 업종 추가	X	X	X	X	X	X	X	X	○	- Special Measures Law Concerning Credit Management and Collection Business (Law No. 126 of 1988), Articles 3 and 4 - Attorney Law (Law No. 205 of 1949), Articles 72 and 73 [일본·페루 EPA]에서 조치 추가	- 미수금처리업: 일본 내 사업장 설립요건, 서비스 제공수단을 일본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만으로 한정, 법무성 허가 취득 ※ 일본·페루 EPA 협제유보 삭제와 동일 [일본·페루 EPA]에서는 다음의 제한적 - 미수금처리업: 서비스 제공수단(자격 제한 법률사건에 대한 법 집행조치)으로 미수금 처리서비스업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일본 법에 따른 변호사, 법외사법무법인, 그리고 신용관리 및 미수금시입특별조치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만 수행 가능, 일본 내 사무실 설립요건 - 신용관리업: 서비스 제공수단(자격 제한) 신용관리 및 미수금시입특별조치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만이 가능

표 4-3. 계속

관련 부속서	분야	투자 관련 조치			국경간 서비스 관련 조치				정부 수준	조치	유보내용
		MFN	NT	SMBD	PR	MFN	NT	MA			
5	열공급업 Heat Supply(USIC 3511)	X	0	X	X	X	X	X	중양	- Foreign Exchange and Foreign Trade Law (Law No. 228 of 1949), Article 27 - Cabinet Order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Cabinet Order No. 261 of 1980), Article 3	- 선승인요건: 일본 열공산업에 투자하고자 하는 외국인투자자는 외환대외무역법에 따라 신청인 취득 필요 ※ [일본: 페루 EPA의 경우 이 유보사항 불포함]
6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 Telecommunications (USIC 3721) (지역통신사업 (유선전화 제외), 3741(통신부수서비스))	X	0	0	X	X	X	X	중양	- Law Concerning Nippon Telegraph and Telephone Corporation (Law No. 85 of 1984), Articles 6 and 10	- 일본국민이 아닌 자연인, 외국 정부 및 대표 사무소, 외국법인 NTT 투자 제한 - NTT 외국인 이사 제한 ※ [일본: 페루 EPA의 경우 이 유보사항 불포함(일본 법 개정, NTT 투자제한 철폐)]
7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 Telecommunications and Internet Based Services(USIC 3721(지역통신사업(유선전화 제외), 3722(장거리전화), 3729(기타 고정통신, 3731(이동통신), 4011(인터넷기반서비스))	X	0	X	X	X	X	X	중양	- Foreign Exchange and Foreign Trade Law (Law No. 228 of 1949), Article 27 - Cabinet Order on Foreign Direct Investment (Cabinet Order No. 261 of 1980), Article 3	- 선승인요건: 일본 통신사업에 투자하고자 하는 외국인투자자는 외환대외무역법에 따라 신청인 취득 필요 ※ [일본: 페루 EPA의 경우 이 유보사항 불포함]

표 4-3. 계속

관련 부속서	분야	투자 관련 조치			국경간 서비스 관련 조치				정부 수준	조치	유보내용
		MFN	NT	SMBD	PR	MFN	NT	MA			
8	제약제조업 Drugs and Medicines Manufacturing(SIC 1763)	X	O	X	X	X	X	X	중양	- Foreign Exchange and Foreign Trade Law (Law No. 228 of 1949), Article 27 - Cabinet Order on Foreign Direct Investment (Cabinet Order No. 261 of 1980), Article 3	- 선승인요건: 일반 생물학적 제제(Biological preparations) 산업에 투자하고자 하는 외국인투자자는 외환대외무역법에 따라 선승인 취득 필요 ※ 일반 페루 EPA의 경우 이 유보사항 불포함
9	가족가족제품 제조업 Leather and Leather Products Manufacturing(SIC 1257, 1259, 1794, 202, 21, 3234)	X	O	X	X	X	X	X	중양	- Foreign Exchange and Foreign Trade Law (Law No. 228 of 1949), Article 27 - Cabinet Order on Foreign Direct Investment (Cabinet Order No. 261 of 1980), Article 3	- 선승인요건: 일반 가죽 및 가죽제품 제조업 산업에 투자하고자 하는 외국인투자자는 외환대외무역법에 따라 선승인 취득 필요 ※ 일반 페루 EPA의 경우 이 유보사항 불포함
10	국적신 관련 사항 Matters Related to the Nationality of a Ship	X	O	X	X	X	X	X	중양	- Ship Law (Law No. 46 of 1899), Article 1	- 국적기신 제한: 일본국민 또는 일본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만 국적기신 허용 - 모든 대표는 일본인이어야 하며, 실무 경영진의 2/3 이상 일본인일 것 ※ 일반 페루 EPA(현재유보 10버전)와 일반 일본-칠레 EPA에서는 NT/SMBD 조차로 기재되었으나, MA 조차로 변경

표 4-3. 계속

권력 부속서	분야	투자 관련 조치			국경간 서비스 관련 조치				정부 수준	조치	주요내용
		MFN	NT	SMBD	PR	MFN	NT	MA			
11	Measuring Services(SIC 902(물품분식), 903)	X	X	X	X	X	X	X	중양	- Measurement Law (Law No. 51 of 1982), Chapters 3, 5, 6 and 8 - Regulations on Measurement Law 등 - 정기분석업: 법인 설립요건, 관할 시당국 지정요건 충족 필요 - 감사업: 법인 설립요건, 경제산업성 지정 필요 - 측량중명업: 설립요건, 등록요건 - 그 외에 분석업 : 각종 설립요건, 지정요건 ※ 일본, 페루, EPA, 협자유보, 11번째의 동일	- 정기분석업: 법인 설립요건, 관할 시당국 지정요건 충족 필요 - 감사업: 법인 설립요건, 경제산업성 지정 필요 - 측량중명업: 설립요건, 등록요건 - 그 외에 분석업 : 각종 설립요건, 지정요건 ※ 일본, 페루, EPA, 협자유보, 11번째의 동일
12	의료/보건/복지 Medical, Health Care and Welfare(SIC 7599)기타 사회보험, 사회복지 서비스	X	X	X	X	X	X	X	중양	- Law Concerning Collection of Labour Insurance Premium (Law No. 84 of 1969), Chapter 4 - Enforcement Regulations for the Law Concerning Collection of Labour Insurance Premium (Ministerial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Labour No. 8 of 1972) - 일본 법과 제도에 따라 후생노동성이 승인한 사업재단제 또는 그런 단체의 연맹(federation)만이 사업주에 의해 위탁된 노동보충사업 수행 가능. 일본 내 설립요건, 후생노동성 승인요건 ※ 일본, 페루, EPA, 협자유보, 12번째의 동일	- 일본 법과 제도에 따라 후생노동성이 승인한 사업재단제 또는 그런 단체의 연맹(federation)만이 사업주에 의해 위탁된 노동보충사업 수행 가능. 일본 내 설립요건, 후생노동성 승인요건 ※ 일본, 페루, EPA, 협자유보, 12번째의 동일

표 4-3. 계속

관련 부속서	분야	투자 관련 조치			국경간 서비스 관련 조치					정부 수준	조치	유보내용
		MFN	NT	SMBD	PR	MFN	NT	MA	LP			
13	광업 Mining (JISC 05)	X	O	X	X	X	X	O	X	O	중양	- Mining Law (Law No. 289 of 1950), Chapters 2 and 3 ※ 일본·페루 EPA는 현재 유보 13번페이지 동일
			X									중양
현재 유보												
15	농업/임업/어업 및 관련 서비스 (JISC 01, 02, 03, 04, 6224, 6225, 791)	X	O	X	X	X	X	X	X	X	중양	- Foreign Exchange and Foreign Trade Law (Law No. 228 of 1949), Article 27 - 신증인요건: 일본 해당 산업에 투자하고자 하는 외국인투자자는 외환대외무역법에 따라 신증인 취득 필요 ※ 일본·페루 EPA의 경우 이 유보사항 불포함
												중양
16	전문가서비스 Professional Services(JISC 8011, 변호사 사무소) ※ 일본·페루 EPA의 경우 JISC 7211	X	X	X	X	X	X	X	X	O	중양	- 일반 변호사법 및 구제에 따라 변호사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지방변호사회의 구역 내에 사무소 설립 필요 - 법률서비스를 공급하고자 하는 기업은 일반법과 구제에 따라 법무법인 설립 필요 ※ 일본·페루 EPA는 현재 유보 16번페이지 동일

표 4-3. 계속

관련 부속서	분야	투자 관련 조치			국경간 서비스 관련 조치					정부 수준	조치	유보내용
		MFN	NT	SMBD	PR	MFN	NT	MA	LP			
17	전문가서비스 Professional Services(JSIC 8011, 변호사 사무소) ※ 일본·페루 EPA의 경우 JSIC 7211)	X	X	X	X	X	X	X	X	중양	- Law on Special Measures Concerning the Handling of the Legal Business by Foreign Legal Consultant (Law No. 66 of 1986), Chapter 4 ※ 일본·페루 EPA 협재유보 15번째와 동일	- FLC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연인은 일본 외국법사무변호사법 및 규제에 따라 FLC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지방변호사회의 구역 내에 사무소 설립 필요 - 거주요건: 일본 법 및 규제에 따라 FLC는 1년 180일 이상 일본 내에 거주 필요 ※ 일본·페루 EPA 협재유보 15번째와 동일
	현제 유보										-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일본 특허업무법인 법/규제하에서 특허사업회사 설립 필요 ※ 일본·페루 EPA 협재유보 16번째와 동일 - 일 다음은 추가된 조치 - 특허변리사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연인은 일본 변리사 법/규제하에서 특허변리사 자격 필요	
18	전문가서비스 Professional Services (JSIC 8012, 특허변리사) ※ 일본·페루 EPA의 경우 JSIC 7212)	X	X	X	X	X	X	X	X	중양	- Patent Attorney Law (Law No. 49 of 2000), Chapters 6 and 8, and 8	- 공증인은 일본인만 가능 - 일본 법무성의 지정 지역에 사무소 설립 필요 ※ 일본·페루 EPA 협재유보 17번째와 동일
19	전문가서비스 Professional Services(JSIC 8021, 공증인/서법사 사무소)※ 일본·페루 EPA의 경우 JSIC 7221)	X	X	X	X	X	X	X	X	중양	- Notary Law (Law No. 53 of 1908), Chapters 2 and 3 and 8	

표 4-3. 계속

관료 부속서	분야	투자 관련 조치			국경간 서비스 관련 조치					정부 수준	조치	유보내용
		MFN	NT	SMBD	PR	MFN	NT	MA	LP			
20	전문가서비스 Professional Services(JSIC 8021, 공증인/사법서사 사무소) ※ 일본·패루 EPA의 경우 [JSIC 7221]	X	X	X	X	X	X	X	X	0	중양	- Notary Law (Law No. 53 of 1908), Chapters 3, 4, 5 and 7 and 10 - 사법서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연인은 일본 법규제에 따라 사법서사자격을 갖 추어야 하며, 속해 있는 사법서협회 구역 내에 사무소 설립 필요 - 사법서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기업은 일본 사법서사 법/규제에 따라 사법서사회 사 설립 필요 ※ 일본·패루 EPA 협재유보 18번째에 동일
현재 유보												- 감사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회사는 일본 법/규제에 따라 감사회사를 설립할 것을 요구 ※ 일본·패루 EPA 협재유보 19번째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기재함. - 공인회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연인은 일본 공인회계사 법/규제에 따라 자격 취득이 필요 - 공인회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기업은 감사법인법/규제에 따라 감사회사를 설립할 것을 요구
21	전문가서비스 Professional Services(JSIC 8031, 공인회계사 사무소) ※ 일본·패루 EPA의 경우 [JSIC 7241]	X	X	X	X	X	X	X	X	0	중양	- Certified Public Accountant Law (Law No. 103 of 1948), Chapters 5-2 and 7 and 3

표 4-3. 계속

관련 부속서	분야	투자 관련 조치			국경간 서비스 관련 조치				정부 수준	조치	유보내용
		MFN	NT	SMBD	PR	MFN	NT	MA			
22	전문가서비스 Professional Services(SIC 8032, 감사 사무소) ※ 일본, 페루 EPA의 경우 JISIC 7242)	X	X	X	X	X	X	0	- Certified Public Tax Accountant Law(Law No. 237 of 1951), Chapters 3, 4, 5-2, 6 and 7 - Enforcement Regulation on Certified Public Tax Accountant Law (Ministerial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Finance No. 55 of 1951)	- 공인세무회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연인은 일본 세무사 법규제에 따라 공인세무사 자격 취득이 필요. 속한 세무협회 구역 내에 사무소 설립 필요 - 공인세무회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기업은 일본 세무법인 법규제에 따라 자격을 갖춘 공인세무회계회사를 설립할 것을 요구 ※ 일본, 페루 EPA 협재유보 20번째와 동일	
23	전문가서비스 Professional Services(SIC 8051(건축설계), 8097(공인부동산감정), 8098(행정사 사무소), 8099(기타 전문직서비스) ※ 일본, 페루 EPA의 경우 JISIC 7231, 7294, 7299, 7421)	X	X	X	X	X	X	0	- Architect and/or Building Engineer Law (Law No. 202 of 1950), Chapter 5 => Chapters 1, 2 and 6(5는 제외됨)	- 일반 법규제에 따라 자격을 갖춘 건축사, 건물엔지니어 또는 그러한 건축사나 엔지니어를 고용한 사람이 일본 내에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때 사무소를 설립할 것을 요구 ※ 일본, 페루 EPA 협재유보 20번째와 동일	

현재 유보

표 4-3. 계속

관련 부속서	분야	투자 관련 조치			국경간 서비스 관련 조치				정부 수준	조치	유보내용
		MFN	NT	SMBD	PR	MFN	NT	MA			
24	전문가서비스 Professional Services(JSIC 8092(공인사회보훈노무상담사 사무소) ※ 일본·페루 EPA의 경우 [JSIC 7251]		X	X	X	X	X				- 사회보험노무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연인은 일본 법규제에 따라 공인사회 보험노무상담사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일 본 내에 사무소 설립이 필요 - 사회보험노무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 는 기업은 일본 법규제에 따라 공인사회보 훈노무상담회사를 설립할 것을 요구 ※ 일본·페루 EPA 협제문 22번째와 동일
			X	X	X	X	X	X			- 행정서사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연인 은 일본 법규제에 따라 행정서사로서 자격 취득이 필요, 속한 행정서시협회 구역 내 사 무소 설립 필요 ※ 일본·페루 EPA 협제문 23번째와 동 일 다음은 추가된 조치 - 행정서사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기업은 일본 법규제에 따라 행정서회사를 설립 할 것을 요구
25	전문가서비스 Professional Services(JSIC 8098(행정서사 사무소) ※ 일본·페루 EPA의 경우 [JSIC 7231]		X	X	X	X	X	X			

표 4-3. 계속

관련 부속서	분야	투자 관련 조치			국경간 서비스 관련 조치				정부 수준	조치	유보내용
		MFN	NT	SMBD	PR	MFN	NT	MA			
26	전문가서비스 Professional Services(SIC 8099)기타 전문가서비스 ※ 일본·패럴 EPA의 경우 [SIC 7222]	X	X	X	X	X	X	0	중양	- Land and House Surveyor Law (Law No. 228 of 1950). - 토지주택 측량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기업은 일본 법규제에 따라 토지가옥조사사를 설립할 것을 요구 ※ 일본·패럴 EPA의 경우 25번째와 동일	- 토지/주택 측량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 연인은 일본 법규제에 따라 토지가옥조사사 자격 취득을 해야 하며, 숙한 협회 규약 내 사무소 설립 필요 - 토지주택 측량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기업은 일본 법규제에 따라 토지가옥조사사를 설립할 것을 요구 ※ 일본·패럴 EPA의 경우 25번째와 동일
현제 유보	부동산 Real Estate(SIC 6811(건물/주택 판매대리), 6812(부동산개발자), 6821(부동산대리/중개), 6941(부동산매니저)	X	X	X	X	X	X	0	중양	- Building Lots and Buildings Transaction Business Law (Law No. 176 of 1952), Chapter 2 - Real Estate Syndication Law (Law No. 77 of 1994), Chapter 2 - Law Concerning Improving Management of Condominiums (Law No. 149 of 2000), Chapter 3 - 부동산판매사업(real estate syndication business)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일본 내 사무소 설립 필요, 주무 부처(성) 또는 사무소가 위치한 현의 관할당국으로부터 면허 취득 필요 - 콘도미니엄관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일본 내 사무소 설립 필요, 국토교통성 등록 필요 ※ 일본·패럴 EPA의 경우 26번째와 동일	- 부동산판매사업(부동산 syndication business)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일본 내 사무소 설립 필요, 주무 부처(성) 또는 사무소가 위치한 현의 관할당국으로부터 면허 취득 필요 - 콘도미니엄관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일본 내 사무소 설립 필요, 국토교통성 등록 필요 ※ 일본·패럴 EPA의 경우 26번째와 동일

표 4-3. 계속

관련 부속서	분야	투자 관련 조치			국경간 서비스 관련 조치				정복 수준	조치	유보내용
		MFN	NT	SMBD	PR	MFN	NT	MA			
현재 유보	부동산평가서비스 Real Estate Appraisal Services (JIC 8037 (공인부동산평가사) ※ 일본·페루 EPA의 경우 [JIC 7294]	X	X	X	X	X	X	O	중양	- Law Concerning the Appraisal of Real Estate (Law No. 152 of 1963), Chapter 3 ※ 일본·페루 EPA 협자유보 27번째와 동일	- 부동산평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시람은 일본 내 사무소 설립 필요, 국토교통성은 사무소가 위치한 현의 관할당국에 등록 필요
	선원 Seafarers(JIC 031(해양수산), 451(외항운송), 452(내안운송))	X	X	X	X	X	X	X	중양	- Mariners Law (Law No. 100 of 1947), Chapter 4 등 총 57가지 규제 ※ 일본·페루 EPA 협자유보 28번째와 동일	- 일본기업에 의해 고용된 외국인관련 통시에 명시된 선원 제외는 일본 국적선에서 일할 수 없음.
	경비서비스 Security Guard Services (JIC 9061)	X	X	X	X	X	X	X	중양	- Foreign Exchange and Foreign Trade Law (Law No. 228 of 1949), Article 27 - Cabinet Order on Foreign Direct Investment (Cabinet Order No. 261 of 1980), Article 3 ※ 일본·페루 EPA의 경우 이 유보사항을 포함	- 신승인조건: 일본 해방 산업에 투자하고자 하는 외국인투자자는 외환대외무역법에 따라 신승인 취득 필요

표 4-3. 계속

관련 부속서	분야	투자 관련 조치			국경간 서비스 관련 조치					정부 수준	조치	유보내용
		MFN	NT	SMBD	PR	MFN	NT	MA	LP			
31 현재 유보	Services Related to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JISIC 7722(직업지도센터), 8099(기타 전문직서비스), 9021(물품조사), 9032(환경조사증명)) ※ 일본·페루 EPA의 경우 JISIC 7299, 7441, 7452, 8222	X	X	X	X	X	X	X	X	중앙	-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Law (Law No. 57 of 1972), Chapters 5 and 8 - Regulation Concerning Registered Inspection Agency and Other Related Agencies (Ministerial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Labour No. 44 of 1972) - Working Environment Measurement Law (Law No. 28 of 1975), Chapters 2 and 3 - Enforcement Regulation of the Working Environment Measurement Law (Ministerial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Labour No. 20 of 1975)	- 작업기계 조사(건설서비스, 직업훈련, 산업 안전/보건 관련 서비스, 작업환경 측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일본 내 사무소를 설립 필요, 후생노동성 또는 현지(역) 노동국 담당관에 등록 필요 ※ 일본·페루 EPA의 현재유보 20번째와 동일
32	조사서비스 Surveying Services(JISIC 8052) ※ 일본·페루 EPA의 경우 JISIC 7422	X	X	X	X	X	X	X	X	중앙	- Survey Law (Law No. 188 of 1949), Chapter 6	- 조사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일본 내 사업장소 설립 필요, 국토교통성 등록 필요 ※ 일본·페루 EPA의 현재유보 30번째와 동일

표 4-3. 계속

관련 부속서	분야	투자 관련 조치			국경간 서비스 관련 조치				정부 수준	조치	유보내용
		MFN	NT	SMBD	PR	MFN	NT	MA			
현재 유보	33 항공운송서비스 (SIC 4611) Transport- Air Transport	0	0	0	X	X	X	X	중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oreign Exchange and Foreign Trade Law (Law No. 228 of 1949), Article 27 - Cabinet Order on Foreign Direct Investment (Cabinet Order No. 261 of 1980), Article 3 - Civil Aeronautics Law (Law No. 231 of 1952), Chapters 7 and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산업요건: 일본에서 항공운송업 신산업에 투자하고자 하는 외국인투자자는 외환대외무역법에 따라 신산업 취득 필요 - 일본항공사업자로 항공운송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해 국토교통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다음은 허가 불가 ① 일본국적 미보유 자업인 ② 외국외국공기관 ③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기타 조직, ④ ③이 대표를 맡는 법인이나 ①, ②, ③이 이사회의 1/3 이상 또는 투표권의 1/3 이상을 차지하는 법인 - 외국인/외국기업의 간접투자로 일본항공운송기업의 지배적 경영권 획득 불허 - 외국인 항공운송사업자는 국토교통성 승인 취득 필요 - 국토교통성의 승인요건으로 항공 여객(화물 운송)을 위해 외국항공기 사용을 요구 - 외국항공기는 일본 내 지역 간 운항 불허

※ 일본 페루 타협의 경우 이 유보사항을 포함

표 4-3. 계속

관련 부속서	분야	투자 관련 조치			국경간 서비스 관련 조치				정부 수준	조치	유보내용
		MFN	NT	SMBD	PR	MFN	NT	MA			
34	항공운송서비스 Transport- Air Transport (USIC 4621 (항공운송 제외 항공기 서비스))	X	O	O	X	X	X	X	중양	- Foreign Exchange and Foreign Trade Law (Law No. 228 of 1949), Article 27 - Cabinet Order on Foreign Direct Investment (Cabinet Order No. 261 of 1980), Article 3 - Civil Aeronautics Law (Law No. 231 of 1952), Chapters 7 and 8	- 선승인요건: 일본에서 항공사인(aerial work business)에 투자하고자 하는 외국인투자자는 외환대외무역법에 따라 선승인 취득 필요 - 항공사업(aerial work business)을 수행하기 위해 국토교통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다음은 허가 불가 ① 일본국적 미보유 자연인, ② 외국외국공공기관, ③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기타 조직, ①, ②, ③이 대표를 맡는 법인이나 ①, ②, ③이 이사회의 1/3 이상 또는 투표권의 1/3 이상을 차지하는 법인 - 외국항공기는 일본 내 지역 간 운항 불가 ※ 일본-페루 EPA 협재유보 31번째와 동일
35	항공운송서비스 Transport- Air Transport (국적등록상 항공기 등용)	X	O	O	X	X	X	X	중양	- Civil Aeronautics Law (Law No. 231 of 1952), Chapter 2	- 다음의 자연인 또는 법인이 소유한 항공기는 일본 국적기로 등록할 수 없음. ▶ ① 일본 국적 미보유 자연인 ▶ ② 외국/외국공공기관 ▶ ③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기타 조직 ▶ ①, ②, ③이 대표를 맡는 법인이나 ①, ②, ③이 이사회의 1/3 이상 또는 투표권의 1/3 이상을 차지하는 법인 - 외국항공기는 일본 국적기등록명부에 등록 불가 ※ 일본-페루 EPA 협재유보 32번째와 동일

현재 유보

표 4-3. 계속

관련 부속서	분야	투자 관련 조치			국경간 서비스 관련 조치				정부 수준	조치	유보내용
		MFN	NT	SMBD	PR	MFN	NT	MA			
36	운송-통관중개업 Transport- Customs Brokerage(JSC 4899)	X	X	X	X	X	X	0	중양	- Customs Brokerage Law (Law No. 122 of 1967), Chapter 2	- 통관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일본 내 시장, 설립 필요, 사업하고자 하는 지역의 관할 관세청장의 승인 취득 필요 ※ 일본-패무 단계 현재유보 33번째와 동일
											- 다음의 자연인 또는 법인은 국제해운을 이용 하는 화물포워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 토교통성의 승인/허가를 받고 등록을 해야 함. ▶ ① 일본국적 미보유 자연인 ▶ ② 외국/외국공공기관 ▶ ③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기타 조직 ▶ ④ ①, ②, ③이 대표를 맡는 법인이나 ①, ②, ③이 이사회의 1/3 이상 또는 투표권 의 1/3 이상을 차지하는 법인 - 화물포워딩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일본에 사무소를 설립해야 하며, 국토교통 성의 승인/허가를 받아 등록해야 함 ※ 일본-패무 단계 현재유보 34번째와 동일
37	운송- 화물포워딩 (항공운송 제외) Transport- Freight Forwarding Business(JSC 4441, 4821)	0	0	0	X	0	0	0	중양	- Freight Forwarding Business Law (Law No. 82 of 1989), Chapters 2, 3 and 4 - Enforcement Regulation of Freight Forwarding Business Law (Ministerial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Transport No. 20 of 1990)	

표 4-3. 계속

관련 부속서	분야	투자 관련 조치			국경간 서비스 관련 조치				정부 수준	조치	유보내용
		MFN	NT	SMBD	PR	MFN	NT	MA			
현재 유보	38 운송- 화물포워딩 (항공운송 서비스) Transport- Freight Forwarding Business(JSC 4441, 4821)	0	0	0	X	X	X	X	중양	- Freight Forwarding Business Law (Law No. 82 of 1989), Chapters 2, 3 and 4 - Enforcement Regulation of Freight Forwarding Business Law (Ministerial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Transport No. 20 of 1990) - 다음의 자연인 또는 법인은 항공운송수단을 이용하는 화물포워딩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음 ▶ ① 일본국적 미보유 자연인, ▶ ② 외국/외국공장간, ▶ ③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기타 조치), ▶ ④ ①, ②, ③이 대표를 맡는 법인이나 ①②③ 이 이사회의 1/3 이상 또는 투표권의 1/3 이상을 차지하는 법인 - 상에서 언급한 자연인/법인이 국제 항공 운송수단을 이용하는 화물포워딩서비스를 수행할 때 국도교통상의 승인/허가를 받아 등록해야 하며, 이와 같은 등록/승인/허가는 상해주의의 기초 위에서 제공 ※ [일본-패루]의 경우 이 유보사항 불 포함	- 다음의 자연인 또는 법인은 항공운송수단을 이용하는 화물포워딩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음 ▶ ① 일본국적 미보유 자연인, ▶ ② 외국/외국공장간, ▶ ③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기타 조치), ▶ ④ ①, ②, ③이 대표를 맡는 법인이나 ①②③ 이 이사회의 1/3 이상 또는 투표권의 1/3 이상을 차지하는 법인 - 상에서 언급한 자연인/법인이 국제 항공 운송수단을 이용하는 화물포워딩서비스를 수행할 때 국도교통상의 승인/허가를 받아 등록해야 하며, 이와 같은 등록/승인/허가는 상해주의의 기초 위에서 제공 ※ [일본-패루]의 경우 이 유보사항 불 포함
	39 운송- 철도운송 Transport- Railway Transport(JSC 42, 4861)	X	0	X	X	X	X	X	중양	- Foreign Exchange and Foreign Trade Law (Law No. 228 of 1949), Article 27 - Cabinet Order on Foreign Direct Investment (Cabinet Order No. 261 of 1980), Article 3 - 선승인요건: 일본 철도운송사업에 투자하고자 하는 외국인투자자는 외환대의무역법에 따라 선승인 취득 필요 - 단 기차 부품, 철도운송산업 구성품의 제조는 적용대상에 불포함 ※ [일본-패루]의 경우 이 유보사항 불 포함	- 선승인요건: 일본 철도운송사업에 투자하고자 하는 외국인투자자는 외환대의무역법에 따라 선승인 취득 필요 - 단 기차 부품, 철도운송산업 구성품의 제조는 적용대상에 불포함 ※ [일본-패루]의 경우 이 유보사항 불 포함

표 4-3. 계속

권력 부속서	분야	투자 관련 조치		국경간 서비스 관련 조치				정부 수준	조치	유보내용
		MFN	NT	SMBD	PR	MFN	NT			
40	운송- 도로여객운송 Transport- Road Passenger Transport (JISIC 4311(일반버스사업자))	X	O	X	X	X	X	X	- Foreign Exchange and Foreign Trade Law (Law No. 228 of 1949), Article 27 - Cabinet Order on Foreign Direct Investment (Cabinet Order No. 261 of 1980), Article 3	- 선승요건: 일반 일반버스산업에 투자하고자 하는 외국인투자자는 외환대외무역법에 따라 선승인 취득 필요 - 단, 자동차, 부품, 버스운송산업 구성품의 제조는 적용대상에 불포함 ※ 일반, 페루, EPA, 협제유보 35번째에 일부 포함, 선승요건은 삭제
현재 유보	운송- 도로여객운송 Transport- Road Passenger Transport (JISIC 43(도로여객운송), 44(도로화물운송))	X	X	X	X	X	X	O	- Road Transport Law (Law No. 183 of 1951), Chapter 2 - Trucking Business Law (Law No. 83 of 1989), Chapter 2	- 자동차여객운송산업 또는 화물시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일반 내 사무소 설립 필요, 국토교통성 승인 취득 필요 ※ 일반, 페루, EPA, 협제유보 35번째에 포함, 여기에서는 일반버스(431), 일반택시(432), 전세버스(433, 자동차여객운송(431), 일반자동차화물(441), 자동차화물(442), 소형화물운송자동차(443) 포함 양허
42	운송부수서비스 Transport- Services Incidental to Transport	X	X	X	X	X	X	O	- Pilotage Law (Law No. 121 of 1949), Chapters 2 and 3	- 국적요건: 일반에서는 일반인만이 도선사가 가능 - 동일 도선구도선지역에서 배를 도선하는 도선사들은 도선구의 도선사 협회를 설립해야 함. ※ 일반, 페루, EPA, 협제유보 37번째와 동일

표 4-3. 계속

관련 부속서	분야	투자 관련 조치			국경간 서비스 관련 조치					정부 수준	조치	유보내용
		MFN	NT	SMBD	PR	MFN	NT	MA	LP			
43	운송부수서비스 Transport- Water Transport(JSC 451(원양운송))	X	X	X	X	O	O	X	X	X	- Law Concerning Special Measures against Unfavorable Treatment to Japanese Oceaoging Ship Operators by Foreign Government (Law No. 60 of 1977) - 협정당사국(일본)의 대일본 원양운송사인에 대한 조치에 따라 일본에서 일본부두 진입, 화물 선하직이 제한/금지될 수 있음. ※ 일본 페루 단파 협재유보 38번째와 동일	
44	연인운송 Transport- Water, Transport (JSC 452, 453, 4542)	X	X	X	X	O	O	X	X	X	- Foreign Exchange and Foreign Trade Law (Law No. 228 of 1949), Article 27 - Cabinet Order on Foreign Direct Investment (Cabinet Order No. 261 of 1980), Article 3 ※ 일본 페루 EPA의 경우 이 유보사항 불포함 - 선승인요건: 일본 연안운송사업에 투자하고자 하는 외국인투자자는 외환대외무역법에 따라 선승인 취득 필요	
45	운송부수서비스 Transport- Water, Transport	O	O	X	X	O	O	X	X	X	- Ship Law (Law No. 46 of 1899), Article 3 - 일본의 법/규제, 일본이 참여한 국제협정에 별도로 명시한 사항이 없으며, 일본국적기선만이 일본 항만 간 여객/화물 운송을 할 수 있음. ※ 일본 페루 단파 협재유보 39번째와 동일	
46	직무능력검사 Vocational Skills Test	X	X	X	X	O	O	X	X	O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Promotion Law (Law No. 64 of 1969), Chapter 5 - 노동자 직무능력검사를 제공하고자 하는 기업은 일본 내에 사무소, 설비가 필요, 일본 학생노동성 지원 필요 ※ 일본 페루 단파 협재유보 40번째와 동일	

표 4-3. 계속

관련 부속서	분야	투자 관련 조치			국경간 서비스 관련 조치				정부 수준	조치	유보내용	
		MFN	NT	SMBD	PR	MFN	NT	MA				LP
현재 유보	47	상수도 및 급수 시설 Water Supply and Waterworks(SIC 3611, 일반사용자 용수 공급)	X	O	X	X	X	X	X	중양	- Foreign Exchange and Foreign Trade Law (Law No. 228 of 1949), Article 27 - Cabinet Order on Foreign Direct Investment (Cabinet Order No. 261 of 1980), Article 3	- 선승인요건: 일본 상수도 및 급수 시설 산업에 투자하고자 하는 외국인투자자는 외환대외무역법에 따라 선승인 취득 필요 ※ 일본 페루 EPA의 경우 이 유보사항 불포함
	48	도매/소매- 가족 Wholesale and Retail Trade - Livestock(SIC 5119)	X	X	X	X	X	X	O	중양	- Livestock Dealer Law (Law No. 208 of 1949), Article 3	- 가족거래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일본 내 거주 필요, 거주지 관할법국으로부터 면허 취득 필요 ※ 일본 페루 EPA의 현재유보 41번째인 동일
	49	유통업(주류) Distribution Services(SIC 5222(주류), 5851(주류점))	X	X	X	X	X	X	O	X	중양	- Liquor Tax Law (Law No. 6 of 1953), Articles 9, 10 and 11 ※ 일본 페루 EPA 현재유보 5번째 내용 -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되는 면허 수 제한 ※ 주류의 도매, 소매, 수수료중개에 모두 적용
	50	유통업(공도매시장 공급 도매업) Distribution Services(SIC 521(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X	X	X	X	X	X	O	X	중양	- Wholesale Market Law (Law No.35 of 1971), Articles 15, 17 and 33 ※ 일본 페루 EPA 현재유보 6번째 내용 - 공도매시장(public wholesale markets)에 대한 도매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되는 면허 수 제한

표 4-3. 계속

관련 부속서	분야	투자 관련 조치			국경간 서비스 관련 조치				정부 수준	조치	유보내용
		MFN	NT	SMBD	PR	MFN	NT	MA			
51	교육/훈련- 고등교육 Education, Learning Support- Higher Educational Services(JSIC 818(고등교육기관))	X	X	X	X	X	O	O	중양	- Fundamental Law of Education (Law No. 120 of 2006), Article 6 - 일본에서 정규교육으로서 고등교육서비스를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 정규교육기관에 의해 공급 가능, 정규교육기관은 학교법인을 설립해야 함.	<p>※ 일본, 페루, EPA, 현재유보 7번째 내용</p>
52	금융- 보험/보험관련서비스 Financial Services- Insurance and Insurance-Related Services(JSIC 672(비생명보험기관), 6742(비생명보험 대리점/중개인))	X	X	X	X	X	O	O	중양	- Insurance Business Law (Law No. 105 of 1995), Articles 185, 186, 275, 276, 277, 286 and 287 - Cabinet Order for Enforcement of Insurance Business Law (Cabinet Order No. 425 of 1995), Articles 19 and 39-2 - Ministerial Ordinance for Enforcement of Insurance Business Law (Ministerial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Finance No.5 of 1996), Articles 116 and 212-6	<p>※ 일본, 페루, EPA, 현재유보 8번째 내용</p> <p>- 다음의 품목 및 그것으로부터 법적 책임이 발생하는 보험계약의 경우 상업적 주체 원 칩 적용: 일본 내에서 운송되어지는 물품, 국제해임운송에 사용되지 않는 일본 등록 선박</p>

표 4-3. 계속

관련 부속서	분야	투자 관련 조치			국경간 서비스 관련 조치				정부 수준	조치	유보내용
		MFN	NT	SMBD	PR	MFN	NT	MA			
현재 유보	53 제조업- 조선/선박수리/선박엔진 Manufacturing- Shipbuilding and Repairing, and Marine Engines(JSC 3131)	X	X	X	X	X	X	X	중양	- Shipbuilding Law (Law No. 129 of 1950), Articles 2, 3 and 3-2	※ 일반 페루 EPA 협재유보 9번째 내용 - 고정구조를 넘어서는 선박 건조수리를 위해 독을 설립/확장하고자 하는 자는 국도교통 성의 승인 필요, 면허의 취득에 ENT 적용
	54 전문직서비스- 기타 전문직서비스 Professional Services(JSC 7299)	X	X	X	X	X	X	X	중양	- Maritime Procedure Agents Law (Law No. 32 of 1951), Article 17	※ 일반 페루 EPA 협재유보 24번째 내용 - 해양절차대리(Maritime procedure agent)서 비스는 일본의 법/규제에 따라 해상대리사 자격을 갖춘 자연인만 제공 가능
	55 운송- 운송 관련 서비스 Transport- Services incidental to Transport(JSC 4852(도로운송교정시설))	X	X	X	X	X	X	X	중양	- Road Transport Law (Law No. 183 of 1951), Chapter 4	※ 일반 페루 EPA 협재유보 38번째 내용 - 도로(motorway)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국도교통성 승인 취득 필요, 면허 발급에 ENT 적용(신청지역의 교통수요에 적합한지 여부 평가)

표 4-3. 계속

관련 부속서	분야	투자 관련 조치			국경간 서비스 관련 조치				정당 수준	조치	유보내용
		MFN	NT	SMBD	PR	MFN	NT	MA			
1	모든 분야 All Sectors	X	O	O	X	X	X	X			- 국영기업/정부기관의 주식/자산의 이전/처분 시 다음의 권리 유보: ① 첩보투자자 또는 그들의 투자자의 지분자산의 소유권을 금하거나 제한 부과, ② 기업을 통제하는 지분자산의 소유자로서 첩보투자자의 권한 제한, ③ 기업의 대표자/관리자/이사의 국적과 관련된 조치 채택/유지
미래 유보	모든 분야 All Sectors	X	O	O	X	X	X	O			- 텔레그래프, 우편, 도박, 담배생산제조업, 일회용 제조, 일반주화 제조/판매는 지정기업 또는 정부기관으로 제한할 수 있는 권리가 유보 ※ 일본: 페루, MAI, 미래유보 2번째 내용
3	모든 분야 All Sectors	O	X	X	X	O	X	X			- 시행 중에 있거나 협정 발효일 전에 서면된 양자/복수국 간 협정에 따라 차별적 조치를 할 수 있는 권리 유보 - 시행 중에 있거나 협정 발효일 후 서명되는 항공/수신해난구조 포함 해상사이에 관한 양자간/다자간 국제협정에 따라 국가들에 대해 치등대우를 부여하는 어떠한 조치의 채택/유지 권리를 유보 ※ 일본: 페루, MAI, 미래유보 1번째 내용

표 4-3. 계속

관련 부속서	분야	투자 관련 조치			국경간 서비스 관련 조치				정부 수준	조치	유보내용
		MFN	NT	SMBD	PR	MFN	NT	MA			
미래 유보	4		X	X	X	O	O	O	X	O	- 협정 발효일 이후 새로 제공된 뉴서비스와 관련한 어떠한 조치를 채택/유지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 ※ 일본·페루 EPA 미리유보 3번째 내용
		모든 분야- 뉴서비스 All Sectors- New Services									
	5	X	O	O	O	X	O	O	X	O	- 항공기산업, 우주산업에 대한 투자 관련 어떠한 조치를 채택/유지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 - 항공기산업, 우주산업에서 서비스 공급 관련 어떠한 조치를 채택/유지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 ① 개발/생산/활용을 위한 기술도안에 대한 기술유도계약에 기반한 서비스, ② 수료/계약 기반 생산서비스, ③ 유지보수서비스, ④ 우주운송서비스 ※ 일본·페루 EPA 미리유보 9번째, 9번째, 18번째 내용 - 항공기 관련 기계 유지/보수분야 미리유보 일본·페루 EPA 미리유보 9번째 - 위성/로켓 관련 기계 유지/보수분야 미리유보 일본·페루 EPA 미리유보 9번째 - 항공기산업, 항공우주산업에서 서비스 공급과 관련된 어떠한 조치의 채택/유지 권리를 유보 일본·페루 EPA 미리유보 18번째
	항공우주산업 Aerospace Industry- Aircraft Industry, Space Industry (USC 271, 274, 275, 279, 28, 29, 304, 3059, 3099, 8711, 872)										

표 4-3. 계속

관련 부속서	분야	투자 관련 조치			국경간 서비스 관련 조치			정부 수준	조치	유보내용
		MFN	NT	SMBD	PR	MFN	NT			
6	무기/폭발물 Arms and Explosives Industry(USIC 1791, 271, 274, 275, 279, 28, 29, 303, 3059, 3099, 3281, 8711, 872									- 무기/폭발물 산업에 대한 투자 관련 어떠한 조치를 채택/유지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 - 무기/폭발물 산업에서 서비스 공급 관련 어떠한 조치를 채택/유지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 ① 개발/생산/활용을 위한 기술도에 대한 기술유도계약에 기반한 서비스, ② 수 수료/계약 기반 생산서비스, ③ 유지보수서비스 ※ 일본, 페루 EPA 미래유보 7번째, 18번째 내용 - 무기/폭발물 관련 기계 유지보수분야 미래 유보일본, 페루 EPA 미래유보 6번째 - 무기/폭발물 산업에서 서비스 공급 관련 어떠한 조치의 채택/유지 권리를 유보일본, 페루 EPA 미래유보 18번째
		X	0	0	0	X	0	X	0	
7	에너지- 전력, 가스, 원자력 에너지 Energy- Electricity Utility Industry, Gas Utility Industry, Nuclear Energy Industry(USIC 0519, 2491, 271, 274, 275, 279, 28, 29, 303, 3059, 3099, 331, 3411, 3412, 3413, 8599, 8711, 872	X	0	0	0	0	0	X	0	- 에너지산업에 대한 투자 관련 어떠한 조치를 채택/유지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 ※ 일본, 페루 EPA의 경우 미래유보 10-13 번째에 에너지 유보사항 포함

표 4-3. 계속

관련 부속서	분야	투자 관련 조치			국경간 서비스 관련 조치				정부 수준	조치	유보내용
		MFN	NT	SMBD	PR	MFN	NT	MA			
8	어업- 연안해, 내수,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어업 Fisheries- Fisheries within the Territorial Sea, Internal Waters, Exclusive Economic Zone and Continental Shelf(JSIC 031, 032, 041, 042, 8493)	0	0	0	0	0	X	0			- 연안해, 내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어업에 대한 투자/서비스 공급과 관련된 어떠한 조치를 채택/유지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 ※ 일본- 페루 EPA 미래유보 18번째 내용
미래 유보	정보통신- 방송산업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 Broadcasting Industry(JSIC 381, 382, 383 and 380)	X	0	0	0	X	X	0			- 방송산업에 대한 투자/서비스 공급과 관련된 어떠한 조치를 채택/유지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 ※ 일본- 페루 EPA 미래유보 17번째 내용
10	토지거래 Land Transaction	0	X	X	X	X	X	X			- 일본에서 토지자산의 취득 및 임대와 관련, 일본인/일본법인 외국에서 받고 있는 유사한 금지/제한 조치에 따라 일본 내의 외국인이 법인에 금지/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 ※ 일본- 페루 EPA의 경우 이 유보사항을 포함

표 4-3. 계속

관련 부속서	분야	투자 관련 조치			국경간 서비스 관련 조치			정부 수준	조치	유보내용
		MFN	NT	SMBD	PR	MFN	NT			
11	경비서비스 Security Guard Services (JSC 906)	X	X	X	X	X	O	X	O	- 경비서비스 공급과 관련된 어떠한 조치를 채택/유지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 ※ 일반·페루 EPA 미래유보 20번째 내용
12	공공법 집행/교정/사회서비스 Public Law Enforcement and Correctional Services and Social Services	O	X	O	O	O	O	X	O	- 공공법 집행, 교정서비스, 사회서비스 등 보장/보완, 사회복지, 공공육, 공공훈련, 보건(아동보호) 분야에서 투자/서비스 공급과 관련된 어떠한 조치를 채택/유지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 ※ 일반·페루 EPA 미래유보 19번째 내용
13	R&D 보조금	X	X	X	X	X	O	X	X	※ 일반·페루 EPA 미래유보 4번째 내용 - R&D 보조금과 관련된 어떠한 조치를 채택/유지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
14	사업서비스- 노동자파견서비스 Business Services- Worker Dispatching Services (JSC 9121)	X	X	X	X	X	X	O	X	※ 일반·페루 EPA 미래유보 8번째 내용 - 노동자파견서비스와 관련된 어떠한 조치를 채택/유지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

표 4-3. 계속

관련 부속서	분야	투자 관련 조치			국경간 서비스 관련 조치			정부 수준	조치	유보내용
		MFN	NT	SMBD	PR	MFN	NT			
15	교육서비스- 초중등교육 Education, Learning Support-Primary and Secondary Educational Services(USIC 811, 812, 813, 814, 815)	X	X	X	X	X	0	0	0	※ 일본- 페루 EPA 미래유보 9번째 내용 - 초중등교육과 관련된 어떠한 조치를 채택/유보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
16	에너지- 원자력에너지 관련 기계수리 Energy-Machine Repair Related to Nuclear Energy(USIC 9011)	X	X	X	X	0	0	0	0	※ 일본- 페루 EPA 미래유보 10번째 내용 - 원자력에너지 관련 기계수리/서비스의 공급과 관련된 어떠한 조치를 채택/유보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
미래 유보	에너지- 에너지배급(전력 송전) 관련 서비스 Energy-Services Incidental to Energy Distribution (USIC 330, 331)	X	X	X	X	0	0	0	0	※ 일본- 페루 EPA 미래유보 11번째 내용 - 수송/계약 기반 전력의 송전과 관련된 어떠한 조치를 채택/유보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
18	에너지- 특정 방사선편제물 최종처리서비스 Energy-Specific Radioactive Waste Final Disposal Services (USIC 8899)	X	X	X	X	0	0	0	0	※ 일본- 페루 EPA 미래유보 12번째 내용 - 특정 방사선편제물 최종처리의 관련된 어떠한 조치를 채택/유보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

표 4-3. 계속

권리 부속서	분야	투자 관련 조치			국경간 서비스 관련 조치				정부 정부 수준	조치	유보내용
		MFN	NT	SMBD	PR	MFN	NT	MA			
19	에너지- 수송/계약 기반 천연가스 운송서비스 Energy-Transportation Services of Natural Gas on a Fee or Contract Basis (JSC 340, 3411, 3412)	X	X	X	X	O	O	O	O		※ 일본·페루 EPA에 미래유보 13번째 내용 - 특계약수료 기반 천연가스 운송서비스와 관련된 어떠한 조치를 채택/유지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
미래 유보	금융서비스- 은행 및 기타 금융(보험제외)	X	X	X	X	X	O	O	O		※ 일본·페루 EPA에 미래유보 14번째 내용 - 명시한 3가지 서비스를 제외한 은행 및 기타 금융서비스의 Mode 1과 관련된 어떠한 조치를 채택/유지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
21	금융서비스- 보험 및 보험 관련 서비스	X	X	X	X	X	O	O	O		※ 일본·페루 EPA에 미래유보 15번째 내용 - 명시한 2가지 서비스를 제외한 보험 및 보험 관련서비스의 Mode 1, Mode 2와 관련된 어떠한 조치를 채택/유지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

주: 일본·페루 EPA에서 일본의 수정된 유보 내용은 굵게 표시하였다. 일본·칠레 EPA와 일본·페루 EPA가 연계되는 내용(일부 추가/조정사항 포함)은 ■으로 표시하였다.
 자료: 일본 외무성c 및 일본 외무성e 참고.

가적인 개방과 같은 자유화 확대에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른 한편으로 일본은 주로 개도국들과의 FTA가 추진되어왔기 때문에 자국 서비스 시장의 추가 개방요구가 많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일본이 일본·칠레 EPA에서보다 일본·페루 EPA에서 더 많은 현재유보 및 미래유보 조치를 신규로 포함한 것은 일본이 NAFTA 형태의 협정 체결 경험이 축적되면서 멕시코, 칠레와 협정을 체결할 당시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던 현행 비합치조치나 미래유보조치를 협정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의도로 평가된다.

4. 호주

가. 주요 조항

호주는 2005년 미국과 FTA를 체결한 이후 태국(2005년 발효), 칠레(2009년 발효), ASEAN·뉴질랜드(2010년 발효), 말레이시아(2013년 발효)와 FTA를 체결·발효하였으나 NAFTA 방식의 서비스·투자 협정을 체결한 것은 미국과의 FTA와 칠레와의 FTA뿐이다.⁷⁴⁾ 전술한 미국의 주요 조항과 마찬가지로 미·호주 FTA의 경우 역진방지 조항, MFN대우 조항(미래 MFN 포함), 시장접근 조항, 내국민대우 조항, LP 조항, PR 조항, SMBD 조항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⁷⁵⁾ 호주가 칠레와 체결한 FTA도 국경간 서비스 무역 챕터 및 투자 챕터에서 미·호주 FTA 협정문과 거의 동일한 제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⁷⁶⁾

74) 호주 외교통상부a 참고.

75) 호주 외교통상부b 참고.

이처럼 호주가 체결한 NAFTA 방식의 협정은 미국과의 FTA 협정에서 사용된 조문이 그대로 유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호주뿐만 아니라 칠레가 미국과 FTA를 체결하면서 유사한 형태의 NAFTA 방식 서비스·투자 협정을 체결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나. 유보내용

호주는 미국과 체결한 FTA에서 현재유보 목록을 총 17개 포함하고 미래유보 목록을 총 12개 포함하고 있다. 먼저 현재유보내용을 보면, 지방정부의 현존 비합치조치를 모두 유보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 협정에서 미국도 동일한 내용의 유보를 포함하고 있다. 다만 미·호주 FTA에서 호주의 현재유보를 보면 지방정부의 비합치조치 세부 예시를 포함하지 않고 있으나, 이후 칠레와의 FTA에서는 이 유보 내용이 제외되면서 지방정부의 비합치조치를 구체적으로 유보 목록에 제시하고 있다는 차이가 발견된다. 전문직서비스에 대해서는 호주 내 사업등록을 위해 호주 내 거주요건 및 사업장 설립을 요구하고 있고, Migration Agent의 경우 호주 시민권자 또는 영구거주자, 특별비자를 받은 뉴질랜드 시민권자만을 허용하고 있으며, 기업의 감사에 대해 거주요건을 부여하고 감사서비스기업에 대해서도 LP 요건을 부여하고 있으며, 통관서비스의 경우 Mode 1 무역을 불허하고 있다. 그리고 정보통신서비스 분야에서 정부의 아웃소싱 프로그램에 의거하여 수출의무가 부여되고 있다. 어업분야에서는 호주 어업 구역에서 어로활동을 하고자 하는 외국어선이 승인을 받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관련 과금을 징수한다. 유통업에서는 밀 수출을 AWBI에만 허용

76) 호주 외교통상부^c 참고.

하고 있다. 통신서비스의 경우 Telstra에 대한 외국인지분 한도(연방보유 분 제외, 총주식의 35%까지 허용, 개별 외국인지분을 5%까지 허용)를 두고 있고, 그 외에 이사회 의장 및 이사 다수에 대한 호주 국적요건을 적용하고 있으며, Telstra 본사 및 주요 기능을 호주 내에 두어야 한다는 조치를 두고 있다. 방송서비스에서도 아날로그·디지털 TV 서비스에 대해 여타 국가와 마찬가지로 프로그램 쿼터를 두고 있고 광고에 대해서도 유사한 쿼터를 두고 있다. 상업 TV 방송국에 대해서는 외국인이 방송국 면허를 통제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지는 것을 불허하고, 외국인지분 한도를 20%로 제한하며, 외국인 이사의 한도가 20%로 제한된다. 신문사의 경우 외국인투자 한도를 전국·대도시 신문사는 30%까지, 주·교외 신문사는 50%까지 제한하고 있다. 그리고 보건의료서비스에서 CSL법(1961)에 따른 NT 및 SMBD 제한을 두고 있다. 운송서비스에서는 국제정기화물서비스 제공 해상운송업자는 호주에 거주하는 자연인일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항공운송에서는 Qantas에 대한 외국인투자 지분 제한(총 49%), 이사회 및 대표의 국적요건(이사진 2/3 이상 호주 국적자, 이사회 대표 호주 국적자)을 두고 있고, 그 외에도 본사의 설립을 호주 내로 제한하고 항공사의 영업기반을 호주 내에 둘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Qantas airway Ltd.에 대한 외국인지분율을 총 49%, 개별 외국인 25%, 외국항공사 총지분 보유 35%로 제한하고 그 외에 본사 및 영업시설, 이사 및 이사 대표에 대한 요건을 Qantas와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호주의 미래유보내용을 보면 총 12가지의 목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서 토착 및 토착민 조직에 대한 조치의 유보, 법 집행 등 사회서비스 분야 조치 유보, 방송·시청각 국제공동제작 및 기체결 협정 관련 사항

유보, 담배·주류·총기 도소매 조치 유보, 초등교육분야 조치 유보, 호주 선박등록과 관련된 조치 유보, 카보타지 및 오프쇼어 조치에 대한 유보, 항공·수산·해상사안 MFN 대우 조치 유보 등은 여타 국가에서도 일반적으로 포함되는 미래유보사항으로 평가된다. 반면 호주는 모든 분야에서 호주 거주지에 투자하는 것과 관련된 조치를 유보하고 있고, 멀티채널 무료 TV 상업방송에서 프로그램 쿼터와 광고 쿼터, 그 외의 방송서비스 관련 사항에 대한 조치를 미래유보에 포함시키고 있다. 또한 호주는 항공운송서비스 분야에서 연방입대공항의 투자 관련 조치도 유보하고 있다. 아울러 호주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모든 분야의 시장접근 관련 조치를 포괄 유보(GATS 양허표)하고 있다.

호주가 칠레와 체결·발효한 FTA의 현재유보 및 미래유보 목록을 살펴보면 상당 부분은 미·호주 FTA를 준용하고 있으나 부분적으로 자유화 확대조치도 발견되며, 일부에서는 새로운 조치의 도입이 나타나고 있다. 먼저 현재유보의 내용을 살펴보면, 가장 큰 특징이 미·호주 FTA 당시에는 하나의 유보 목록에서 지방정부의 현존 비합치조치를 유보했던 것을 칠레와의 FTA에서는 모두 현재유보에 포함했다는 점이다. 지방정부의 비합치조치는 주로 Queensland, South Australia, New South Wales, Western Australia, Northern Territory, Victoria, Tasmania 등에 존재하는 조치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 칠레와의 FTA에서 새로 도입된 현재유보로는 모든 분야에서 이사 및 비서에 대한 거주요건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반면 미국과의 FTA에서 포함하고 있던 정보통신기술(정부 아웃소싱 프로그램에 따른 수출의무 부여), 유통(밀 수출은 AWBI에만 허용), 방송·시청각·광고(프로그램 쿼터 및 광고 쿼터), 방송(상업 TV 방송국

표 4-4. 미·호주 FTA에서 호주의 현재 유보 및 미래 유보 주요 내용

관련 부속서	분야	투자 관련 조치		국경간 서비스 관련 조치				정부 수준	조치	유보내용
		투자 관련 조치		국경간 서비스 관련 조치						
		MFN	NT	SMB	PR	MFN	NT			
1	모든 분야 All Sectors	0	0	0	0	0	0	0	지역	- 지방정부의 현존 비합치조치 유보
										Australia's Foreign Investment Policy, which comprises the Foreign Acquisitions and Takeovers Act 1975 (FATA); Foreign Acquisitions and Takeovers Regulations 1989; Financial Sector (Shareholdings) Act 1998 and Ministerial Statements on foreign investment policy including the Treasurer's Press Release No.28 of 9 April 1997.
2	모든 분야 All Sectors	X	0	0	X	X	X	X	중앙	- 다음의 투자는 호주정부가 금지/제한 가능하며 신고요건 적용: 미디어분야 현존 호국기업에 대한 투자(기업규모에 관계없이 직접투자, 5% 이상 포트폴리오 투자), 통신, 운송공항, 항만, 시설, 철도인프라, 국제·국내 항공/해운 서비스)
3	전문직서비스 Professional Services	X	X	X	X	X	0	0	중앙	- 호주에서 사업등록을 하기 위해 거주요건 및 사업장 설립요건 부과
4	전문직서비스 Professional Services	X	X	X	X	0	0	X	중앙	- migration agent는 호주 시민권자 또는 영구 거주자, 또는 특별비자를 받은 뉴질랜드 시민권자만 허용
5	정보통신기술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X	X	X	0	X	X	X	중앙	- 정부의 아웃소싱 프로그램에 따라 수출의무가 부여
										Government announcement of Whole-of-Government Information Technology Infrastructure Consolidation and Outsourcing Initiative in 1997.

현재 유보

표 4-4. 계속

관료 부속서	분야	투자 관련 조치				국경간 서비스 관련 조치				정부 수준	조치	유보내용
		MFN	NT	SMB D	PR	MFN	NT	MA	LP			
6	전문직서비스 Professional Services	X	X	X	X	X	X	X	O	중양	Corporations Act 2001	- 기업감사에 거주요건 - 감사서비스 제공기업의 최소 1명 이상의 파 트너는 호주 거주자인 등록회사 감사일 것을 요구
7	어업 Fishing	X	O	X	X	X	O	X	X	중양	Fisheries Management Act 1991; Foreign Fishing Licenses Levy Act 1991	- 호주 어업구역에서 어업활동을 하고자 하는 외국어선은 승인 취득 필요 - 외국어선 승인 시 과금을 징수함.
8	유통 Distribution Services	X	O	X	X	X	O	O	X	중양	Wheat Marketing Act (1989)	- 밀(wheat) 수출은 AWB에만 허용
9	전문직서비스 Professional Services	X	X	X	X	X	X	X	O	중양	Customs Act 1901	- 통관서비스의 Mode 1 불허(호주 내에서 서비스 공급 가능)
10	통신 Telecommunications	X	O	O	X	X	X	X	X	중양	Telstra Corporation Act 1991	- Telstra에 대한 총외국인투자 한도는 Commonwealth held(연방보유분) 외 Telstra 주식의 최대 36%까지만 허용; Telstra에 대 한 개별 외국인지분율은 5%까지만 허용 - Telstra 이사회 의장 및 이사의 다수에 대해 호주 국적요건 - Telstra의 분사 및 주요 기능을 호주에 둘 것을 요구

표 4-4. 계속

관료 부속서	분야	투자 관련 조치				국경간 서비스 관련 조치				정부 수준	조치	유보내용
		MFN	NT	SMB D	PR	MFN	NT	MA	LP			
15	운송 Transport services	X	O	X	X	X	O	X	O	중앙	Trade Practices Act 1974	- 호주로 또는 호주에서 다른 국가로 국제정기 화물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상운송업자는 호 주에 거주하는 자연인일 것 요구 - Qantas 외 개별 호주 국제항공사의 해외국인 지분율은 49%로 제한 - 이사회 2/3 이상 및 이사회 대표에 대한 호주 국적요건 - 본사(head office) 호주 내 설립 - 항공사의 영업기반을 호주에 둘 것을 요구 - Qantas Airways Ltd에 대한 총외국인지분율 49%, 개별 외국인지분 제한 25%, 외국항공 사에 의한 지분 보유는 35%로 제한 - Qantas 본사를 호주에 두어야 하고 Qantas 영업시설의 다수를 호주에 둘 것을 요구 - 이사회 2/3 이상 및 이사회 대표에 대한 국적 요건 부여
											Air Navigation Act 1920; Ministerial Statement	
16	운송 Transport services	X	O	O	X	X	X	X	X	중앙		
17	운송 Transport services	X	O	O	X	X	X	X	X	중앙	Qantas Sale Act 1992	
1	모든 분야 All	X	O	O	O	X	O	O	O		Legislation and ministerial statements at all levels of government including Australia's foreign investment policy and the Native Title Act 1993	- 토착민, 토착민 조직에 대한 조치의 채택 또는 유지 유보
2	모든 분야 All	X	X	X	X	X	X	X	X			- 시장접근에 대한 GATS 포괄유보

표 4-4. 계속

관료 부속서	분야	투자 관련 조치										정부 수준	조치	유보내용
		국경간 서비스 관련 조치					투자 관련 조치							
		MFN	NT	SMB D	PR	MFN	NT	MA	LP					
3	모든 분야 All	X	0	X	0	X	0	X	X	X		Foreign Acquisitions and Takeovers Act 1975 (FATA); Foreign Acquisitions and Takeovers Regulations 1989; and Ministerial statements	- 외국인이나 호주 주거지에 투자하는 것과 관련 된 조차의 채택 또는 유지와 관련된 사항 유보	
		0	0	0	0	0	0	0	0	0		- 법 집행, 교정, 공공목적을 위한 사회서비스 와 관련된 조차의 채택 또는 유지와 관련된 사항 유보		
4	사회서비스 Social Services	0	0	0	0	0	0	0	0	0			- 멀티채널 무료 TV 상영방송서비스 프로그램 쿼터, 광고 쿼터 - 무료 TV 상영방송서비스의 진송쿼터 - 유료 TV 방송서비스 방송물 제작비 제한 -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 쿼터 - 기타 제한 존재	
		0	0	X	0	0	0	0	0	0	Broadcasting Services Act 1992 등			
5 미래 유보	방송/시청각, 광고, 공연 Broadcasting and Audiovisual Services; Advertising Services; Live Performance	0	0	X	0	0	0	0	0	0				
		0	X	0	0	0	X	X	X	X	International Co-production Program	- 국제 공동제작프로그램 등 유보 - 기협정 등에 따라 의무부과하는 조치 유보		
6	방송/시청각 Broadcasting and Audiovisual Services	0	X	X	0	0	0	X	X	X				
		X	X	X	X	X	X	X	X	X		- 담배, 주류, 총기(firearms) 도소매 관련 조치 유보		
7	유통 Distribution Services	X	X	X	X	X	X	X	X	X				

표 4-4. 계속

관련 부속서	분야	투자 관련 조치				국경간 서비스 관련 조치				정부 수준	조치	유보내용
		MFN	NT	SMB D	PR	MFN	NT	MA	LP			
8	교육 Education Services	X	0	0	0	X	0	0	0	0		- 초등교육분야 유보
		X	0	X	X	X	X	X	X	X		- 호주 선박등록과 관련된 조치 유보
		X	0	0	0	X	0	0	0	0		- 카보타지 및 오프쇼어 조치 유보
11	운송 Transport	X	0	0	X	X	X	X	X		Airports Act 1996; Airports (Ownership-interests in Shares) Regulations 1996; Airports Regulations 1997	- 연방인디공항(federal leased airports) 투자 관련 조치 유보
		0	X	X	X	0	X	X	X	X		- 항공 수산, 해난구조 포함 해상사안에 대해 협정 발효 전에 서명된 양자간/다자간 국가 차등대우조치의 채택/유지 권리를 유보

자료: 호주 외교통상부^b 참고.

표 4-5. 호주 · 칠레 FTA에서 호주의 현재유보 및 미래유보 주요 내용

관련 부속서	분야	투자 관련 조치		국경간 서비스 관련 조치				정부 수준	조치	유보내용	미·호주 FTA와 비교
		MFN	NT	SMB	PR	MFN	NT				
현재 유보	1	X	O	O	X	X	X	X	Australia's Foreign Investment Policy, which comprises the Foreign Acquisitions and Takeovers Act 1975 (Cth) (FATA); Foreign Acquisitions and Takeovers Regulations 1989 (Cth); Financial Sector (Shareholdings) Act 1998 (Cth); and Ministerial Statements, Land Act 1994 (Qld) Foreign Ownership of Land Register Act 1988 (Qld)	연방: 대규모 투자에 의한 지분 취득 시 통지 및 선승인 요건 적용 - 퀘즈랜드 토지 취득 제한 미·호주 FTA 협제 유보 2와 일부 유사하나 투자 제한 범위, 수준이 보다 강화 ※지방정부조치 포함	
	2	X	X	O	X	X	X	X	Corporations Act 2001 (Cth); Corporations Regulations 2001 (Cth)	- 이사회(민간기업 1명 이상, 공기업 2명 이상) 및 비서(민간기업 1명 이상, 공기업 2명 이상) 호주 거주요건 적용 ※식규 추가	
	3	X	X	O	X	X	X	O	Associations Incorporation Act 1984 (NSW); Associations Act (NT)	- New South Wales: 협회 등록에 거 주요건 - Northern Territory: Northern Territory 거주민만이 협회 설립 신청서 작성 및 관리(공무원) 가능 ※지방정부조치 포함	

표 4-5. 계속

관료 부속서	분야	투자 관련 조치				국경간 서비스 조치				정부 수준	조치	유보내용	미·호주 FTA와 비교
		MFN		SMB		MFN		NT					
		NT	D	NT	PR	MA	LP	MA	LP				
현재 유보	4	모든 분야 All Sectors	X	O	X	X	X	X	O	지방	Co-operatives Act 1992 (NSW) - Co-operatives Act 1997 (SA)	- New South Wales: 협동조합 등록자 및 간사(secretaries) 거주요건(뉴사 우스웨일스), 반드시 뉴사우스웨일 스에 등록된 협동조합 시문실 요구 South Australia: 협동조합법도 2명 이상의 이사, 거주 호주 거주요건 등 ※지방정부조치 포함 - 협동조합 사무소 사무소오스트레 일리아에 설립, 외국인 협동조합 등 를 위해 협동조합 참여자는 사무소 오스트레일리아 거주 필요	※지방정부조치 포함
	5	모든 분야 All Sectors	X	X	X	X	X	X	O	지방	Partnerships Act 1891 (SA)	- 합자회사(limited partnership)는 사 무소오스트레일리아에 등록 사무소 설립을 요구 ※지방정부조치 포함	※지방정부조치 포함
	6	모든 분야 All Sectors	X	X	X	X	X	X	O	지방	Consumer Affairs and Fair Trading Act (NT) Consumer Affairs and Fair Trading (Trading Stamps) Regulations (NT)	- third party trading scheme의 기회 자는 사무소오스트레일리아에 사무 소를 보유하고 있을 것을 요구 ※지방정부조치 포함	※지방정부조치 포함
7	전문직서비스 Professional Services	X	O	X	X	X	X	O	지방	Legal Practitioners Act 1981 (SA)	- 외국법무법인의 지회시는 영입하 추득 불허 및 여타 기업의 이윤공유 를 불허 - South Australia의 경우 외국법 자격 취득 외국 제언인은 국내법무법인의 외국법 지문사 역할 수행만 가능(지 역번호사로 고용하거나 파트너십을 체결하는 것 불허) ※지방정부조치 포함	※지방정부조치 포함	

표 4-5. 계속

관료 부속서	분야	투자 관련 조치		국경간 서비스 조치				정부 수준	조치	유보내용	미·호주 FTA와 비교
		SMB		MFN	NT	MA	LP				
		MFN	NT								
8	전문직서비스 Professional Services	X	X	X	X	X	X	O	Patents Act 1990	- 호주에서 사업등록을 하기 위해 거주 요건 및 사업장 설립요건 부과	미·호주 FTA 현재유 보 3과 동일
	전문직서비스 Professional Services	X	O	X	X	X	O	지방	Companies (Trustees and Personal Representatives) Act (NT) Trustee Companies Act 1987 (WA)	- Northern Territory: 투자신탁회사 사 업승인에 이사 3명 이상 및 경영자 회사를 지역 내 설립 운영 - Western Australia: 법인만이 투자신 탁회사로 활동 가능	※지방정부조치 포함
	전문직서비스 Professional Services	X	X	X	X	X	O	중앙 및 지역	Corporations Act 2001 (Cth) Co-operative Housing and Stair-Bowkett Societies Act 1998 (NSW) Legal Practitioners Act 1981 (SA) and Legal Practitioners Regulations (SA) Estate Agents Act 1980 (Vic)	- 연방: 회사의 감사에 호주 거주요건, 감사서비스 공급기업의 파트너 1명 이상 호주 거주 등록회사 감사어야 함. - New South Wales: 특정 사회단체 및 협회 감사에 대해 지역 거주요 건 부여	연방의 조치는 미· 호주 FTA 현재유보 6 과 동일 ※지방정부조치 포함
11	전문직서비스 Professional Services	X	X	X	X	X	O	지방	Architects Act (NT)	- 건축 파트너십 또는 회사등록자격을 갖추기 위해 Northern Territory 내에 주재하고 지역 내 사업을 수행	※지방정부조치 포함

표 4-5. 계속

관료 부속서	분야	투자 관련 조치			국경간 서비스 조치				정부 수준	조치	유보내용	미·호주 FTA와 비교
		MFN	NT	SMB D	PR	MFN	NT	MA				
12	전문직서비스 Professional Services	X	X	X	X	O	O	X	중양	Migration Act 1958	migration agent는 호주 시민권자 또는 영구 거주자, 또는 특별 비자를 받은 뉴질랜드 시민권자만 허용함.	미·호주 FTA 현재유 보 4와 동일
	전문직서비스 Professional Services	X	X	X	X	O	O	O	중양	Customs Act 1901	- 통관서비스의 Mode 1 불허(호주 내에서 서비스 공급 가능) 미·호주 FTA 현재유 보 9와 유사. 단 미·호주 FTA는 NT 제한이 없으나 호주·칠레 FTA는 NT 제한도 부과	
14	연구개발 서비스 Research and Development Services	X	X	X	X	O	O	X	지방	Biodiscovery Act 2004 (Qld)	- biodiscovery 연구 및 상용화 관련 수입배분협정에 하위면허 요구	※지방정부조차 포함
	부동산, 유동 Real Estate and Distribution Services	X	O	X	X	X	O	O	지방	Community Land Management Act 1989 (NSW) 등	- New South Wales 부동산 대리인 지역 거주요건, 등록요건 - Northern Territory 사무소 설립요건 - Queensland 부동산 대리인, 경매인, 자동차딜러/싱업대리인 등은 주 내에 주소 필요 - 그 외 Victoria, Western Australia 등 도 유사	※지방정부조차 포함

표 4-5. 계속

관료 부속서	분야	투자 관련 조치				국경간 서비스 조치				정부 수준	조치	유보내용	미·호주 FTA와 비교	
		SMB		PR		MFN		NT						
		MFN	NT	D		MA	LP	MA	LP					
현재 유보	16	어업 및 진주양식 Fishing and Pearling	X	O	O	X	X	O	X	O	중양 및 지역	Fisheries Management Act 1991 (Cth) 등	- 연방, 호주 어업구역에서 어업활동을 하고자 하는 외국어선은 승인 필요, 외국어선 승인 시 과금 징수 - New South Wales 외국인 및 외국 수유 단체는 어업지분 보유 불가 - Victoria 호주 거주자만 어업면허 취 득 가능 - Western Australia도 유사조치 존재	연방의 조치는 미· 호주 FTA 협제유보 7 과 동일 ※지방정부조치 포함
	17	광업 및 관련 서비스 Mining and Related Services	X	X	O	X	X	X	X	X	지방	Mount Isa Mines Limited Agreement Act 1985 (Qld)	- Mount Isa Mines 사업자에 대해 Queensland 내 거주 전문직 컨설턴 트 이용, Queensland 내 기용 노동 력 이용 등 이행요건 부과	※지방정부조치 포함
	18	기타 사업서비스 Other Business Services	X	X	O	X	X	X	X	O	지방	Prostitution Regulation Act (NT)	- Northern Territory에서 호위 대리인 (escort agency business)에 대해 주 내 거주요건 부과, 시무스 운영면허 에 거주요건 부과	※지방정부조치 포함
19	통신 Telecommunic ations	X	O	O	X	X	X	X	X	X	중양	Telstra Corporation Act 1991	- Telstra에 대한 총외국인투자는 Commonwealth held(연방 보유)와 Telstra 주식의 35%까지만 허용. Telstra에 대한 개별 개별 외국인투자 5%까지만 허용 - Telstra 이사회 의장 및 이사의 다수에 대해 호주 국적요건 - Telstra의 분사 및 주요 기능은 호주에 둘 것을 요구	미·호주 FTA 협제유 보 10과 동일

표 4-5. 계속

관련 부속서	분야	투자 관련 조치				국경간 서비스 관련 조치				정부 수준	조치	유보내용	미·호주 FTA와 비교
		MFN	NT	SMB D	PR	MFN	NT	MA	LP				
20	유통 Distribution Services	X	X	X	X	X	X	X	O	지방	Firearms Act (NT)	- Northern Territory: 총기 면허 부여 시 주 거주요건 적용 ※지방정부조치 포함	
		X	X	X	X	X	X	X	O	지방	Liquor Act (NT) and policy and practice Kava Management Act (NT) Tobacco Control Act (NT) and policy and practice	- Northern Territory: 경우 주류 및 담배 유통 면허에 주 내 거주요건 적용 ※지방정부조치 포함	
현재 유보	유통 Distribution Services	X	X	X	O	X	X	X	X	지방	Wine Industry Act 1994 (Old)	- Queensland: 와인거래면허(merchant's licence)를 취득하기 위해 Queensland 와인산업에 기여해야 할 것을 요구, 와인제조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주 내 면허를 취득한 포도를 사용해서 와인을 제조할 것을 요구 ※지방정부조치 포함	
		X	X	X	X	X	O	X	O	지방	Pharmacists Registration Act 2001 (Tas) Pharmacy Act 1964 (WA)	- Tasmania: 거주권을 보유한 호주 시민권자·국민만이 약사로 활동 가능 - Western Australia: Western Australia 거주자만이 약사로 일할 수 있음. ※지방정부조치 포함	

표 4-5. 계속

관료 부속서	분야	투자 관련 조치			국경간 서비스 관련 조치				정부 수준	조치	유보내용	미·호주 FTA와 비교
		MFN	NT	SMB D	PR	MFN	NT	MA				
24 현재 유 무	전문직 및 보건의료 서비스 Professional and Health Services	X	X	X	X	O	X	O	지방	Medical Practitioners Registration Act 1996 (Tas), Occupational Therapists Registration Act 1980 (WA) 등 13건	- Tasmania: 거주권을 보유한 호주 시민권자·국민만이 의사 등 의료업 종사자(medical practitioners, psychologists, physiotherapists, radiation therapists, diagnostic radiographers, nuclear medicine technologists, chiropractors, osteopaths, optometrists, dental practitioners, dental prosthetists and podiatrists)로 일할 수 있음. - Western Australia: Western Australia 거주자만이 직업요법사(occupational therapists), 발병전문가(podiatrists), 심리학자(psychologists)로 일할 수 있음.	*지방정부조치 포함
		X	O	O	X	X	X	X	중앙	Commonwealth Serum Laboratories Act 1961 (Cth)	- 이사진 1/3 이상의 동의를 요구하는 주요 인건에 대한 의사결정 시 외국 인자본자의 투표권 불인정 - 본사(본부), 주요 시설은 호주에 위치 - CSL 이사회의 이사 2/3 이상과 대표 이사에 대한 국적요건 - CSL 해외 설립 불허	미·호주 FTA 현재유 비 보 14와 동일
25	보건의료 Health	X	O	O	X	X	X	X	중앙	Commonwealth Serum Laboratories Act 1961 (Cth)	- 이사진 1/3 이상의 동의를 요구하는 주요 인건에 대한 의사결정 시 외국 인자본자의 투표권 불인정 - 본사(본부), 주요 시설은 호주에 위치 - CSL 이사회의 이사 2/3 이상과 대표 이사에 대한 국적요건 - CSL 해외 설립 불허	미·호주 FTA 현재유 비 보 14와 동일

표 4-5. 계속

관료 부속서	분야	투자 관련 조치		국경간 서비스 조치				정부 수준	조치	유보내용	미·호주 FTA와 비교
		MFN	NT	SMB D	PR	MFN	NT				
30 현재 유보	운송 Transport services	X	O	O	X	X	X	X	Qantas Sale Act 1992	- Qantas Airways Ltd에 대한 총외국인 지분을 49%, 개별 외국인지분 제한 25%, 외국항공사에 의한 지분 보유 는 35%로 제한 - Qantas 본사를 호주에 두어야 하고 Qantas 영업시설의 다수를 호주에 둘 것을 요구, 이사회 2/3 이상 및 이사회 대표에 대한 국적요건 부여	미·호주 FTA 현재유 보 17과 동일
		X	X	X	X	X	X	O	Commercial Passenger (Road Transport) Act (NT)	- Northern Territory의 경우 개별 사업 자가 1년에 6개월 이상 비체류 시 면허를 취소함.	※ 제14장정부조치 포함
1 미래 유보	모든 분야 All	X	O	O	O	X	O	O	Legislation and ministerial statements at all levels of government including Australia's foreign investment policy and the Native Title Act 1993	- 호주 FTA 미래유 보 1과 유사. 단 미· 호주 FTA의 경우 MA 조치도 포함하여 유 보하였으나 호주·칠 레에서는 제외	
		X	O	X	O	X	X	X	Foreign Acquisitions and Takeovers Act 1975 (FATA); Foreign Acquisitions and Takeovers Regulations 1989; and Ministerial statements	- 외국인이 호주 주거지에 투자하는 것 과 관련된 조치의 채택 또는 유지와 관련된 사항 유보	미·호주 FTA 미래유 보 3과 동일

표 4-5. 계속

관련 부속서	분야	투자 관련 조치				국경간 서비스 조치				정부 수준	조치	유보내용	미·호주 FTA와 비교
		MFN	NT	SMB D	PR	MFN	NT	MA	LP				
3	모든 분야 All	X	0	0	0	X	X	X	X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협정이 발효될 때 정부로부터 민간에 전환되는 서비스 공급, 정부 소유 기업 및 자사의 민영화와 관련된 조치는 유보 	※신규 추가	
		0	0	0	0	0	0	X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 집행, 교정, 공공목적을 위한 사회 서비스와 관련된 조치의 채택 또는 유지와 관련된 사항 유보 	미·호주 FTA 미래유보 4와 유사. 단 미·호주 FTA의 경우 MA도 유보하였으나 호주·칠레 FTA의 경우 MA는 제외	
5 미래 유보	농업 Agriculture	X	0	X	X	X	0	0	X	<p>Wheat Marketing Act 1989 (Cth) Grain Marketing Act 1991 (NSW) Rice Marketing Act 1983 (NSW) Marketing of Potatoes Act 1989 (WA), Grain Marketing Act 2002 (WA)</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곡물류 marketing boards와 관련된 조치 유보 	※신규 추가	
		0	0	0	0	0	0	0	0	<p>Broadcasting Services Act 1992 (Cth) Radiocommunications Act 1992 (Cth) There are minimum Australian content requirements for commercial television, Film and Television Office Act 1988 (NSW)</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청각/엔터테인먼트/도서관/건축/박물관 등 창조예술, 문화유산, 기타 문화산업 관련 분야에 대한 조치 유보 방송시청각 관련 입안, 면허, 주파수 관리 등에 대한 조치 유보 	미·호주 FTA 미래유보 5와 유사	

표 4-5. 계속

관료 부속서	분야	투자 관련 조치				국경간 서비스 조치				정부 수준	조치	유보내용	미·호주 FTA와 비교
		MFN	NT	SMB D	PR	MFN	NT	MA	LP				
7	교육 Education Services	0	0	0	0	0	0	0	X	0		- 초등교육분야 유보	미·호주 FTA 미래유 보 8과 유사. 단 미· 호주 FTA는 MFN(), MFN(CBS)은 제외하 고 MA를 포함하고 있 으나 여기에서는 MA 제외 MFN(), MFN (CBS)는 유보에 포함
		0	0	0	0	0	0	0	X	0		- 중등교육 및 고등교육 서비스 유보 ※신규 추가	
8	교육 Education Services	0	0	0	0	0	0	0	X	0			
9	도박업 Gambling and Betting	X	0	0	0	X	0	0	X	0	Interactive Gambling Act 2001 (Cth) 등 35개 법(NSW, Qld, SA Vic 4개 주)	- 도박업 유보	※신규 추가
10	해상운송 Maritime Transport	X	0	0	0	X	0	0	X	0		- 키보타지 및 오프쇼어 조치 유보	미·호주 FTA 미래유 보 10과 유사. 단 미· 호주 FTA는 MA도 포 함하나 여기에서는 불 포함

표 4-5. 계속

관권 부속서	분야	투자 관련 조치			국경간 서비스 조치			정부 수준	조치	유보내용	미·호주 FTA와 비교
		MFN	NT	SMB D	PR	MFN	NT				
11	해상운송 Maritime	X	O	X	X	X	X	X		- 호주 선박등록과 관련된 조치 유보 보 9와 동일	미·호주 FTA 미래유 보 9와 동일
12	운송 Transport	X	O	O	X	X	X	X	Airports Act 1996; Airports (Ownership-Interests in Shares) Regulations 1996; Airports Regulations 1997	- 연방임대공항(federal leased airports) 투자 관련 조치 유보	미·호주 FTA 미래유 보 11과 동일
13	모든 분야 All	O	X	X	X	O	X	X		- 항공, 수산, 해난구조 포함 해상사안에 대해 협정 발효 전에 서면인 양자 간/다자간 국가 차등대우조치의 채택/유지 권리를 유보	미·호주 FTA 미래유 보 12와 동일
14	모든 분야 All Sectors	X	X	X	X	X	O	X		- 첨부한 시장접근(MA) 양하표 개선사항을 제외하고 MA 조치 포괄유보를 포함	미·호주 FTA 미래유 보 2와 유사. 단, 시장 접근 개선사항이 추가 포함

주: 주요 참고 사항은 **굵게** 또는 **■**으로 표시하였다.
 자료: 호주 외교통상부^a 및 호주 외교통상부^c 참고.

지분을 제한 등), 신문(외국인 지분을 제한) 분야의 현재유보는 배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호주·칠레 FTA에서 미래유보는 미국과의 FTA에서 두었던 미래유보가 대부분 유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방송·시청각 분야(국제공동 제작협정, 기체결 협정 등 유보), 유통(담배·주류·총기 도소매조치 유보)은 누락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민영화조치(모든 분야에서

표 4-6. 호주·칠레 FTA 서비스 분야 시장접근 양허 개선사항

업종(W/120 기준)						CPC Code	시장접근(MA) 제한			주요 특징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명			Mode 1		Mode 2	Mode 3		
1	사업서비스	A	전문직 서비스	a	법률	861	1	1	0.5	자격취득국법, 제3국법 및 국제법 지문 제한 없음, 일부 주 파트너십 및 지역 변호사 고용 불허
1	사업서비스	A	전문직 서비스	b	회계/감사	862	1	1	0.5	감사 및 청산인은 자연인만 허용
1	사업서비스	A	전문직 서비스	c	세무	863	1	1	1	
1	사업서비스	A	전문직 서비스	d	건축(설계)	8671	1	1	1	
1	사업서비스	A	전문직 서비스	e	엔지니어링	8672	1	1	1	
1	사업서비스	A	전문직 서비스	f	통합 엔지니어링	8673	1	1	1	
1	사업서비스	A	전문직 서비스	g	도시계획/경관/건축	8674	1	1	1	
1	사업서비스	A	전문직 서비스	h	의학/치의학	9312	0.5	0.5	0.5	치과업(Dental services)만 제한 없이 양허
1	사업서비스	A	전문직 서비스	l	수의학	932	1	1	1	
1	사업서비스	B	컴퓨터 및 관련 서비스	a	컴퓨터 설비/자문	841	1	1	1	
1	사업서비스	B	컴퓨터 및 관련 서비스	b	S/W 시행	842	1	1	1	
1	사업서비스	B	컴퓨터 및 관련 서비스	c	데이터 프로세싱	843	1	1	1	

표 4-6. 계속

업종(W/120 기준)				CPC Code	시장접근(MA) 제한			주요 특징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명	Mode 1		Mode 2	Mode 3				
1	사업서비스	B	컴퓨터 및 관련 서비스	d	데이터베이스	844	0.5	0.5	0.5	콘텐츠 관련 조치는 양허 제외, 그 외 제한 없음.
1	사업서비스	B	컴퓨터 및 관련 서비스	e	기타 컴퓨터 관련 서비스	845+849	0.5	0.5	0.5	
1	사업서비스	C	연구개발 서비스	b	사회/인문과학 R&D	852	1	1	1	
1	사업서비스	D	부동산 서비스	a	부동산 소유 및 임대	821	0	0	1	상업적 주재 요구
1	사업서비스	D	부동산 서비스	b	부동산 중개/수수료 취득 (감정평가 포함)	822	0	0	1	
1	사업서비스	E	임대서비스 (운전인력 미동반)	a	선박임대	83103	1	1	1	
1	사업서비스	E	임대서비스 (운전인력 미동반)	b	항공기임대	83104	1	1	1	
1	사업서비스	E	임대서비스 (운전인력 미동반)	c	기타 운송장비 임대	83101+83102	1	1	1	
1	사업서비스	E	임대서비스 (운전인력 미동반)	d	기계 및 장비 임대	83106~83109	1	1	1	
1	사업서비스	F	기타 사업 서비스	a	광고	871	1	1	1	
1	사업서비스	F	기타 사업 서비스	b	시장조사/ 여론조사	864	1	1	1	
1	사업서비스	F	기타 사업 서비스	f	농업/임업/ 축산업 관련 서비스	881	1	1	1	
1	사업서비스	F	기타 사업 서비스	g	어업 관련 서비스	882	1	1	1	
1	사업서비스	F	기타 사업 서비스	h	광업 관련 서비스	883	1	1	1	
1	사업서비스	F	기타 사업 서비스	i	제조업 관련 서비스	884+885 (단 88442 제외)	1	1	1	

표 4-6. 계속

업종(W/120 기준)					CPC Code	시장접근(MA) 제한			주요 특징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명		Mode 1		Mode 2	Mode 3			
1	사업서비스	F	기타 사업 서비스	j	에너지 관련 서비스	887	1	1	1	
1	사업서비스	F	기타 사업 서비스	k	인력알선	872	0	1	1	
1	사업서비스	F	기타 사업 서비스	l	수사/경호	873	1	1	1	
1	사업서비스	F	기타 사업 서비스	m	과학/기술 관련 자문	8675	1	1	1	
1	사업서비스	F	기타 사업 서비스	n	장비의 유지/보수	633+8861~8866	1	1	1	
1	사업서비스	F	기타 사업 서비스	o	빌딩청소	874	0	1	1	
1	사업서비스	F	기타 사업 서비스	p	사진	875	1	1	1	
1	사업서비스	F	기타 사업 서비스	s	컨벤션 (회의, 숙박 등)	87909*	1	1	1	
1	사업서비스	F	기타 사업 서비스	t	기타 (번역/통번역/전문디자인 등)	8790	0.5	0.5	0.5	텔레마케팅, 복제, 통번역, mailing list compilation, mailing services, 인테리어 디자인만 제한 없이 양허
2	커뮤니케이션	C	통신 (기본통신)	a	음성전화	7521	1	1	0.5	
2	커뮤니케이션	C	통신 (기본통신)	b	패킷데이터 전송	7523**	1	1	0.5	
2	커뮤니케이션	C	통신 (기본통신)	c	회선데이터 전송	7523**	1	1	0.5	
2	커뮤니케이션	C	통신 (기본통신)	d	텔레кс	7523**	1	1	0.5	신규면허 제한, Telstra 외 국인지분을 제한(전체 35%, 개별 한도 5%)
2	커뮤니케이션	C	통신 (기본통신)	e	텔레그래프 (전신)	7522	1	1	0.5	
2	커뮤니케이션	C	통신 (기본통신)	f	팩시밀리	7521**+7529*	1	1	0.5	
2	커뮤니케이션	C	통신 (기본통신)	g	전용회선(Private leased circuit)	7522**+7523**	1	1	0.5	

표 4-6. 계속

업종(W/120 기준)					CPC Code	시장접근(MA) 제한			주요 특징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명		Mode 1		Mode 2	Mode 3			
2	커뮤니케이션	C	통신 (부가통신)	h	전자메일	7523**	1	1	1	
2	커뮤니케이션	C	통신 (부가통신)	i	음성메일	7523**	1	1	1	
2	커뮤니케이션	C	통신 (부가통신)	j	온라인 정보/DB	7523**	1	1	1	
2	커뮤니케이션	C	통신 (부가통신)	k	EDI	7523**	1	1	1	
2	커뮤니케이션	C	통신 (부가통신)	l	고도/부가 팩시밀리	7523**	1	1	1	
2	커뮤니케이션	C	통신 (부가통신)	m	코드/프로토콜 변환	n.a.	1	1	1	
2	커뮤니케이션	C	통신 (기본통신)	o-01	이동통신, 위성통신 등	n.a.	1	1	0.5	휴대전화 등 양허(신규면허 제한, Telstra 외국인 지분을 제한(전체 35%, 개별 한도 5%))
3	건설/관련 엔지니어링	A	건축물 (일반) 건설			512	0	1	1	
3	건설/관련 엔지니어링	B	토목 엔지니어링 (일반) 건설			513	0	1	1	
3	건설/관련 엔지니어링	C	설치/조립			514(조립)+516(설치)	0	1	1	
3	건설/관련 엔지니어링	D	건축물 완성/마감			517	0	1	1	
3	건설/관련 엔지니어링	E	기타 건설서비스			511 (선시공)+515 (특수건설)+518(기타)	0	1	1	
4	유통	A	위탁중개			621	1	1	1	
4	유통	B	도매			622	1	1	1	
4	유통	C	소매			631+632, 6111+6113+6121	0.5	1	1	Mode 1은 메일오더 제외 미양허, 그 외에도 일반적인 제한품목(담배, 주류, 약품 등)이 있음.

표 4-6. 계속

업종(W/120 기준)				CPC Code	시장접근(MA) 제한			주요 특징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명	Mode 1		Mode 2	Mode 3		
4	유통	D	프랜차이즈	8929	1	1	1	
5	교육	B	중등교육	922	0.5	0.5	0.5	민간 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일반교육, 기술직업 교육은 제한 없이 양허
5	교육	C	고등교육	923	0.5	0.5	0.5	대학을 포함한 민간 tertiary education만 제한 없이 양허
5	교육	E	기타 교육서비스	929	0.5	0.5	0.5	영어교육기관만 제한 없이 양허
6	환경	A	폐수 (하수처리)	9401	0	1	1	
6	환경	B	폐기물 처리	9402	0	1	1	
6	환경	D	기타 환경 서비스	9404+ 9405+ 9406+ 9409	0	1	1	
8	의료보건/사회	B	기타 보건 서비스	9319(93191 제외)	0	0.5	0.5	podiatry and chiropody services, Includes podiatry services carried out in health clinics, and in residential health facilities other than hospitals, as well as in own consulting rooms, patients' homes 등 일부만 Mode 2, 3 제한없이 양허
9	관광/여행 관련	A	호텔/음식점(케이터링 포함)	641-643	0	1	1	Mode 1 상업적 주재 요구
9	관광/여행 관련	B	여행알선 대행	7471	0	1	1	Mode 1 상업적 주재 요구
9	관광/여행 관련	C	관광안내	7472	1	1	1	
10	레크리에이션/문화/스포츠	B	뉴스제공업	962	1	1	1	

표 4-6. 계속

업종(W/120 기준)				CPC Code	시장접근(MA) 제한			주요 특징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명	Mode 1		Mode 2	Mode 3		
10	레크리에이션/문화/스포츠	D 스포츠/레크리에이션		964	1	1	1	
11	운송	A 해상운송	a 여객운송	7211	0.5	1	0.5	Mode 1 정기선, 벌크선 등 제한없음; Mode 3 호주 국적기선 등록 제한요건; 카보타지는 미양허
11	운송	A 해상운송	b 화물운송	7212	0.5	1	0.5	
11	운송	A 해상운송	c 선원 포함 선박임대	7213	1	1	1	
11	운송	A 해상운송	f 해상운송지원 서비스	745**	0	1	1	
11	운송	C 항공운송	d 항공기 유지/보수	8868**	0	1	1	
11	운송	C 항공운송	e 항공운송지원 서비스	746	0	0.5	0.5	Ground handling services, airport operation services (excluding cargo handling), cargo handling (air transport sector only), other supporting services for air transport (excludes airport and terminal)
			CRS		1	1	1	
			항공운송 판매·마케팅		0.5	1	1	여행대리점 관련업은 상업적 주재 필요
11	운송	E 철도운송	b 화물운송	7112	1	1	0.5	
11	운송	E 철도운송	c 여인/견인	7113	1	1	0.5	
11	운송	E 철도운송	e 철도운송지원 서비스	743	1	1	0.5	
11	운송	F 도로운송	a 여객운송	7121+7122	0	0.5	0.5	정기 도시버스는 제외, 여객운송 Mode 2, 3 제한 없음.
11	운송	F 도로운송	b 화물운송	7123	1	1	1	
11	운송	F 도로운송	c 운전자 포함 상업차량 임대	7124	1	1	1	
11	운송	G 파이프라인 운송	a 유류(연료) 운송	7131	1	1	1	
11	운송	G 파이프라인 운송	b 기타 제품운송	7139	1	1	1	

표 4-6. 계속

대분류	업종(W/120 기준)					CPC Code	시장접근(MA) 제한			주요 특징
	중분류	소분류명					Mode 1	Mode 2	Mode 3	
11	운송	H	모든 운송 형태 지원서비스	b	참고	742	0.5	0.5	0.5	
11	운송	H	모든 운송 형태 지원서비스	c	화물운송 대리점	748	0.5	0.5	0.5	해상운송은 제외, 그 외 분야 제한 없이 양허
11	운송	H	모든 운송 형태 지원서비스	d	기타 운송지원 서비스	749	0.5	0.5	0.5	

자료: 호주 외교통상부^c 참고.

정부 소유의 기업이나 자산의 민영화), 농업(곡물류 marketing boards 관련 조치), 교육(중등 및 고등 교육서비스), 도박업에 대한 조치가 미래유보에 새롭게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칠레와의 FTA에서는 시장접근을 포괄유보하면서 시장접근상 양허 개선분야를 포함하고 있다.

[표 4-6]은 호주가 칠레와 체결한 FTA에서 시장접근상 양허 개선분야를 명시한 것을 정리한 내용이다. 여기에 따르면 호주는 총 90개 세부 분야(W/120 기준 88개 분야와 항공운송서비스 미분류 2개 분야를 포함)에서 시장접근상 Mode 1~3에 대한 제한을 개선하였는데, 대부분이 내용은 호주가 WTO에 제출한 DDA 서비스 수정양허안에 근거한 것이다.

5. 캐나다

가. 주요 조항

캐나다는 1989년 미국과의 FTA를 시작으로 1990년대에 NAFTA(1994년), 캐나다·이스라엘 FTA(1997년), 캐나다·칠레 FTA(1997년)를 체결·발효하였다.⁷⁷⁾ 2000년대에 들어서는 2002년 코스타리카와의 FTA가 발효된 후 2008년까지 별다른 성과를 보이지 않았으나, 2009년부터 EFTA(2009년), 페루(2009년), 콜롬비아(2011년), 요르단(2012년), 파나마(2013년)와의 FTA가 체결·발효되었다.⁷⁸⁾ 본 연구에서는 2009년에 발효된 캐나다·페루 FTA와⁷⁹⁾ 2014년에 타결된 한·캐나다 FTA의⁸⁰⁾ 유보 목록을 비교한다.

먼저 협정의 주요 조항을 비교해보면, 두 협정 모두 국경간 서비스 무역 챕터와 투자 챕터를 포함⁸¹⁾하고 있다. 국경간 서비스 무역의 주요 조항의 경우 캐나다·페루 FTA에서는 MFN대우(Article 904), NT(Article 903), MA(Article 906), LP(Article 907) 모두를 포함하며, MFN대우 조항의 경우 미래 MFN을 포함하는 한·미 FTA MFN대우 조항과 동일한 문구로 되어 있다. 한·캐나다 FTA에서는 MFN대우(Article 9.3), NT(Article 9.2), MA(Article 9.4), LP(Article 9.5)를 포함하며, 캐나다·페루 FTA의 조항과 대부분 같은 문구가 사용되고 있다. 투자 챕터의 경우 캐나다·페루 FTA와 한·캐나다 FTA 모두에서 거의 같은 문구로 된 MFN대우, NT, SMBD, PR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캐나다·페루

77) 캐나다 외교통상부^a 참고.

78) 캐나다 외교통상부^a 참고.

79) 캐나다 외교통상부^b 참고.

80) 산업통상자원부^a 참고.

81) 두 협정 모두 Chapter 8이 투자, Chapter 9가 국경간 서비스 무역이다.

FTA와 한·캐나다 FTA의 서비스 챕터와 투자 챕터 모두에 현재유보에 적용되는 역진방지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캐나다·페루 FTA와 한·캐나다 FTA 협정문 조문을 보면 미국이 사용하는 NAFTA 형태의 서비스 협정문 조항과 매우 유사한 항목과 문구로 되어 있다. 이는 캐나다는 물론 우리나라와 페루 모두가 이미 미국과 NAFTA 형태의 서비스·투자 협정을 체결한 바 있기 때문에 캐나다·페루 FTA 및 한·캐나다 FTA 협상 당시 당사국은 조문 자체에 대한 큰 이견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나. 유보내용

캐나다가 페루 및 우리나라와 체결한 FTA에서 유보 목록의 수를 살펴보면, 캐나다·페루 FTA는 현재유보가 27건, 미래유보가 16건이며, 한·캐나다 FTA의 경우 현재유보는 27건으로 동일하고 미래유보가 13건으로 3건 감소하였다. 유보내용을 기준으로 유보 목록의 수를 비교해보면, 현재유보에서 캐나다·페루 FTA 당시 두었던 생산의 수확·가공 관련 제한조치가 한·캐나다 FTA에서는 제외되었으며, 캐나다·페루 FTA에서 미래유보에 포함되었던 통신운송망서비스·무선통신에 대한 투자 관련 제한조치(NT 및 SMDB 제한조치)가 한·캐나다 FTA에서 현재유보로 포함되었다는 차이를 보인다. 미래유보의 경우 전술한 현재유보로 옮겨진 조치 외에 통신운송망서비스·무선통신 관련 2건의 유보 목록과 운송서비스 분야에서 기발효 및 이 협정의 발효 전에 서명된 양자·다자 국제협정에 따라 취해지는 국경간 서비스 관련 MFN대우 차별조치에 대한 유보 내용 등 총 3건이 한·캐나다 FTA에서 제외되었고, 해양기술 검사·분석 서비스 분야에서 선박의 법정 검사 및 인증에 관련된 조치를 채택·유지

할 수 있다는 유보내용이 새로 포함되었다.

다음으로 캐나다의 유보내용상 특징을 살펴보면, 다른 국가의 유보내용에 비해 투자 관련 조치에서는 투자의 심사, 지분 제한, 이행요건 부과 등이 많고, 국경간 서비스 무역과 관련된 조치로는 국적요건(영주권자·시민권자 요구)과 LP 요건(거주요건 또는 캐나다 내 사무소·법인 설립)을 부과하는 조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보 목록을 통해 서비스·투자를 제한하고 있는 분야를 보면, 현재유보의 경우 사업서비스(관세사, 면세점, 문화재 수출입 관련 서비스, 특허대리인, 상표대리인, 금융서비스 감사)와 에너지서비스(석유·가스, 우라늄), 어업(생선의 수확·가공), 항공운송(항공사업자, 항공기·항공제품 수리·정비·유지보수), 육상운송(트럭·버스 서비스), 수상운송(선박등록, 선장·항해사·기술자·선원, 수로안내, 수상운송상 해운동맹 등), 통신서비스(기간통신사업자 등)가 중심이 되며, 미래유보의 경우 일반적인 유보사항(원주민 관련 사항, 어업서비스, 정부재정, 소수집단, 사회서비스 등) 외에 통신서비스, 항공운송, 수상운송(연안해상운송) 등에서 정책주권을 확보하고 있다.

캐나다는 페루와 FTA를 체결한 이후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하면서 기존의 유보사항을 대부분 유지하면서 통신서비스 분야의 제한을 완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캐나다의 유보내용을 보면 전술한 바와 같이 여러 가지 투자제한조치와 국적요건 및 LP 요건을 두고 있고, 에너지 분야에 다양한 조치를 두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캐나다는 전반적으로 현재유보나 미래유보를 통해 제한을 두고자 하는 분야가 많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캐나다가 1989년에 미국과 FTA를 체결하면서 이미 높은 수준으로 서비스 자유화를 약속하고 자국이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제한 조치 또는 분야만을 유지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표 4-7. 캐나다·페루 FTA 및 한·캐나다 FTA에서 캐나다의 현재유보 및 미래유보 주요 내용

관련 부속서	분야	투자 관련 조치						국경간 서비스 조치	정부 수준	조치	유보내용
		MFN		SMB		PR					
		NT	D	NT	D	MA	LP				
현재 유보	모든 분야 All Sectors	X	O	O	O	X	X	X	- 투자자독관 검토요건 : 캐나다 투자법에 의거, 캐나다인이 아닌 사람이 다음의 캐나다 회사를 인수할 때 투자감독관(Director of Investment)의 검토를 조건으로 함. ① 자산 500만 캐나다달러 이상인 캐나다 회사의 직접인수, ② 자산 5,000만 캐나다달러 이상인 캐나다 회사의 간접인수, ③ 자산이 500만-5,000만 캐나다달러로, 이러한 자산이 해당 거래에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지배권이 인수되는 모든 실체들의 자산가치의 50% 초과에 해당하는 캐나다 회사의 간접인수 - 출도의 검토 승인 시 검토대상: 캐나다 문화유산이나 국가정책성과 관련하여 지정된 종류의 사업활동을 하는 신규회사의 구체적인 인수/설립은 신고대상이나 출도 검토를 승인하는 경우 검토대상이 됨. - 캐나다 투자법에 따른 검토대상인 투자는, 캐나다 투자법을 담당하는 장관이 해당 투자가 캐나다에 순이익 될 가능성이 있다(캐나다에 이익이 된다)라고 인정하고 신청인에게 불지해야만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음. - 그 외 캐나다 투자법에 따른 캐나다 기업 인수 제한사항 포함		

※ 한·캐나다 FTA 협제유보 1번째 내용

표 4-7. 계속

관료 부속서	분야	투자 관련 조치				국경간 서비스 관련 조치				정부 수준	조치	유보내용
		MFN		SMB		MFN		조치				
		NT	D	NT	D	NT	MA	LP				
2	모든 분야 All Sectors	X	0	0	X	X	X	X	X			- 캐나다 또는 주/준주는 기존의 공기업/정부기관의 지 분이나 자산을 매각/처분하는 경우 당사국 또는 비당 사국의 투자자 또는 그들의 투자의 지분/자산 소유권 또는 지분/자산의 소유함으로써 기업을 통제하는 능력 을 금지/제한하는 조치를 할 수 있음 - 이와 같은 매각/처분에 관하여 캐나다 또는 주/준주는 SMBD 제한조치를 채택/유지할 수 있음.
												※ 한·캐나다 FTA 현재유보 2번째 내용
3	모든 분야 All Sectors	X	0	X	X	X	X	X	X			- 연방단위에서 설립된 회사(federally incorporated corporations)의 지분을 발생/양도/소유하는 것에 대 한 제한을 부과할 수 있음. 이러한 제한의 목적은 캐나 다인의 소유/지배가 만회/하기/보조금지금금 또는 그 밖의 혜택을 받는 조건으로 요구되는 분야에서, 회사 가 캐나다 회사규정에 명시된 특정 법에 따른 캐나다 인 소유/지배 요건을 충족하도록 허용하기 위한 것임. 특정 캐나다인 소유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회사는 주주 의 합의 없이 주주의 주식을 매각하고 공개시장에서 자사의 주식을 매입하는 것이 허용됨 ※ 한·캐나다 FTA 현재유보 3번째 내용 중 '과' 동일 2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캐나다 합동조합법에 따라 캐나다인의 소유권/배수 준에 부정한 영향을 미치는 투자지분을 제한하거나 투자지분의 소유를 금지할 수 있음
												※ 한·캐나다 FTA 현재유보 2번째 내용

표 4-7. 계속

관료 부속서	분야	투자 관련 조치				국경간 서비스 관련 조치				정부 수준	조치	유보내용
		MFN	NT	SMB D	PR	MFN	NT	MA	LP			
현재 유보	모든 분야 All Sectors	X	X	O	X	X	X	X	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anada Business Corporations Act, R.S.C. 1985, c. C-44(동일) - Canada Business Corporations Act Regulations, SOR/79-316(삭제) - Canada Business Corporations Regulations, SOR/2001-512 - Canada Cooperatives Act, S.C. 1998, c. 1(신규추가) - Canada Corporations Act, R.S.C. 1970, c. C-32(동일) - Special Acts of Parliament incorporating specific companies (동일) 	<p>- 이사 거주요건: > (25% 이상) 연방단위에서 설립된 회사(federally incorporated corporations)의 경우 이사의 25% 이상이 캐나다 거주자일 것, 이사가 4인 미만인 경우 최소 1인 이상이 캐나다 거주자일 것을 요구함. > (과반수 이상) 우라늄 광업, 석적 출판/유통, 서적판매, 영화/영상물 유통의 경우 이사의 과반수가 캐나다 거주자일 것을 요구함. 의회법/규정에 의거 개별적으로 최소 캐나다인 소유요건이 적용되는 회사는 이사의 과반수가 캐나다 거주자이어야 함.</p> <p>- 지주회사 이사 거주요건: 지주회사의 경우 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의 캐나다 내 수익이 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 총수익의 5% 미만인 경우 이사의 1/3 이하가 캐나다 거주자여야 함.</p> <p>※ 한·캐나다 FTA 협재유보 4번째 내용 중 1-3, 6과 동일. 다음의 내용은 한·캐나다 FTA에 추가된 협재유보 내용임.</p> <p>※ 한·캐나다 FTA 협재유보 4번째 내용 중 1-3, 6과 동일. 다음의 내용은 한·캐나다 FTA에 추가된 협재유보 내용임.</p> <p>※ 한·캐나다 FTA 협재유보 4번째 내용 중 1-3, 6과 동일. 다음의 내용은 한·캐나다 FTA에 추가된 협재유보 내용임.</p> <p>※ 한·캐나다 FTA 협재유보 4번째 내용 중 1-3, 6과 동일. 다음의 내용은 한·캐나다 FTA에 추가된 협재유보 내용임.</p>

표 4-7. 계속

관련 부속서	분야	투자 관련 조치				국경간 서비스 관련 조치				정부 수준	조치	유보내용				
		MFN		SMB		PR		D					MFN	NT	MA	LP
		NT	D	NT	D	NT	D									
5	모든 분야 All Sectors	X	O	X	X	X	X	X	X	X	X	X	- 외국인투자소유정도는 시민권법 및 농업및농업용토지 소유법에 따라 제정됨. 엘버타주의 경우 자격이 없는 자 또는 외국인이 소유/지배하는 회사는 총합이 최대 20에이커를 포함하는 최대 2필지로 구성되는 규제대 실태 에 대한 지분만 보유 가능함. >자격이 없는 자: 캐나다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아닌 자, 외국 정부/정부기관, 캐나다가 아닌 국가에서 설립된 회사; >규제대상토지: 엘버타 정부 토지, city/town/new town/village/summer village 내의 토지, 광산/광물 ※ 한·캐나다 FTA 협제유보 5번째 내용			
6	모든 분야 All Sectors	X	O	X	X	X	X	X	X	X	X	X	- 특정 법이 적용되는 주요 회사에 대한 비거주자비거주자들의 지분 제한: ① 에어캐나다: 총 25%까지; ② 카메코 유한책임회사: 비거주자 자연인 1인 15%까지, 총 25%까지; ③ 노르디온 인터네셔널 주식회사: 총 25%까지; ④ 써라트론닉스 인터네셔널 유한책임회사: 총 49%까지; ⑤ 캐네디언 아스날스 유한책임회사: 총 25%까지 - 비거주자는 ① 캐나다 시민이 아니면서 통상 캐나다에 거주하지 않는 자연인, ② 캐나다 밖에서 설립/정성된 회사, ③ ①-②에 해당하는 인실체에 의해 직접/간접적으로 지배되는 회사, ④ 신탁, ⑤ ④에 언급된 신탁에 의해 직접/간접적으로 지배되는 회사 ※ 한·캐나다 FTA 협제유보 6번째 내용과 동일. 한·캐나다 FTA의 경우 비거주자의 정의에 다음 사항 추가 - ⑥ 외국정부 또는 정부의 행정구역, 외국 국가 또는 그러한 정부를 대신해 위임을 받은 자			

표 4-7. 계속

관련 부속서	분야	투자·관련 조치								국경간 서비스 관련 조치				조치	유보내용
		MFN	NT	SMB	PR	MFN	NT	MA	LP	정부 수준					
7	모든 분야 All Sectors	X	X	X	X	X	X	X	O					- 캐나다 거주 자연인, 캐나다에 본사를 둔 기업 또는 외국기업의 캐나다 지점만이 수출입허가법(Export and Import Permits Act)에 따른 통제를 조건으로 상품 또는 관련 서비스에 대한 수입/수출 허가 또는 통관 승인 증명서를 신청하거나 교부받을 수 있음. ※ 한·캐나다 FTA 협자유보 7번째 내용	
														- 캐나다 국민인 자연인만이 캐나다 관세사 면허 취득이 가능 - 캐나다에 회사 설립이 요구되고, 이사 과반수 국적요건 적용 - 파트너십은 캐나다 국민 또는 캐나다에서 설립되고 이사의 과반수가 캐나다 국민인 회사로 구성되어야 함. ※ 한·캐나다 FTA 협자유보 8번째 내용	
8	사업서비스- 관세사 Business Service Industries-toms Brokers (SIC 7794, CPC 749)	X	X	O	X	X	X	O	X					- Customs Act, R.S.C. 1985, c. 1 (2nd Supp.) - Customs Brokers Licensing Regulations, SOR/86-1067	
9	사업서비스- 면세점 Business Service Industries-Duty Free Shops (SIC 6599, CPC 631, 632)	X	O	X	X	X	X	O	X					- 캐나다 국경을 통과하는 토지에서 면세점 운영자가 되기 위한 자연인/회사의 요건 부과 ▷ 자연인 : 캐나다 국민, 좋은 성품 보유, 캐나다에 주로 거주, 면허신청 연도 전년에 최소 183일을 캐나다에 거주했을 것 ▷ 회사 : 캐나다에서 설립된 회사, 상기의 자연인 요건을 충족하는 캐나다 국민이 모든 주식을 실질적으로 소유 ※ 한·캐나다 FTA 협자유보 9번째 내용	

표 4-7. 계속

관련 부속서	분야	투자 관련 조치				국경간 서비스 관련 조치				정부 수준	조치	유보내용
		MFN	NT	SMB	D	PR	MFN	NT	MA			
10	사업서비스- 문화재 수출입 관련 검사서비스 Business Service Industries-Examination Services relating to the Export and Import of Cultural Property(SIC 999, CPC 96321, 87909)	X	X	X	X	X	X	X	X	O	- Cultural Property Export and Import Act, R.S.C. 1985, c. C-51	- 캐나다 거주자 또는 캐나다에 있는 기업만이 문화재수출입법 목적상 문화재 진문 검사자로 지정될 수 있음. ※ 한·캐나다 FTA 협제유보 10번째 내용
현재 유보	사업서비스- 특허대리인 Business Service Industries-Patent Agents and Agencies(SIC 999, CPC 9921)	X	X	X	X	X	X	X	X	O	- Patent Act, R.S.C. 1985, c. P-4(동일) - Patent Rules, C.R.C. 1978, c. 1250(삭제) - Patent Rules, SOR/96-423(신규 추가) - Patent Cooperation Treaty Regulations, SOR/89-453(삭제)	- 특허대리인에 대한 거주요건: 특허청에서 특허출원을 수행하거나 다른 업무를 대리하기 위해 특허대리인은 캐나다 거주자이어야 하며, 특허청에 등록 필요 ※ 한·캐나다 FTA 협제유보 11번째 내용

표 4-7. 계속

관료 부속서	분야	투자 관련 조치						국경간 서비스 관련 조치				정부 수준	조치	유보내용		
		MFN		SMB		PR		MFN		MA					LP	
		NT	D	NT	D	NT	MA	NT	MA	NT	LP					
12	사업서비스- 상표대리인 Business Service Industries-Trade -Mark Agents(SIC 999, CPC 86120 => 8922)	X		X	X	X				X	O			- Trade-Marks Act, R.S.C. 1985, c. T-13(동일) - Trade-mark Regulations (1996), SOR/96-195(삭제) - Trade-marks Regulations, SOR/ 96-195; SOR/2007-91, s.1(신규추가) ※ 한·캐나다 FTA 협제유보 12번째 내용 - 상표청에 상표출원 수행이나 다른 업무를 대리하기 위해 상표대리인은 캐나다 거주자이어야 하며, 상표청에 등록 필요		
	현재 유보													- Canada Petroleum Resources Act, R.S.C. 1985, c. 36 (2nd Supp.) (동일) - Territorial Lands Act, R.S.C. 1985, c. T-7(동일) - Federal Real Property and Federal Immoveables Act, S.C. 1991, c. 50 (동일) - Canada-Newfoundland Atlantic Accord Implementation Act, S.C. 1987, c. 3(동일) - Canada-Nova Scotia Offshore Petroleum Resources(동일) - Accord Implementation Act, S.C. 1988, c. 28(동일) - Canada Oil and Gas Land Regulations, C.R.C. 1978, c. 1518(삭제)		
13	에너지- 석유/가스 Energy- Oil and Gas SIC 071, CPC 883)	X	O	X	X	X	X	X	X	X	X			- 이 유보사항은 적용가능한 조치에 정의된 대로 국경지대 및 연안지역에 대해 발생하는 생산면허에 적용 - 석유/가스 생산면허 또는 그에 대한 지분을 가진 인은 캐나다에서 설립된 회사로 제한 ※ 한·캐나다 FTA 협제유보 13번째 내용		

표 4-7. 계속

관료 부속서	분야	투자 관련 조치				국경간 서비스 관련 조치				정부 수준	조치	유보내용
		MFN	NT	SMB D	PR	MFN	NT	MA	LP			
현재 유보	에너지- 석유/가스 Energy - Oil and Gas SIC 071, CPC 883)	X	X	X	O	X	X	X	O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anada Oil and Gas Production and Conservation Act, R.S.C. 1985, c. 0-7, as amended by Canada Oil and Gas Operations Act, S.C. 1992, c. 35(동일) - Canada - Nova Scotia Offshore Petroleum Resources(동일) - Accord Implementation Act, S.C. 1988, c. 28(동일) - Canada- Newfoundland Atlantic Accord Implementation Act, S.C. 1987, c. 3(동일) - Measures implementing Yukon Oil and Gas Accord(동일) - Measures implementing Northwest Territories Oil and Gas Accord(동일) - Measures implementing the Canada-Quebec Gulf of St. Lawrence Petroleum Resources Accord(신규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캐나다 석유 및 가스 운영법에 따라, 석유/가스 개발사업을 이행하도록 인가를 받기 위해 복지계획(benefits plan)이 정공의 승인을 받아야 함. 복지계획은 캐나다 인의 고용/복지 계획에 언급된 제안 업무/활동에 사용 되는 상품/서비스의 공급에 경쟁에 기초하여 참여할 수 있는 완전하고 공평한 기회를 캐나다 제조사/건설 터트/계약자/서비스회사에 제공하기 위한 계획임. - 캐나다-노바스코샤 연인석유자원협약 실행법 및 캐나다-뉴펀들랜드 대서양협약 실행법에 의거 복지계획상 다음을 보장할 것을 요구함. >계획을 제출하는 회사 나 기타 기구는 연인지역에서 임무나 활동을 수행하기 전에 적용가능한 주에 적절한 수준의 의사결정이 발생 될 사무소를 설립할 것. >주에서 이행될 연구/개발 및 주에서 제공될 교육/훈련을 위해 지출할 것. >주 내에서 생산된 상품이나 제공되는 서비스가 공정시기/품질/납품 측면에서 경쟁력이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 - 이러한 법에 따라 복지계획을 운영하는 이사회는 필요 시 복지계획에 대한 추가요건을 부과할 수 있음. - 캐나다는 적용가능한 법에 따른 개발사업 승인과 관련 하여 캐나다인에게 기술/생산공정/그밖의 재산권적 지식의 이전을 위한 요건을 부과하거나 약속의무담을 집행할 수 있음.

표 4-7. 계속

관련 부속서	분야	투자 관련 조치		국경간 서비스 관련 조치					정부 수준	조치	유보내용
		MFN	NT	SMB	D	PR	MFN	NT			
15	에너지-석유/가스 Energy - Oil and Gas(SIC 071, CPC 883)	X	X	X	O	X	X	X	X	- Canada- Newfoundland Atlantic Accord Implementation Act, S.C. 1987, c. 3(동일) - Fibertia Development Project Act, S.C. 1990, c. 41(동일)	<p>※ 한·캐나다 FTA 협제유보 14번째 내용에 상기 내용 포함. 한·캐나다 FTA 협제유보 14번째에서는 다음의 내용도 추가 포함</p> <p>- 캐나다 석유 및 가스 운영법에 의해 장관은 신청자에게 복지계획에 대한 추가요건을 부과할 수 있음.</p> <p>- 캐나다 석유 및 가스 운영법에 규정된 내용을 계속하는 규정은 캐나다-유연 석유 및 가스 협약을 실행하는 법에 포함됨.</p> <p>- 캐나다 석유 및 가스 운영법에 규정된 내용을 계속하는 규정은 노스웨스트 준주 석유 및 가스 협약, 그리고 캐나다-퀘벡 세인트로렌스만 석유저원협약을 실행하기 위한 법이나 규정에 포함될 것임. 이 유보사항의 목적상 이러한 협약들은 일단 체결되면 기존의 조치인 것으로 간주됨.</p> <p>- 히베르니아 개발사업법에 따라 캐나다와 히베르니아 사업 소유주들은 캐나다-뉴펀들랜드 대서양항의 실행 법이 요구하는 복지계획의 수준을 사업소유주가 최선을 다해 달성하도록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p> <p>- 캐나다는 히베르니아 사업과 관련하여 기술생산공정/그밖의 재산권저 지식을 캐나다 국민/기업에 이전하는 요건을 부과할 수 있음.</p> <p>※ 한·캐나다 FTA 협제유보 16번째 내용</p>
현재 유보											

표 4-7. 계속

관련 부속서	분야	투자 관련 조치						국경간 서비스 관련 조치				정부 수준	조치	유보내용		
		MFN		SMB		PR		MA	NT	MFN	NT				MA	LP
		NT	D	NT	D	MFN	PR									
16	에너지- 우라늄 Energy- Uranium (SIC 0616, CPC 883)	0	0	X	X	X	X	X	X	X	X	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nvestment Canada Act, R.S.C. 1985, c. 28 (1st Supp.) (동일) - Investment Canada Regulations, SOR/85-611 (동일) - Policy on Non Resident Ownership in the Uranium Mining Sector, 1987 (동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캐나다인의 우라늄 광업권 소유권은 최초 생산단계에서 49%까지 허용됨. 단 실제 캐나다인에 의해 지배 되는 것으로 증명되는 경우 예외 인정. - 광업권 소유권에 캐나다 참여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에만 총독의 승인하에 제한이 면제됨. 1987년 12월 23일 이전에 발생된 재산권은 유지되나 소유권 증가는 불허함 		
17	어업- 생선 수확/가공 Fisheries- Fish Harvesting and Processing (SIC 031, CPC 882)	X	0	X	X	X	X	X	X	X	X	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olicy on Foreign Investment in the Canadian Fisheries Sector, 1985 - Commercial Fisheries Licensing Policy - Fisheries Act, R.S.C. 1985, c. F-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지분율이 49%를 초과하는 생산자공기업에 캐나다 상임어업면허를 금지함. 		
18	전문직/기술/전문 서비스- 감사서비스- Professional, Technical and Specialized Services-Audit Services (CPC 862)	X	X	X	X	0	0	0	0	0	0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ank Act, S.C. 1991, c. 46 (동일) - Insurance Companies Act, S.C. 1991, c. 47 (동일) - Cooperative Credit Associations Act, S.C. 1991, c. 48 (동일) - Trust and Loan Companies Act, S.C. 1991, c. 45 (동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행의 감사로 회계법인 신청이 요구됨. 회계법인은 은행법의 규정에 따라 자격을 갖추어야 함. 이 자격으로 법인 2인 이상의 구성원이 캐나다에서 통상적으로 거주할 것. 법인과 은행에 의해 감사를 수행하도록 지명된 법인의 구성원은 캐나다에서 통상적으로 거주하는 일인 것 등을 요구 - 보험회사/신용협동조합/신탁회사/대부회사는 자연인이나 회계법인인 감사인을 필요로 함. 이러한 기관의 감사는, > 자연인인 경우 캐나다에 통상적으로 거주해야 하며, > 법인인 경우 구성원이 캐나다에 통상적으로 거주해야 함. 		

※ 한·캐나다 FTA 협제유보 16번째 내용

※ 한·캐나다 FTA 협제유보 17번째 내용

표 4-7. 계속

관련 부속서	분야	투자 관련 조치		국경간 서비스 관련 조치					정부 수준	조치	유보내용
		MFN	NT	SMB	D	PR	MFN	NT			
19	운송 항공운송 Transportation-Air Transportation(SI C 451, CPC 731, 732)	X	O	X	X	X	X	X	X	- Canada Transportation Act, S.C. 1996, c.10(동일) - Aeronautics Act, R.S.C. 1985, c. A-2(동일) - Canadian Aviation Regulations, SOR/96-433 / Part II "Aircraft Markings & Registration"; Part IV "Personnel Licensing & Training"; and Part VII "Commercial Air Services". (동일)	- 캐나다인만이 캐나다 항공사업자 증명서를 취득할 수 있고, 캐나다인만이 항공기를 캐나다의 항공기로 등록할 수 있음. - 다음의 항공운송서비스는 캐나다인만이 공급 가능 : ▷국내서비스, ▷기존 또는 미래의 항공서비스협정에 따라 정기 국제서비스가 캐나다 운송인에게 우보된 경우 정기 국제서비스, ▷캐나다 운송법에 따라 부정기 국제서비스가 캐나다 운송인에게 우보된 경우 부정기 국제서비스, ▷특수항공서비스 - 외국인은 캐나다 등록 항공기의 소유자가 될 수 없음. - 캐나다에서 설립되더라도 캐나다인 소유권 및 지배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회사는 항공기 사용의 60% 이상이 캐나다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시적인 용도의 항공기로만 등록 가능 - 캐나다인이 아닌 회사에 등록된 외국 등록 민간항공기는 12개월 중 최대 90일까지만 캐나다에 위치할 수 있음. 단, 사전 옹도로 제한
											※ 한·캐나다 FTA 협제유보 18번째 내용
20	운송 항공운송 Transportation-Air Transportation(SI C 4523항공기 서비스 산업, 3211(항공기 및 항공기부품 산업))	X	X	X	X	X	X	X	O	- Aeronautics Act, R.S.C. 1985, c. A-2(동일) - Canadian Aviation Regulations, SOR/96-433 / Part IV "Personnel Licensing & Training"; Part V "Airworthiness"; Part VI "General Operating & Flight Rules"; and Part VII "Commercial Air Services" (동일)	- 캐나다 등록 항공기/항공제품의 수리/정비/기타 유지 보수 활동은 캐나다 항공규제요건에 따라 캐나다 내부에 위치한 승인된 인력 기능
											※ 한·캐나다 FTA 협제유보 19번째 내용

표 4-7. 계속

관료 부속서	분야	투자 관련 조치				국경간 서비스 관련 조치				정부 수준	조치	유보내용
		MFN	NT	SMB D	PR	MFN	NT	MA	LP			
21	운송-육상운송 Transportation-L and Transportation(S)	X	X	X	X	X	O	X	O	- Motor Vehicle Transport Act, R.S.C. 1985, c. 28 (3rd Supp.), as amended by S.C. 2001, c. 13 (동일) - Canada Transportation Act, S.C. 1996, c. 10 (동일) - Customs Tariff, 1997, c. 36 (동일)	- 캐나다 영토 내의 지점 간 트럭/버스 서비스 제공은 캐나다에 등록되고 캐나다에서 제조되거나 관세가 납 부된 트럭/버스를 사용하는 캐나다인이 가능 ※ 한·캐나다 FTA 협제유보 20번째 내용	
	C 456, 4572, 4573, 2574, CPC 7121, 7122, 7123, 7512)											
22	운송-수상운송 Transportation- Water Transportation (SIC 4541, 4542, 4543, 4549, 4559, CPC 721, 722, 74540, 74590, =) 74540, 74590를 745로 조정, 5133/5223 추가)	X	X	X	X	X	O	X	O	- Canada Shipping Act, R.S.C. 1985, c. S-9, Part (삭제) - Canada Shipping Act, 2001, S.C. 2001, c. 26(추가)	- 캐나다에서 선박을 등록할 수 있는 선박 소유자/선박 독점 점유자 제한: ▷캐나다 시민권자/영주권자, ▷캐 나다/수/준주의 국내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 ▷선박이 다른 국가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 외국에서 설립된 회사일 때 일정 요건 충족 시 등록 허용 - 용선주가 캐나다 시민권자/영주권자, 캐나다/작/준주 의 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인 경우 선체 용선된 외국에 서 등록된 선박은 선박의 등록이 등록국에서 정해진 동안에 입차기간 동안 캐나다에서 등록 가능 ※ 한·캐나다 FTA 협제유보 21번째 내용	

표 4-7. 계속

관료 부속서	분야	투자 관련 조치				국경간 서비스 관련 조치				정부 수준	조치	유보내용
		SMB		PR		MFN		NT				
		MFN	NT	D		MA	LP					
23	운송 수송운송 Transportation- Water Transportation(SI C 4541, 4542, 4543, 4549, 4559, CPC 721, 722, 74540, 74590, =) 74540, 74590를 745로 조정, 5133/5223 추가)	X	X	X	X	X	X	X	X	O	O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anada Shipping Act, R.S.C. 1985, c. S-9, Part (삭제) - Canada Shipping Act, 2001, S.C. 2001, c. 26(추가) - Marine Certification Regulations, SOR 97-391(삭제) - Marine Personnel Regulations, SOR/2007-115(추가) <p>- 선장/항해사/기술자/그 외 특정 선원은 캐나다 등록 선박에서 근무하기 위해 운송부 장관이 발부한 증명서를 보유해야 함. 이 증명서는 캐나다 시민권자/영주권자에게만 발부됨</p> <p>※ 한·캐나다 FTA 협자유보 22번째 내용</p>
	현재 유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ilotage Act, R.S.C., 1985, c. P-14(동일) - General Pilotage Regulations, SOR/2000-132(동일) - Atlantic Pilotage Authority Regulations, C.R.C. 1978, c. 1264(동일) - Laurentian Pilotage Authority Regulations, C.R.C. 1978, c. 1268(동일) - Great Lakes Pilotage Regulations, C.R.C. 1978, c. 1266(동일) - Pacific Pilotage Regulations, C.R.C. 1978, c. 1270(동일) <p>- 캐나다의 관련 미래유보(Annex II-C 18-19페이지)지함 . 캐나다 FTA는 12-13페이지)를 조건으로, 캐나다 영토의 의무수송안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관련 지역 수로관리국에서 발행하는 수로안내증명서를 보유해야 함. 이 증명서는 캐나다 시민권자/영주권자만 취득 가능함. 도전자 면허/수송안내증을 발급받은 캐나다 영주권자가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면허나 수로안내증명서 수령으로부터 5년 내에 캐나다 시민권자가 되어야 함.</p> <p>※ 한·캐나다 FTA 협자유보 23번째 내용</p>

표 4-7. 계속

관료 부속서	분야	투자 관련 조치				국경간 서비스 관련 조치				정부 수준	조치	유보내용
		MFN	NT	SMB D	PR	MFN	NT	MA	LP			
25	운송 수송운송 Transportation- Water Transportation (SIC)											
	4544(수상운송사 업), CPC 721(원양선박 운송사업), 722(비원양선박 운송사업)	X	X	X	X	X	X	X	O			- Shipping Conferences Exemption - 해운동맹의 구성원들은 그들이 영항하는 캐나다 지역 Act, 1987, R.S.C. 1985, C. 17 에 공동으로 사무소나 대리점을 유지해야 함. ※ 한·캐나다 FTA 협재유보 24번째 내용
26	운송 수송운송 Transportation- Water Transportation (SIC)											
	4541(화물/여객 수송운송업), 4542(도선사업), 4543(해양예인선 업), CPC 721(원양선박 운송사업), 722(비원양선박 운송사업)	X	X	X	X	O	X	X	X			- 캐나다의 관련 미래유보(Annex II-C 16-17페이지)한·캐나다 FTA는 9-11페이지)에 규정된 연안무역범에 따른 금지는 미국정부가 소유하는 상품을 원거리조기 경보지점에 공급하기 위해 캐나다 영토에서 운송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경우, 미국정부가 소유한 선박에 적용되지 않음. ※ 한·캐나다 FTA 협재유보 25번째 내용

표 4-7. 계속

관료 부속서	분야	투자 관련 조치				국경간 서비스 관련 조치				정부 수준	조치	유보내용
		MFN	NT	SMB D	PR	MFN	NT	MA	LP			
27	모든 분야 All Sectors	0	0	0	0	0	0	0	0	0	- All existing non-conforming measures of all provinces and territories(동일) - 모든 지방정부의 비합치 조치를 현재 유보함. ※ 한·캐나다 FTA 현재유보 27번째 내용, 단 여기에 시는 일부 변경됨 - 투명성민의 목적상 Appendix I-A는 지역정부에서 유지 되는 비합치조치의 예시적/비구속적 목록을 규정함.	
28	통신- 통신운송망서비스 통신통신 Communications	X	0	0	X	X	X	X	X	X	※ 한·캐나다 FTA 현재유보 26번째에만 포함된 내용 (캐나다·피루 FTA의 경우 미래유보 3번째 내용에 일부 포함) - 다음의 조치를 채택/유지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 △기 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투자 제한직접투자 20%, 간접투자 33.3%, 의결권 있는 지분의 누적 합계 46.7%, △기간통신사업자는 실제 캐나다인에 의해 지배되어야 함, △ 기간통신사업자 이사회의 최소 80%가 캐나다인인 것 - 다음의 예외 적용: △국제해저케이블면허에 따라 영업 하는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외국인투자 100% 허용, △캐나다인 서비스 공급자는 캐나다에서 서비스를 공 급하기 위해 외국 서비스 공급자의 우선위성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음, △외국 서비스 공급자의 고정위성시스 템은 캐나다 내 지점과 캐나다 외부의 모든 지점 간에 따라 영입하는 공급자에 대한 외국인투자 100% 허용, △캐나다에서 통신서비스 공급으로부터의 소득이 캐 나다에서의 통신서비스 연간 수입총액의 10% 미만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투자 100% 허용	

표 4-7. 계속

관료 부속서	분야	투자 관련 조치				국경간 서비스 관련 조치				정부 수준	조치	유보내용
		MFN	NT	SMB D	PR	MFN	NT	MA	LP			
1	원주민 관련 사항 Aboriginal Affairs	0	0	0	0	0	0	0	0	- Constitution Act, 1982, being Schedule B of the Canada Act 1982 (U.K.), 1982, c. 11(동일)	- 캐나다는 원주민에게 제공되는 권리와 우선권을 협정 당사국의 투자자 및 그들의 투자 또는 협정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는 부인하는 조치를 채택/유지할 권리를 유보	
		※ 한·캐나다 FTA 미래유보 1번째 내용										
2	모든 분야 All sectors	X	0	X	X	X	X	X	X	- 협정 당사국의 투자자 또는 그들의 투자가 임해지 (oceanfront land)를 소유하기 위한 거주요건과 관련한 조치를 채택/유지할 권리를 유보	- 협정 당사국의 투자자 또는 그들의 투자가 임해지 (oceanfront land)를 소유하기 위한 거주요건과 관련한 조치를 채택/유지할 권리를 유보	
		※ 한·캐나다 FTA 미래유보 2번째 내용										
미래 유보	통신- 통신운송망서비스 통신통신 Communications									- Telecommunications Act, S.C. 1993, c. 38(동일)	- 다음의 조치를 채택/유지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 : ▷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투자 제한(직접투자 46.7%), ▷ 기간통신사업자는 실제 캐나다인에 의해 지배되어야 함, ▷ 기간통신사업자 이사회 의 최소 80%가 캐나다인일 것	
		※ 한·캐나다 FTA 미래유보 2번째 내용										
3	Telecommuni cations Networks and Services, Radiocommunic ation (CPC 752)	X	0	0	X	X	X	X	X	- Canadian Telecommunications Common Carrier Ownership and Control Regulations SOR/94-667 (동일)	- 다음의 예외 적용: ▷ 국제해저케이블면허에 따라 영입 하는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외국인투자 100% 허용, ▷ 캐나다인 서비스 공급자는 캐나다에서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 외국 서비스 공급자의 우선위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음 ▷ 외국 서비스 공급자의 고정위성시스템은 캐나다 내 지점과 캐나다 외부의 모든 지점 간에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 사용 가능	
		※ 한·캐나다 FTA 미래유보 28번째 내용에 모두 포함										

표 4-7. 계속

관련 부속서	분야	투자 관련 조치				국경간 서비스 관련 조치				정부 수준	조치	유보내용
		MFN	NT	SMB	D	PR	MFN	NT	MA			
4	통신·통신운송망 서비스/무선통신 서비스										- Radiocommunication Act, R.S.C. 1985, c. R-2 - Radiocommunication Regulations SOR/96-484	- 캐나다는 휴대전화서비스를 제외한 CPC 7529로 분류되는 서비스 및 무선 통신서비스로 분류되는 서비스에 대한 투자 및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조치를 채택/유지할 권리를 유보 * [한·캐나다 FTA]의 경우 이 유보사항 불포함
	Telecommunications Transport Networks and Services(CPC 7529, 7549)	X	O	O	X	X	X	X	O	- Canadian Telecommunications Common Carrier Ownership and Control Regulations SOR/94-667		
미래 유보	통신·통신운송망 서비스/무선통신 서비스											
5	통신·통신운송망 서비스/무선통신 서비스										- Telecommunications Act, S.C. 1993, c. 38	- 캐나다는 노스웨스트셀스(Northwestel Inc.)의 서비스 지역에서 지역 유선전화서비스 공급에 대한 경쟁제한 조치를 채택/유지할 권리를 유보 * [한·캐나다 FTA]의 경우 이 유보사항 불포함
	Telecommunications Transport Networks and Services(CPC 752, 7543, 7549)	X	O	X	X	X	X	X	X			

표 4-7. 계속

관료 부속서	분야	투자 관련 조치								국경간 서비스 관련 조치				정부 수준	조치	유보내용				
		MFN		NT		SMB		PR		MFN		NT					MA		LP	
6	어업- 어업/ 어업 관련 서비스 Fisheries-Fishing and Fishing Related Servic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astal Fisheries Protection Act, R.S.C. 1985, c. C-33(동일) - Fisheries Act, R.S.C. 1985, c. F14(동일) - Coastal Fisheries Protection Regulations, C.R.C. 1978, c. 413(동일) - Commercial Fisheries Licensing Policy(동일) - Policy on Foreign Investment in the Canadian Fisheries Sector, 1985(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어선이 캐나다의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 내수 또는 항구에 접안하는 것 및 그곳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포함하여 어업 또는 어업 관련 활동 면허와 관련된 조치를 채택/유지할 권리를 유보 	
	(SIC 031(어업), 032(어업관련서비스), CPC 비스), CPC 882(어업관련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캐나다 FTA 미레유보 3번째 내용 	
7	정부재정- 증권 Government Finance-Securiti 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캐나다 정부지방정부가 발행한 채권/국채/그밖의 종류의 채무증권을 협정 당사국 국민이 취득/매각/처분하는 것과 관련된 조치를 채택/유지할 권리를 유보 	
	(SIC 8152(금융 및 경제 행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캐나다 FTA 미레유보 4번째 내용 	
8	소수집단 관련 사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경제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한 소수집단에 권리/특권을 부여하는 조치를 채택/유지할 권리를 유보 	
	Minority Affair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캐나다 FTA 미레유보 5번째 내용 	

표 4-7. 계속

관련 부속서	분야	투자 관련 조치				국경간 서비스 관련 조치				정부 수준	조치	유보내용
		MFN	NT	SMB	PR	MFN	NT	MA	LP			
9	사회서비스 Social Services	X	0	0	X	0	0	X	0			- 법 집행/조정 서비스 제공과 소득 보장/보험, 사회 보장/보험, 사회복지, 공교육, 공공훈련, 보건, 교역이 공공 목적으로 설립되거나 유지되는 사회서비스인 경우 서비스의 공급과 관련된 조치를 채택/유지할 권리를 유보 ※ 한·캐나다 FTA 미래유보 6번째 내용
		0										
미래 유보	운송 항공운송 Transportation-Air Transportation (SIC 4523)항공기 서비스 산업, 3211(항공기 및 항공기 부품 산업)	X	X	X	X	0	X	X	X			- 수리/정비/유지보수 및 캐나다 등륙 항공기와 그밖의 관련 항공제품에 대해 수행된 작업에 관한 설비의 증명에 대해 그들의 승인을 인정하기 위해 다른 국가, 국가의 조치, 항공 당국 또는 서비스 공급자와 선택적으로 협정이나 악정을 협상할 권리를 유보 ※ 한·캐나다 FTA 미래유보 7번째 내용
11	운송 항공운송 Transportation-Air Transportation (SIC 451 (항공운송산업))	X	X	X	X	0	0	X	0			- 항공운송서비스의 판매/마케팅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를 채택/유지할 권리를 유보 ※ 한·캐나다 FTA 미래유보 8번째 내용

표 4-7. 계속

관련 부속서	분야	투자 관련 조치						국경간 서비스 관련 조치				정부 수준	조치	유보내용
		MFN	NT	SMB	PR	D		MFN	NT	MA	LP			
미래 유보	운송 수송운송 Transportation- Water Transportation(SI C 4129, 4541, 4542, 4543, 4549, 4552, 4553, 4554, 4559, OPC 52232, 721, 722, 74510, 74520, 74590)	0	0	0	0	0	0	0	0	0	0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asting Trade Act, S.C. 1992, c. 31(동일) - Canada Shipping Act, R.S.C. 1985, c. S-9(삭제) - Canada Shipping Act, 2001, S.C. 2001, c. 26(추가) - Customs Act, R.S.C. 1985, c. 1 (2nd Supp.)(동일) - Customs and Excise Offshore Application Act, R.S.C. 1985, c. C-53(동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을 포함하는 연안해상운송서비스에 대한 투자 또는 서비스 제공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를 채택/유지할 권리를 유보: ▷ 직접적으로 또는 캐나다 외부의 장소를 경유하여, 캐나다 영토 내의 또는 캐나다 대륙붕 위의 지점 간, 선박으로 상품 또는 여객을 운송하는 것, 그러나 캐나다 대륙붕 위 수역과 관련하여 캐나다 대륙붕의 광물 또는 비생물 천연자원의 탐사, 개발 또는 운송에만 관련된 상품 또는 여객의 운송 ▷ 선박이 캐나다 영토에서 상업적 성격의 기타 해양활동에 관여하는 것 및 대륙붕 위 수역과 관련하여 캐나다 대륙붕의 광물 또는 비생물 천연자원의 탐사, 개발 또는 운송과 관련된 상업적 성격의 기타 해양활동에 관여하는 것 - 특히 이 유보사항은 현지주재오전, 외국선박 임시면허 발행 기준 및 면허 수 제한과 관련된 조치와 관련됨. - 이 유보사항은 특히 피더서비스에 적용됨.

※ 한·캐나다 FTA 미래유보 9번째 내용

표 4-7. 계속

관련 부속서	분야	국경간 서비스 관련 조치										조치	유보내용	
		투자 관련 조치					정부 수준							
		MFN	NT	SMB	PR	D	MFN	NT	MA	LP				
13	운송 수송수송 Transportation- Water Transportation(SI C 4541, 4542, 4543, 4549, 4551, 4552, 4553, 4554, 4559, CPC 721, 722, 74510, 74520, 74590)												- United States Wreckers Act, R.S.C. 1985, c. U-3 - Various agreements and arrangements, including: a.Memorandum of Arrangements on GreatLakes Pilotage; b.Canada-United States Joint Marine Pollution Contingency Plan; c.Agreement with the United States on Loran "C" Service on the East and West Coasts; and d.Derrtek- Canada Joint Marine Pollution Circumpolar Agreement.	- 오염통제/인전항해/바지선검사규정/수질/수로안내/구난/악물남용규제/해양통신 분야에서 상호 관습수역에서의 해양활동과 관련하여 다른 국가와의 협정, 약정, 그밖의 공식/비공식 약속의 실행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를 채택/유지할 권리를 유보 ※ 한·캐나다 FTA 미레유보 10번째 내용
		X	X	X	X	O	X	X	X	X	X			
미래 유보	운송서비스 Transportation Services	X	X	X	X	O	X	X	X	X			- 이미 발효 중이거나 이 협정이 발효되기 전에 서명된 양자/다자간 국제협정에 따라 채택되는 차별적 대우와 관련된 조치를 채택/유지할 권리를 유보 ※ 한·캐나다 FTA의 경우 이 유보사항 불포함 - 1994년 1월 1일 이전에 시행 중에 있거나 서명된 양자간/다자간 국제협정에 따라 국가들에 치등대우를 부여하는 조치를 채택/유지할 권리를 유보 - 항공, 어업, 해난구조를 포함하는 해상사안과 관련하여 기존 또는 미래의 양자간/다자간 협정에 따라 국가에 대해 치등대우를 부여하는 조치를 채택/유지할 권리를 유보 ※ 한·캐나다 FTA 미레유보 12번째 내용	
15	모든 분야 All Sectors	O	X	X	X	X	X	X	X	X	X			

표 4-7. 계속

관련 부속서	분야	투자 관련 조치				국경간 서비스 관련 조치				정부 수준	조치	유보내용
		MFN	NT	SMB	D	PR	MFN	NT	MA			
16	모든 분야 All Sectors	X	X	X	X	X	X	O	X			- 포괄유보: 캐나다는 GATS 제16조(시장접근)에 따른 캐나다의 의무와 불합치하지 아니하는 조치를 채택/유지할 권리를 유보 ※ 한·캐나다 FTA 미래유보 13번째 내용 - 양허표 수정사항을 포함
미래 유보	기술적 검사/분석 서비스- 해양기술 검사/분석 서비스 Technical Testing and Analysis Services-Maritime Technical Testing and Analysis Services (CPC 8676)											※ 한·캐나다 FTA 미래유보 11번째 예외 포함 - 캐나다를 대신한 선박의 법정 검사 및 인증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를 채택/유지할 권리를 유보

주: 한·캐나다 PTA에서의 주요 참고사항(개신사항 포함)을 굵게 또는 ■ 으로 표시하였다.
 자료: 캐나다 외교통상부^a 및 산업통상자원부^b 참고.

6. 소결

본 장에서는 TPP 서비스 협상을 주도할 것으로 판단되는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의 기체결 FTA 서비스 유보 목록을 분석하여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TPP 서비스 협상에서 가장 공세적인 입장을 취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국의 경우 이미 높은 수준의 서비스 시장개방 약속을 하고 있고, 최근 체결된 FTA(한·미 FTA)에서도 추가적인 개방조치가 특별히 취해진 것이 없다. 캐나다와 호주 또한 미국과 FTA를 체결하면서 높은 수준의 서비스 시장개방이 이루어졌고, 이후 체결된 FTA에서는 협정상대국의 요구에 의해 부분적인 자유화 확대조치가 있었을 뿐 유보내용의 획기적인 개선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반면 선진국과의 FTA 체결 경험이 미미한 일본의 경우 미국, 호주, 캐나다에 비해 많은 현재유보 및 미래유보 목록을 포함하며, 칠레와의 FTA가 발효된 지 5년 후에 발효된 페루와의 FTA에서 더 많은 현재유보와 미래유보를 신규로 포함하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분석대상국가의 유보내용을 보면, 전문직서비스를 포함하는 사업서비스에서는 면허의 취득과 거주요건 또는 사무소 설립 등을 요구하는 조치를 많이 두고 있고, 통신서비스에서는 기간통신사업에 대한 지분제한 또는 대표·이사의 국적요건/거주요건 부과 등의 제한이 있고, 방송사업의 지분 제한 등이 많이 발견된다. 그리고 교육서비스나 의료·보건·사회서비스의 경우 정책주권을 유보하는 내용이 일반적으로 포함되어 있으며, 광업·어업 등에 대한 유보조치도 다수 있다. 모든 국가에서 유보하고 있는 분야는 항공·수상 운송인데, 국적기·국적선 등록의 제한, 연안해상 운송 제한 등 매우 다양한 조치가 유지되고 있다. 일본과 캐나다의 경우

에너지 분야에서 제한조치가 많이 있다.

[표 4-8]은 한·미 FTA에서 우리나라의 유보 내용과⁸²⁾ 미국 및 일본의 주요 FTA 유보내용을 서비스 분야별로 단순비교한 것이다. 유보 목록은 조치의 적용범위(분야의 범위)가 상호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명확히 비교하는 것이 곤란하여 여기에서는 W/120의 분류기준을 적용하여 각국의 주요 협정에 포함된 유보 목록을 명시하는 방법을 적용해보았다. 호주와 캐나다의 경우 적용범위가 매우 상이한 관계로 유보 목록의 직접비교에서는 제외하였다. 한·미·일 유보 목록을 비교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미국과 체결한 FTA의 경우 우리나라는 현재유보 47건과 미래유보 44건을 포함하고 있고, 외형적으로나 내용 면에서 미국의 유보내용에 비해 많은 제한조치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시장접근제한 조치는 포괄유보하고 유보 목록에 별도로 기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업종별·분야별로 두고 있는 제한조치는 유보 목록의 내용보다 더 많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은 동일한 포괄유보를 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반면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세부 분야별 유보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분야별 유보 목록의 수 자체는 매우 많은 것으로 나타나며, 사업서비스 등 다수의 분야에서 LP 제한을 많이 부과하고 면허, 등록, 승인 요건이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이 공통적으로 제한조치를 두고 있는 분야는 일반적 조치, 사업서비스(전문직서비스 포함), 에너지, 통신 및 시청각서비스, 교육서비스, 의료·보건·사회서비스, 수상운송·항공운송·육상운송 등이 중심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제한 조치를 많이 두고 있는 분야는 회계, 세무, 사업서비스, 유통, 환경, 레크리에이션 분야로 나

82) 산업통상자원부b 참고.

타났고, 일본의 경우 법률, 회계, 엔지니어, 기타 전문직, 사업서비스, 건설, 유통, 금융 등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제한을 유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일본은 특히 전문직서비스 및 일부 사업서비스 분야에서 일본 내에서 일본의 관련 법에 따라 취득한 자격만을 인정하고, 등록·승인·면허취득 및 사무소 설립을 요구하는 까다로운 제한을 유보하고 있다는 점도 특징적이다. 또한 일본은 전체 분야에서 향후 등장할 수 있는 뉴서비스 전반을 미래유보함으로써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에 대한 정책주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주의해야 하겠다. 반면 기체결 FTA에서 우리나라와 미국은 뉴서비스를 미래유보하지 않고 있고, 미래유보에서 시장접근을 포괄유보하고 있지만 DDA 서비스 수정양허안을 반영한 양허개선분야를 포함함으로써 서비스 시장개방수준을 제고한 바 있다는 점도 유보의 수준 비교 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TPP 서비스 협상에는 미국과 FTA를 체결한 캐나다, 호주, 멕시코, 칠레, 페루, 싱가포르가 참여하고 있고, 이 국가들 상호간에도 미국과의 FTA 내용과 유사한 수준으로 FTA가 체결된 경우가 많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과 FTA를 체결한 경험이 있는 국가들은 미국에 대한 개방수준을 유지하거나, 협상전략상 일부 자유화 수준을 확대하는 조치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일본, 말레이시아, 베트남은 미국을 비롯한 여타 국가들의 추가 자유화 요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한·미 FTA 협상 당시를 돌아보면 일본의 경우 통신서비스, 금융서비스 분야의 개방확대 요구를 받을 수 있고, 일본이 두고 있는 다양한 승인요건에 대한 완화 또는 철폐 요구가 예상된다. 말레이시아와 베트남은 NAFTA 형태의 협정을 처음 추진하는 국가로 상대적으로 더 많은 개방요구에 직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4-8. 한국·미국·일본의 기체결 FTA 유보내용 비교

	한국		미국		일본		
	한·미 FTA	미·호주 FTA	한·미 FTA	일본·칠레 EPA	일본·페루 EPA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A(자격/사업형태/수 제한), LP ☞ 외국법 전문사 NT, SMBD, LP 단계적 개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 번호사 사무소 LP(개인: 일본 법에 따라 자격 취득, 사무소 설립; 기업: 법무법인 설립) ☞ S FLC LP(일본법에 따라 자격 취득, 사무소 설립, 거주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 번호사 사무소 MA(자격 취득), LP(사무소/법무법인 설립) ☞ S FLC MA(일본법에 따라 자격 취득), LP(사무소 설립, 거주요건) 		
회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A(사업형태/수 제한), LP ☞ 외국 공인회계사 NT, SMBD, LP 단계적 개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 공인회계서비스 LP(자연인: 일본법에 따라 자격 취득, 사무소 설립 기명: 공인세무회계사 설립) ☞ S 감사서비스 LP(감사회사 설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 공인회계서비스 MA(자연인: 일본법에 따라 자격 취득), LP(사무소 설립 기명: 공인세무회계회사 설립) ☞ S 감사서비스 MA(자격 취득), LP(감사회사 설립) 	
세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A(사업형태/수 제한), LP ☞ 외국 세무사 NT, SMBD, LP 단계적 개방 						
건축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 건축사, 엔지니어 LP(일본법에 따라 자격 취득, 사무소 설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 건축사, 엔지니어 MA(일본법에 따라 자격 취득), LP(사무소 설립) 		
엔지니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보건/안전 LP ☞ 엔지니어링 L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 건축사, 엔지니어 MA(일본법에 따라 자격 취득, 사무소 설립) 		

표 4-8. 계속

		한국		미국		일본	
		한·미 FTA	미·호주 FTA	한·미 FTA	일본·칠레 EPA	일본·페루 EPA	
사업 서비스	기타 전문직	<p>☞ 노무사 LP</p> <p>☞ 변리사 MA(사업형태/수 제한), LP</p> <p>☞ 등관 MA(사업형태/수 제한), LP</p> <p>☞ 수의 LP</p>	<p>☞ I/S 관세사 NT/NT, LP 면허요건, 관세사 면허 취득 국적요건</p> <p>☞ S 특허 변호사 등 특허 관련 업무 MFN, NT(자격요건(국적요건)), LP(거주요건)</p>	<p>☞ I/S 관세사 NT/NT, LP 면허요건, 관세사 면허 취득 국적요건</p> <p>☞ S 특허 변호사 등 특허 관련 업무 MFN, NT(자격요건(국적요건)), LP(거주요건)</p>	<p>☞ S 특허변리사 LP(일본법에 따라 특허사업회사 설립)</p> <p>☞ S 공중인/사법서사 LP(자연인: 일본법에 따라 자격 취득, 사무소 설립, 기업 사법서사회사 설립)</p> <p>☞ S 행정서사 LP(일본법에 따라 자격 취득, 사무소 설립)</p> <p>☞ S 공인사회보험노무상담사 LP(일본법에 따라 자격 취득, 사무소 설립)</p>	<p>☞ S 특허변리사 MA(자연인: 일본법에 따라 자격 취득), LP(일본법에 따라 특허사업회사 설립)</p> <p>☞ S 공중인/사법서사 MA(자연인: 일본법에 따라 자격 취득), LP(사무소 설립/사법서사회사 설립)</p> <p>☞ S 행정서사 MA(일본법에 따라 자격 취득), LP(사무소 설립, 기업 회사 설립)</p> <p>☞ S 공인사회보험노무상담사 MA(일본법에 따라 자격 취득), LP(사무소 설립, 기업은 회사 설립)</p> <p>☞ S 해양절차대리서비스 MA(해사대리사만 허용)</p>	
	컴퓨터/관련 서비스						

표 4-8. 계속

	한국		미국		일본	
	한·미 FTA	미·호주 FTA	한·미 FTA	일본·칠레 EPA	일본·페루 EPA	
사업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 건설기계 LP 현 자동차정비 등 LP, MA(사 업자 수 제한) 현 안경사 현 부동산(중개/감평) LP 미 중개/감평 제외 부동산 NT, PR, LP 포괄유보 현 의류기기 소매/리스/임대 LP 현 자동차임대 LP 현 해양조사/지도제작 NT 미 지적축량/관련 지도제작 NT 포괄유보 현 광고(옥외광고/전광판) LP, SMBD, PR (국산편성의 무) 현 인터넷치/신원배치 MA(수 제한), LP, NT(산원교육 독 점) 현 경비 MA(사업형태 제한), LP 미 지급불능/구조조정(법정 관리) 서비스 NT, SMBD, LP 포괄유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 S 소프트웨어 수출 제한 NT(허가), L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 S 소프트웨어 수출 제한 NT(허가), L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 S 자동차 수입 LP(작업장 설 립, 운송국 승인 취득) 현 S 민간직업소개업, 인력파견업 LP(현지주재, 허가/신고) (항만 노동자/선원 파견서비스), MA (인력공급원 허가 취득 노동조 협만 허용) 현 S 정기분석업, 검사업, 측량중 명업 LP(법인 설립/ 지정요건) 현 I 농업/임업/어업 및 관련 서비스 NT(선승인요건) 현 S 토지가목조사 LP(일본법에 따 라 자격(토지가목조사사) 취득, 사무소 설립/회사 설립) 현 S 부동산 LP(부동산 거래시업 사무소 설립, 면허 취득, 콘도미 니엄사업 사무소 설립, 등록) 현 S 부동산평가서비스 LP(사무소 설립, 등록) 현 S 경비서비스 NT(선승인요건) 현 S 작업기계 조사/검사서비스 직업훈련, 산업안전/보건 관련 서비스, 작업환경측정서비스 LP (사무소 설립, 등록) 현 S 조사서비스 LP(사무소 설립, 등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 S 자동차 수입 LP(작업장 설 립, 운송국 승인 취득) 현 S 민간직업소개업, 인력파견업 LP(현지주재, 허가/신고) (항만 노동자/선원 파견서비스), MA (인력공급원 허가 취득 노동조 협만 허용) 현 S 정기분석업, 검사업, 측량 중 명업 MA(지정요건, 등록요건), LP(법인 설립) 현 I 농업/임업/어업 및 관련 서비스 NT(선승인요건) 철폐 현 S 토지가목조사 MA(일본법에 따라 자격 취득), LP(사무소 설 립, 기업은 회사 설립) 현 S 부동산 MA(부동산거래시업 면허 취득, 콘도미니엄사업 등 특) LP(사무소 설립) 현 S 부동산평가서비스 MA(등록) LP(사무소 설립) 현 S 경비서비스 NT(선승인요건) 철폐 현 S 작업기계 조사/검사서비스, 직업훈련, 산업안전/보건 관련 	

표 4-8. 계속

	한국		미국		일본	
	한·미 FTA	미·호주 FTA	한·미 FTA	일본·칠레 EPA	일본·페루 EPA	
사업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 농축산물 검사/인증/등급 판정 NT, LP 포괄유보 미 응입/수입/인입/어업 부수 서비스 NT, PR, SMBD LP 포괄유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철 S 통관중개업 LP(사무소 설립, 승인) 철 S 직무능력검사 NT(지정), LP (사무소 설립) 미 S 경비서비스 NT, L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비스, 작업환경측정서비스 MA(등록), LP(사무소 설립) 철 S 조서서비스 MA(등록), LP(사무소 설립) 철 S 통관중개업 MA(승인), LP(사무소 설립) 철 S 직무능력검사 NT, MA(지정), LP(사무소 설립) 미 S 경비서비스 NT, LP 미 S R&D 보조금 NT 미 S 노동자피견서비스 MA 미 S 원자력에너지 관련 기계수리 MFN, NT, MA, LP 	
	기타					
커뮤니케이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 우정사업 NT 우정사업본부 혜택 유보 					
	부가통신					
부가통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철 NT(기간통신)KT 투자 제한, MA, L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철 무선하기 소유 제한 권리 유보 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철 무선하기 소유 제한 권리 유보 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철 지역통신사업(유선전화 제외), 통신부수서비스 NT(NTT 투자 국외 제한, NTT 외국인 이사회 제한) 철 지역통신사업(유선전화 제외), 통신부수서비스, 장거리전화, 기타 고정통신, 이동통신, 인터넷 기반서비스 NT(선승인요건 철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철 지역통신사업(유선전화 제외), 통신부수서비스 NT 제한 철폐 철 지역통신사업(유선전화 제외), 통신부수서비스, 장거리전화, 기타 고정통신, 이동통신, 인터넷 기반서비스 NT(선승인요건 철폐) 	
	부가통신					

표 4-8. 계속

	한국		미국		일본	
	한·미 FTA	미·호주 FTA	한·미 FTA	일본·칠레 EPA	일본·페루 EPA	
현	방송 NT(투자 제한), PR (국산 영화/애니, 편성쿼터), SMBD, LP	미·호주 FTA	한·미 FTA	일본·칠레 EPA	일본·페루 EPA	
미	방송 NT, MFN, PR, SMBD, LP 이사 국적 제한 등 유보	미·호주 FTA	한·미 FTA	일본·칠레 EPA	일본·페루 EPA	
미	방송통신융합서비스 NT, MFN, PR, SMBD, LP 포괄유보	미·호주 FTA	한·미 FTA	일본·칠레 EPA	일본·페루 EPA	
미	시청각 공동제작협정 MFN, PR 포괄유보	미·호주 FTA	한·미 FTA	일본·칠레 EPA	일본·페루 EPA	
미	국산 영상물 인정기준 NT, PR 포괄유보	미·호주 FTA	한·미 FTA	일본·칠레 EPA	일본·페루 EPA	
현	스크린쿼터 PR/MA(각 상영관 연간 73일 이상)	미·호주 FTA	한·미 FTA	일본·칠레 EPA	일본·페루 EPA	
미	위성방송 MFN 포괄유보	미·호주 FTA	한·미 FTA	일본·칠레 EPA	일본·페루 EPA	
미	디지털 오디오/비디오 서비스 NT, MFN, PR, LP 포괄유보	미·호주 FTA	한·미 FTA	일본·칠레 EPA	일본·페루 EPA	
미	영화 프로모션/광고, 후반 제작 NT, MFN, PR, LP 포괄유보	미·호주 FTA	한·미 FTA	일본·칠레 EPA	일본·페루 EPA	
키워드	시청각	미·호주 FTA	한·미 FTA	일본·칠레 EPA	일본·페루 EPA	
니케		미·호주 FTA	한·미 FTA	일본·칠레 EPA	일본·페루 EPA	
이선		미·호주 FTA	한·미 FTA	일본·칠레 EPA	일본·페루 EPA	

표 4-8. 계속

	한국		미국		일본	
	한·미 FTA	미·호주 FTA	한·미 FTA	일본·칠레 EPA	일본·페루 EPA	
건설	<p>원 LP</p>		<p>원 S 건설서비스, 건물철거업 LP (현지주재, 허가, 등록), MA(허가, 등록)</p>	<p>원 S 건설서비스, 건물철거업 LP (현지주재, 허가, 등록), MA(허가, 등록)</p>	<p>원 S 건설서비스, 건물철거업 LP (현지주재, 허가, 등록), MA(허가, 등록)</p>	
유통	<p>원 판매주류도소매 LP, MA (사업자 수 제한)</p> <p>원 도소매유통 LP, MA(한약재 수입조절 권한)</p> <p>원 의약품도소매 LP, MA(유자 각자 서비스 제공)</p> <p>원 간행물 유통 NT(외국 간행물 수입 추진제, 시류심사)</p> <p>원 농축산물 유통 NT(육류도매업 투자 제한 50%), MA(가축시장/공용도매시장 개설 독점)</p> <p>미 농축산물(인삼/홍삼) 중 개/도/소/돼지 NT, PR, LP 포괄유보</p>		<p>원 S 가축거래사업 LP(거주요건, 면허 취득)</p> <p>원 S 주류유통업 MA(면허 수 제한)</p> <p>원 S 공공도매시장 도매서비스 MA(면허 수 제한)</p>	<p>원 S 가축거래사업 LP(거주요건, 면허 취득)</p>	<p>원 S 가축거래사업 LP(거주요건, 면허 취득)</p>	
교육	<p>미 유아, 초중등, 고등교육, 기타 NT, MFN, PR, SMBD, LP 포괄유보</p> <p>원 고등교육 SMBD, NT, MA(사업형태 제한(영리법인))</p> <p>원 성인교육 MA(사업형태/종류 제한), NT(외국인강사 학력요건)</p> <p>원 직업훈련 LP</p>	<p>미 IS 범집행/교정, 소득보장/보함, 사회보장/보함, 사회복지, 공공훈련, 보건/보육 조치 유보 MFN, NT, SMBD, PR/MFN, NT, LP</p>	<p>미 IS 범 집행/교정, 소득보장/보함, 사회보장/보함, 사회복지, 공공훈련, 보건/보육 조치 유보 MFN, NT, SMBD, PR/MFN, NT, LP</p>		<p>원 S 고등교육서비스(정규교육) MA (정규교육기관, 허용), LP(학업인 설립)</p> <p>미 S 초중등교육서비스 NT, MA, LP</p>	

표 4-8. 계속

	한국		미국		일본	
	한·미 FTA	미·호주 FTA	한·미 FTA	일본·칠레 EPA	일본·페루 EPA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P □ 음용수/생활폐수/지연보호 등 NT, PR, LP 포괄유보 □ 농축산물 검사/인증/등급 판정 NT, LP 포괄유보 					
보험/보험 관련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 보험/보험 관련 서비스 MA(사업 제한), LP □ S 명시한 2가지 외 보험/보험 관련 서비스의 Mode 1, 2 거래 관련 조치 유보 NT, MA, LP
금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 신용관리업, 미수금처리업 LP (현지주제, 주식회사만 허용, 범무성 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 신용관리업, 미수금처리업 LP (현지주제, 주식회사만 허용, 범무성 허가), MA(서비스 공급 기업 유형 제한) □ S 명시한 3가지 외 은행 및 기타 금융서비스의 Mode 1 거래 관련 조치 유보 NT, MA, LP
보건 / 사회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의료(경제 자유구역/제주 제외) NT, MFN, PR, SMBD, LP 포괄유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S 법 집행/교정, 소득 보장/보험, 사회 보장/보험, 사회복지, 공교육, 공공훈련, 보건/보육 조치 유보 MFN, NT, SMBD, PR/MFN, NT, L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S 법 집행/교정, 소득 보장/보험, 사회 보장/보험, 사회복지, 공교육, 공공훈련, 보건/보육 조치 유보 MFN, NT, SMBD, PR/MFN, NT, L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 의료/보건/복지 LP(후생노동성 승인, 일본 내 설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 의료/보건/복지 MA(후생노동성 승인, LP(일본내 설립)) 	

표 4-8. 계속

	한국		미국		일본	
	한·미 FTA	미·호주 FTA	한·미 FTA	일본·칠레 EPA	일본·페루 EPA	
레크리에이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기간행물(신문 제외) NT (외국인지분을 50%, SMBD, MA, LP ☐ 신문 발행예포 NT, SMBD, LP 포괄유보 ☐ 문화재 보호 NT, PR, SMBD, LP 포괄유보 ☐ 농어촌관광 NT 포괄유보 					
기타						
국제해상 운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화물운송/도선업/신박투자회사 LP, NT(도선업), MA(설립형태 제한) ☐ 카보타지, 해상여객운송 NT, MFN, PR, SMBD, LP 포괄유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S 해상운송서비스 제공/미국 국적선 운영조치 유보 MFN, NT, SMBD, PR/MFN, NT, L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S 해상운송서비스 제공/미국 국적선 운영조치 유보 MFN, NT, SMBD, PR/MFN, NT, L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 국적기선 NT(국적/일본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만 허용), SMBD (대표/실무경영진) ☐ S 선원 NT(일본기업에 고용된 외국인인 일본 국적선에서 업무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 국적기선 MA(일본인/일본본에 따라 설립된 회사만 허용, 대포/실무경영진 제한) ☐ S 선원 NT, MA(일본기업에 고용된 외국인인 일본국적선에서 업무 금지) 	
운송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륙수운 NT, MFN, PR, SMBD, LP 포괄유보 ☐ 카보타지, 해상여객운송 NT, MFN, PR, SMBD, LP 포괄유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S 해상운송서비스 제공/미국 국적선 운영조치 유보 MFN, NT, SMBD, PR/MFN, NT, L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S 해상운송서비스 제공/미국 국적선 운영조치 유보 MFN, NT, SMBD, PR/MFN, NT, L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 연인운송 NT(선승인요건) 철 ☐ IS 일본항만 간 여객/화물 운송 MFN, NT(국제협정 외 일본 국적기선만 허용)/MFN, NT, M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 연인운송 NT(선승인요건) 철 ☐ IS 일본항만 간 여객/화물 운송 MFN, NT(국제협정 외 일본 국적기선만 허용)/MFN, NT, MA 	

표 4-8. 계속

	한국		미국		일본	
	한·미 FTA	미·호주 FTA	한·미 FTA	일본·칠레 EPA	일본·페루 EPA	
항공운송	<p>☑️ NT(외국인투자 제한 49%), SMD(이사회 구성 제한)</p> <p>☑️ 특수항공 NT(지분 49%), SMD, LP</p> <p>☑️ 항공기 유지보수 LP</p>	<p>☑️ I 국내선 운항 MFN, NT, SMD(미국시민권자)</p> <p>☑️ I/S 특수항공 MFN, NT, SMD/MFN, NT, LP 허가 요건</p>	<p>☑️ I 국내선 운항 MFN, NT, SMD(미국시민권자)</p> <p>☑️ I/S 특수항공 MFN, NT, SMD/MFN, NT 허가요건(쌍관·미 FTA) LP 제합삭제</p>	<p>☑️ I 항공운송 MFN, NT(선승인요건, 허가, 항공기 사용 제한, 노선 제한 등), SMD(허가 시 이사회 제한)</p> <p>☑️ I 항공기(서비스)항공운송 제외) NT(선승인요건, 허가, 항공기 사용 제한, 노선 제한, 허가 시 이사회 제한)</p> <p>☑️ S 국적항공기 등록 MA(등록 제한, 이사회 구성에 따라 등록 제한)</p>	<p>☑️ I 항공운송 MFN, NT(선승인요건, 허가, 항공기 사용 제한, 노선 제한, 허가 시 이사회 제한)</p> <p>☑️ S 국적항공기 등록 MA(등록 제한, 이사회 구성에 따라 등록 제한)</p>	<p>☑️ I 항공운송 MFN, NT(선승인요건, 허가, 항공기 사용 제한, 노선 제한, 허가 시 이사회 제한)</p> <p>☑️ S 항공기(서비스)항공운송 제외) MA(선승인요건, 허가, 항공기 사용 제한, 노선 제한, 허가 시 이사회 제한)</p> <p>☑️ S 국적항공기 등록 MA(등록 제한, 이사회 구성에 따라 등록 제한)</p>
우주운송	<p>☑️ 우주운송 NT, MFN, PR, SMD, LP 포괄유보</p>			<p>☑️ I/S 항공우주산업 NT, SMD, PR/ NT, LP</p>	<p>☑️ S 항공우주산업 NT, MA, LP</p>	
철도운송	<p>☑️ MA(사업자 수제한)</p> <p>☑️ 철도운송 MFN 포괄유보</p>			<p>☑️ I 철도운송 NT(선승인요건)</p>	<p>☑️ I 철도운송 NT(선승인요건) 철폐</p>	
도로운송	<p>☑️ 도로여객운송(택시/노선버스 제외) LP</p> <p>☑️ 택시/장기여객 운송 NT, MFN, PR, SMD, LP 포괄유보</p> <p>☑️ 육상화물운송(쿠리어 제외) MFN, PR, SMD, LP 포괄유보</p> <p>☑️ 주차장(면) LP, MA(수 제한)</p>			<p>☑️ I 도로여객운송(일반버스사업자) NT(선승인요건) 철폐</p> <p>☑️ S 도로여객/화물운송 LP(사무소 설립, 승인)</p> <p>☑️ S 도로운송고정시설(도로사업) MA(승인, 면허 취득 ENT), LP</p>	<p>☑️ I 도로여객운송(일반버스사업자) NT(선승인요건) 철폐</p> <p>☑️ S 도로여객/화물운송 MA(승인, LP(사무소 설립)</p> <p>☑️ S 도로운송고정시설(도로사업) MA(승인, 면허 취득 ENT), LP</p>	

표 4-8. 계속				
	한국		일본	
	한·미 FTA	미국	일본·칠레 EPA	일본·페루 EPA
파이프라인 운송	한·미 FTA	미·호주 FTA I 파이프라인운송 MFN, NT(외국인/외국회사 제한)	한·미 FTA I 파이프라인운송 MFN, NT(외국인/외국회사 제한)	일본·페루 EPA
	미·셀 지정보관 NT 포괄유보			
운송 서비스			IS 화물포워딩(항공운송 제외) MFN, NT(승인, 허가, 등록 제한), SMBD(이사회 구성에 따라 승인/허가/등록 제한) LP(사무소 설립) I 화물포워딩(항공운송 사용) MFN, NT(승인, 허가, 등록 제한), SMBD(이사회 구성에 따라 승인/허가/등록 제한) I 화물포워딩(항공운송 사용) MFN, NT(승인, 허가, 등록 제한), SMBD(이사회 구성에 따라 승인/허가/등록 제한) S 운송부수서비스 NT(국적요건, LP(도선사협회 설립)) S 운송부수서비스(원양운송) MFN, NT, MA	S 화물포워딩(항공운송 제외) MFN, NT(승인, 허가, 등록 제한), SMBD(이사회 구성에 따라 승인/허가/등록 제한) LP(사무소 설립) I 화물포워딩(항공운송 사용) MFN, NT(승인, 허가, 등록 제한), SMBD(이사회 구성에 따라 승인/허가/등록 제한) S 운송부수서비스 NT(국적요건, MA, LP(도선사협회 설립)) S 운송부수서비스(원양운송) MFN, NT, MA
기타		미·I 해외민간투자공사 보힘/대출보증 MFN, NT		미·S 에너지(배전설비) 관련 서비스 MFN, NT, MA, LP 미·S 에너지(방사선폐기물처리) MFN, MA, LP 미·S 에너지(현열가스운송) MFN, NT, MA, LP

표 4-8. 계속

	한국		미국		일본	
	한·미 FTA	미·호주 FTA	한·미 FTA	일본·칠레 EPA	일본·페루 EPA	
전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A 포괄유보 ☐ MFN 포괄유보 ☐ 외국인 토지 취득 NT ☐ 외국인투자 NT, PR 공공 질서유지 목적 투자 제한 ☐ 공기업 민영화/공공서비스 민간 이양 NT, PR, SMBD, LP ☐ 취약산업 NT, MFN, PR, SMBD, L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VS 지역정부 비합치조치 (단 비합치조치 예시 불포함) MFN, NT, SMBD ☐ VS 소수집단(알래스카 원주민) 관련 조치 유보 NT, SMBD, PR/NT, LP ☐ S 시장접근 포괄유보 MA ☐ VS 항공/수산/해상사안 관련 MFN 대우 예외조치 유보 MFN/MF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VS 지역정부 비합치조치 (※한·미 FTA] 비합치 조치 예시 포함) MFN, NT, SMBD/MFN, NT, MA, LP ☐ VS 소수집단(알래스카 원주민) 관련 조치 유보 NT, SMBD, PR/NT, LP ☐ S 시장접근 포괄유보 MA ☐ VS 항공/수산/해상사안 관련 MFN 대우 예외조치 유보 MFN/MFN ☐ S 서비스 포괄유보 MFN, NT, MA, LP ☐ S 투자거래 MFN 삭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 국영기업/정부기관 주식/자산 이전/처분 권리 유보 NT, SMBD ☐ VS 텔레그래프/우편/도박/담배/회폐 사업 제한 권리 유보 NT, MA, LP ☐ S 항공/수산/해상사안 관련 MFN 대우 예외조치 유보 MFN ☐ S 서비스 포괄유보 MFN, NT, MA, LP ☐ I 투자거래 MFN 삭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 국영기업/정부기관 주식/자산 이전/처분 권리 유보 NT, SMBD ☐ VS 텔레그래프/우편/도박/담배/회폐 사업 제한 권리 유보 NT, MA, LP ☐ S 항공/수산/해상사안 관련 MFN 대우 예외조치 유보 MFN ☐ S 서비스 포괄유보 MFN, NT, MA, LP ☐ I 투자거래 MFN 삭제 	
서비스 외 투자 관련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축산물 NT(쌀/보리) 제배/투자 금지, 육우사육 투자 제한 ☐ 생물학적 제제 제조 PR(적십자가 원료물질의 독점 공급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 원자력에너지 NT(허가) ☐ I 광업 MFN, NT(외국인의 국회사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 원자력에너지 NT(허가) ☐ I 광업 MFN, NT(외국인의 국회사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 열공급업 NT(선승인요건) 철폐 ☐ I 제약제약 NT(선승인요건) 철폐 ☐ I 제약제약 NT(선승인요건) 철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 열공급업 NT(선승인요건) 철폐 ☐ I 제약제약 NT(선승인요건) 철폐 	

표 4-8. 계속

	한국		미국		일본		
	한·미 FTA	미·호주 FTA	한·미 FTA	일본·칠레 EPA	일본·페루 EPA		
서비스 투자 관련 사항	<p>☞ 에너지(전력) NT(한전 투자 제한 40%, 국내 총발전 설비용량 중 30%까지 외국 인·소유 제한, 송배전 외국 인투자 제한 50%)</p> <p>☐ 에너지(전력) NT, PR, SMBD, LP 한전 제외 포괄유보</p> <p>☞ 에너지(가스) NT(가스공사 외국인투자 제한 30%)</p> <p>☐ 에너지(가스) NT, PR, SMBD, LP 가스공사 제외 포괄유보</p> <p>☐ 송포/도검/화약 NT, PR, SMBD, LP</p> <p>☐ 국가 소유 국가전자정보 시스템(금융 제외) NT, LP, PR, SMBD</p> <p>☐ 원자력에너지 NT, PR, SMBD, LP</p> <p>☐ 아연 NT 포괄유보</p> <p>☐ 전력물자 NT, LP 포괄유보</p> <p>☐ 정부권한행사서비스 NT, PR, SMBD 단계적 개방</p>			<p>☞ I/S 광업 NT/NT, LP(일본인/일 본법인만 광업권/광업인자권 보유 가능)</p> <p>☞ I 석유산업 NT(선승인요건)</p> <p>☞ I 상수도/금수시설 NT(선승인요건)</p> <p>☐ I/S 무기/폭발물 NT, SMBD, PR/ NT, LP</p> <p>☐ I/S 에너지산업 NT, SMBD, PR/MFN, NT, LP</p> <p>☐ I/S 연안어업 MFN, NT, SMBD, PR/MFN, NT, LP</p>	<p>☞ I 가족/가족제품 제조업 NT(선 승인요건) 철폐</p> <p>☞ S 광업 NT, MA, LP(일본인/일 본법인만 광업권/광업인자권 보유 가능)(제한사항 동일)</p> <p>☞ I 석유산업 NT(선승인요건) 철폐</p> <p>☞ I 상수도/금수시설 NT(선승인요 건) 철폐</p> <p>☞ S 제조업 중 조선/선박수리/선 박업(특 설립/확장) MA(송 인, 면허 취득 ENI)</p> <p>☐ S 무기/폭발물 NT, MA, LP</p> <p>☐ S 에너지산업 NT, MA, LP</p> <p>☐ S 연안어업 MFN, NT, MA, LP</p>		

주: 1. ☞ 한자유보, ☐ 미래유보를 각각 의미한다. 이는 투자 관련 조치를, S는 국경간 서비스 무역 관련 조치를 각각 의미한다.
 2. 밑줄 친 굵은 글씨는 변화된 사항을 나타낸다.
 자료: 산업자원통상부, USTR, USITR, 일본 외무성, 일본 외무성⁶ 참고.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과의 FTA가 발효되었고, 호주 및 캐나다와의 FTA도 타결된 상태이며, 전술한 바와 같이 제한을 두고 있는 분야가 유사하기 때문에 TPP 협상에 참여한다고 하더라도 서비스 분야별 자유화 협상에서 큰 부담을 가지게 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평가된다. TPP 협상에서는 한·미 FTA 서비스시장 개방수준(단계별 개방 포함)을 최대 개방 수준으로 설정한다고 가정하더라도 협상 참여국의 구성상 국내시장에 미치는 효과는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TPP 협상에서 미국은 자국의 관심분야에 대해 자국의 자유화 수준으로 상대국 시장을 개방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미국의 관심분야가 무엇인지에 예의주시해야 하겠다.

기존의 FTA 서비스 협상에서는 GATS 조항이나 NAFTA 협정의 조항이 준용되고, 협정문 협상에서는 주요 조항의 포함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그러나 TPP 협상, TiSA 협상 등에서는 이전에 사용되던 조항을 일부 유지하기도 하지만 새로운 의무와 적용범위를 가지는 조항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서비스 협상에서 당사국의 의무를 규정하는 협정문 조항이 대폭 수정되거나 새로운 조항이 도입되는 경우 그것이 미치는 영향을 가늠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국내의 관련 조치를 파악해서 새로운 유보 목록을 작성해야 하는 부담이 매우 크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TPP 서비스 협상 동향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하며, TPP 서비스 협상을 주도하는 국가가 모두 참여하고 있는 TiSA 협상에서 미국, 호주, 캐나다, 일본의 입장에 주목해야 하겠다.

제5장 TPP 회원국 서비스무역제한지수 분석

1. 서비스무역제한지수(STRI) 개요
2. 서비스무역제한지수(STRI) 국가별 비교
3. 서비스무역제한지수(STRI) 항목별 비교
4. 소결: 서비스무역제한지수(STRI)로 본
한국의 TPP 협상 위치



1. 서비스무역제한지수(STRI) 개요

무역장벽이라 함은 국가 간 무역 제한하는 인위적 요소들을 말하는 것으로 상품무역에서는 크게 관세장벽과 비관세장벽으로 나뉜다. 최근 비관세장벽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는 있으나 상품분야 무역장벽의 기본적인 경제학적 분석은 관세장벽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다시 말해 상품무역의 경우 관세라는 객관적으로 수치화된 자료가 존재한다. 반면에 서비스분야의 무역장벽은 관세와 같이 객관적으로 수치화된 자료가 존재하기 어렵다. 현재 서비스 협상의 근간이 되는 WTO GATS 양허상의 서비스는 네 가지 모드(Mode)로 정의되어 있으며, 양허표(schedule of commitments)상에서는 각 모드별로 시장접근(market access)과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 관련 조치 및 제한사항을 나누어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조치나 제한사항은 대부분 서술적이며 따라서 계량화하기 어렵다. 결국 양허표에는 하나의 서비스 분야에 대해 각각의 모드별/제한사항별 8개의 무역장벽이 서술적으로 나타나 있다. 이와 같은 점들이 각국의 연구자나 정책담당자가 공통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서비스 분야 무역장벽의 계량화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이유이다.

이러한 어려운 점들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장벽 계량화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대되어왔다. 서비스 부문이 국내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OECD 국가를 기준으로 고용의 약 80%, 그리고 GDP의 약 75% 정도라고 알려져 있다. 더 나아가 서비스 자체의 무역증가, 글로벌 가치사슬(GVCs: global value chains)의 발달로 인한 서비스 수요증가 등 서비스 무역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며, 따라서 서비스 무역에 대

한 장벽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객관적 자료 확보가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 각국 정부나 연구기관들이 서비스 장벽 계량화에 대해 관심을 보여왔다. 선진국들의 모임인 OECD에서도 서비스 장벽 계량화에 대해 관심을 보여왔으며, 실제로 서비스무역제한지수 개발을 시작하게 되었다. OECD의 서비스무역제한지수 작업은 2007년 6월 무역위원회에서 개별 서비스 산업별 수준에서의 무역장벽을 계량화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몇 년에 걸친 작업으로 2014년 5월 OECD는 서비스무역제한지수(STRI: services trade restrictiveness index)를 40개국 18개 분야에 대해 발표하였다. 서비스무역제한지수는 복합지수(composite index)로서 다섯 가지 기본 범주(category) 하에서 개별 제한사항에 대해 ‘0’과 ‘1’로 수치화 하였으며 이 제한사항들은 범주별로 가중치를 부여하는 등의 방식으로 서비스 분야별 지수를 도출하였다. 지수 산출을 위한 데이터베이스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⁸³⁾ STRI를 구성하는 국가들은 34개 OECD 회원국과 브라질,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러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을 포함한 총 40개 국가이다. [표 5-1]에 제시되어 있듯이 분야별로는 W120 기준으로 분류하였을 때 사업서비스 중 전문직서비스 가운데 법률, 회계, 건축, 엔지니어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같은 사업서비스 중 컴퓨터서비스도 포함되어 있다. 다음으로 커뮤니케이션서비스 중 쿠리어서비스, 통신서비스가 포함되어 있으며, 같은 커뮤니케이션서비스 중 시청각서비스 가운데 영화, 방송, 음향 부문이 지수 산정의 개별 산업으로 포함되어 있다. 건축서비스와 유통서비스도 포함되어 있다. 금융서비스 중에서는 보험과 상업 은행이 각각 지수 산정에 개별 산업으로 포함되었다. 운송서비스 중에는 해상운송,

83) STRI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설명은 OECD STRI Policy Brief(2014)의 설명을 따랐다.

항공운송, 철도운송, 도로운송이 각각 지수 산정의 개별 서비스 산업으로 포함되어 있다.⁸⁴⁾

표 5-1. W120 기준으로 표시된 STRI 18개 분야

사업서비스	A. 전문직서비스	a. 법률 b. 회계 d. 건축 e. 엔지니어링
	B. 컴퓨터 관련 서비스	
2. 커뮤니케이션서비스	B. 쿠리어서비스	
	C. 통신서비스	
	D. 시청각서비스	a. 영화 c. 방송 e. 음향
3. 건설서비스		
4. 유통서비스		
7. 금융서비스	A. 보험	
	B. 은행	
11. 운송서비스	A. 해상운송	
	C. 항공운송	
	E. 철도운송	
	F. 도로운송	

자료: OECD STRI Policy Brief(2014)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서비스무역제한지수는 위에서 언급한 네 가지 모드의 조치 및 제한사항을 크게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범주(category)로 분류하였다(OECD Policy Brief, 2014).

84) [표 5-1]에서 알 수 있듯이 서비스무역제한지수에 포함된 개별 분야는 W120 기준으로 보았을 때, 분류수준이 다르다. 이러한 분류수준의 차이가 지수 산출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 지분 제한 및 기타 시장진입 제한조건
- 인력이동 제한
- 기타 차별적 조치
- 경쟁 및 공기업 지분 제한
- 규제 투명성 및 행정부담

첫 세 가지 범주는 양허상에 기술되는 시장접근 및 내국민대우 관련 조치들이라 할 수 있고, 네 번째 범주는 경쟁촉진 관련 조치들이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행정적인 절차와 관련된 법령이나 조치들의 공개(투명성)와 행정절차가 초래하는 부담이다.

서비스무역제한지수의 또 다른 특징은 위의 다섯 가지 범주하에서 개별 서비스 분야별로 포함하고 있는 제한사항의 종류가 모두 같지 않다는 것이다. 지분제한사항과 같이 모든 서비스 분야에 포함되어 있는 핵심적인 공통사항이 있는 반면에 개별 서비스의 특성과 시장상황을 반영한 조치나 제한사항들이 개별 서비스 분야에 따라 다르게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어 변호사 등 전문직서비스의 경우 다른 서비스 분야에 없는 자격요건 관련 제한사항이 존재하며, 금융서비스의 경우 외국인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차별이 존재하고, 방송 등 시청각서비스의 경우 저작권 문제 관련 제한사항이 존재한다. 이러한 개별 서비스 분야의 조치 및 제한사항들이 서비스무역제한지수에는 반영되어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서비스무역제한지수는 최혜국대우 기준의 조치만을 반영하고 있으므로, FTA와 같은 개별 지역무역협정은 반영되어 있지 않다.

2. 서비스무역제한지수(STRI) 국가별 비교⁸⁵⁾

본 절에서는 주요 TPP 참여국과 한국의 서비스 분야 개방수준을 서비스무역제한지수를 기준으로 OECD 국가 평균과 비교하면서 살펴보고자 하겠다. 비교대상국가는 TPP 참여국가 중 OECD STRI가 제시되어 있는 7개국이다. 또한 비교대상 서비스 분야 역시 서비스무역제한지수가 제공되고 있는 18개 분야에 한정한다. 다만 이 국가들과 한국은 서비스무역제한지수를 OECD 국가 평균과 비교하였다. OECD 국가평균은 OECD 34개 회원국 분야별 서비스무역제한지수의 단순평균이다. 제시된 서비스 분야의 순서는 [표 5-1]에 제시되어 있는 W120 서비스 분야의 분류를 따랐다.

[그림 5-1]~[그림 5-4]에서는 사업서비스 가운데 전문직서비스 중에서 법률, 회계, 건축, 엔지니어링 서비스 분야 서비스무역제한지수가 국가별

그림 5-1. 주요국 법률서비스 STRI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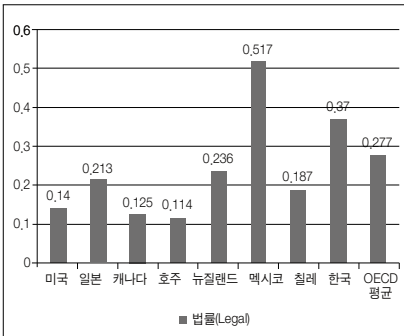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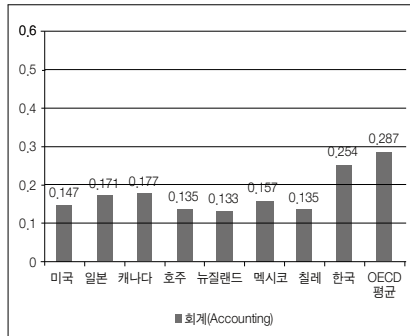


그림 5-2. 주요국 회계서비스 STRI 비교



자료: OECD STRI Regulatory database(검색일: 2014. 9. 15)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85) 서비스무역제한지수의 규제 데이터베이스(OECD STRI Regulatory database)를 사용하였다. <http://qdd.oecd.org/subject.aspx?Subject=063bee63-475f-427c-8b50-c19bffa7392d>(최종 검색일: 2014. 9. 15).

로 비교분석되었다. 가장 먼저 [그림 5-1]에 제시된 법률서비스의 경우 서비스무역제한지수 OECD 회원국 평균은 약 0.277이다. 한국은 OECD 회원국 평균보다 다소 높은 0.37을 나타내고 있다. 멕시코의 서비스무역제한지수는 0.517로서 비교대상 중 가장 낮은 개방수준을 나타낸 반면, 호주의 이 분야 서비스무역제한지수는 0.114로 가장 높은 수준의 개방수준을 보였다. [그림 5-2]에서는 TPP 주요국 회계서비스 서비스무역제한지수를 보여주고 있다. 회계서비스 분야 서비스무역제한지수 OECD 회원국 평균은 0.287로 [그림 5-2]에 제시되어 있는 모든 국가에 비해 높다. 한국의 경우 서비스무역제한지수가 0.254로서 OECD 회원국 평균보다는 작은 값을 보이고 있으나, 다른 비교대상국에 비해서는 값이 상대적으로 크다. 서비스무역제한지수로 본 이 분야의 개방수준은 뉴질랜드(0.133)가 가장 높다.

[그림 5-3]은 건축서비스 분야 무역개방지수를 제시하고 있다. 이 분야의 OECD 회원국 평균은 0.211로 비교대상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

그림 5-3. 주요국 건축서비스 STRI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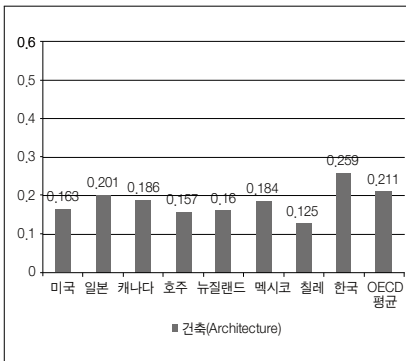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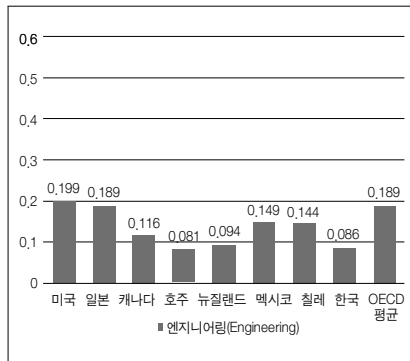


그림 5-4. 주요국 엔지니어링서비스 STRI 비교



자료: OECD STRI Regulatory database(검색일: 2014. 9. 15)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은 편이다. 건축서비스 분야에서 OECD 회원국 평균보다 큰 값을 보이는 국가는 한국으로 0.259이며 제시된 다른 국가들은 이보다 작은 값을 보이고 있다. 비교대상국 중 가장 높은 개방수준을 보이는 국가는 칠레로 서비스무역제한지수가 0.125이다. [그림 5-4]은 엔지니어링서비스 분야의 무역제한지수를 제시하고 있다. 다른 전문직서비스에 비해 전반적인 개방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엔지니어링 서비스무역제한지수 OECD 회원국 평균은 0.189로 나타났다. 제시된 국가 중 이보다 큰 값을 보인 국가는 미국과 일본이며 나머지 국가는 OECD 평균보다 작은 값을 보이고 있다. 한국의 경우 0.086으로 비교대상국가들에 비해서도 높은 개방수준으로 보이고 있다. 가장 낮은 개방수준을 보인 국가는 미국으로 0.199이다. 가장 높은 개방수준을 보인 국가는 호주이며 서비스무역제한지수가 0.081로 나타났다.

서비스무역제한지수를 통해 본 전문직서비스 개방수준은 해운서비스나 항공서비스를 제외한 다른 서비스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 이는

그림 5-5. 주요국 컴퓨터서비스 STRI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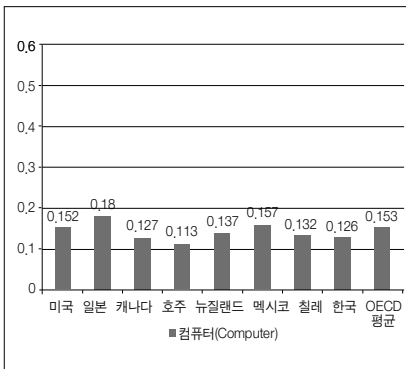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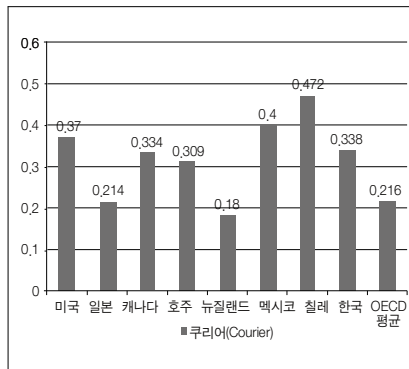


그림 5-6. 주요국 쿠리어서비스 STRI 비교



자료: OECD STRI Regulatory database(검색일: 2014. 9. 15)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전문직서비스가 인력의 이동을 수반하며 이 인력들에 대해 국가별로 서비스 공급자의 자격(qualification)이나 면허(license)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각 국가는 해외 전문직 인력의 국내유입이 국내 노동시장에 영향을 주는 것에 대해 민감하며, 특정 전문직서비스에 대한 공급이 국내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가 아닌 한 국내 서비스 시장개방에 대해 소극적이기 때문이라고 하겠다. TPP 참여와 관련하여 한국의 전문직서비스는 엔지니어링서비스를 제외하고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방수준이 낮아 TPP에 직접 참여할 경우 이미 참여하고 있는 TPP 회원국으로부터 개방에 대한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전문직서비스에 이어 [그림 5-5]는 컴퓨터 관련 서비스무역제한지수를 보여주고 있다. 서비스무역제한지수로 본 컴퓨터 관련 서비스 분야는 전반적으로 개방수준이 높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OECD 회원국 평균은 0.153으로 앞에서 본 전문직서비스에 비해 개방수준이 높다. 일본과 멕시코가 제시된 국가들 중 OECD 평균보다 큰 값을 보이고 있다. 한국의 경우 서비스무역제한지수는 0.126으로 OECD 평균보다 낮으며 비교대상인 TPP 회원국들에 비해서도 높은 편이 아니다. 비교대상국가들 중에는 일본의 서비스무역제한지수가 0.18로 가장 높으며, 호주의 서비스무역제한지수가 0.113으로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내었다. 한국의 TPP 참여와 관련하여, 컴퓨터 관련 서비스의 경우 이미 한국의 개방수준이 높아 협상을 통한 추가적인 개방압력이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그림 5-6]~[그림 5-10]에서는 W120 분류상 커뮤니케이션 분야 중 쿠리어, 통신, 영화, 방송, 음향 서비스무역제한지수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5-6]는 쿼리어서비스에서 TPP 참여 주요국과 한국, 그리고 OECD 회원국 평균 서비스무역제한지수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5-6]에 나타난 TPP 회원국들의 이 분야 개방수준은 높지 않은 편이라 할 수 있다. OECD 평균은 0.216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여타 TPP 회원국과 한국의 서비스무역제한지수에 비해 낮다. OECD 평균보다 작은 값을 보인 국가는 일본과 뉴질랜드이며 나머지 국가는 이보다 상당히 큰 값을 보이고 있다. 가장 큰 서비스무역제한지수 값을 보인 국가는 칠레로 0.472이며, 가장 작은 값을 보인 국가는 뉴질랜드로 0.18이다. 한국의 경우 서비스무역제한지수가 0.338로 상대적으로 높은 값을 보이고 있으며, 캐나다와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5-7]은 TPP 주요국 통신서비스 개방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먼저 OECD 평균은 0.175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대부분의 비교대상 TPP 회원국 중 미국이 이보다 작은 값을 보이고 있으며, 나머지 회원국들과 한국은 이보다 큰 값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통신분야 서비스

그림 5-7. 주요국 통신서비스 STRI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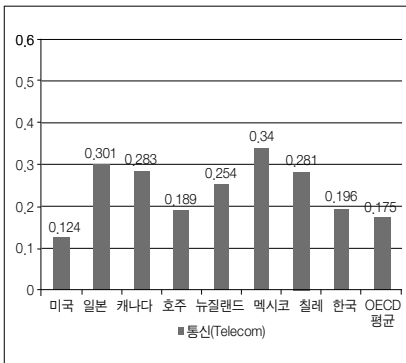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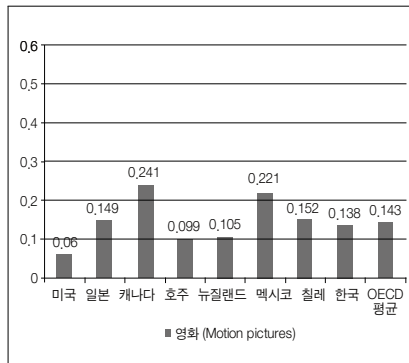


그림 5-8. 주요국 영화서비스 STRI 비교



자료: OECD STRI Regulatory database(검색일: 2014. 9. 15)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무역제한지수는 0.124으로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제시된 비교대상 TPP 협상국 중 가장 작은 값을 보이고 있다. 비교대상국가들 중 가장 큰 서비스 무역제한지수를 보인 국가는 멕시코로 약 0.34이다. 한국의 이 분야 서비스무역제한지수는 0.196으로 OECD 평균보다 크지만 비교대상 TPP 협상국들 중 미국과 호주를 제외하고는 가장 작은 값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이 TPP 협상에 참여할 경우 통신분야에 대한 추가 개방요구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커뮤니케이션서비스 중 영화, 방송, 음향 분야는 시청각비드로 분류되며 일반적으로 자국의 문화보호를 이유로 각국이 개방에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입장을 보인다. 특히 방송분야에 대한 개방수준은 다른 서비스 분야에 비해 낮은 편이라 할 수 있다. 먼저 [그림 5-8]은 영화 분야 서비스무역제한지수를 보여주고 있다. 이 분야 OECD 평균은 0.143으로 OECD 전반적으로 개방수준이 높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비교대상 TPP 회원국 중에서 일본, 캐나다, 멕시코, 칠레가 OECD 평균보다 큰 서비스무역제한지수를 보이고 있으며, 미국, 호주, 뉴질랜드가 이보다 작은 값을 보이고 있다. 한국의 이 분야 서비스무역제한지수는 0.138로 OECD 평균보다 작으며 비교대상 TPP 협상국 중 일본, 캐나다, 멕시코, 칠레보다 작은 값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의 경우 이미 개방수준이 높으므로 TPP 협상 시 추가 개방에 대한 요청이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림 5-9]는 방송분야 서비스무역제한지수를 보여주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방송분야에 대한 개방수준은 전반적으로 낮은 편이다. 서비스무역제한지수 OECD 평균은 0.239로 다른 커뮤니케이션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값이 크다. OECD 평균보다 높은 개방수준을 보이는 국가는 일본, 호주, 뉴질랜드이며 한국을 비롯한 미국, 캐나다, 멕시코, 칠레

는 이보다 낮은 개방수준을 보이고 있다. 가장 높은 개방수준을 보이는 국가는 뉴질랜드로 서비스무역제한지수가 0.151이며, 반면 가장 낮은 개방수준을 보인 국가는 캐나다로 서비스무역제한지수가 0.386이다. 한국의 방송분야 서비스무역제한지수는 0.342로 값이 상대적으로 큰 편이다. 한국보다 낮은 개방수준을 보이는 국가는 캐나다와 멕시코 정도이다. 뒤에서 분석할 세부 제한사항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지만, 한국이 TPP 협상에 참여할 경우 방송분야 추가 개방에 대한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5-10]는 시청각서비스 중 음향분야 서비스무역제한지수를 나타내고 있다. 음향분야의 개방수준은 영화나 방송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OECD 평균이 0.137이다. OECD 평균보다 큰 서비스무역제한지수 값을 보이는 국가는 한국을 비롯해서 일본, 캐나다, 칠레가 있다. 가장 높은 개방수준을 보이는 국가는 미국으로 음향분야 서비스무역제한지수가 0.049이며 반면에 칠레는 0.165로 가장 낮은 개방수준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칠레의 경우도 서비스무역제한지수

그림 5-9. 주요국 방송서비스 STRI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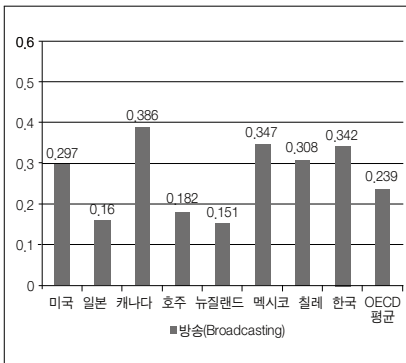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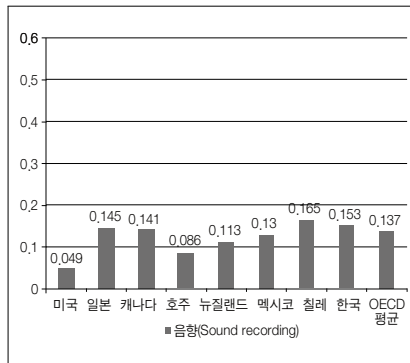


그림 5-10. 주요국 음향서비스 STRI 비교



자료: OECD STRI Regulatory database(검색일: 2014. 9. 15)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가 0.2보다 낮아 절대적인 측면에서 개방수준이 낮다고 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의 경우 음향분야 서비스무역제한지수가 0.153으로 개방수준이 높다고 할 수 있으나, 제시되어 있는 여타 TPP 협상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이 TPP 협상에 참여할 경우 미국 등으로부터 추가적인 개방요청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커뮤니케이션서비스는 우편, 배달(쿠리어), 통신, 시청각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분야이다. 동시에 정부가 독점권을 인정하거나(우편), 국가기간 산업으로 보호하거나(통신), 문화적 이유로 보호(시청각)하고 있어 제한 사항이 많고 자유화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분야이기도 하다. 한국의 경우 영화분야를 제외하고는 OECD 평균보다 높은 서비스무역제한지수를 보이고 있어 개방수준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제시되어 있는 TPP 협상 참여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현저하게 낮은 개방수준을 보이는 분야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그림 5-11]은 건설분야 서비스무역제한지수를 보여주고 있

그림 5-11. 주요국 건설서비스 STRI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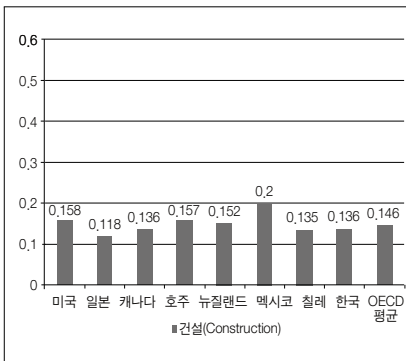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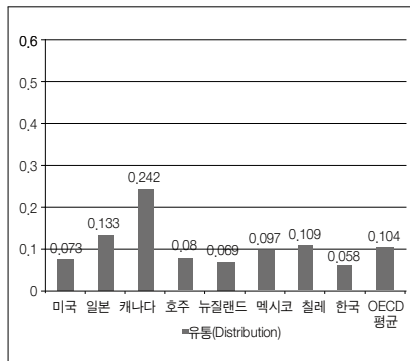


그림 5-12. 주요국 유통서비스 STRI 비교



자료: OECD STRI Regulatory database(검색일: 2014. 9. 15)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다. TPP 협상 참여국의 전반적인 건설서비스 개방수준은 높은 편이라 하겠다. 건설분야 서비스무역제한지수의 OECD 회원국 평균은 0.146이며 대부분의 TPP 협상 참여국은 이와 비슷한 수준이다. 가장 큰 값을 보이는 멕시코의 서비스무역제한지수가 0.2로 한국과 다른 TPP 협상 참여국은 멕시코보다 작은 값을 보이고 있다. 건설분야에서 가장 높은 개방수준을 보인 국가는 일본으로 서비스무역제한지수는 0.118이다. 서비스무역제한지수의 일본과 멕시코 간 차이가 0.1 미만으로 국가 간 편차가 거의 없다고 하겠다. 한국의 경우 건설분야 서비스무역제한지수는 0.136으로 OECD 평균보다 값이 작지만 지수상으로 TPP 협상 참여국들과의 차이가 거의 없으므로 TPP 협상 참여 시 추가 개방에 대한 요구가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건설서비스에 이어 [그림 5-12]은 유통분야 서비스무역제한지수를 보여주고 있다. 유통서비스는 전체적인 개방수준이 다른 서비스 분야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높은 편이다. 먼저 OECD 평균이 0.104로 서비스무역제한지수가 제시된 서비스 분야 중 가장 작은 값을 보이고 있다. TPP 협상 참여국

그림 5-13. 주요국 보험서비스 STRI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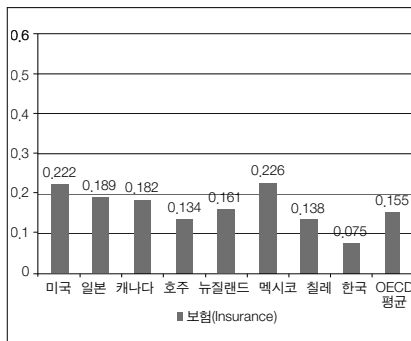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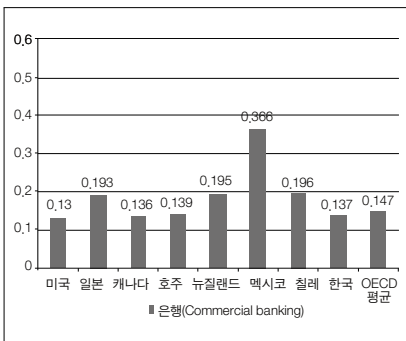


그림 5-14. 주요국 은행서비스 STRI 비교



자료: OECD STRI Regulatory database(검색일: 2014. 9. 15)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의 개방수준도 상당히 높다. 서비스무역제한지수 값이 가장 큰 국가는 캐나다(0.242)로 비교대상국가 중 유일하게 0.2를 넘기고 있다. 유통 분야의 개방수준이 가장 높은 국가는 한국으로 이 분야 서비스무역제한지수가 0.058로 나타났다. 사실상 제한사항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TPP 협상에서 유통분야 개방에 관한 추가적인 논의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유통서비스에 이어 [그림 5-13] ~ [그림 5-14]는 금융분야 서비스무역제한지수를 보여주고 있다. 먼저 [그림 5-13]는 보험분야 서비스무역제한지수이다. 보험분야 서비스무역제한지수 OECD 평균은 0.155이다. [그림 5-13]에 제시된 국가 중에서 한국과 호주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은 OECD 평균보다 큰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낮은 개방수준을 보인 국가는 멕시코로 서비스무역제한지수가 0.226이며 가장 높은 수준의 개방수준으로 보인 국가는 한국으로 0.075이다. 한국의 보험분야에 대한 무역 관련 제한사항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더 나아가 미국과 일본의 서비스무역제한지수가 각각 0.222와 0.189인 것을 감안할 때 한국의 보험분야 개방수준이 상당히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그림 5-15. 주요국 해운서비스 STRI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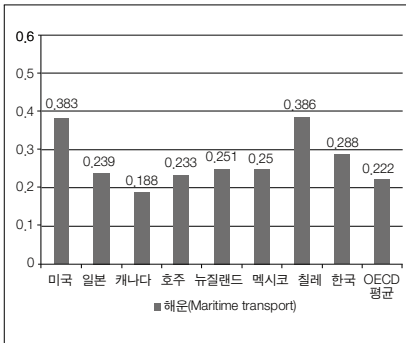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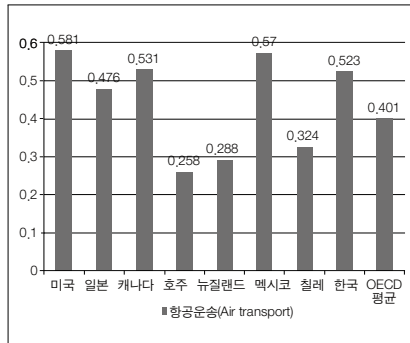


그림 5-16. 주요국 항공운송서비스 STRI 비교



자료: OECD STRI Regulatory database(검색일: 2014. 9. 15)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5-14]는 은행분야 서비스무역제한지수를 보여주고 있다. 은행분야 서비스 무역제한지수 OECD 평균은 보험보다 조금 작은 0.147이다. 일본, 뉴질랜드, 멕시코, 칠레가 OECD 평균보다 큰 값을 보이고 있으며, 미국, 캐나다, 호주, 한국은 이보다 작은 값을 보인다. 서비스무역제한지수상 가장 낮은 개방수준을 보이는 국가는 멕시코로 서비스무역제한지수가 0.366이며, 반면에 미국은 0.13으로 가장 높은 개방수준을 보이고 있다. 한국의 서비스무역제한지수는 0.137로 미국, 캐나다, 호주 등과 비슷한 수준이면서 OECD 평균값보다 조금 작다. 서비스무역제한지수를 통해 본 한국의 금융서비스 개방수준은 보험과 은행 서비스가 전반적으로 높은 편이다. 특히 보험분야는 개방수준이 비교대상국가들 중 가장 높아 한국이 TPP에 참여하더라도 추가적인 개방이 있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금융서비스에 이어 마지막으로 [그림 5-15] ~ [그림 5-18]은 운송분야 서비스무역제한지수를 보여주고 있다. 먼저 [그림 5-15]는 해상운송분야 서비스무역제한지수를 보여주고 있다. 해운분야 OECD 평균값은 0.222이며, 한국을 비롯한 제시된 TPP 협상 참여국가 중 캐나다를 제외하고는 모두 OECD 평균보다 높은 서비스무역제한지수를 나타내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 0.188로 해운분야 가장 높은 개방수준을 보이고 있다. 반면에 칠레의 서비스무역제한지수는 0.386으로 제시된 국가 중 가장 개방수준이 낮다. 미국의 경우 해운분야 서비스무역제한지수는 0.383으로 칠레와 비슷한 수준이며 가장 낮은 값을 보인 캐나다에 비해 거의 두 배에 이른다. 전통적으로 미국은 해운분야 개방에 대해 매우 소극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한국의 해운분야 서비스무역제한지수는 0.288로 미국과 칠레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값을 보이고 있으나 다른 비교대상국가보다 크고 OECD

평균보다도 크다. 한국 해상운송분야의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바, 우리의 개방수준을 높이는 동시에 협상 참여국의 개방수준 향상을 주장하는 등 전략적 레버리지로 사용할 수 있는 분야로 판단된다. [그림 5-16]은 항공분야 서비스무역제한지수를 보이고 있으며, 항공분야는 전반적으로 개방수준이 매우 낮은 분야이다. 서비스무역제한지수 항공분야 OECD 평균은 0.401이며 한국을 비롯한 미국, 일본, 캐나다, 멕시코가 이보다 큰 값을 보이고 있다. 가장 낮은 개방수준을 보이는 국가는 미국으로 서비스무역제한지수가 0.581에 이른다. 가장 높은 개방수준을 보이는 국가는 호주로 서비스무역제한지수가 0.258이다. 한국의 경우 서비스무역제한지수는 0.523으로 OECD 평균보다는 높으나 미국이나 캐나다보다 작은 편이다. 또한 항공운송분야의 경우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제한사항이 항공협정과 관련되어 있어 서비스 분야 협상에서 논의되기는 쉽지 않은 바, TPP 협상에 한국이 참여하더라도 이 분야에 대한 개방논의가 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림 5-17]은 철도(화물)운송분야 서비스무역제한지수를 보여주고 있

그림 5-17. 주요국 철도운송서비스 STRI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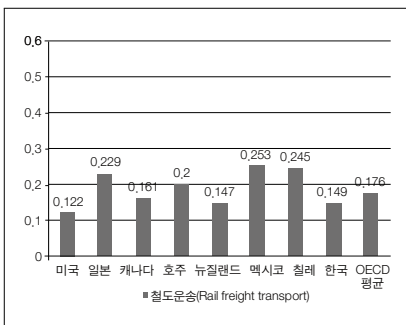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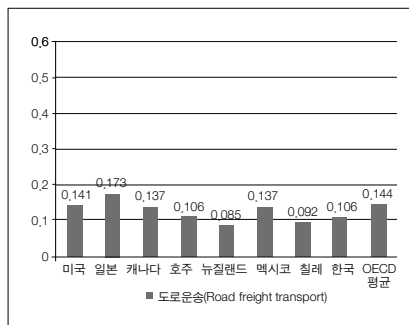


그림 5-18. 주요국 도로운송서비스 STRI 비교



자료: OECD STRI Regulatory database(검색일: 2014. 9. 15)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다. 철도운송이나 이어서 언급할 도로운송의 경우 해상운송이나 항공운송과 같이 높은 제한사항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철도운송분야 서비스무역제한지수 OECD 평균은 0.176이다. 철도운송분야에서 낮은 개방수준을 보인 국가는 멕시코로 서비스무역제한지수가 0.253이다. 반면에 가장 높은 개방수준을 나타낸 국가는 미국으로 서비스무역제한지수가 0.122이다. 한국의 경우 철도운송분야 서비스무역제한지수는 0.149로 OECD 평균보다 높은 개방수준으로 보이고 있다. TPP 협상 참여국 중에서는 미국을 제외하고 뉴질랜드와 비슷한 수준이며 다른 국가보다 높은 개방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5-18]은 도로(화물)운송분야 서비스무역제한지수를 보여주고 있다. 도로운송분야는 현재 비교되고 있는 운송분야 중 개방수준이 가장 높고 다른 국가와의 개방수준 차이도 상대적으로 작다고 할 수 있다. 먼저 서비스무역제한지수 OECD 평균은 0.144이다. 제시된 TPP 협상 참여국 중에서는 일본을 제외하고 모두 OECD 평균보다 높은 개방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일본의 도로운송 서비스무역제한지수는 0.173으로 가장 높고, 뉴질랜드의 경우 0.085로 제한사항이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0.106으로 도로운송 서비스 무역에 대한 개방수준이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한국이 TPP에 참여하더라도 도로운송에 대한 추가적인 개방여지가 많지 않다.

3. 서비스무역제한지수(STRI) 항목별 비교

앞절에서는 서비스무역제한지수의 전반적인 수준을 각 분야별로 한국, TPP 협상 참여국, 그리고 OECD 평균과 상호 비교해보았다. 이어서 본

절에서는 각국의 서비스무역제한지수를 제한사항별로 분류하고 어떤 성격의 제한사항이 무역제한지수에 크게 기여하였는지를 분석할 것이다. WTO GATS을 근거로 서비스는 크게 네 가지 모드(mode)로 정의된다. WTO에 가입한 각국은 국가별 필요에 따라 서비스 무역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양허표에 각각의 모드별로 시장접근 제한사항과 내국민대우 제한사항을 적시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서비스무역제한지수의 경우 전체적으로 양허를 근거로 하고 있지만, 서비스 무역 관련 국내법을 포함하여 지수를 산정하였고, 따라서 양허상의 분류를 그대로 따르기보다는 규제의 내용을 좀 더 유기적인 측면에서 바라보고 분류하였다. 다시 말해 제한사항을 모드별 혹은 시장접근인지 내국민대우인지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제한사항 내용별로 다섯 가지로 분류하였다. ① 지분 제한 및 기타 시장진입조건, ② 인력이동 제한, ③ 기타 차별적 조치, ④ 경쟁 및 공공질서 제한, 그리고 ⑤ 규제투명성 및 행정부담 등으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분류를 통해 각 국가의 분야별 서비스무역제한지수를 분해해보고 어떤 특징으로 인해 한 국가의 서비스 분야 개방수준이 변화하는지 보고자 한다.

가. 미국

가장 먼저 현재 TPP 협상의 전반을 이끌어나가고 있고 서비스 분야의 경쟁력이 높다고 할 수 있는 미국의 서비스 분야 제한사항을 분야별, 그리고 제한사항의 범주별로 분석해보도록 하겠다. [표 5-2]는 미국의 분야별 서비스 무역제한지수를 보여주고 있으며, [표 5-3]은 서비스무역제한지수 제한사항 범주별 구성 비중을 보여주고 있다. [표 5-2]의 우측 하단에 제시되어 있듯이 미국의 18개 분야 서비스무역제한지수 평균은 0.195로 나타났으며 이 값은

한국보다 작다. 다시 말해 지수상 미국은 한국보다 개방수준이 높다. 또한 제시된 18개 분야 중 쿠리어, 방송, 해상운송 및 항공운송을 제외한 나머지 분야들은 서비스무역제한지수가 0.2 이하로 높은 개방수준을 보이고 있다. 가장 낮은 개방수준을 보인 분야는 항공운송으로 서비스무역제한지수가 0.582이며, 반면에 가장 높은 개방수준을 보인 분야는 음향분야로 서비스무역제한지수가 0.049로 나타났다. 미국 서비스무역제한지수 범주별 제한사항 분석을 통해 알 수 있는 것 중 하나는 경쟁 및 공공지분 제한이나 규제 투명성 및 행정부담 관련하여 제한사항이 대부분의 분야에서 없다는 점이다. [표 5-1]에 따르면 경쟁 및 공공지분 제한과 관련하여 제시된 18개 분야 중 10개 분야에서 제한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 투명성 및 행정부담과 관련해서는 제시된 18개 분야 중 15개 분야에서 제한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2]는 각 제한사항 구성요소의 평균 구성 비중을 제시하고 있다. 규제 투명성과 행정부담 관련은 비중이 평균 1.5%로 매우 작다. 경쟁 및 공공지분 제한의 경우도 서비스무역제한지수 구성 비중이 평균 약 12.7% 정도이다. 미국 서비스무역제한지수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제한사항은 시장진입과 인력이동 관련이다. 각각 서비스무역제한지수의 약 46.5%와 26.5%를 설명한다.

분야별로는 먼저 법률, 회계, 건축, 엔지니어링을 포함하는 전문직서비스의 경우 대부분을 구성하는 제한사항은 인력이동 관련이다. 네 분야 모두에서 인력이동 관련 제한사항이 서비스무역제한지수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전문직서비스의 또 다른 특징은 외국인(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가 다른 서비스 분야에 비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이다. 전문직서비스는 아니지만 서비스 공급 전문인력이 중요한 컴퓨터서비스의 경우도 전문직서비스와 비슷하게 인력이동 제한사항이 서비스무역제

한지수의 중요한 구성요소로 나타났다.

커뮤니케이션서비스 중 큐리어서비스는 다섯 가지 범주 모두 제한사항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시장진입과 공공지분 관련 제한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각각의 비중은 약 36.5%, 그리고 31.9%이다. 큐리어서비스의 서비스무역제한지수가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전반적인 외국기업의 시장진입이 쉽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통신서비스의 경우도 큐리어서비스와 비슷하다. 전반적인 시장진입에 대한 제한사항이 서비스무역제한지수의 대부분을 설명한다. 시장진입 관련 제한사항의 비중이 약 48%를 차지하며 공공지분 제한이 약 32%를 차지한다. 미국의 통신분야는 개방수준이 낮지는 않으나 시장진입에 대한 일부 제한사항이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영화분야는 미국의 서비스 분야 중 개방수준이 가장 높다. 제한사항의 구성 비중은 인력이동 관련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거의 제한사항이 없는 것과 같다. 방송분야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낮은 개방수준을 유지하며 미국도 예외는 아니다. 제한사항의 구성을 보았을 때 외국기업의 지분제한 및 시장진입 관련이 84.8%를 차지하고 있다. 음향서비스의 경우 특이하게도 시장진입에 관한 제한사항은 없으나 인력이동에 대한 제한과 외국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만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부문의 인력이동에 대한 제한사항이 서비스무역제한지수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보험과 은행을 포함하는 금융서비스의 경우 개방수준이 높은 편이며 서비스무역제한지수의 가장 큰 비중은 시장진입 관련으로 각각 66.8%와 82.4%를 설명한다. 운송서비스의 경우 시장접근에 관한 제한사항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특히 개방수준이 낮은 해운과 항공의 경우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사항의 비중이 더 크다.

표 5-2. 미국의 분야별 서비스무역제한지수

구분	법률	회계	건축	엔지니어링	컴퓨터	큐리어	통신	영화	방송	음향	건설	유통	보험	은행	해상	항공	철도	도로	분야별 평균
지분 제한 및 기타 시장진입조건	0.014	0.018	0.013	0.013	0.034	0.135	0.06	0.018	0.252	0	0.034	0.032	0.149	0.108	0.285	0.374	0.046	0.049	0.091
인력이동 제한	0.095	0.095	0.126	0.164	0.082	0.039	0.016	0.029	0.015	0.029	0.09	0.011	0.012	0.013	0.051	0.009	0.024	0.032	0.052
기타 차별적 조치	0.031	0.034	0.024	0.021	0.035	0.039	0.009	0.013	0.022	0.02	0.034	0.019	0.018	0.01	0.025	0.058	0.019	0.018	0.025
경쟁 및 공공자본 제한	0	0	0	0	0	0.118	0.04	0	0	0	0	0.012	0.038	0	0.022	0.141	0.032	0.042	0.025
규제 투명성 및 행정부담	0	0	0	0	0	0.039	0	0	0.008	0	0	0	0.006	0	0	0	0	0	0.003
합계	0.14	0.147	0.163	0.198	0.151	0.37	0.125	0.06	0.297	0.049	0.158	0.074	0.223	0.131	0.383	0.582	0.121	0.141	0.195

주: 분야별 평균은 서비스 분야별 단순 횡적 평균을 의미.

자료: OECD STRI Regulatory database(검색일: 2014. 9. 15)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표 5-3. 미국의 분야별 서비스무역제한지수 제한사항 범주별 구성 비중

(단위: %)

구분	범률	회계	건축	엔지니어링	컴퓨터	쿠리어	통신	영화	방송	음향	건설	유통	보험	은행	항공	철도	도로	분야별 평균
지분 제한 및 기타 시장진입조건	10.0	12.2	8.0	6.6	22.5	36.5	48.0	30.0	84.8	0.0	21.5	43.2	66.8	82.4	64.3	38.0	34.8	46.5
인력이동 제한	67.9	64.6	77.3	82.8	54.3	10.5	12.8	48.3	5.1	59.2	57.0	14.9	5.4	9.9	1.5	19.8	22.7	26.5
기타 차별적 조치	22.1	23.1	14.7	10.6	23.2	10.5	7.2	21.7	7.4	40.8	21.5	25.7	8.1	7.6	6.5	10.0	15.7	12.8
경쟁 및 공공지분 제한	0.0	0.0	0.0	0.0	0.0	31.9	32.0	0.0	0.0	0.0	0.0	16.2	17.0	0.0	5.7	24.2	26.4	12.7
규제 투명성 및 행정부담	0.0	0.0	0.0	0.0	0.0	10.5	0.0	0.0	2.7	0.0	0.0	0.0	2.7	0.0	0.0	0.0	0.0	1.5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OECD STRI Regulatory database(검색일: 2014. 9. 15)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나. 일본

일본은 서비스 시장의 개방수준이 한국과 비슷하다. [표 5-4]에 따르면 일본 서비스무역제한지수 평균은 0.204로 0.208인 한국과 비슷하다. 법률, 쿠파어, 통신, 해운, 항공, 철도 등 6개 분야의 서비스무역제한지수가 0.2보다 크며 나머지 분야는 이보다 작다. 개방수준이 가장 낮은 분야는 항공운송분야로 0.477이며 개방수준이 가장 높은 분야는 건설분야로 서비스무역제한지수가 0.119이다. 일본의 서비스 시장개방과 관련하여 특징은 쿠파어 및 방송 서비스에 대한 개방수준이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이다. [표 5-5]에 따르면 서비스무역제한수지 0.204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제한사항 범주는 시장진입과 인력이동 관련으로 분야별로 평균적으로 각각 약 31.9%와 31.5%를 설명한다. 다음으로는 경쟁 및 공공지분 제한 관련이 19.9%를 차지하고 있으며, 규제 투명성 관련이 12.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차별적 조치는 4.4%로 많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인력이동 관련 제한사항은 상대적으로 전문인력 등이 많이 필요한 분야에서 대부분 나타나고 있다. 서비스무역제한지수가 제공된 총 18개 분야 중 8개 분야에서 인력이동 관련 제한사항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전문직서비스인 법률, 회계, 건축,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인력이동 관련 제한사항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문직 이외에도 컴퓨터, 영화, 음향, 건설 등 자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적자본의 중요성이 높은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인력이동 관련 제한사항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진입 관련 제한사항은 총 18개 분야 중 6개 분야에서 가장 큰 비중을 보이고 있다. 외국자본의 시장진입 유입에 대한 제한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표 5-4. 일본의 분야별 서비스무역제한지수

구분	법률	회계	건축	엔지니어링	컴퓨터	큐리어	통신	영화	방송	음향	건설	유통	보험	은행	해상	항공	철도	도로	분야별 평균
지분 제한 및 기타 시장진입조건	0.029	0.036	0.026	0.027	0.034	0.048	0.127	0.036	0.075	0.021	0.017	0.079	0.094	0.058	0.107	0.21	0.046	0.099	0.065
인력이동 제한	0.133	0.095	0.108	0.11	0.062	0.043	0.012	0.088	0.046	0.088	0.052	0.032	0.035	0.038	0.076	0.026	0.048	0.063	0.064
기타 차별적 조치	0.01	0.011	0.024	0.021	0.017	0.011	0	0	0	0	0.034	0	0	0	0.006	0.029	0	0	0.009
경쟁 및 공공지분 제한	0.018	0	0.012	0	0.02	0.062	0.15	0	0.022	0	0	0	0.049	0.075	0.029	0.196	0.097	0	0.041
규제 투명성 및 행정부담	0.023	0.028	0.031	0.031	0.047	0.048	0.012	0.024	0.017	0.036	0.016	0.021	0.011	0.023	0.02	0.016	0.038	0.011	0.025
합계	0.213	0.17	0.201	0.189	0.18	0.212	0.301	0.148	0.16	0.145	0.119	0.132	0.189	0.194	0.238	0.477	0.229	0.173	0.204

주: 분야별 평균은 서비스 분야별 단순 횡적 평균을 의미.

자료: OECD STRI Regulatory database(검색일: 2014. 9. 15)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표 5-5. 일본의 분야별 서비스무역제한지수 제한사항 범주별 구성 비중

구분	범출	회계	건축	엔지니 어링	컴퓨터	쿠리어	통신	영화	방송	음향	건설	유통	보험	은행	해운	항공	철도	도로	분야별 평균
지분 제한 및 기타 시장진입조건	13.6	21.2	12.9	14.3	18.9	22.6	42.2	24.3	46.9	14.5	14.3	59.8	49.7	29.9	45.0	44.0	20.1	57.2	31.9
인력이동 제한	62.4	55.9	53.7	58.2	34.4	20.3	4.0	59.5	28.8	60.7	43.7	24.2	18.5	19.6	31.9	5.5	21.0	36.4	31.5
기타 차별적 조치	4.7	6.5	11.9	11.1	9.4	5.2	0.0	0.0	0.0	0.0	28.6	0.0	0.0	0.0	2.5	6.1	0.0	0.0	4.4
경쟁 및 공공지분 제한	8.5	0.0	6.0	0.0	11.1	29.2	49.8	0.0	13.8	0.0	0.0	0.0	25.9	38.7	12.2	41.1	42.4	0.0	19.9
규제 투명성 및 행정부담	10.8	16.5	15.4	16.4	26.1	22.6	4.0	16.2	10.6	24.8	13.4	15.9	5.8	11.9	8.4	3.4	16.6	6.4	12.3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OECD STRI Regulatory database(검색일: 2014. 9. 15)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방송, 유통, 보험, 해운, 항공, 도로 등 6개 분야이다. 경쟁 및 공공지분에 대한 제한은 쿠리어, 통신, 은행, 철도 등 공공적 성격이 강한 분야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 투명성 및 행정부담의 경우 전체 서비스 분야에서 고르게 나타나고 있으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일본은 외국인 혹은 외국인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는 STRI 상에서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 캐나다

캐나다의 서비스무역제한지수 분야별 평균은 0.213으로 비교대상국가 중에서는 멕시코를 제외하고는 가장 큰 값을 보이고 있다.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음향서비스를 제외한 서비스무역제한지수가 0.2를 넘는 모습이며 이외에도 유통과 항공운송 분야가 0.2보다 큰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낮은 개방수준을 보이는 분야는 대부분의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항공운송분야이며 서비스무역제한지수는 0.531이다. 가장 높은 개방수준을 보여주는 주는 분야는 엔지니어링이며, 서비스무역제한지수 값이 0.117이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제한사항은 시장진입 관련으로 서비스무역제한지수 중 평균적으로 약 62.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인력이동 제한이 약 13.5%, 차별적 조치가 11.0%, 경쟁 및 공공지분 제한 관련이 10.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제시된 18개 분야 중 엔지니어링, 음향, 철도운송 분야를 제외하고는 모든 다른 분야에서 시장진입 관련 제한사항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엔지니어링 분야에서는 인력이동 관련이, 음향분야에서는 차별적 조치 관련

표 5-6. 캐나다의 분야별 서비스무역제한지수

구분	법률	회계	건축	엔지니어링	컴퓨터	쿠리어	통신	영화	방송	음향	건설	유통	보험	은행	해상	항공	철도	도로	분야별 평균
지분 제한 및 기타 시장진입조건	0.086	0.107	0.078	0.04	0.069	0.159	0.247	0.164	0.327	0.052	0.067	0.15	0.123	0.081	0.142	0.344	0.061	0.099	0.133
인력이동 제한	0.019	0.048	0.072	0.065	0.041	0.033	0.008	0.029	0.015	0.029	0.052	0.014	0.02	0.013	0.025	0.009	0.016	0.021	0.029
기타 차별적 조치	0.02	0.022	0.024	0.011	0.017	0.022	0.005	0.039	0.033	0.06	0.017	0.03	0.018	0.01	0.013	0.044	0.019	0.018	0.023
경쟁 및 공공지분 제한	0	0	0.012	0.011	0	0.07	0.024	0.009	0.011	0	0	0.022	0.016	0.021	0.007	0.134	0.065	0	0.022
규제 투명성 및 행정부담	0	0	0	0	0	0.049	0	0	0	0	0	0.026	0.006	0.011	0	0	0	0	0.005
합계	0.125	0.177	0.186	0.117	0.127	0.333	0.284	0.241	0.386	0.141	0.136	0.242	0.183	0.136	0.187	0.531	0.161	0.138	0.213

주: 분야별 평균은 서비스 분야별 단순 횡적 평균을 의미.

자료: OECD STRI Regulatory database(검색일: 2014. 9. 15)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표 5-7. 캐나다의 분야별 서비스무역제한지수 제한사항 범주별 구성 비중

구분	(단위: %)																		
	법률	회계	건축	엔지니어링	컴퓨터	쿠리어	통신	영화	방송	음향	건설	유동	보험	은행	해운	항공	철도	도로	분야별 평균
지분 제한 및 기타 시장진입조건	68.8	60.5	41.9	34.2	54.3	47.7	87.0	68.0	84.7	36.9	49.3	62.0	67.2	59.6	75.9	64.8	37.9	71.7	62.5
인력이동 제한	15.2	27.1	38.7	47.0	32.3	9.9	2.8	12.0	3.9	20.6	38.2	5.8	10.9	9.6	13.4	1.7	9.9	15.2	13.5
기타 차별적 조치	16.0	12.4	12.9	9.4	13.4	6.6	1.8	16.2	8.5	42.6	12.5	12.4	9.8	7.4	7.0	8.3	11.8	13.0	11.0
경쟁 및 공공지분 제한	0.0	0.0	6.5	9.4	0.0	21.0	8.5	3.7	2.8	0.0	0.0	9.1	8.7	15.4	3.7	25.2	40.4	0.0	10.5
규제 투명성 및 행정부담	0.0	0.0	0.0	0.0	0.0	14.7	0.0	0.0	0.0	0.0	0.0	10.7	3.3	8.1	0.0	0.0	0.0	0.0	2.4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OECD STRI Regulatory database(검색일: 2014. 9. 15)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이, 그리고 철도분야에서는 경쟁 및 공공지분 제한 관련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제한사항으로 나타났다. 규제 투명성과 관련하여 총 18개 분야 중 쿼터, 유통, 금융(보험 및 은행)을 제외하고는 제한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캐나다의 경우 대부분의 제한사항이 시장진입과 지분 제한 관련인 것으로 파악된다. 캐나다 서비스무역제한지수의 또 다른 특징은 다른 TPP 협상국들과 달리 엔지니어링을 제외한 전문직 서비스 분야에서 인력이동 관련 제한사항의 비중이 크지 않다는 점이다.

라. 멕시코

멕시코의 서비스무역제한지수 분야별 평균은 0.261으로 비교대상국가 중에서는 가장 낮은 개방수준을 보이고 있다. 제시된 18개 분야 중 서비스무역제한지수가 0.2 이하인 분야는 8개로 나타났다. 가장 낮은 개방수준을 보이는 분야는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항공운송분야이며, 항공운송분야를 제외하고는 법률서비스분야 서비스무역제한지수가 0.516으로 가장 낮은 개방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반면에 유통분야의 경우 서비스무역제한지수가 0.098로 가장 높은 개방수준을 보이고 있다. 멕시코의 경우도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커뮤니케이션서비스 관련 개방수준이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 또 다른 한 가지는 법률서비스에 대한 개방수준이 다른 분야에 비해 크게 낮다는 점도 특징이라 할 수 있겠다. 제한사항 범주별 구성 비중을 기준으로 시장진입 관련 제한사항이 전체 서비스무역제한지수에 대해 평균적으로 41.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인력이동 관련 제한사항이 25.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경쟁 및 공공지분 제한 관련이 약 17.7%를 설명하고 있다. 차별적 조치와

표 5-8. 멕시코의 분야별 서비스무역제한지수

구분	법률 회계	건축	엔지니어링	컴퓨터	큐리어	통신	영화	방송	음향	건설	유통	보험	은행	해상	항공	철도	도로	분야별 평균
지분 제한 및 기타 시장진입조건	0.057	0	0.013	0.013	0.034	0.135	0.127	0.091	0.252	0.021	0.032	0.197	0.183	0.178	0.352	0.123	0.099	0.109
인력이동 제한	0.419	0.095	0.144	0.062	0.039	0.012	0.044	0.023	0.044	0.052	0.022	0.012	0.019	0.038	0.013	0.024	0.032	0.067
기타 차별적 조치	0.02	0.022	0.012	0.017	0.022	0.005	0.064	0.022	0	0.068	0	0	0.077	0.006	0.029	0	0	0.021
경쟁 및 공공저분 제한	0.009	0.024	0	0	0.02	0.128	0.19	0.009	0.034	0.047	0.023	0.011	0.064	0.015	0.165	0.081	0	0.046
규제 투명성 및 행정부담	0.011	0.014	0.016	0.023	0.077	0.006	0.012	0.017	0.018	0.016	0.021	0.006	0.023	0.013	0.011	0.025	0.007	0.018
합계	0.516	0.155	0.185	0.15	0.156	0.401	0.34	0.22	0.348	0.13	0.098	0.226	0.366	0.25	0.57	0.253	0.138	0.261

주: 분야별 평균은 서비스 분야별 단순 횡적 평균을 의미.
 자료: OECD STRI Regulatory database(검색일: 2014. 9. 15)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표 5-9. 멕시코의 분야별 서비스무역제한지수 제한사항 범주별 구성 비중

구분	법률	회계	건축	엔지니어링	컴퓨터	쿠리어	통신	영화	방송	음향	건설	유통	보험	은행	해운	항공	철도	도로	(단위: %)	
																			분야별	평균
지분 제한 및 기타 시장진입조건	11.0	0.0	7.0	8.7	21.8	33.7	37.4	41.4	72.4	16.2	25.0	32.7	87.2	50.0	71.2	61.8	48.6	71.7	41.6	
인력이동 제한	81.2	61.3	77.8	73.3	39.7	9.7	3.5	20.0	6.6	33.8	26.0	22.4	5.3	5.2	15.2	2.3	9.5	23.2	25.6	
기타 차별적 조치	3.9	14.2	6.5	7.3	10.9	5.5	1.5	29.1	6.3	0.0	34.0	0.0	0.0	21.0	2.4	5.1	0.0	0.0	8.0	
경쟁 및 공공지분 제한	1.7	15.5	0.0	0.0	12.8	31.9	55.9	4.1	9.8	36.2	7.0	23.5	4.9	17.5	6.0	28.9	32.0	0.0	17.7	
규제 투명성 및 행정부담	2.1	9.0	8.6	10.7	14.7	19.2	1.8	5.5	4.9	13.8	8.0	21.4	2.7	6.3	5.2	1.9	9.9	5.1	7.1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OECD STRI Regulatory database(검색일: 2014. 9. 15)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규제 투명성 관련이 각각 8%와 7.1%를 차지하고 있다. 총 18개 분야 중 10개 서비스 분야에서 시장진입 관련 제한사항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인력이동 관련은 전문직서비스와 컴퓨터 관련 서비스 5개 분야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제한사항으로 나타났다. 경쟁 및 공공지분 제한사항 관련은 통신과 은행 분야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별적 조치는 건설분야에서 가장 큰 비중으로 차지하는 제한사항이다.

마. 호주

호주의 서비스무역제한지수 분야별 평균은 0.154으로 비교대상국가 중에서는 가장 높은 개방수준을 보이고 있다. [표 5-10]에 따르면, 분석 대상 18개 분야 중 쿼리어, 해상운송, 항공운송 서비스를 제외한 15개 분야에서 서비스무역제한지수가 0.2 이하로 나타났다. 개방수준이 가장 높은 분야는 유통분야로 서비스무역제한지수가 0.079이며, 가장 낮은 개방수준을 보인 분야는 쿼리어분야로 0.308이다.

서비스무역제한지수 구성 제한사항을 기준으로 호주의 경우도 다른 국가들과 전반적으로 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 [표 5-11]에 의하면 시장접근과 인력이동 관련 제한사항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시장진입 관련 제한사항은 평균적으로 약 50.3%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인력이동 제한 관련이 24.9%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제시된 18개 분야 중에서 11개 서비스 분야에서 시장진입 관련 제한사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력이동 관련은 전문직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5개 분야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경쟁 및

표 5-10. 호주의 분야별 서비스 무역 제한지수

구분	범률	회계	건축	엔지니어링	컴퓨터	쿠리어	통신	영화	방송	음향	건설	유통	보험	은행	해상	항공	철도	도로	분야별 평균
지분 제한 및 기타 시장진입조건	0.029	0.071	0.026	0.027	0.052	0.135	0.075	0.055	0.126	0.042	0.084	0.063	0.099	0.098	0.16	0.135	0.046	0.074	0.078
인력이동 제한	0.057	0.064	0.108	0.055	0.062	0.022	0.012	0.044	0.023	0.044	0.039	0.016	0.02	0.019	0.038	0.013	0.024	0.032	0.038
기타 차별적 조치	0.01	0	0.012	0	0	0.013	0	0	0.011	0	0.034	0	0.005	0	0.006	0	0	0	0.005
경쟁 및 공공지분 제한	0.018	0	0.012	0	0	0.099	0.103	0	0.022	0	0	0	0.005	0.011	0.022	0.11	0.13	0	0.030
규제 투명성 및 행정부담	0	0	0	0	0	0.039	0	0	0	0	0	0	0.006	0.011	0.007	0	0	0	0.004
합계	0.114	0.135	0.158	0.082	0.114	0.308	0.19	0.099	0.182	0.086	0.157	0.079	0.135	0.139	0.233	0.258	0.2	0.106	0.154

주: 분야별 평균은 서비스 분야별 단순 횡적 평균을 의미.

자료: OECD STRI Regulatory database(검색일: 2014. 9. 15)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표 5-11. 호주의 분야별 서비스무역제한지수 제한사항 범주별 구성 비중

(단위: %)

구분	법률	회계	건축	엔지니어링	컴퓨터	쿠리어	통신	영화	방송	음향	건설	유통	보험	은행	해운	항공	철도	도로	분야별 평균
지분 제한 및 기타 시장진입조건	25.4	52.6	16.5	32.9	45.6	43.8	39.5	55.6	69.2	48.8	53.5	79.7	73.3	70.5	68.7	52.3	23.0	69.8	50.3
인력이동 제한	50.0	47.4	68.4	67.1	54.4	7.1	6.3	44.4	12.6	51.2	24.8	20.3	14.8	13.7	16.3	5.0	12.0	30.2	24.9
기타 차별적 조치	8.8	0.0	7.6	0.0	0.0	4.2	0.0	0.0	6.0	0.0	21.7	0.0	3.7	0.0	2.6	0.0	0.0	0.0	3.3
경쟁 및 공공지분 제한	15.8	0.0	7.6	0.0	0.0	32.1	54.2	0.0	12.1	0.0	0.0	0.0	3.7	7.9	9.4	42.6	65.0	0.0	19.2
규제 투명성 및 행정부담	0.0	0.0	0.0	0.0	0.0	12.7	0.0	0.0	0.0	0.0	0.0	0.0	4.4	7.9	3.0	0.0	0.0	0.0	2.3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OECD STRI Regulatory database(검색일: 2014. 9. 15)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공공지분 제한 관련이 19.2%로 그 다음을 이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경쟁 및 공공지분 관련 제한은 18개 분야 중 8개 분야에서 제한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통신, 항공, 철도 분야에서의 높은 장벽으로 인해 이와 같은 결과가 도출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바. 뉴질랜드

뉴질랜드의 분야별 평균 서비스무역제한지수는 0.162로 호주 다음으로 높은 개방수준을 보이고 있다. [표 5-12]에 따르면, 분석대상 18개 분야 중 법률, 통신, 해상운송, 항공운송 서비스를 제외한 14개 분야에서 서비스무역제한지수가 0.2 이하로 나타났다. 개방수준이 가장 높은 분야는 유통분야로 서비스무역제한지수가 0.069이며, 가장 낮은 개방수준을 보인 분야는 항공운송분야로 0.288이다.

서비스무역제한지수 구성 제한사항을 기준으로 뉴질랜드의 경우도 다른 국가들과 전반적으로 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 [표 5-13]에 의하면 시장접근과 인력이동 관련 제한사항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시장진입 관련 제한사항은 평균적으로 약 41.3%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인력이동 제한 관련이 26.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어 경쟁 및 공공지분 관련 제한사항이 15.7%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진입 제한사항은 18개 분야 중에서 10개 분야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인력이동 제한의 경우 6개 분야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쿼리와 통신 서비스의 경우 경쟁 및 공공지분 제한 관련 제한사항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 및 공공지분 관련하여 전체 18개 분야 중 9

표 5-12. 뉴질랜드의 분야별 서비스무역제한지수

구분	법률 회계	엔지니어링	컴퓨터 쿼리어	통신	영화	방송	음향	건설	유통	보험	은행	해상	항공	철도	도로	분야별 평균
지분 제한 및 기타 시장진입조건	0.1	0.013	0.034	0.048	0.036	0.075	0.031	0.05	0.032	0.129	0.112	0.178	0.165	0.061	0.049	0.067
인력이동 제한	0.095	0.108	0.062	0.022	0.044	0.023	0.044	0.052	0.016	0.012	0.019	0.038	0.013	0.024	0.032	0.043
기타 차별적 조치	0.02	0.011	0.017	0.011	0.005	0.013	0.022	0.034	0	0.009	0.01	0.006	0.007	0	0	0.012
경쟁 및 공공자본 제한	0.009	0	0	0.062	0	0.022	0	0	0	0	0.032	0.022	0.098	0.049	0	0.025
규제 투명성 및 행정부담	0.011	0.016	0.023	0.036	0.012	0.008	0.018	0.016	0.021	0.011	0.023	0.007	0.005	0.013	0.004	0.015
합계	0.235	0.132	0.136	0.179	0.105	0.15	0.113	0.152	0.069	0.161	0.196	0.251	0.288	0.147	0.085	0.162

주: 분야별 평균은 서비스 분야별 단순 합적 평균을 의미.

자료: OECD STRI Regulatory database(검색일: 2014. 9. 15)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표 5-13. 뉴질랜드의 분야별 서비스무역제한지수 제한사항 범주별 구성 비중

구분	(단위: %)																		
	법률	회계	건축	엔지니어링	컴퓨터	쿠리어	통신	영화	방송	음향	건설	유통	보험	은행	해운	항공	철도 운송	도로 운송	분야별 평균
지분 제한 및 기타 시장진입조건	42.6	0.0	8.1	13.7	25.0	26.8	29.5	34.3	50.0	27.4	32.9	46.4	80.1	57.1	70.9	57.3	41.5	57.6	41.3
인력이동 제한	40.	72.0	67.1	57.9	45.6	12.3	4.7	41.9	15.3	38.9	34.2	23.2	7.5	9.7	15.1	4.5	16.3	37.6	26.3
기타 차별적 조치	8.5	8.3	14.9	11.6	12.5	6.1	2.0	12.4	14.7	17.7	22.4	0.0	5.6	5.1	2.4	2.4	0.0	0.0	7.6
경쟁 및 공공자본 제한	3.8	9.1	0.0	0.0	0.0	34.6	59.1	0.0	14.7	0.0	0.0	0.0	0.0	16.3	8.8	34.0	83.3	0.0	15.7
규제 투명성 및 행정부담	4.7	10.6	9.9	16.8	16.9	20.1	4.7	11.4	5.3	15.9	10.5	30.4	6.8	11.7	2.8	1.7	8.8	4.7	9.1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OECD STRI Regulatory database(검색일: 2014. 9. 15)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개 분야(건축, 엔지니어링, 컴퓨터, 영화, 음향, 건설, 유통, 보험, 도로운송)에서는 제한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 칠레

칠레의 분야별 평균 서비스무역제한지수는 0.207로 한국, 일본과 비슷한 개방수준을 보이고 있다. [표 5-14]에 따르면, 분석대상 18개 분야 중 쿠리어, 통신, 방송, 해상운송, 항공운송, 철도운송 서비스를 제외한 12개 분야에서 서비스무역제한지수가 0.2 이하로 나타났다. 개방수준이 가장 높은 분야는 도로운송분야로 서비스무역제한지수가 0.092이며, 가장 낮은 개방수준을 보인 분야는 쿠리어분야로 0.473이다.

서비스무역제한지수 구성 제한사항 기준으로 칠레의 경우 다른 국가들과 일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표 5-15]에 의하면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칠레의 서비스무역제한지수는 시장접근 관련 제한사항이 31.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다른 나라와 다르게 인력이동 관련 제한사항보다는 경쟁 및 공공지분 관련 제한사항이 23.6%를 차지하면서 다음으로 큰 비중으로 차지하고 있다. 민간과 공공 부문의 시장진입이 전반적으로 제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 한국

마지막으로 한국의 서비스 분야별 서비스무역제한지수를 상호 비교하고 제한사항을 내용별로 제시하고자 한다. [표 5-16]은 한국의 분야별 서비스무역제한지수를 보여주고 있으며, [표 5-17]은 서비스무역제한지수 제

표 5-14. 칠레의 분야별 서비스무역제한지수

(단위: %)

구분	법률	회계	건축	엔지니어링	컴퓨터	커리어	통신	영화	방송	음향	건설	유동	보험	은행	해상	항공	철도	도로	분야별 평균
지분 제한 및 기타 시장진입조건	0	0	0.013	0.013	0	0.15	0.045	0.036	0.226	0	0.017	0.016	0.096	0.081	0.285	0.18	0.015	0	0.065
인력이동 제한	0.133	0.08	0.054	0.073	0.062	0.046	0.012	0.044	0.023	0.044	0.039	0.016	0.02	0.019	0.038	0.013	0.024	0.032	0.043
기타 차별적 조치	0.01	0	0	0	0	0.027	0	0.026	0.011	0.02	0.017	0	0	0.019	0	0	0.01	0.018	0.009
경쟁 및 공공지분 제한	0.009	0.012	0.012	0.011	0	0.137	0.206	0.009	0.022	0.047	0	0.035	0.016	0.043	0.037	0.11	0.146	0.028	0.049
규제 투명성 및 행정부담	0.034	0.043	0.047	0.047	0.07	0.113	0.018	0.037	0.025	0.054	0.063	0.042	0.006	0.034	0.026	0.022	0.05	0.014	0.041
합계	0.186	0.135	0.126	0.144	0.132	0.473	0.281	0.152	0.307	0.165	0.136	0.109	0.138	0.196	0.386	0.325	0.245	0.092	0.207

주: 분야별 평균은 서비스 분야별 단순 횡적 평균을 의미.
 자료: OECD STRI Regulatory database(검색일: 2014. 9. 15)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표 5-15. 칠레의 분야별 서비스무역제한지수 제 한사항 범주별 구성 비중

(단위: %)

구분	범률	회계	건축	엔지니어링	컴퓨터	쿠리어	통신	영화	방송	음향	건설	유통	보험	은행	해운	항공	철도	도로	분야별 평균
저분 제한 및 기타 시장진입조건	0.0	0.0	10.3	9.0	0.0	31.7	16.0	23.7	73.6	0.0	12.5	14.7	69.6	41.3	73.8	55.4	6.1	0.0	31.5
인력이동 제한	71.5	59.3	42.9	50.7	47.0	9.7	4.3	28.9	7.5	26.7	28.7	14.7	14.5	9.7	9.8	4.0	9.8	34.8	20.7
기타 차별적 조치	5.4	0.0	0.0	0.0	0.0	5.7	0.0	17.1	3.6	12.1	12.5	0.0	0.0	9.7	0.0	0.0	4.1	19.6	4.2
경쟁 및 공공자본 제한	4.8	8.9	9.5	7.6	0.0	29.0	73.3	5.9	7.2	28.5	0.0	32.1	11.6	21.9	9.6	33.8	59.6	30.4	23.6
규제 투명성 및 행정부담	18.3	31.9	37.3	32.6	53.0	23.9	6.4	24.3	8.1	32.7	46.3	38.5	4.3	17.3	6.7	6.8	20.4	15.2	20.0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OECD STRI Regulatory database(검색일: 2014. 9. 15)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표 5-16. 한국의 분야별 서비스무역제한지수

구분	법률	회계	건축	엔지니어링	컴퓨터	쿠리어	통신	영화	방송	음향	건설	유통	보험	은행	해운	항공	철도	도로	분야별 평균
지분 제한 및 기타 시장진입조건	0.1	0.107	0.078	0	0.017	0.11	0.165	0.073	0.277	0.021	0.034	0.032	0.026	0.054	0.213	0.329	0.031	0.025	0.094
인력이동 제한	0.21	0.095	0.126	0.055	0.062	0.039	0.012	0.044	0.023	0.044	0.039	0.016	0.016	0.019	0.038	0.013	0.024	0.032	0.050
기타 차별적 조치	0.01	0.022	0.012	0	0	0.013	0	0	0	0	0.034	0	0	0.01	0	0.029	0	0.018	0.008
경쟁 및 공공자본 제한	0.028	0	0.012	0	0	0.128	0.008	0.009	0.034	0.07	0.014	0	0.027	0.043	0.029	0.147	0.081	0.028	0.037
규제 투명성 및 행정부담	0.023	0.028	0.031	0.031	0.047	0.049	0.012	0.012	0.008	0.018	0.016	0.011	0.006	0.011	0.007	0.005	0.013	0.004	0.018
합계	0.371	0.252	0.259	0.086	0.126	0.339	0.197	0.138	0.342	0.153	0.137	0.059	0.075	0.137	0.287	0.523	0.149	0.107	0.208

주: 분야별 평균은 서비스 분야별 단순 합계 평균을 의미.
 자료: OECD STRI Regulatory database(검색일: 2014. 9. 15)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표 5-17. 한국의 분야별 서비스무역제한지수 제한사항 범주별 구성 비중

(단위: %)

구분	법률	회계	건축	엔지니어링	컴퓨터	쿠리어	통신	영화	방송	음향	건설	유동	보험	은행	해운	항공	철도	도로	분야별 평균
지분 제한 및 기타 시장진입조건	27.0	42.5	30.1	0.0	13.5	32.4	83.8	52.9	81.0	13.7	24.8	54.2	34.7	39.4	74.2	62.9	20.8	23.4	45.3
인력이동 제한	56.6	37.7	48.6	64.0	49.2	11.5	6.1	31.9	6.7	28.8	28.5	27.1	21.3	13.9	13.2	2.5	16.1	29.9	24.3
기타 차별적 조치	2.7	8.7	4.6	0.0	0.0	3.8	0.0	0.0	0.0	0.0	24.8	0.0	0.0	7.3	0.0	5.5	0.0	16.8	4.0
경쟁 및 공공지분 제한	7.5	0.0	4.6	0.0	0.0	37.8	4.1	6.5	9.9	45.8	10.2	0.0	36.0	31.4	10.1	28.1	54.4	26.2	17.6
규제 투명성 및 행정부담	6.2	11.1	12.0	36.0	37.3	14.5	6.1	8.7	2.3	11.8	11.7	18.6	8.0	8.0	2.4	1.0	8.7	3.7	8.9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OECD STRI Regulatory database(검색일: 2014. 9. 15)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한사항 범주별 구성 비중으로 보여주고 있다.⁸⁶⁾ [표 5-16]의 우측 하단에 제시되어 있듯이 한국의 서비스무역제한지수 평균은 0.208이다. 법률, 회계, 건축, 쿠리어, 방송, 해운, 항공 등 7개 분야를 제외한 11개 분야에서 서비스무역제한지수가 0.2 이하로 상대적으로 개방수준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서비스무역제한지수가 가장 큰 값을 보인 분야는 항공운송분야로 0.523이고, 가장 작은 값을 보인 분야는 유통분야로 0.059이다. [표 5-17]이 제시하듯이 한국 역시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서비스무역제한지수 중 시장진입 관련 제한사항이 제시된 18개 분야 중 8개 분야에서 시장진입 관련 제한사항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평균 45.3%를 구성하고 있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는 인력 이동에 대한 제한이 18개 분야 중 6개 분야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평균 24.3%를 구성하고 있다. 경쟁 및 공공지분 제한 관련하여 18개 분야 중 4개 분야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평균적으로 17.6%를 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한국은 외국(인)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는 거의 없으며, 규제 투명성도 상당히 높은 편이다. 차별적 조치나 규제 투명성 관련 제한사항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서비스분야는 없다. 차별적 조치는 분야에 따라 부분적으로만 나타나며 규제 투명성은 모든 분야에서 나타나기는 하지만 서비스무역제한지수 구성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작다.

86) [표 5-16]과 [표 5-17] 마지막 행의 분야별 평균은 해당 범주 제한사항에 대한 각 서비스 분야별 단순평균이다.

4. 소결: 서비스무역제한지수(STRI)로 본 한국의 TPP 협상 위치

다자협상에서 결국 문제가 되는 것은 협상대상국과의 입장차이이다. 모든 분야에서 모든 협상 당사국이 개방에 대해 같은 입장을 가지고 있다면 사실상 합의에 이르는 것이 어렵지 않다. 다시 말해 우리가 다수의 입장과 얼마나 다른지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어떤 한 국가가 다른 모든 국가들이 유지하고 있는 제한사항과 다른 서비스 무역 관련 제한사항을 유지하고 있다면, 이 국가는 협상 시 이러한 공통적이지 않은 제한사항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많을 수밖에 없다. 전략적으로 협상 참여국은 협상 참여국의 제한사항들을 파악하고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국가와 이에 반하는 국가를 선별하고 이를 협상 시 이용하게 된다. [표 5-18]은 서비스무역제한지수를 알 수 있는 7개 TPP 협상국과 한국의 제한사항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들을 서비스 분야별로 보여주고 있다. 먼저 가장 마지막 행은 국가별로 어떤 제한사항이 평균적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한국을 포함한 8개국 모두 시장진입 관련 제한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분 제한 등 시장진입에 관한 제한은 사실상 다른 제한사항을 적용하기 이전 시장으로의 진입단계 제한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제시된 TPP 협상 참여국가에서 전반적으로 향후 서비스 시장의 개방여지가 큰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서비스 분야별로 먼저 한국을 비롯한 모든 TPP 협상국이 공통적으로 가장 큰 비중을 둔 제한사항을 살펴보기로 한다. 이 분야들의 경우 모든 국가가 공통적으로 비슷한 제한사항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협상에서 큰

진전이 있기 어려운 분야로 판단할 수 있다. 가장 먼저 방송, 해운, 항공 서비스 분야에서는 제시된 모든 국가가 시장진입에 공통적으로 가장 큰 비중의 제한을 두고 있다. 방송서비스의 경우 대부분의 국가에서 자국의 문화산업 보호를 위해 외국자본의 국내진출에 대해 매우 소극적인 분야이다. 따라서 방송서비스에 관한 개방논의는 사실상 심도 있게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해운이나 항공 서비스의 경우도 외국자본의 국내유입에 대해 매우 소극적인 분야이다. 해운서비스의 경우 미국은 어느 협정에서도 안보(security)상의 이유를 들어 시장진입은 철저히 협상논의에서 배제하고 있는 상황이다. 항공서비스의 경우 서비스 협정보다는 항공협정에서 중요한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어 서비스 협상에서 다루어질 내용이 거의 없다. 또한 항공산업의 경우 대부분의 국가에서 시장진입에 관해서 매우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결국 해운이나 항공 서비스 분야에서의 개방은 협상 참여국 전체의 공감대가 없이는 개방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엔지니어링분야의 경우 서비스무역제한지수상으로 제시된 모든 국가가 공통적으로 인력이동 제한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있다. 전문직서비스의 경우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인력이동에 관한 제한이 많은 편이며 엔지니어링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전문직서비스의 경우 서비스 공급자의 자격(qualification)이나 면허(licensing)의 상호 인정문제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국내소비자 보호를 이유로 자연인의 서비스 공급에 대해 매우 소극적이다. 엔지니어링서비스 관련해서도 국가 간 이해관계가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방논의의 진전이 크게 일어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한국 한 국가를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국가가 같은 범주의 제한사항을 가지는 경우이다. 보험서비스 분야에서 한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진입장벽 관련 제한사항이 서비스무역제한지수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한국의 경우 경쟁 및 공공지분 관련 제한사항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은 TPP 협상에 참여할 경우 보험분야 경쟁 관련 개방압력에 대해 대비해야 할 것이다. 서비스무역제한지수 세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보험상품의 개발에서 정부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는 점, 감독 당국의 결정을 정부에서 반복할 수 있다는 점 등이 지적되었다.

이어서 한국이 제한사항에서 상대적으로 소수에 속하면서 미국과 다른 그룹에 속하는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표 5-16]에 나타난 바와 같이 회계서비스의 경우 다수의 국가에서 인력이동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반면 한국은 시장진입 관련 제한사항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회계분야 서비스무역제한지수가 0.252로 추가 개방의 여지가 있으며 인력이동에 관한 제한사항도 비중이 작지 않은 편이다. 시장진입과 관련하여 세부적으로 지적된 사항으로 지분의 매입이나 이사회 구성에서 국내 자격증 취득자에 한정하고 있다는 점 등이다. 다음으로는 큐리어서비스의 경우 한국은 일본, 뉴질랜드와 함께 경쟁 및 공공지분 제한사항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TPP 회원국들의 경우 대부분 시장진입 관련 제한사항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이 경쟁 관련 제한사항이 있는 것은 우체국이 제공하는 배달서비스로 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복수국 간 서비스 협정(TiSA: Trade in Services Agreement)에서도 배달서비스에 관한 경쟁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바, TPP에서도 이에 관한 유사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이 미국이 포함되지 않은 소수그룹에 있는 또 다른 분야는 도로운송 분야이다. 도로운송서비스의 경우 한국은 칠레와 함께 인력이동에 대한 제한사항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제시된 다른 국가들은 모두 진입장벽 관련 제한사항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한국은 기업 내 전근자(ICT: intra-corporate transferee), 계약서비스 공급자(CSS: contractual service supplier), 독립 전문가(IP: independent professional)의 체류기간에 대한 제한에 대해 지적이 있었다. 하지만, 상기한 세 가지 인력이동에 관한 제한은 수평적 조치로서 모든 서비스 분야에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따라서 전반적인 인력이동에 관한 한국의 입장이 변하지 않는 한 추가적인 개방 여력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협상 측면뿐만 아니라 한국경제가 선진국형 경제로 변해가면서 국내적 필요에 의해서도 일정 부분 추가적인 인력이동 관련 개방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표 5-18. TPP 국가별·분야별 최대 비중 제한사항

구분	법률	회계	건축	엔지니어링	컴퓨터	쿠리어	통신	영화	방송	음향	건설	유통	보험	은행	해운	항공	철도	도로	평균	
지분 제한 및 기타 시장접근 뉴질랜드 조건	캐나다, 뉴질랜드	한국, 캐나다, 호주	캐나다	캐나다	캐나다	미국, 캐나다, 멕시코, 호주, 칠레	한국, 미국, 캐나다	한국, 캐나다, 멕시코, 호주, 뉴질랜드	한국, 미국, 일본, 캐나다, 멕시코, 호주, 뉴질랜드, 칠레	한국, 미국, 캐나다, 멕시코, 호주, 뉴질랜드, 칠레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한국, 미국, 일본, 캐나다, 멕시코, 호주, 뉴질랜드	미국, 일본, 캐나다, 멕시코, 호주, 뉴질랜드, 칠레	미국, 캐나다, 멕시코, 호주, 뉴질랜드, 칠레	한국, 미국, 일본, 캐나다, 멕시코, 호주, 뉴질랜드, 칠레	한국, 미국, 일본, 캐나다, 멕시코, 호주, 뉴질랜드, 칠레	한국, 미국, 일본, 캐나다, 멕시코, 호주, 뉴질랜드, 칠레	미국, 일본, 캐나다, 멕시코, 호주, 뉴질랜드, 칠레	한국, 미국, 일본, 캐나다, 멕시코, 호주, 뉴질랜드, 칠레	한국, 미국, 일본, 캐나다, 멕시코, 호주, 뉴질랜드, 칠레
인력이동 제한	한국, 미국, 일본, 멕시코, 호주, 칠레	미국, 일본, 캐나다, 뉴질랜드, 칠레	한국, 미국, 일본, 캐나다, 멕시코, 호주, 뉴질랜드, 칠레	한국, 미국, 일본, 캐나다, 멕시코, 호주, 뉴질랜드, 칠레	한국, 미국, 일본, 캐나다, 멕시코, 호주, 뉴질랜드, 칠레	한국, 미국, 일본, 캐나다, 멕시코, 호주, 뉴질랜드, 칠레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한국,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한국,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한국,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한국,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한국,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한국,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한국,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한국,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한국,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한국,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한국,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한국,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기타 차별적 조치																				한국, 칠레
경쟁 및 공공자원 제한																				한국, 일본, 캐나다, 호주, 칠레
규제 투명성 및 행정부담																				한국, 일본, 캐나다, 호주, 칠레

자료: 저자 작성.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요약 및 결론
2. 정책적 시사점



1. 요약 및 결론

서론에서 언급하였듯이 2000년대 중반 이후 약 10여 년간 통상은 다자 체제 중심이라기보다는 양자 등 소규모 지역무역협정 위주로 발전되어 왔다. 특히 NAFTA 또는 EU 등과 같은 지역을 기반으로 한 통상협정이 주를 이루어왔으며, 원거리 국가와의 통상협정은 대부분 양자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한국 역시 칠레와의 FTA를 필두로 최근의 호주나 터키까지 대부분의 무역협정이 양자 형식으로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2010년에 들어서면서 WTO 논의가 진전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양자 협정의 발달에 한계가 노출되면서 통상협상의 논의는 지역적 근접성이 완화되고 2개국 이상이 참여하는 형태가 나타난다. 소위 말하는 메가 FTA 시대가 도래하였다.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범대서양 무역투자 동반자협정(TTIP: 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범태평양 동반자협정(TPP: Trans-Pacific Partnership) 등이 대표적이라 하겠다. 이러한 메가 FTA의 발달이 중요한 시사점을 가지는 이유는 먼저 현재 통상환경이 글로벌 가치사슬(GVCs: global value chains) 발달을 원활히 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며, 이를 위하여 통합 원산지규정 도입, 서비스, 투자, 규범 분야를 포함하면서 기존 협정에 비해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개방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비스 분야의 경우에도 TTIP나 TPP는 일반적으로 서비스 협상의 표준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GATS에 비해 더 많은 분야의 시장진입이 가능하도록 서비스 규범을 개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높은 수준의 협정이 이루어짐에 따라 기존 GATS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NAFTA 방식의 협정내용이 추가되고 있다. 본 보고서는 이와 같은 국제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서비스 협정의 변화를 분석하고 TPP에서의 서비스 분야 논의 동향을 분석하고 협상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먼저 제2장에서는 서비스 협정에서 TPP에서 제기될 수 있는 GATS와의 구별요소들을 살펴보았다. 한·미 FTA(또는 한·EU FTA)를 중심으로 비교 분석하였는데, 한·미 FTA 협정에서 주요 조항의 변화가 중요한 이유는 한·미 FTA가 미국이 체결한 가장 최근의 FTA로 여러 가지 면에서 TPP와 유사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최혜국대우, 내국민대우, 시장접근, 현지주재, 이행요건 조항 등을 한·미 또는 한·EU와 비교하였다. 주요한 이슈로 최혜국대우 관련 미래 MFN(forward-looking MFN) 적용이나 지역정부의 내주민대우 관련 TPP로의 확대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2장에서 협정문 주요 조항의 GATS 구별요소를 분석한 후, 제3장에서는 2005년 각국이 제출한(베트남의 경우 2007년 제출) DDA 수정양허안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미국은 전반적인 양허수준이 가장 높은 국가로 분석되었다. 일본은 국경 간 공급(Mode 1)보다 상업적 주재에 의한 서비스 공급(Mode 3)을 통한 개방수준이 높았다. 영연방국가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도 상대적으로 높은 개방수준을 보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반해 중남미 협상 참여국인 멕시코, 칠레, 페루는 양허업종 수도 많지 않았으며 많은 제한사항을 두고 양허하였는데, 특히 칠레와 페루의 양허수준은 TPP 참여국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ASEAN 참여국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트남 중 싱가포르의 양허수준이 가장 높았

으나 미국, 호주, 뉴질랜드 등과 비교했을 때에는 높은 수준은 아닌 것으로 분석되었다. TPP 참여국의 공급형태별 개방업종 수 및 Hoekman(1995)의 가중치를 적용해 산출해낸 개방도를 비교해본 결과, 개방업종 수와 개방 정도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개방업종 수로 서비스 개방수준을 평가하기에 무리가 따르지만, 전반적으로 개방업종 수가 많은 나라들이 개방수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와 같은 고소득국가의 개방도가 공급형태 전반에 걸쳐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칠레, 페루, 말레이시아와 같은 저소득국가의 개방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베트남의 경우, 소득수준은 TPP 참여국 중 가장 낮았으나 양허수준은 고소득국가인 싱가포르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나 개방도가 상당히 높은 나라로 분석되었다. 반면 칠레의 경우, 소득수준이 낮은 나라들보다 개방수준이 더 낮은 편으로 분석되었다. 참여국의 업종별 개방수준을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시장접근에 비해 내국민대우에 대한 개방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미국, 일본, 뉴질랜드의 경우 전 업종에 걸쳐 개방수준이 높은 나라로 분석되었다. 협상 참여국의 대부분이 유통과 관광 서비스에 대해 개방적인 입장을 보였으나, 보건·사회 서비스와 운송서비스의 개방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입장을 보였다. 특히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개별 업종별 개방수준도 대부분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고소득국가를 중심으로 사업, 커뮤니케이션, 건설, 환경서비스에 대한 개방수준이 높았으며, 저소득국가는 주로 관광서비스에 대해 높은 개방수준을 보였으나 개방도가 높은 업종보다 낮은 업종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DDA 서비스 수정양허안은 각국의 서비스 분야 양허수준의 기준이 되긴 하지만, 실제 TPP 협상에서 참여국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다. 수정양허안을 제출한 이후, 칠레와 같이 적극적으로 지역 무역협정을 체결하거나 말레이시아와 같이 정부 주도의 개방정책을 실시하며 개방에 적극적으로 변모한 TPP 참여국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어지는 4장에서는 TPP 서비스 협상을 주도할 것으로 판단되는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의 기체결 FTA 서비스 유보 목록을 분석하여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TPP 서비스 협상에서 미국은 한·미 FTA 정도의 수준 높은 서비스 시장개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캐나다와 호주는 미국 등과 FTA를 체결하면서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의 서비스 시장개방이 이루어졌다. 반면 일본의 경우 미국, 호주, 캐나다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현재유보 및 미래유보 목록을 포함하고 있어 개방수준이 이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고 하겠다. 더 나아가 일본 서비스 분야의 개방수준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도 있었다.

제4장에서는 선진국 위주의 포괄주의(negative list) 방식 협정 유보를 분석하였다. 포괄주의 방식 유보 목록 분석의 가장 큰 단점은 열거주의 방식 협정은 대부분 W120의 산업분류를 따르고 있으나 포괄주의 방식의 협정은 동일한 산업분류를 따르지 않음으로 해서 GATS를 따르는 열거주의 방식 양허와 상호 비교가 어렵다는 점이다. 따라서 제5장에서는 좀 더 유기적인 분석방법을 사용하여 TPP 협상 참여국의 서비스 분야 개방수준을 분석하였다. 2014년 5월 OECD는 40개국 18개 서비스 분야 관련 서비스무역제한지수(STRI: services trade restrictiveness index)를 발표하였

다. 서비스무역제한지수는 다양한 국내제도를 분석에 포함시킴으로서 서비스 무역 제한사항의 질적 수준을 좀 더 엄밀하게 고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서비스무역제한지수상으로는 제3장 DDA 양허분석결과와 달리 미국의 서비스 분야 개방수준이 가장 높다고 할 수 없었다. 오히려 호주의 개방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개방수준은 전반적으로 높은 편으로 유통과 보험 서비스의 개방수준은 비교대상국가 중에서도 높은 편이었다. 제시된 국가 전반적으로 대부분 쿼리어, 방송, 해상 운송, 그리고 항공운송 분야가 공통적으로 개방수준이 낮은 반면, 유통분야의 개방수준이 매우 높다. 한국의 경우도 이와 같은 패턴이 나타나고 있다. 제한사항 범주별로는 시장진입 관련이 서비스무역제한지수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가운데 전문직서비스를 중심으로 인력이동 관련 제한사항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어떤 서비스 분야에서 어떤 국가가 어떤 제한사항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일반적으로 협상에서 비슷한 입장을 가진 국가들은 서로 같은 분야의 개방을 논하기 어렵다. 이러한 측면에서 분석대상의 모든 국가가 비슷한 제한사항이나 무역장벽을 가지고 있는 경우 TPP 협상을 통해 추가적인 개방을 이루기 어렵다. 이러한 측면에서 대부분의 전문직서비스 중 건축, 엔지니어링 서비스, 컴퓨터서비스, 시청각서비스 중 방송, 유통 서비스, 금융서비스 중 보험, 은행, 운송서비스 중 해운, 항공 분야의 추가적 개방논의의 진전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협상 참여국가가 더 많은 복수국가 서비스 협상(TiSA)에서도 위에서 언급된 대부분의 분야에서 GATS 추가요소(plus) 논의가 거의 없다. 다만 금융과 해운 부문에서는 시장접근의 범위를 넓히고자 하는 논의가 있으나, 이는 현재 각국이 유지

하고 있는 제한사항에 대한 논의는 아니다.

2. 정책적 시사점

가. GATS와의 차별적 요소 (재)점검

서비스 분야에서 TPP는 기존의 GATS에서와 달리 양허방식이나 내용에서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본적으로 TPP는 한·미 FTA 등과 같은 NAFTA 방식을 따를 것이므로 NAFTA 방식의 협정과 GATS 방식의 협정 간의 차이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두 협정 방식의 비교와 더불어 미국이 지속적으로 진행해온 FTA에서의 내용상 변화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제2장에서 본 바와 같이 한국은 이미 미국과 GATS 추가(GATS plus)요소를 많이 담고 있는 높은 수준으로 FTA를 체결하였다. 다수 국가가 참여하는 만큼 한·미 FTA만큼 높은 수준의 협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하더라도 TPP에서는 이러한 GATS 추가요소가 한 국가가 아닌 12개 협상대상국 전체에 적용된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GATS의 추가요인뿐만 아니라 본 보고서에서는 TPP에서 나타나는 GATS와의 차별적 요소를 분석하였다. 즉, 어떤 측면이 GATS와 다를 것인가에 대해 분석하였다.

1) 미래 MFN(forward MFN)

본 보고서의 분석결과 GATS와의 구별되는 요인으로서 협정에 포함되어 있다면 가장 큰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되는 조항은 미래 MFN이다.

GATS 추가요소라 할 수 있다. 한·미 FTA의 MFN은 한·미 FTA 이전의 협정 적용에 대해서는 유보하였으나, 한·미 FTA 이후의 협정에 대해서는 항공, 어업, 해운 관련 일부를 제외하고는 국가별로 차별적 대우가 가능하지 않다.

대응방안: 현재까지 한국은 미국과 가장 높은 수준의 FTA를 체결하였으므로 사실상 다른 국가와의 서비스 협정으로 인해 미국에 추가적으로 시장을 개방하는 효과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시 말해 현재의 협상을 통해 TPP 협상국에 요구하거나 요구받더라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한·미 FTA의 추가요소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향후 논의 진행에 따라 철저하게 검토해야 할 것임은 당연하다.

2) 외국의 지역정부 차별조치

GATS와 구별되는 다른 요소는 내국민대우 조항에서 지역정부의 차별적 조치이다. 지역정부는 연방제하에서의 주정부를 의미하는데, 특히 미국의 일부 주(州)가 내주민과 타주민을 차별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왔다. 한·미 FTA에서는 협정 본문에서 내주민대우를 규정하는 등 일정한 성과가 있었지만 유보 목록, 구체적으로 현재유보(부속서 I)에서 비합치조치를 적시하도록 하지 못하고 예시목록만을 기재하는 선에서 타협한 한계가 있었다. 때문에 지역정부의 차별적 조치가 투자·서비스 장벽으로 작용할 위험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대응방안: 현재 한국의 TPP 참여 가능시점을 점검하였을 때, 협상을 통해 지역정부의 차별적 조치에 대해 많은 것을 요구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협상이 완전히 타결된 이후 참여하는 경우가 아닌 한

가능한 경우 최소한 지역정부의 비합치조치를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제기해볼 수 있는 문제로 판단된다. 구체적 조치가 적시되고 미래 MFN이 합의된다며 향후 TPP 참여국가의 지역정부 차원의 자유화 개선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다만 이 역시 한국의 지역정부 비합치조치 정확한 실태 조사와 지속적인 최신화를 바탕으로 해야 할 것이다.

3) 시장접근

협정상으로는 시장접근은 GATS와 한·미 FTA에서의 규정이 대동소이한 것으로 나타나 TPP에서도 시장접근조항 자체에서는 급격한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분야별 양허상에서 추가 개방분야가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분야별 시사점은 다음에서 따로 논의하기로 한다.

4) 현지주재

GATS와 DDA에서는 현지주재 부과무금지조항은 협정상에 명시적으로 나타난 의무는 아니나 양허상에 명시되어 있다. 법인의 경우 GATS에서 단순히 법인체나 합작투자의 형태를 제한하거나 요구하는 것이 금지된 반면, NAFTA나 한·미 FTA에서는 대표 사무소의 설립과 유지를 요구하는 것도 금지되는 것으로 규율의 구체화가 진행되었다. 또한, 자연인에게 거주 이외에 주소를 두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은 현재 진행 중인 다른 협상 등에서 나타나고 있는 바, TPP 등 향후 협상에 도입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한다.

대응방안: 국내적으로 현재 거주지와 주소지 요구조건이 여러 가지 행정적인 이유로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함께 향후 협상에서의 대응방안의 구체화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협상에서 주소지 요구 금지와 같이 협정내용에 대한 논의의 구체화가 있는 경우 국내적 이유를 근거로 논의 자체를 거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국내법을 협정에 맞게 개정하거나 개정이 어려운 경우 예외조항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없는 경우 해당 협정 내에 이러한 예외조항 도입을 시도해야 할 것이다. 현지주재의 경우 해외 서비스 공급과 관련한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가 있는 바, 소비자 보호를 위한 협정 내용의 도입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유보 목록에 포함시키는 방법도 있으나 TPP는 포괄주의 양허 방식을 사용할 것이므로 이 경우 세밀한 국내 법령 검토가 필요하다.

5) 이행요건

마지막 GATS와의 차별적 요소는 이행요건조항이다. 본 보고서의 분석에서는 ‘특정 지역으로의 독점 공급’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오늘날 글로벌 가치사슬(GVC: global value chain)의 확산경향의 영향으로 그 정의가 일부 수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하여 GVC의 발달은 전반적인 이행요건 부과금지요구가 더욱 더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 한국의 경우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을 통한 국내투자 활성화 및 고용확대를 노리고 있다는 점에서 이행요건 부과금지의무는 부담일 가능성이 있다.

대응방안: 기본적으로 한국은 고용이나 기술이전 관련 이행요건이 없다. 이러한 이행요건은 일반적으로 선진국에서는 거의 없으며 개발도상국

위주로 남아 있으므로 한국의 경우 TPP 협상에서 크게 우려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 또한 한국의 경우 동남아 등 개발도상국 진출을 통한 글로벌 가치사슬의 참여가 활발하다는 점에서 이행요건 부과금지의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서비스 분야별 한국의 대응방안

앞절에서는 서비스 분야 협정상의 이슈와 협상에서의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어서 서비스 분야별 양허상 이슈를 점검하도록 하겠다. 3장 DDA 수정양허 분석결과 W120 분류상 기타 서비스를 제외한 11개 서비스 중 한국은 사업, 커뮤니케이션, 환경, 관광, 운송 서비스에서 높은 개방도를 보였으며, 반면에 보건사회, 오락문화스포츠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개방도를 나타내었다.

표 6-1. 국가별 GATS DDA 개방도 비교

서비스 업종	개방도 높음	개방도 낮음
사업	미국, 일본, 호주, 한국	칠레, 말레이시아, 베트남
커뮤니케이션	미국, 뉴질랜드, 한국	멕시코, 페루, 싱가포르
건설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페루
유통	미국, 호주, 베트남	칠레, 말레이시아
교육	일본, 뉴질랜드,	캐나다, 칠레, 페루
환경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한국	칠레, 페루, 말레이시아
금융	일본, 뉴질랜드, 싱가포르	멕시코, 칠레
보건·사회	호주, 멕시코, 싱가포르	캐나다, 뉴질랜드, 칠레, 페루, 한국
관광	일본, 호주, 뉴질랜드, 칠레, 한국	캐나다, 말레이시아, 베트남
오락·문화·스포츠	미국, 일본, 멕시코	캐나다, 뉴질랜드, 칠레, 한국
운송	미국, 호주, 한국	캐나다, 뉴질랜드, 칠레, 베트남

자료: 저자 작성.

GATS DDA 이후 가장 높은 양허수준을 보인 한·미 FTA의 경우 우리나라는 현재유보 47건과 미래유보 44건을 포함하고 있다. 유보 목록 개별 건수상으로는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보다 많지만, 질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 이 국가들이 제한조치를 두고 있는 일반적 조치, 사업서비스(전문직서비스 포함), 에너지, 통신 및 시청각 서비스, 교육서비스, 의료·보건·사회 서비스, 해상·항공·육상 운송 등이 중심이 되고 있어 내용상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미래유보에서 시장접근을 포괄유보하고 있지만 DDA 서비스 수정양허안을 반영한 양허 개선분야를 포함하고 있다. 다시 말해 한·미 FTA는 DDA보다 높은 수준의 개방도를 보이고 있으며, TPP의 타결 수준은 DDA보다는 높으나 한·미 FTA보다는 낮은 수준의 협정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음에서는 GATS 이후 한·미 FTA에서 높은 개방이 이루어졌거나 통상환경의 변화에 따른 협정의 변화가 예상되는 전문직, 컴퓨터, 쿼리어, 통신, 시청각, 금융 등 여섯 가지 분야에서 이슈를 점검해보았다.

1) 전문직 서비스

먼저 사업서비스 중 전문직서비스 분야 제한사항의 특징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본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문인력의 자격(qualification)과 면허(licensing)에 관한 제한사항이 많을 수밖에 없는 분야적 특성으로 인해 인력이동에 대한 제한사항이 많다. 예를 들어 서비스무역제한지수에 따르면 법률서비스 제한사항의 약 56.6%, 회계서비스 제한사항의 약 37.7%, 건축서비스 제한사항의 약 48.6%, 엔지니어링서비스 제한사항의 약 64%가 인력이동에 대한 제한사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한 제한사항은 지

분 취득이나 이사회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국내 자격증이 요구된다는 점이다. 전문직서비스는 한·미 FTA에서 상당히 높은 수준의 개방이 이루어졌다. 특히 법률시장의 경우 3단계 개방을 통해 합작법인 설립과 해외 법인의 국내변호사 고용이 가능해지는 등 GATS에 비해 개방수준이 상당히 높아졌다.

대응방안: 언급된 인력이동이나 자격의 인정문제는 사실상 각국이 매우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조치들이다. 인력이동 관련 조치는 한 국가의 노동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대부분의 국가에서 수평적 조치로 다루고 있으며 민감한 이슈이다. 한·미 FTA에서는 실질적으로 인력이동에 관한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미국이 TPP에서 인력이동에 관해 적극적이지 않을 것을 암시하는 대목이라 하겠다. 자격의 상호 인정의 경우 일반적으로 서비스 협상에서 다루기 힘들다는 점에서 이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개방논의가 이루어지기는 어렵다. 또한 전문직서비스의 경우 소비자 보호의 이슈가 있으므로 필요시 현지 주재요건 등의 방안을 고려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2) 컴퓨터 관련 서비스

이 분야 서비스무역제한지수는 0.126으로 절대적인 개방수준이 낮은 분야로 보기는 어렵다. 컴퓨터 관련 서비스는 법률이 회계 서비스처럼 자격이나 면허가 필요하지는 않지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전문인력이 필요한 분야이다. 다시 말해 컴퓨터 관련 서비스는 전문직서비스와 유사하게 인력이동과 자격 인정에 관한 문제로 귀결된다. 각국은 관련 서비스의 일정한 수준 보장과 소비자 보호를 이유로 컴퓨터 관련 인력이 쉽게 국내 서비스 시장으로 진입하는 것을 막으려는 유인이 크다.

대응방안: 한국은 이미 이 분야에 대해 GATS에서 높은 수준의 개방을 이루었으므로 추가 개방의 여지는 매우 작다. 한·미 FTA에서 양국의 개방수준은 GATS 같다. TPP에서 추가적인 개방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장기 정책으로 고려해볼 수 있는 것은 일정 수준 이상의 자격을 갖춘 한국인 전문가가 해외에 진출하거나 해외 전문가가 한국에서 활동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드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3) 쿠리어서비스

쿠리어서비스의 경우 서비스무역제한지수로 본 한국의 개방수준은 0.338로 절대적인 개방수준이 높다고 하기는 어렵다. 쿠리어서비스 제한사항에서 가장 큰 비중으로 차지하고 있는 것은 시장진입에 대한 것과 경쟁 혹은 공공지분 제한이다. 크게 보면 전반적인 국내 시장진출에 대한 제한사항이 약 70% 정도로 대부분을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사실 쿠리어서비스에 관한 대부분의 제한사항은 한국의 우체국제도와 관련이 많다. 여타 국가의 경우도 우편서비스는 국가가 독점적으로 제공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한국이 TPP 협상에 참여하더라도 추가적인 개방에 대한 압력은 적을 것으로 판단된다.

대응방안: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편배달과 관련된 서비스는 각국에서 공공적 성격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추가적인 개방논의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다만 CPC 코드에 분류되어 있지 않은 배달서비스 관련 논의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한·미 FTA에서는 특급배달이 포함되어 있으며, 현재 진행 중인 복수국 간 서비스 협정(TiSA: Trade in Services Agreement)에서 특급배달을 포괄하는 경쟁적 배달서비스(competitive

delivery service)에 관한 논의가 있다. 결국 논의의 핵심은 국내적으로 우체국의 보편적 서비스의 범위와 이에 대한 독점적 권리가 어디까지인가를 명확히 하는 일이다.

4) 통신 서비스

통신서비스의 경우 한국의 서비스무역제한지수는 0.197로 절대적인 개방수준이 높다. 다만 서비스무역제한지수 제한사항의 구성은 시장진입에 관한 제한사항이 약 83.8%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지분 제한이 가장 큰 요인이다. 통신서비스의 경우 국가의 기간산업 서비스이므로 현재 수준 이상의 개방이 어렵다고 판단된다. 통신의 경우 한·미 FTA를 통해 KT와 SKT 등 기간통신사업자의 지분 제한을 제외하고는 시장이 대부분 개방되어 있다. 통신분야의 경우 양허상의 개선보다는 전자상거래 협정과 관계 등 규범의 개선을 통한 협정의 변화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대응방안: TPP 협상에서 한국의 현재 개방수준이 문제되기는 어렵다. 이미 대부분 개방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국내시장이 이미 포화상태이므로 해외기업의 국내진출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따라서 양허보다는 협정내용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망 중립성, 정보의 이동, 설비의 국산화, 기술의 국적 제한 등 통상규범 논의가 변하는 데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다시 말해 통신서비스 분야의 경우 현재 개방수준에 대한 추가적인 개방요구가 있기보다는 기술 및 통신 환경의 변화에 따른 통상논의의 변화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단순히 통신분야에 논의를 국한시키기보다는 정보와 통신이라는 전체를 아우르는 규범논의가 있으므로

TPP에서 이러한 새로운 규범이 어느 정도 진전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5) 시청각서비스

한국의 영화분야 서비스무역제한지수는 0.138로 절대적인 개방수준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방송분야는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자국 문화 보호를 이유로 외국인자본 유입에 대한 제한이 많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라 하겠다. 방송분야 서비스무역제한지수는 0.342로 제시되어 있는 분야 중 항공서비스 분야를 제외하고 가장 낮은 개방수준을 보이고 있다. 또한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자국 문화 보호를 이유로 외국인의 국내시장 진출 제한이 많아 시장진입에 관련된 제한사항이 서비스무역제한지수의 약 80.9%를 구성하고 있다. 반면에 시장에 진입한 경우 외국인에 대한 차별 조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청각서비스 중에서 음향서비스의 서비스 무역제한지수는 0.153으로 제시된 다른 분야에 비해 개방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응방안: 시청각서비스 개방의 핵심은 방송서비스이며 외국인지분제한과 편성규제가 규제의 대부분이라 하겠다. 현재 한·미 FTA에서는 GATS보다 높은 수준의 개방을 달성하였다. 현재 시청각분야에서 가장 교류가 많은 국가가 미국이라는 것과 한·미 FTA 이후 영화나 방송 분야에서 큰 논란이 없다는 것을 고려했을 때, 한국이 다른 국가에 한·미 FTA 수준의 개방을 한다 하더라도 큰 문제는 아닐 것이다. 다만 방송분야에서도 통신분야와 마찬가지로 인터넷 기술의 발달로 기존에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형식의 방송이 가능해지고 있다는 점에는 전통적 방송서비

스에 적용하던 조치를 얼마나 새로운 서비스에 적용할지에 대해 고민해야 할 것이다.

6) 금융 서비스

다음으로 보험과 상업은행을 포함하는 금융분야 서비스 개방수준을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 금융분야의 개방수준은 상당히 높은 편이다. 특히 보험분야는 서비스무역제한지수가 0.075로 이 분야 서비스 무역의 제한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은행분야의 서비스무역제한지수는 0.137로 보험 분야에 비해서는 개방수준이 낮은 편이지만 절대적 수준이 낮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은행분야의 경우 외국인 시장진입에 대한 제한이 일부 있다고 할 수 있다. 통상환경 측면에서 볼 때, 2008년 후반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와 연이은 유럽재정위기는 각국의 금융서비스 분야 개방에 대한 두려움도 동시에 확산시켰다. 따라서 추가적인 개방에 대해서도 적극적이지 않다. 다만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금융상품의 국경간 거래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최근 중국의 알리페이를 통한 채권거래 등이 크게 화제가 된 바 있으며, 현재 금융분야의 국경 간 거래가 지속적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의 문제가 부각될 수 있다는 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대응방안: 금융서비스의 경우도 한국의 전반적인 개방수준은 매우 높다. 따라서 양허상의 문제보다는 향후 협정내용상의 문제가 TPP 금융서비스 협상의 관건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금융분야 논의의 핵심은 금융분야 국경간 거래의 확대, 이에 따른 소비자 보호의 문제와 개인정보보호의 문제라 하겠다. 또한, 금융시장에 대한 건전성 조치(prudential measures)의

활용방안 등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한국의 소비자 권익보호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취약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는 점에서, 금융 관련 소비자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국내 법과 제도의 정비와 관련 건전성 조치에 대한 논의 확대가 금융서비스 시장확대에 따른 가장 시급한 대응방안이라고 판단된다.

다. 맺음말

본 보고서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TPP 협상에서의 협상전략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볼 수 있다. 전반적으로 한국은 양허에서 이미 높은 수준의 개방이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현재 GATS 협정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 분야 추가 개방은 국내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제약이 존재하거나 다른 국가에서도 개방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더 이상 높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어 현재 GATS 협정의 내용으로 건설이나 유통 분야는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높은 수준의 개방이 이루어졌으므로 추가적인 개방논의가 어려우며, 항공이나 방송 분야는 항공협정의 존재나 국내문화의 보호 등을 이유로 개방논의의 진전이 없으며 이에 대해 추가적인 개방논의가 이루어질 만한 이해관계가 없다. 결국 TPP 참여를 위하여 한국이 주의해야 할 것은 새로운 서비스 분야가 협정을 통해 양허대상으로 확대되는 것과 새로 포함된 분야의 새로운 규범에 대한 한국의 전략적 입장정리이며, 동시에 국내 법률 및 제도의 정비이다. TPP는 미국 주도의 협상이므로 미국 산업계의 요구에 따라 미국의 새로운 관심 분야가 통상협상에서 논의될 것이다. 따라서 정보통신이나 금융과 같이 미국이 큰 관심을 보이는 산업에 대한 협정의 변화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

가 있으며 이러한 새로운 분야에 대해 한국이 협상에서 취할 수 있는 입장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한국은 국내제도 정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 본 보고서의 결론에서 제시한 각 분야별 대응방안의 공통점이다. 협상에서 가장 곤란할 수 있는 경우는 한국이 특정 이슈에 대해 입장을 정리하기 어려운 때이며, 이는 많은 경우 국내에서 관련 이슈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따라서 제도의 정비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표적인 경우로 개인 정보 관련 문제를 들 수 있다. 한국 내에서도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문제가 여러 차례 부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제도 및 법령의 미비로 한국의 경우 통상에서 다루어질 수 있는 개인정보의 범위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아직 정립되지 못한 듯하다. 결국 국내 제도와 법률이 미비하므로 협상에서 입장을 내세우기 어렵다. 더 나아가 TPP는 우리가 협상에 참여하여 협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고 우리의 이익을 반영할 수 있는 가능성이 희박하다. 결국 유보 목록 작성을 통해 우리의 개방수준을 결정하는 것 외에는 TPP 협상에 대응하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많지 않다. 협정의 내용이 한국의 법제도와 상충이 있거나 국내 법제도가 미비한 경우 적절히 유보하지 못하고 의도치 않은 높은 수준의 개방이 이루어질 수 있다. 결국 TPP 협상 참가를 위해 한국이 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정책은 예상되는 개방분야에서의 국내제도를 충실히 정비해두는 것이다.

■ 참고문헌 ■

[국문자료]

- 강승관. 2009.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상 동종성(likeness)에 관한 소고』. 법학연구 제20호 1권.
- 강준구. 2014. 『통상협상에서 Mode 4 논의 동향 및 대응방향』. 연구자료 14-02.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김종덕·엄준현. 2013. 『한국의 기체결 FTA 서비스 및 투자 협정문 분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김중선·김기국·송종국. 2004. 『FTA 협상을 위한 과학기술관련 서비스 분야의 양허현황 분석』.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김준동·강인수. 2000. 『서비스산업 개방효과: 업종간 파급효과를 중심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김준동·이장영·이한영·김용규·최중희·허종·이장원. 2000. 『WTO 서비스 협상의 영향분석 및 대응전략』.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김준동·서진교·송백훈·안덕근. 2012. 『DDA 협상 지연의 요인 분석과 국제적 대응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박용용. 2011. 『영한대역 WTO 협정』. 법문사.
- 법무부. 2003. 『자유무역협정의 법적 고찰』. 법무부 국제법무과.
- _____. 2010. 『한국의 투자협정 해설』. 법무부 국제법무과.
- _____. 2014. 『투자자·국가소송(ISD) 최신 판정분석』. 법무부 국제법무과.
- 최낙균·이홍식·최세균·김도훈·이항구·이임자·이준규·성한경·강준구·김현욱·현혜정·정지원·박순찬·정명진·조미진·김정곤·박혜리·김혁황. 2007. 『한·미 FTA 협상의 분야별 평가와 정책과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한국국제경제법학회. 2012. 『신국제경제법』. 박영사.

[영문자료]

- Hoekman, B. 1995. "Tentative First Steps: An Assessment of the Uruguay Round Agreement on Services". Discussion Paper No. 1150. Center for Economic Policy Research.
- Latrille, P. and J. Lee. 2012. "Services rules in regional trade agreements: How diverse and how creative as compared to the GATS multilateral rules?" Staff Working Paper ERSD-2012-19. WTO.
- Matsushita, Mitsuo, Schoenbaum, Thomas J. and Mavroidis, Retros C. 2006.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Law, Practice, and Policy. Oxford University Press.
- Munin, Nellie. 2010. LEGAL GUIDE TO GATS. Wolters Kluwer,
- NAFTA Arbitral Panel Report. 2001.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ARBITRAL PANEL ESTABLISHED PURSUANT TO CHAPTER TWENTY- IN THE MATTER OF CROSS-BORDER TRUCKING SERVICES." USA-MEX-98-2008-01. (6 February)
-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OECD). 2002. "Current Commitments under the GATS in Educational Services.", OECD.
- _____. 2014. "OECD Services Trade Restrictiveness Index (STRI)". *Policy Brief*. OECD.
- WTO. 2005a. TN/S/O/AUS/Rev.1.
- _____. 2005b. TN/S/O/CAN/Rev.1.
- _____. 2005c. TN/S/O/CHL/Rev.1.
- _____. 2005d. TN/S/O/JPN/Rev.1.
- _____. 2005e. TN/S/O/KOR/Rev.1.
- _____. 2005f. TN/S/O/MEX/Rev.1.
- _____. 2005g. TN/S/O/NZL/Rev.1.
- _____. 2005h. TN/S/O/PER/Rev.1.

_____. 2005i. TN/S/O/SGP/Rev.1.

_____. 2005j. TN/S/O/USA/Rev.1.

_____. 2006. TN/S/O/MYS/Rev.1.

_____. 2007. GATS/SC/142.

WTO Panel Report. 1997. “European Communities-Regime for the Importation, Sale and Distribution of Bananas.”, WT/DS27/R. (22 May)

_____. 2000. “Canada-Certain Measures Affecting the Automotive Industry.” WT/DS139/R & WT/DS142/R. (11 February)

WTO Appellate Body Report. 1997. “European Communities - Regime for the Importation, Sale and Distribution of Bananas.”, WT/DS27/AB/R. (9 September 1997).

_____. 2000. “Canada-Certain Measures Affecting the Automotive Industry.” WT/DS139/AB/R & WT/DS142/AB/R. (31 May)

[온라인 자료]

산업통상자원부a. 『한·캐나다 FTA 협정문』. <http://www.fta.go.kr/main/situation/kfta/lov5/ca/2/>(검색일: 2014. 9. 4).

산업통상자원부b. 『한·미 FTA 협정문』. <http://www.fta.go.kr/us/doc/1/>(검색일: 2014. 8. 13).

산업통상자원부c. 『한·EU FTA 협정문』. http://www.fta.go.kr/webmodule/_PSD_FTA/eu/doc/00_3_Fulltext.PDF(검색일: 2014. 8. 13).

일본 외무성a. Free Trade Agreement(FTA) and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EPA) Website. <http://www.mofa.go.jp/policy/economy/fta/index.html> (검색일: 2014. 6. 9).

일본 외무성b. “Japan-Mexico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http://www.mofa.go.jp/policy/economy/fta/mexico.html>(검색일: 2014. 6. 9).

일본 외무성c. “Japan-Chil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http://www.mof>

- a.go.jp/policy/economy/fta/chile.html(검색일: 2014. 6. 9).
- 일본 외무성d. “Japan-Switzerland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http://www.mofa.go.jp/policy/economy/fta/switzerland.html>(검색일: 2014. 6. 9).
- 일본 외무성e. “Japan-Peru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http://www.mofa.go.jp/policy/economy/fta/peru.html>(검색일: 2014. 6. 9).
- 캐나다 외교통상부a. Canada's Free Trade Agreements Website. <http://www.international.gc.ca/trade-agreements-accords-commerciaux/agr-acc/fta-ale.aspx?lang=eng>(검색일: 2014. 7. 10).
- 캐나다 외교통상부b. “Canada-Peru Free Trade Agreement.” <http://www.international.gc.ca/trade-agreements-accords-commerciaux/agr-acc/peru-perou/peru-toc-perou-tdm.aspx?lang=eng>(검색일: 2014. 7. 10).
- 호주 외교통상부a. Free Trade Agreements Website. <http://www.dfat.gov.au/fta/>(검색일: 2014. 6. 24).
- 호주 외교통상부b. “Australia-United States Free Trade Agreement.” <http://www.dfat.gov.au/fta/ausfta/final-text/>(검색일: 2014. 6. 24).
- 호주 외교통상부c. “Australia-Chile Free Trade Agreement.” <http://www.dfat.gov.au/fta/ac/fta/Australia-Chile-FTA.html>(검색일: 2014. 6. 24).
- NAFTA Secretariat. 1992. “NAFTA Agreement” <https://www.nafta-sec-alena.org/Home/Legal-Texts/North-American-Free-Trade-Agreement>(검색일: 2014. 9. 5).
- USTRa. Free Trade Agreements Website. <http://www.ustr.gov/trade-agreements/free-trade-agreements/>(검색일: 2014. 8. 11).
- USTRb. “The United States-Australia Free Trade Agreement.” <http://www.ustr.gov/trade-agreements/free-trade-agreements/australian-fta/final-text/>(검색일: 2014. 5. 20, 2014. 8. 11).
- USTRc. “The United States - Colombia Trade Promotion Agreement.” <http://www.ustr.gov/trade-agreements/free-trade-agreements/colombia-fta/final-text/>(검색일: 2014. 5. 20, 2014. 8. 11).

- USTRd. “The United States-South Korea Free Trade Agreement.” <http://www.ustr.gov/trade-agreements/free-trade-agreements/korus-fta/final-text>(검색일: 2014. 5. 20, 2014. 8. 11).
- USTRe. “The United States-Morocco Free Trade Agreement.” <http://www.ustr.gov/trade-agreements/free-trade-agreements/morocco-fta/final-text>(검색일: 2014. 5. 20, 2014. 8. 11).
- USTRf. “The United States-Bahrain Free Trade Agreement.” <http://www.ustr.gov/trade-agreements/free-trade-agreements/bahrain-fta/final-text>(검색일: 2014. 5. 20, 2014. 8. 11).
- USTRg. “The United States-Oman Free Trade Agreement.” <http://www.ustr.gov/trade-agreements/free-trade-agreements/oman-fta/final-text>(검색일: 2014. 5. 20, 2014. 8. 11).
- USTRh. “The United States-Peru Trade Promotion Agreement.” <http://www.ustr.gov/trade-agreements/free-trade-agreements/peru-tpa/final-text>(검색일: 2014. 5. 20, 2014. 8. 11).
- USTRi. “The United States-Panama Trade Promotion Agreement.” <http://www.ustr.gov/trade-agreements/free-trade-agreements/panama-tpa/final-text>(검색일: 2014. 5. 20, 2014. 8. 11).
- World Bank. WDI. <http://databank.worldbank.org/data/views/variableSelection/selectvariables.aspx?source=world-development-indicators>(검색일: 2014. 7. 20)
- OECD STRI Regulatory database. <http://qdd.oecd.org/subject.aspx?Subject=063bee63-475f-427c-8b50-c19bffa7392d>(최종 검색일: 2014. 9. 15).
- Webster 온라인 사전 웹사이트a. <http://www.merriam-webster.com/dictionary/rendence>(검색일: 2014. 9. 5).
- Webster 온라인 사전 웹사이트b. <http://www.merriam-webster.com/dictionary/domicile>(검색일: 2014. 9. 5).
- Webster 온라인 사전 웹사이트c. <http://www.merriam-webster.com/dictionary/produce>(검색일: 2014. 9. 5).

Webster 온라인 사전 웹사이트d. <http://www.merriam-webster.com/dictionary/procedure>(검색일: 2014. 9. 5).

WTOa. GATS. http://www.wto.org/english/docs_e/legal_e/legal_e.htm(검색일: 2014. 9. 5).

WTOb. TRIMS. http://www.wto.org/english/docs_e/legal_e/18-trims_e.htm(검색일: 2014. 9. 5).

TPP 주요국 투자·서비스 장벽 분석: 기체결 협정문 및 양허분석을 중심으로

부 록



부표 1. Hoekman(1995)이 설정한 업종 및 모드별 가중치

	부문	업종	업종별 가중치	모드별 가중치			
				Mode 1	Mode 2	Mode 3	Mode 4
1	사업서비스	전문직서비스	8	0,1	0,1	0,4	0,4
		컴퓨터 및 관련 서비스	2	0,3	0,1	0,2	0,4
		연구개발서비스	2	0,3	0,1	0,2	0,4
		부동산서비스	5	0	0	0,9	0,1
		임대서비스	2	0,2	0,2	0,5	0,1
		기타 사업서비스	10	0,1	0,1	0,4	0,4
2	커뮤니케이션	우편	0,5	0,2	0	0,8	0
		쿠리어	0,2	0,4	0	0,4	0,2
		통신	3,8	0,4	0	0,5	0,1
		시청각	0,9	0,3	0,1	0,4	0,2
3	건설	건축물 건설	3,5	0	0	0,8	0,2
		토목 엔지니어링 건설	1,5	0	0	0,8	0,2
		설치/조립	1	0	0	0,8	0,2
		건축물 완성/마감	1	0	0	0,8	0,2
		기타 건설서비스	0	0	0	0	0
4	유통	위탁중개	0,7	0,2	0,1	0,6	0,1
		도매	8,7	0,2	0	0,7	0,1
		소매	9,6	0,1	0,1	0,7	0,1
		프랜차이즈	5	0,5	0	0,5	0
		기타 유통	0	0	0	0	0
5	교육	초등교육	1,5	0	0,2	0,8	0
		중등교육	0,1	0	0,2	0,8	0
		고등교육	2	0	0,3	0,6	0,1
		성인교육	1	0,1	0,2	0,5	0,2
		기타 교육서비스	0	0	0	0	0
6	환경	폐수(하수처리)	0,1	0	0	1	0
		폐기물 처리	0,5	0,1	0	0,8	0,1
		위생 및 유사 서비스	0,1	0,1	0	0,8	0,1
		기타 환경서비스	0	0	0	0	0
7	금융	보험/보험 관련	3,8	0,2	0	0,7	0,1
		은행/기타 금융	6	0,2	0,1	0,6	0,1

부표 1. 계속

	부문	업종	업종별 가중치	모드별 가중치			
				Mode 1	Mode 2	Mode 3	Mode 4
8	보건·사회	병원서비스	1,6	0	0,1	0,8	0,1
		기타 보건서비스	2,3	0	0,1	0,8	0,1
		사회서비스	0,8	0,1	0,1	0,7	0,1
		기타 서비스	0	0	0	0	0
9	관광	호텔/음식점	3	0	0,1	0,8	0,1
		여행알선대행	0,3	0	0,1	0,8	0,1
		관광안내	0,1	0	0,1	0,7	0,2
		기타 관광/여행 관련 서비스	0	0	0	0	0
10	오락·문화· 스포츠	엔터테인먼트(극장/ 라이브밴드/서커스 포함)	0,5	0,2	0,1	0,1	0,6
		뉴스제공업	0,1	0,2	0,1	0,35	0,35
		도서관/박물관/기타 문화서비스	0,1	0	0,1	0,8	0,1
		스포츠/레크리에이션	0,5	0	0,1	0,2	0,7
		기타	0	0	0	0	0
11	운송	해상운송	1,5	0,1	0,1	0,7	0,1
		내륙수로운송	0,2	0,1	0,1	0,7	0,1
		항공운송	1,5	0,3	0,2	0,4	0,1
		우주(space)운송	0,1	0,3	0	0,4	0,3
		철도운송	1,5	0,1	0	0,8	0,1
		도로운송	2,5	0,4	0,1	0,4	0,1
		파이프라인운송	0,5	0,2	0	0,8	0
		모든 운송형태 지원서비스	2	0,2	0,1	0,6	0,1
12	기타 서비스		0,4	0,2	0,1	0,5	0,2

자료: Hoekman(1995).

Executive Summary

An Analysis on the Services Trade Agreements of the TPP members

Jong Duk Kim, Jungu Kang, Jumi Lee, and Junhyun Eom

This report intends to investigate the level of liberalization in services sectors of countries participating in the TPP(Trans-Pacific Partnership) by analyzing revised offers in the WTO DDA and regional trade agreements they have agreed upon, and then suggest possible strategies for Korea regarding the ‘schedule of commitments’ negotiations in the services area of the TPP.

In order to achieve the aims stated above, the following four aspects of services agreements are investigated in this report: TPP-relevant issues and topics in services provisions, revised offers to WTO in the Doha Development Agenda, reservations list of TPP members’ FTAs after their DDA revised offers, and services trade restrictiveness index published by the OECD. The first chapter briefly overview the overall report. The second chapter introduces and examines the major issues of provisions in recent services negotiations, especially ones frequently raised after GATS, inter alia, most favored nations, national treatment, local presence, market access and progress requirement. The third chapter analyzes revised offers of TPP members submitted for the Doha Development Agenda negotiation in 2005, which indicate the general level of liberalization in services sectors of the TPP members. The analyses of revised offers elicit useful insights showing that commitments in national treatment are more liberalized than those in market access, commercial presence is generally the more preferred method of liberalization than cross-border trade,

and the level of liberalization of Korea ranks around the middle among TPP members. The fourth chapter investigates FTA services agreements of major TPP members (Australia, Canada, Japan, and the United States), focusing especially on their reservations lists offered following the negative list approach. These countries have already liberalized services markets at a high level in the WTO DDA (or NAFTA in the case of the U.S.) and hence have not shown much progress in those sectors already recognized in subsequent FTAs. However, attention needs to be paid to their positions regarding the liberalization in 'new services'. The United States have reserved the rights to adopt measures specified only for market access in new services and hence remain relatively flexible to further liberalization. On the other hand, Japan placed the 'new services' in Annex II and hence maintained their rights to adopt new discriminatory measures, in attempts to delay further liberalization in newly emerging services. The fifth chapter investigates the level of services liberalization in a more synthetic and holistic fashion by analyzing services trade restrictiveness index (STRI) published by the OECD in 2014. The results show that the restrictions in market access have remained the single largest obstacle to services trade. Especially, sectors showing low levels of liberalization tends to have more market access restrictions. In addition, restrictions on the movement of natural persons tend to appear more in professional services. Finally, based on those analyses, the last chapter suggests sectoral negotiation strategies and policy implications. In professional services, Korea still remains relatively restrictive on mode 4 (the movement of natural persons) issues than others; however, since the United States who leads the TPP negotiation has not been active in this matter, Korea is not expected to face pressures for further liberalization. Regarding courier services, Korea needs to clarify the scope of universal/monopoly postal services. In telecommunication, it is expected to properly respond to new provisions such as 'net neutrality' or 'flow

of information.' Also in audio-visual services, the Korean government needs to think about the domestic responses regarding market access in newly emerging services through TPP agreement.

KIEP 연구보고서 발간자료 목록

■ 2014년

- 14-01 체제전환국의 경제성장 요인 분석: 북한 경제개혁에 대한 함의 / 정형곤 · 이재완 · 방호경 · 홍이경 · 김병연
- 14-02 글로벌 불균형의 조정 전망과 세계경제적 함의 / 조종화 · 양다영 · 김수빈 · 이동은
- 14-03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가간 자금흐름 분석과 시사점 / 임태훈 · 이동은 · 편주현
- 14-04 주요 통화대비 원화 환율 변동이 우리나라 수출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 윤덕룡 · 김수빈 · 강삼모
- 14-05 한국의 FTA 10년 평가와 향후 정책방향 / 김영귀 · 금혜윤 · 유새별 · 김양희 · 김한성
- 14-06 포스트 발리 DDA 협상의 전개방향 분석과 한국의 협상대책 / 서진교 · 김민성 · 송백훈 · 이창수
- 14-07 TPP 주요국 투자·서비스 장벽 분석: 기체결 협정문 및 양허분석을 중심으로 / 김종덕 · 강준구 · 엄준현 · 이주미
- 14-08 국내 R&D 투자가 수출 및 해외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 생산성 변화를 중심으로 / 이승래 · 김혁황 · 이준원 · 박지현
- 14-09 무역구제조치가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반덤핑조치를 중심으로 / 이승래 · 박혜리 · 엄준현 · 선주연
- 14-10 해외 곡물 확보를 위한 한국의 대응방안 / 문진영 · 김윤옥 · 이민영 · 이성희
- 14-11 주요국의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전략과 시사점 / 김정곤 · 최보영 · 이보람 · 이민영
- 14-12 Post-2015 개발자원 확대 논의와 한국의 대응방안 / 정지원 · 권 울 · 정지선 · 이주영 · 송지혜 · 유애라
- 14-13 일본의 FTA 추진전략과 정책적 시사점 / 김규관 · 이형근 · 김은지 · 이신애

- 14-14 중국 국유기업의 개혁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
문익준 · 최필수 · 나수연 · 이효진 · 이장규 · 박민숙
- 14-15 중국 신흥도시의 소비시장 특성과 기업의 진출전략 /
김부용 · 박진희 · 김홍원 · 이형근 · 최지원 · 張 博
- 14-16 중국의 문화 콘텐츠 발전현황과 지역별 협력방안 /
나수연 · 정지현 · 강준구 · 오종혁 · 김홍원 · 이한나
- 14-17 동남아 해외송금의 개발효과 분석 /
오윤아 · 이 용 · 김유미 · 박나리 · 신민금
- 14-18 동남아 주요국 노동시장의 환경변화와 우리나라의
대응전략 / 곽성일 · 배찬권 · 정재완 · 이재호 · 신민이
- 14-19 인도의 FTA 확대가 한인도 교역에 미치는 영향 /
이 용 · 조충제 · 최윤정 · 송영철 · 이정미
- 14-20 멕시코 경제환경 변화와 한·멕시코 경제협력 확대방안 /
권기수 · 김진오 · 박미숙 · 이시은
- 14-21 미국의 제조업 경쟁력 강화정책과 정책 시사점 /
김보민 · 한민수 · 김종혁 · 이성희 · 고희채
- 14-22 유럽 주요국의 산업경쟁력 제고정책과 시사점 /
강유덕 · 이철원 · 오대현 · 이현진 · 김준엽
- 14-23 러시아의 극동·바이칼 지역 개발과 한국의 대응방안 /
제성훈 · 민지영 · 강부균 · Sergey Lukonin
- 14-24 중동지역 산업 및 금융환경의 변화와 한·중동 금융협력
방안 / 이권형 · 손성현 · 박재은
- 14-25 적정기술 활용을 통한 대(對)아프리카 개발협력
효율화방안 / 박영호 · 김예진 · 장종문 · 권유경

■ 2013년

- 13-01 동아시아의 가치사슬구조와 역내국간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 최낙균 · 김영귀
- 13-02 글로벌 유동성 확대가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 대응 / 이동은 · 양다영 · 강은정 · 박영준
- 13-03 개방경제하에서의 소득분위별 후생수준 변화 / 정 철 · 이준원 · 김봉근 · 전영준
- 13-04 금융개방의 경제적 효과와 과제 / 윤덕룡 · 송치영 · 김태준 · 문우식 · 유재원 · 채희율
- 13-05 FTA의 경제적 효과 추정 방법론 개선에 관한 연구 / 김영귀 · 배찬권 · 금혜윤
- 13-06 DDA 협상 조기수확 패키지의 경제적 효과분석과 정책 대응 / 서진교 · 오수현 · 박지현 · 김민성 · 이창수
- 13-07 금융통합이 금융위기에 미치는 영향 / 이동은 · 강은정 · 편주현 · 안지연
- 13-08 무역 및 투자 개방이 한국의 FDI에 미치는 영향 / 김종덕 · 이승래 · 김혁황 · 강준구
- 13-09 대외개방이 국내 노동시장의 숙련구조에 미치는 영향 / 배찬권 · 선주연 · 김정근 · 이주미
- 13-10 국제 공유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거버넌스 연구 / 문진영 · 김보민 · 이성희 · 김윤옥 · 홍이경 · 이민영
- 13-11 녹색기후기금(GCF)의 당면과제와 우리의 대응방안 / 정지원 · 서정민 · 문진영 · 송지혜
- 13-12 아·태 역내 생산 네트워크와 APEC 경제협력: 중간재 교역을 중심으로 / 정 철 · 박순찬 · 박인원 · 임경수
- 13-13 신북방 경제협력의 필요성과 추진방향 / 정여천 · 제성훈 · 강부근 · 최필수 · 김부용 · 김지연
- 13-14 중국의 동북지역 개발과 신북방 경제협력의 여건 / 문익준 · 이혁구 · 전재욱
- 13-15 러시아 극동·바이칼 지역의 개발과 신북방 경제협력의 여건 / 조영관 · 엄구호 · 강명구
- 13-16 중국의 정치경제 변화에 따른 북한경제의 진로와 남북경협의 방향 / 정형근 · 이유진 · 안병민

- 13-17 중국의 중장기 경제개혁 과제와 전망 /
양평섭 · 나수엽 · 남수중 · 이상훈 · 이혁구 · 유희림 · 조현준
· 최의현 · 장영석
- 13-18 중국의 녹색성장 전략과 한·중 무역에 대한 시사점 /
문익준 · 정지현 · 나수엽 · 박현정 · 이효진
- 13-19 중국의 신흥시장 진출과 한국의 대응방안:
동남아, 중남미,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
최필수 · 박영호 · 권기수 · 정재완 · 이효진
- 13-20 중국의 채권·외환시장 변화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
문익준 · 양다영 · 허 인
- 13-21 중국 권역별·성별 내수시장 특성과 진출전략 /
양평섭 · 정지현 · 노수연 · 김부용 · 박현정 · 임민경 ·
오종혁 · 김홍원 · 박진희 · 이상희
- 13-22 동남아 주요 신흥국가와의 산업협력 강화전략 /
김태운 · 정재완 · 이재호 · 신민균 · 박나리 · 김유미
- 13-23 일본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재정규율에 관한 연구 /
김규관 · 이형근 · 김은지 · 서영경
- 13-24 유럽의 사례를 통해 본 복지와 성장의 조화방안 연구 /
강유덕 · 오대현 · 이철원 · 이현진 · 김준엽
- 13-25 인도의 경제개혁 이후 노동시장의 변화와 시사점 /
이 용 · 송영철 · 초충제 · 최윤정
- 13-26 MENA 지역의 보건의료산업 동향 및 국내 산업과의
연계방안 / 이권형 · 광성일 · 박재은 · 손성현
- 13-27 해외 정책금융기관 활용을 통한 아프리카 건설·플랜트
시장진출 방안 / 박영호 · 장종문 · 전혜린 · 김영기
- 13-28 중남미 다국적기업을 활용한 대중남미 경제협력
확대방안 / 권기수 · 김진오 · 박미숙 · 이시은 · 임태균

■ 2012년

- 12-01 무역이 고용 및 부가가치에 미치는 영향 분석과 정책 시사점 / 최낙균 · 한진희
- 12-02 DDA 협상 지연의 요인 분석과 국제적 대응방안 / 김준동 · 서진교 · 송백훈 · 안덕근
- 12-03 한국 기발효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 배찬권 · 김정곤 · 금혜윤 · 장용준
- 12-04 무역자유화 효과의 실증분석과 정책 대응: 소비자후생을 중심으로 / 서진교 · 정 철 · 이준원 · 정윤선
- 12-05 경제개방과 R&D 정책의 상호작용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 김영귀 · 김종덕 · 강준구 · 김혁황
- 12-06 저탄소 녹색성장정책과 다자무역규범 간의 조화: 주요 쟁점과 정책 시사점 / Sherzod Shadikhodjaev · 서정민 · 김민성 · 이재형
- 12-07 신기후변화체제하에서 한국의 대응전략: 새로운 감축-지원 통합 메커니즘의 모색 / 서정민 · 정지원 · 박혜리 · 조명환
- 12-08 국가 채무가 국가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 허 인 · 안지연 · 양다영
- 12-09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 거시금융 정책의 평가와 시사점 / 이동은 · 편주현 · 양다영
- 12-10 금융시장을 통한 효율적 환헷지 방안과 정책적 시사점 / 윤덕룡 · 박은선 · 강삼모
- 12-11 대규모 외부충격(disasters)이 거시경제 및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 안지연 · 이동은 · 박영준 · 강은정
- 12-12 유럽 재정위기의 원인과 유로존의 개혁과제 / 강유덕 · 김균태 · 오태현 · 이철원 · 이현진
- 12-13 한·중·일 경제협약체 구상 / 이창재 · 방호경 · 나승권 · 이보람
- 12-14 최빈개도국 개발과제와 한국의 ODA 정책방향 / 권 율 · 정지원 · 정지선 · 이주영
- 12-15 G2 시대 일본의 대중(對中) 경제협력 현황과 시사점 / 김규관 · 이형근 · 김은지

- 12-16 중국 도시화의 시장 창출 효과와 리스크 분석 /
최필수 · 이상훈 · 문익준 · 나수엽
- 12-17 중국기업 연구개발 투자의 특징과 시사점 /
문익준 · 박민숙 · 나수엽 · 여지나 · 은종학
- 12-18 중국 · 대만 · 홍콩의 경제통합과 정책적 시사점 /
이승신 · 양평섭 · 문익준 · 노수연 · 정지현 · 여지나
- 12-19 러시아의 해외직접투자 패턴과 한국의 투자 유치
확대방안 / 이재영 · 이성봉 · Alexey Kuznetsov · 민지영
- 12-20 한국의 메콩 지역개발 중장기 협력방안: 농업, 인프라 및
인적자원개발을 중심으로 /
김태운 · 정재완 · 이재호 · 신민규 · 박나리
- 12-21 동남아 주요 국가들의 인력송출 현황과 한국의 대응방안 /
오윤아 · 허재준 · 강대창 · 김유미 · 신민규
- 12-22 아시아 주요국의 대인도 경제협력 현황과 시사점 /
조충제 · 송영철 · 최윤정 · 이 용 · 정혜원
- 12-23 안데스 자원부국과의 경제협력 확대 방안: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볼리비아를 중심으로 /
권기수 · 김진오 · 박미숙 · 이시은
- 12-24 중동지역 정세변화에 따른 대중동 新경제협력 방안 모색 /
한바란 · 최필수 · 윤서영 · 손성현 · 박재은 · 전해린 · 이시욱
- 12-25 아프리카 건설 · 플랜트 시장특성 분석 및 한국의
진출방안 / 박영호 ·곽성일 · 전해린 · 장종문
- 12-26 북한의 시장화 현황과 경제체제의 변화 전망 /
정형곤 · 김병연 · 이 석
- 12-27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경제의 진로모색과 시사점 /
박복영 · 김중혁 · 고희채 · 박경로
- 12-28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일본경제의 진로모색과 시사점 /
정성춘 · 김규관 · 이형근 · 김은지 · 이우광
- 12-29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EU 금융감독 및 규제변화 /
강유덕 · 김균태 · 오태현 · 이철원 · 이현진 · 채희울

■ 2011년

- 11-01 미국·캐나다의 녹색성장 전략과 시사점 /
교회재 · 이준규 · 오민아 · 이보람
- 11-02 동북아 경제협력에서 동아시아 경제통합까지:
동아시아 시대를 향하여 / 이창재 · 방호경
- 11-03 신국제통화체제: 필요성 및 대안 분석 /
윤덕룡 · 오승환 · 백승관
- 11-04 국제금융에서 중국의 위상 변화와 시사점 /
박복영 · 오승환 · 정용승 · 박영준
- 11-05 대외 위험요인 진단과 거시경제효과 분석 /
이동은 · 장은정 · 박영준
- 11-06 국제 단기자본 규제 효과 분석 및 시사점 /
허 인 · 안지연 · 양다영
- 11-07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경제환경의 변화와 한국의
대외경제정책 방향(1, 2권) / 박복영 편
- 11-08 동아시아 발전모델의 평가와 향후 과제: 영·미
모델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조종화 · 박영준 · 이형근 · 양다영
- 11-09 국제곡물가격의 변동성 요인분석과 한국의 정책적 대응 /
서진교 · 이준원 · 김한호
- 11-10 한·EU FTA 이후 대EU 통상정책의 방향과 전략 /
강유덕 · 이철원 · 이현진 · 오현정
- 11-11 한국의 일반특혜관세제도(GSP) 도입 추진 방향 /
조미진 · 김영귀 · 박지현 · 강준하
- 11-12 개방화 효과 극대화를 위한 경쟁구조에 대한 연구 /
김영귀 · 박혜리 · 금혜윤
- 11-13 한국의 중간재 교역 결정요인과 생산성 파급효과에 관한
연구 / 김영귀 · 강준구 · 김혁황 · 현혜정
- 11-14 무역상 기술장벽(TBT)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적
대응방안 / 장용준 · 서정민 · 김민성 · 양주영
- 11-15 글로벌시대의 보호무역에 대한 경제적 비용분석과 정책
시사점 / 최낙균 · 김정근 · 박순찬
- 11-16 APEC 경제통합과 원산지규정: 경제적 효과와 APEC의
협력 과제 / 김상겸 · 박인원 · 박순찬 · 임경수

- 11-17 국제사회의 남남협력 현황과 우리의 추진방안 / 권 울 · 정지선 · 박수경 · 이주영
- 11-18 일본 제조업의 경쟁력 실태분석과 시사점 / 김규관 · 이형근 · 김은지
- 11-19 한·중·일 서비스산업 직접투자 현황과 역내협력 활성화 방안 / 정형곤 · 방호경 · 나승권 · 윤미경
- 11-20 중국의 보조금 현황과 주요국의 대응사례 연구 / 박월라 · Sherzod Shadikhodjaev · 나수엽 · 여지나 · 마 광
- 11-21 북한의 투자유치정책 변화와 남북 경험 방향 / 정형곤 · 김지연 · 이종원 · 홍익표
- 11-22 베트남 및 인도네시아 진출 한국기업의 경영실태와 생산성 분석 / 김태윤 · 이재호 · 정재완 · 백유진 · 강대창
- 11-23 세계 주요국의 아프리카 진출 전략 및 시사점 / 박영호 · 전해린 · 김성남 · 김민희
- 11-24 브라질 경제의 부상과 한·브라질 산업협력 확대 방안 / 권기수 · 김진오 · 박미숙 · 고희채
- 11-25 인도 주별 성장패턴 전망과 정책 시사점 / 조충제 · 최윤정 · 송영철
- 11-26 CIS의 경제통합 추진현황과 정책 시사점: 관세동맹을 중심으로 / 이재영 · Sherzod Shadikhodjaev · 박순찬 · 황지영
- 11-27 대중국 경제협력 및 무역투자 활성화 방안: 내수시장 진출과 투자 활성화를 중심으로 / 이승신 · 최필수 · 김부용 · 여지나 · 박민숙 · 임민경
- 11-28 인도진출 한국기업 경영실태 및 성과분석 / 조충제 · 최윤정 · 송영철 · 손승호
- 11-29 한국·인도네시아 중장기 경제협력 방안 연구: 지역개발과 인적자원을 중심으로 / 강대창 · 김규관 · 오윤아 · 이재호 · 신민금 · Siwage Dharma Negara · Latif Adam
- 11-30 남미공동시장(MERCOSUR) 20년 평가와 시사점 / 김진오 · 권기수 · 고희채 · 박미숙 · 김형주
- 11-31 중동 노동시장 현황 및 우리의 대응: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를 중심으로 / 한바란 · 윤서영 · 박광순

김종덕(金鍾德)

고려대학교 경제학 학사 및 석사
미국 Michigan State University 경제학 박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실 다자통상팀장
(現, E-mail: kim.jd@kiep.go.kr)

저서 및 논문

『경제개방과 R&D 정책의 상호작용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공저, 2012)
『무역 및 투자 개방이 한국의 FDI에 미치는 영향』(공저, 2013) 외

강준구(姜俊求)

경북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경북대학교 경제학 석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실 무역투자정책팀 전문연구원
(現, E-mail: jgkang@kiep.go.kr)

저서 및 논문

『경제개방과 R&D 정책의 상호작용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공저, 2012)
『무역 및 투자 개방이 한국의 FDI에 미치는 영향』(공저, 2013) 외

이주미(李珠美)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학 석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실 다자통상팀 연구원
(現, E-mail: jmlee@kiep.go.kr)

저서 및 논문

「한·미 FTA 발효 1년의 평가와 시사점」(공저, 『오늘의 세계경제』, 제13-08호, 2013)
『대외개방이 국내 노동시장의 숙련구조에 미치는 영향』(공저, 2013) 외

엄준현(嚴峻鉉)

고려대학교 국제법 석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실 다자통상팀 연구원
(現, E-mail: jheom@kiep.go.kr)

저서 및 논문

「한국의 기타결 FTA의 반덤핑 규정 비교 및 분석」(『지역경제포커스』, 제14-38호, 2014)
『주요 기간산업 관련 WTO 보조금 분쟁 연구』(공저, 2014) 외

연구보고서 14-07

**TPP 주요국 투자·서비스 장벽 분석:
기체결 협정문 및 양허분석을 중심으로**

2014년 12월 26일 인쇄

2014년 12월 30일 발행

발행인 이일형

발행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339-00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전화: 044-414-1142 FAX: 044-414-1144

인쇄 오름시스템(주) 전화 02-2273-7011

등록 1990년 11월 7일 제16-375호

ISBN 978-89-322-1510-5 94320

978-89-322-1072-8 (세트)

정가 12,000원

KIEP 발간자료회원제 안내

- 본 연구원에서는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있는 專家, 企業 및 一般에 보다 개방적이고 효율적으로 연구 내용을 전달하기 위하여 「발간자료회원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발간자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본 연구원에서 발간하는 모든 보고서 및 세미나자료 등을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신속하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회원 종류 및 연회비

회원종류	배포자료	연간회비		
		기관회원	개인회원	연구자회원*
S	외부배포 발간물 일체	30만원	20만원	10만원
A	Journal of East Asian Economic Integration	8만원		4만원

* 연구자 회원: 교수, 연구원, 학생, 전문가풀 회원

■ 가입방법

우편 또는 FAX 이용하여 가입신청서 송부 (수시접수)
 339-00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식정보실 출판팀
 연회비 납부 문의전화: 044) 414-1179 FAX: 044) 414-1144
 E-mail: sklee@kiep.go.kr

■ 회원특권 및 유효기간

- S기관회원의 특전: 본 연구원 해외사무소(美 KIEI) 발간자료 등 제공
- 자료가 출판되는 즉시 우편으로 회원에게 보급됩니다.
- 모든 회원은 회원가입기간 동안 가격인상에 관계없이 신청하신 종류의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본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세미나 및 정책토론회에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연회원기간은 加入月로부터 다음해 加入月까지입니다.

KIEP 발간자료회원제 가입신청서

기관명 (성명)	(한글)	(한문)
	(영문: 약호 포함)	
대표자		
발간물 수령주소	우편번호	
담당자 연락처	전화 FAX	E-mail :
회원소개 (간략히)		
사업자 등록번호	종목	

회원분류 (해당난에 표시를 하여 주십시오)

기 관 회 원 <input type="checkbox"/>	S 발간물일체	A 계간지
개 인 회 원 <input type="checkbox"/>		
연 구 자 회 원 <input type="checkbox"/>		

* 회원번호

* 갱신통보사항

(* 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특기사항

An Analysis on the Services Trade Agreements of the TPP members

Jong Duk Kim, Jungu Kang, Jumi Lee, and Junhyun Eom

한국은 한·미 그리고 한·EU FTA를 통해 높은 수준의 서비스 분야 개방을 이루었으나, 경제발전수준 격차가 큰 다양한 지역의 국가를 포괄하는 TPP는 또 다른 차원의 도전이라 하겠다. 본 보고서는 TPP 회원국을 중심으로 서비스 분야 개방수준을 협정문 주요 조항, 열거주의 방식의 양허, 포괄주의 방식의 양허, 서비스무역제한지수 측면 등 다양한 각도에서 조망하고 TPP 참여 시 우리나라의 향후 양허 협상 방향에 대해 연구하였다.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339-00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T.044-414-1114 F.044-414-1122, 1199
<http://www.kiep.go.kr>

9 788932 215105 94320
9788932215105
ISBN 978-89-322-1510-5
978-89-322-1072-8(세트)

정가 12,000원